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2009년 2월 23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참여연대 )

## < 목 차 >

I. 머리말	1p
II.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1. 사건의 개요	3p
2. 사건의 개괄	5p
3.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	8p
4.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서의 논점	9p
5. 대형화재참사의 원인과 경찰의 책임에 대하여	10p
6. 발화점과 관련된 화재의 원인	40p
7. 사망 경위 의혹	45p
8.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45p
9. 검찰 수사의 문제점	46p
III. 용산참사 발생 원인 조사 결과 - 재개발 사업 문제	
1. 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57p
2. 용산4구역 개발진행 과정의 개요	61p
3. 용산4구역 개발현장에서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 행사 등	64p
4. 용산구청의 책임 방기(일방적 편들기)와 법과 제도상 문제점	70p
5. 제2의 용산참사를 막기 위한 대책 등	75p
IV. 의혹 및 제언	80p
<b>[부록]</b>	
* 1월 20일 시간대별 상세 상황	85p
* 남일당 빌딩 옥상/망루 평면도	92p
* 경찰자료 모음	93p
농성장 진입계획	
상황보고	

무전 교신 녹취록

* 국과수 부검 결과 및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회의 검토의견서	117p
* 1월 19일 상황에 대한 주변 상인 및 주민 진술 : 정말 도심테러였는가?	143p
*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발표문 모음	157p
* 경찰 등에 대한 고발장	286p
* 검찰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문	311p
* 지식준, 이성수 등 주차장 쪽 탈출자 상황	332p
* 용산4구역 용역업체 직원의 위협 및 폭행 기록	338p
* 진상조사단 일지	351p

## 1. 머리말

2009. 1. 20. 아침 서울 용산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망루농성을 하던 철거민들을 경찰이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망루에 화재가 발생하여 철거민 5명과 진압에 나선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는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을 꾸려 진상조사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강제진압과정에서 희생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은폐조작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경찰의 말바꾸기와 비상식적인 발언은 계속되었다. 검찰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자세로 진실을 파헤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사건 초기에 신속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사건의 진실이 은폐되거나 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했다.

진상조사단은 연행된 철거민들, 현장주변 상인들, 유족들의 진술을 듣고, 시신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며, 각종 동영상도 세밀히 점검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성급하게 진압에 나설 정도로 철거민들의 농성이 시민들의 안전에 위협적인 상황이 아니었고 농성을 풀기 위한 충분한 설득과 대화노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없이 농성시작 하루만에 경찰이 전격적으로 강제진압에 나선 것이 대형참사를 일으킨 원인이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은 망루안에 인화물질이 가득 들어 있었고 1차 화재가 발생하고 진화된 바 있었기 때문에 추가 화재발생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명백히 인식하고서도 진압을 강행하였다.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의 진압장비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화재진압효과도 없는 물대포만 쏘았을 뿐 불을 끄지 못했다. 퇴로를 차단한 채 망루안에서 토끼몰이식 진압을 할 경우 사상자가 발생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 스스로도 철거민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우려가 있다는 예상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거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무모하게 진압에 나섰다. 폐법문화청산과 법질서 확립을 부르짖으며 공안정국을 조성해온 이명박 정부아래서 국민의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는 강경한 공권력의 집행이 불러온 비극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어야 할 공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을 빼앗아버린 흉기로 변해버린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강경진압을 승인한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관들을 업무상과 실치사상혐의로 고발하였다. 진상조사단은 5차례의 기자회견을 갖고 진상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거나 왜곡하지 않고 철저히 수사하도록 촉구하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봐주기수사에 그칠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철거민들은 대부분 기소한 반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을 묻지 않았다. 검찰은 진상조사단이 처음부터 수사를 촉구한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무시하다가 수사막바지에 MBC PD수첩이

공개한 용역들의 불법행위 동영상을 외면할 수 없어 허둥지둥 수사발표를 연장하는 희극을 연출한 끝에 가벼운 죄목으로 기소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용역들의 불법폭력을 처벌하면서 이들의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경찰의 책임은 묻지도 않았다. 앞으로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진상조사단은 현장을 접근할 수 없었고 검찰이나 경찰, 소방서의 비협조로 이들 기관의 자료를 보거나 관련자들의 진술을 들을 수 없어 진상규명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조사한 내용과 모은 자료등을 담아 부족하나마 최종보고서를 내놓게 되었다. 강경 진압의 위법성과 용산참사의 정확한 원인, 검찰수사의 문제점과 남아 있는 의혹, 철거민들을 극단적으로 내모는 재개발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용역폭력과 시공사문제 등을 포함하였다. 지금은 은폐되어 있지만 언젠가 드러날 경찰의 과잉진압과 검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기초자료로 남기고자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한 공권력의 행사가 어떤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지를 기록으로 남겨서 다시는 위법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다. 다시 한 번 용산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빈다.

2009년 2월 23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단장 장주영

## II. 용산참사 진상조사 결과

### 1. 사건의 개요

가.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1월 20일 시간대별 상황 (대략)

시간	상황
6:25	경찰 병력 건물 진입 시작
6:45	특공대 컨테이너 1차 옥상 투입
6:56	특공대 컨테이너 2차 옥상 투입
7:00	특공대 망루 진입, 3층까지 진입
7:05	망루 3층/4층 계단에서 1차 화재 발생
7:07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 망루 해체 작업 시작
7:15	컨테이너가 망루에 충돌
7:19	컨테이너에서 망루 내부로 소화 분말 분사
7:20	망루 3층/4층 계단에서 2차 화재 발생
7:21	망루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주차장 쪽 베란다에 출현
7:25	망루 쓰러짐
7:27	지석준 추락

※ 1월 20일 시간대별 상세 상황 부록 참조.

나. 사망, 입원, 피체포자 현황

번호	이름	직책	피해상황	비고
1	양희성	용산 회원	사망	
2	윤용현	순화 위원장	사망	
3	이상립	용산 전위원장	사망	
4	이성수	신봉 위원장	사망	
5	한대성	수원 신동 조직부장	사망	
6	김00	신계 전위원장	체포 후 구속	용산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7	김00	용산 조직부장	체포 후 구속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8	김00	용산 회원	체포 후 구속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9	김00	사당 정금마을 위원장	체포 후 구속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10	조00	성남 단대상공위원장	체포 후 구속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서울구치소
11	이00	용산 위원장	입원, 체포 후 구속	체포되지 않고 중대 중대병원 입원
12	김00	지금동 위원장	체포 후 입원	체포 후 호송버스에서 순천향병원 후송
13	김00	용산 연사부장	체포 후 입원	체포 후 용산서에서 순천향병원 후송
14	지00	순화 총무	입원	체포되지 않고 순천향병원 입원
15	천00	상도 위원장	입원, 체포 후 석방	체포 후 호송버스에서 순천향병원 후송
16	이00	용산 회원	체포 후 석방	여,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17	정00	용산 규찰부장	체포 후 석방	여, 불기소(기소유예)/동작서, 중앙지검
18	박00	용산 회원	체포 후 석방	여,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19	김00	용산 홍보부장	체포 후 석방, 입원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녹색병원

20	김00	성남 단대 전위원장	체포 후 석방	용산서, 서울중앙지검
21	장00	성남 단대 회원	체포 후 석방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22	이00	성남 단대 회원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23	손00	인천 도화 부위원장	체포 후 석방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24	박00	인천 도화 위원장	체포 후 영장기각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25	이00	인천 도화 회원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26	김00	관양동 회원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27	박00	천왕2지구 위원장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28	유00	사당 정금마을 총무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29	강00	신갈 회원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30	경00	수원 신동 회원	체포 후 석방	용산서, 서울중앙지검
31	배00	상도4지구 부위원장	체포 후 석방	마포서, 서울중앙지검
32	이00	신곡동 회원	체포 후 석방, 입원	동작서, 서울중앙지검, 녹색병원

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개요

(1) 구성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은 1월 20일 참사가 벌어진 당일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이상 4개 단체로 구성됐다.

(가) 구성원

- 민변 : 권영국 권정순 김광중 김태욱 민병덕 박주민 서동용 송상교 오윤식 원민경 이덕우 이오영 이현욱 장유식 장주영 조영선 한명옥 황필규 김낙준 장연희
- 인권단체연석회의 : 김덕진 김산 랑희 미류 박진 유성
- 인의협 : 김정범 이상운
- 참여연대 : 박근용 안진걸

(나) 기구

- 단장 : 장주영 변호사(민변 부회장)
- 법률지원팀 : 오윤식 변호사(팀장, 민변), 김태욱 변호사(민변), 박주민(민변)
- 사인규명팀 : 이상운 의사(팀장, 인의협), 김정범 의사(인의협)
- 조사팀 : 권영국 변호사(팀장, 민변 집행위원), 랑희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유성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 재개발팀 : 이현욱 변호사(팀장, 참여연대), 권정순 변호사(민변), 미류 활동가(인권단체연석회의), 민병덕 변호사(민변)

(2) 활동 개요

진상조사단은 사건 현장조사, 농성 철거민 심층면담, 남일당 빌딩 주변 상가 및 주민 인터뷰, 각종 언론의 영상 분석, 다량의 사진 분석, 농성 철거민들의 검찰 조사 밀착 입회, 용산4지구 재개발 관련 자

료 분석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중요한 문제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했다.

(가) 경찰의 대응 문제

농성 첫 날인 1월 19일부터 경찰특공대가 배치된 것의 문제  
1월 19일 농성자들의 대항 형태에 대한 진실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안전조치 및 소방조치 확보의 문제  
경찰특공대의 망루 투입 당시 무자비한 폭력 행사 문제  
용역들과의 합동작전 문제

(나) 발화 원인 및 사망 과정

발화 원인 : 직접적 원인(화염병(검찰주장 등)과 정황적 원인(경찰의 무리한 폭력적 진압 등) 규명  
화재 당시 망루 탈출자 고 이성수 씨의 사망 과정 의혹 및 농성자의 안전에 대한 경찰의 대처 문제

(다) 철거업체

용역의 불법 행위 - 철거민들에 대한 일상적 폭력과 농성자들에 대한 폭력

(라) 시공사 문제

시공사와 용역이 맺은 불법적 계약 문제 - 계약서 분석을 통한 시공사의 철거과정 개입 추정

(마) 현행 재개발 사업 제문제

(바) 검찰 수사

참사 원인을 농성 철거민들의 행위에서 찾는 편향된 관점의 수사 문제  
경찰의 불법행위는 배제한 경찰 보호하기 수사 문제  
철거업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문제

## 2. 사건의 개괄

「2004년 1월 용산구청 자료 '21세기 희망찬 새용산 - 용산 개발 현황'을 보면 서울역에서 한강에 이르기까지 16개 개발지역이 망라되어 있어 말 그대로 초대형 개발 박람회장을 방불케 한다. 이 가운데 가장 알짜배기 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즉 용산역세권 개발이다. 150층 빌딩 건축 등 사업비만 28조 원에 달하는 등 엄청난 개발이익이 걸린 탓에 GS, 현대산업개발, 포스코, 금호, SK, 두산, 롯데건설 등 웬만한 건설재벌은 다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사를 맡고 있는 삼성물산이 주도하고 있다. 증권가 분석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삼성물산 한 개 기업이 얻는 이익은 시공이익을 포함 무려 1조4천억에 달한다.

국제업무지구뿐 아니라 16개 지역 개발을 놓고 건설재벌 간에는 피 튀기는 수주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지역 중 국제빌딩 주변 개발은 규모가 큰 개발지역에 속하고 그 중에서도 4구역이 가장 크다. 삼성물산은 포스코, 대림과 함께 사업비 2조원<sup>1)</sup> 규모의 4구역 공사도 맡고 있는데 시공사들이 받는 시공비가 6천억 원<sup>2)</sup>에 달한다 .....

보도를 종합하면 ..... 국제빌딩주변 개발계획은 2002년 말 구청에서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고 2003년말부터 공람공고를 내면서부터 시작됐다. 2003. 6. 삼성물산 등은 용산4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던 일부 주민들에게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10억원을 송금하는 등 활동을 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sup>3)</sup>

위와 같은 개발 계획에 따라 2006. 4. 20.<sup>4)</sup> 마침내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70번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이하 용산 4구역이라 함)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로 지정되었다(서울시 고시 제2006-142). 같은 해 10. 12. 용산 4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들은 용산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다음 해 5. 31.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같은 해 10. 12. 조합설립인가(조합장 이춘우), 2007. 5. 31. 재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다.

「2007년 10월 삼성물산 등 건설재벌이 용산 4구역 공사를 6천억 원에 따낸 것도 경쟁 입찰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건축비도 부가세를 빼고 513만원에 달해 국토부가 정한 평당 400만원 보다 100만원이 비싸게 책정됐는데, 상세내역도 공개하지 않은 채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등은 땅과 집, 건물 주인들이 구성된 조합측에 이주비는 물론 운영비까지 빌려주었고, 심지어 200억 가까운 이자를 건설재벌이 부담하는 등 사실상 일찍부터 재개발 공사비용과 추진에 깊숙이 개입해왔다.»<sup>5)</sup>

그리고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인가신청일 2007. 11. 30.)을 하기도 이전인 2007. 10. 31. 시공사, 재개발조합, 철거(용역)업체 사이에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철거공사금액 51억원, 공사기간은 2008. 5. 31.부터 10개월로 정하였다. 계약서에 따르면 시공사는 철거업체로부터 공사감독관으로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 활동을 포함한 철거 전반에 대한 관리위임을 받아 철거 진행 상태를 보고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철거업체는 약정기간 내에 철거를 끝내지 않으면 지체 1일에 대해 공사금액의 1/1000(510만원)을 지체보상금으로 배상하도록 약정하고 있다.<sup>6)</sup> 그리고 시공사는 2008. 10. 재개발 공사에 착수하기로 재개발조합과 약정하였다.<sup>7)</sup>

철거업체(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 직원들은 관리처분계획 인가<sup>8)</sup>가 나기 이전인 2008. 2.부터 용산4구

1) 분양가총액 약 2조 400억원

2) 5992억원

3) 손낙구, "건설재벌이 용산에서 한일을 알고 싶다", 09. 2. 10. 레디앙,

4) 공소장에는 2005. 12. 1.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09. 2. 10. 레디앙, 앞의 글

6) 공소장,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참조

7) 공소장 참조; 이에 반해 레디앙, 앞의 글에서는 시공사의 공사 착공일이 2009. 2.로 예정돼 있었다고 기고함.

역에 상주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같은 해 4. 강제철거에 반대하는 상가세입자를 중심으로 용산4구역 상가공장철거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4구역 철대위'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2008. 7.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금이 개별 통지되면서 철거업체는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강요와 함께 폭행과 협박, 영업방해, 성희롱 등을 일상적으로 자행하였고 경찰은 이를 방관하였다. 철거업체는 같은 해 가을부터 빈집을 철거하기 시작하였고 영업 중인 건물의 일부마저 철거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은 철거업체들의 이러한 물리적 폭력에 맞서 자신들의 의사를 주장하기 위하여 2009. 1. 19. 05:30 서울 용산 한강로 3가 63번지 남일당빌딩으로 진입하여 빌딩 옥상에 망루를 세우고 점거농성에 돌입하였다.



사진 1



사진 2

<사진 1, 2> 용역이 공가에 그려놓은 협박 그림

8)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08. 5. 31.(공소장) / 2008. 5. 30.(용산4구역 철대위)

서울지방경찰청은 용산 4구역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이 남일당 빌딩에 진입한 당일<sup>9)</sup> 곧바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하는 '기능별 대책회의'에서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이하 '농성장 진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승인하였고,<sup>10)</sup> 진압작전은 점거농성 개시로부터 불과 25시간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2009. 1. 20. 05:30 경찰은 남일당빌딩 주변에 진압 경력을 배치하고, 06:30경부터 진압작전을 개시하여, 이 과정에서 5명의 철거민과 1명의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하는 대형화재참사가 발생한 후 08:00경 진압은 완료되었다.

### 3. 검찰 수사 결과의 문제점

검찰은 2009. 2. 9.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의 원인 등에 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sup>11)</sup> 위 발표에서 검찰은 2009. 1. 20. 이른 시간에 6명의 생명을 앗아간 용산 화재 참사의 주된 원인을 철거민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대량 쏟아 부은 후 망루에 진입한 특공대를 막기 위하여 불붙은 화염병을 아래로 투척,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sup>12)</sup>

과연 이러한 검찰의 수사 발표는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철저한 진상규명 과정을 거친 것인가? 아니면 농성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기 위한 편파적인 수사의 결과물인가?

검찰 수사는 철거민들의 농성 행위 그 자체가 경찰의 정당한 공무수행 내지는 범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진행되었던 까닭에 결론은 처음부터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었고, 실제로 검찰은 이 사건의 전체적인 진상과 실체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림으로써 정부와 공권력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철거민들의 다른 망루 농성 사례와 비교해볼 때, 이번 용산사건에서의 경찰의 진압방식과 대형화재 참사라는 결과는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고<sup>13)</sup>, 이러한 이례성은 철거민들의 투쟁방식의 하나인 망루 농성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례적인 성격을 갖는 용산화재참사 사건의 원인과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하였다면 사건 현장의 진압주체인 경찰의 진압방식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초기부터 용산화재참사의 진정한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다.

검찰은 수사 중에도 철거민 농성자들과 관련된 내용이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일지라도 마치 객관적 사실인 것인 양 언론에 흘리고, 유족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제기하는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용역들

9) 검찰수사결과 발표문에 따르면 1. 19. 19:00으로 되어 있음.

10)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서울지방경찰청, 2009. 1. 20.

11)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2009. 2. 29.

12)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 17쪽에서 "결국 본건 화재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고 그로 인해 망루가 전소된 것임"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13) 이번 용산사건에서의 경찰 진압방식이 매우 이례적이었던 점은 다른 지역에서의 철거민 망루농성 사례를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사실이다. 특히 오산시 수청동(세교지구)에서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인하여 철거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한 때로부터 약 53일만에 경찰력 투입이 이뤄진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고, 언론이나 일부 국회의원이 물증을 제시하면 그때에서야 마지못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그조차도 경찰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받아들여 곧바로 근거가 없다거나 처벌이 어렵다는 해명성 수사를 지속함으로써 ‘편파수사’와 ‘뒷북수사’라는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수사의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것이다.<sup>14)</sup> 이처럼 검찰의 수사는 다수인명피해의 원인, 화재 원인, 경찰 진압의 위법성, 용역업체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편파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재개발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철거민들을 최대 가해집단으로 둔갑시켜 버렸다.

검찰은 ‘용산 남일당 건물’에서 발생한 대형화재 참사를 제대로 수사하기도 전에 경찰에 대해서는 “공무집행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을 통해 속내를 드러내었고, 중간수사 발표와 같이 철거민 농성자가 화염병을 던졌고 이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경찰특공대 1명이 사망하였다는 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수공무방해치사 등의 혐의로 철거민들을 체포한 다음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경찰의 진압작전은 지극히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반면, 철거민에 대해서는 “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sup>15)</sup> 이미 수사의 방향은 “철거민 책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검찰은 철거민들의 불법에 대한 응징의 의지는 드높았던 반면 진압 경찰과 철거용역업체의 불법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관용을 베푸는 이중적 잣대를 사용하였다. 예상대로 검찰은 화재참사의 책임을 전적으로 철거민에게 지우는 결론을 내렸다. 수사권이라는 미명하에 이례적인 과잉진압으로 대형참사의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진압 경찰이나 이에 동원된 용역업체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법제도의 피해자라 할 수 있는 철거민들에게는 오히려 사법책임을 물어 기소함으로써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드러내었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 4.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에서의 논점

재개발과정에서 자신들의 생존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후의 방편으로 용역의 폭력을 피해 망루에 오른<sup>16)</sup> 철거민세입자들의 안전과 생명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대형화재의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안전을 이유로 현장 상황을 현저히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무리하게 진행한 경찰의 강경진압은 과연 적법한 것인가?

이하에서는 이번 용산화재참사의 원인과 경찰의 책임 여부, 화재의 원인, 사망자의 사인, 검찰 수사과정에서의 문제점, 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리 문제점, 이 사건 발생의 배경이 된 재개발의 문제점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

14) 예를 들면, 검찰은 당초 경찰의 무선교신을 근거로 한 용역과 경찰의 합동작전 의혹에 대해 철거민 진압작전에 용역이 동원된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하다가 모 언론사에서 용역이 경찰들 속에서 물대포를 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방영하자 그제서야 용역 동원 사실과 관련된 수사를 하였고, 경찰특공대 투입의 최종 승인권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형평에 맞지 않게 서면조사만으로 수사를 마무리 하였다.

15) 실질심사 참여 변호인의 증언

16) "용산 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시사HN, 2009. 2. 8.

## 5. 대형화재참사의 원인과 경찰의 책임에 대하여

### 가. 쟁점

검찰은 대형화재참사의 원인을 철거민 농성자들의 과격시위와 철거민 농성자들이 다량의 인화물질을 뿌린 후 화염병을 투척하여 이로 인하여 불이 나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검찰의 이러한 결론은 매우 근시안적일 뿐만 아니라 참사의 진상과 실체를 왜곡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철거민들의 다른 농성 사례와 비교해볼 때, 용산4구역에서의 대형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서, 검찰의 수사는 마땅히 그 이례적인 점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대형참사'라는 용산사건의 이례적인 성격에 대한 고려 없이 철거민의 불법행위에 집중되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사건의 진상과 실체를 외면하는 결론을 도출한 것이다.

이번 용산철거민사망사건은 경찰이 2009. 1. 19. 상황(철거민 농성으로 인한 위협의 정도)을 사실과 다르게 현저하게 과장·왜곡하고 농성자들과의 충분한 설득과 대화과정<sup>17)</sup>을 생략한 채 대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조기부터 무리하게 투입한데서 출발한다. 그리고 인화성 물질이 다량 존재하여 이로 인한 화재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서도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아니한 채 신속한 진압만을 강행함으로써 생존의 벼랑에 서있는 철거민들을 망루의 끝으로 몰아댄 결과 빚어진 참사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용산철거민 대형참사의 주된 원인은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진압, 즉 대규모 인화성 물질로 인한 화재 발생 위험성에 대한 사전 인지도도 불구하고 농성자들과의 충분한 설득과 대화과정 그리고 발화원 및 위험원에 대한 제거 등의 안전대책을 생략한 채 조기부터 무리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공격적 강경 진압방식에 있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목표를 철거민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처리로 한정함으로써 사건의 실체에 대한 공명정대한 수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 나. 대형참사의 원인 1 -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위법성

#### (1) 쟁점 -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은 적법한가?

경찰은 1. 19. 농성자들이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으며, "예전에 없던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고 주장함으로써<sup>18)</sup> 경찰특공대의 투입 이유를 정당화하고 있다.

17) 경찰은 전철연에 대해 6번 가량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전철연이 협상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의 협상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이 아니라 해산 이후에 대한 아무런 대책 제시 없이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하는 일방적 의견 제시였다.

과연 경찰특공대 투입하기 전날인 2009. 1. 19.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는 상황이 존재하였는가? 화염병이 난무하고 무작위로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투척하여 시내 중심에서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인가? 실제로 조기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인가?

경찰특공대는 대테러 임무를 주된 임무로 하는 까닭에 공격적인 진압이 예상되고 공격적인 진압은 그에 대한 대응의 수위를 고양시켜 진압과정에서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번 용산사건에서의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은 적법한 것이었는가?

(2) 2009. 1. 19. 현장 상황에 대한 경찰의 보고 내용

(가)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의 상황 진술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은 20일 오후 용산경찰서에서 가진 бри핑에서 "19일 오후 7시 김석기 청장과 차장, 기능별 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대책회의에서 특공대 투입을 청장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또 특공대 투입을 처음 건의한 인물은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저녁 회의에 앞서 낮 12시30분에는 나와 기동본부장, 용산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현장대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용산서장이 특공대 투입을 요청했다"며 "청장이 회의에 없는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로 추후 이를 청장께 보고하고 건의해서 투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특공대는 일반 경찰관보다 고도로 훈련됐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능히 지혜롭게 대처할 것으로 기대했다"며 "도심지였고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특공대를 투입했다"<sup>19)</sup>고 조기 진압작전 개시 이유를 밝혔다.

또 "조기 작전개시를 하려면 폭력성과 위험성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 없던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에 대해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시너 70여통이 있었는지 사전에 파악했는지에 대해 "하얀 통이 있기는 했지만 그게 시너인지는 몰랐다"고 말했고, 위험물질이 소모된 뒤 진압에 들어가도 늦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현장에서 예측은 했지만 시너를 자신들에게 뿌리는 등 자살행위까지 할 줄은 예상 못했다"고 했다.

(2009. 1. 20. 연합뉴스).

(나)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 경력투입 법적 근거

○ 동인들은 화염병·시너·염산·LPG 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극렬 저항하며 요구사항

18)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 20. 용산경찰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거민들이 도심지 한복판에서 화염병과 벽돌 등을 무차별로 투척하는 등 도심 테러를 벌여 진압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1. 21. 경향신문 참조)

19)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하루동안 도심에 테러라 할 정도로 화염병이 난무하고 골프공 등을 투척하고 차량이 파손돼 목과할 수 없었다. 주간에는 차량이 정체되는데 작전까지 하면 서울시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근 차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선택했다"(1. 21.자 경향신문)

관철시까지 장기농성 계획

-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경력·용역 뿐만 아니라 도로(행인)에 화염병·박카스(염산)병 및 벽돌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

※ 위험방지 차원에서 한강로 시내 진방 3개차로 순차적 폐쇄(08:30~12:10)

(다) 경찰청 현안 업무보고 (2009. 1. 21. 행정안전위원회)

1. 19. (월) 05:30부터 전철연 상공철대위 30여명, 용산구 남일당 건물 5층 옥상에 망루와 새총 발사대(8개)를 설치하고 농성시작

- 경력과 행인·차량 등 상대로 새총(유리구슬 400·골프공 300) 발사 및 화염병(150)·벽돌(1,000)·염산병(40) 투척 등 강력저항

(3) 2009. 1. 19. 상황에 대한 경찰의 현저한 과장과 왜곡

‘용산철거민사망사건진상조사단’은 경찰의 1. 19. 상황에 대한 보고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성건물과 맞은편에 위치한 상가주민과 농성건물 뒤편에 있는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1. 19.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가) 19일 농성현장조사 대상

전철연 회원 (1인)

용산 4구역 상가세입자 철거대책위 (2인)

한강로 주변 상가 (6인)

남일당 빌딩 뒤편 상가 주민 (4인)

시민 (4인)

(나) 조사내용

① 19일 현장 전반에 대한 목격

- 벽돌, 골프공, 화염병, 염산병, 구슬 투척과 관련한 내용
- 화재와 관련한 내용
- 인명, 차량 피해에 대한 내용
- 영업과 관련한 내용
- 경찰과 용역에 대한 내용

② 19일 농성현장에 대한 느낌

- 시민과 차량에 대한 의도적인, 무작위적인 공격으로 보여졌는지
- 경찰의 대응,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의견

(다)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 1. 19. 상황<sup>20)</sup>

20) 1. 19. 상황에 대한 인터뷰 녹취록 참조

·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고 난 이후 건물 밖 용역들과 대치하면서 벽돌이나 골프공 투척 (신용산 3길)

·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살수가 2방향에서 진행 (풍산권투체육관 옥상과 대로인 한강로 쪽)

**살수는 아침부터 낮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07:00경 ~ 13:00경으로 추정)

살수를 하는 곳으로 농성자들이 주로 벽돌, 골프공 등을 투척

· 10:30~11:00경 약국 골목의 동막골(비어있는 상가)에 화재발생 (신용산 3길)

· 13:00 이후 소강상태 유지

(라) 증언을 토대로 한 1. 19. 실제 상황

① 경력투입의 근거는 정당한 것이었나?

서울지방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sup>21)</sup>에서 경력투입의 법적근거로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경력·용역뿐만 아니라 도로(행인)에 화염병·박카스(염산)병 및 벽돌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진상조사단 조사결과 농성빌딩 주변 상가 및 주민들을 통해 확인한 사실은 2009. 1. 19. 철거민 농성자들이 도로 및 일반 행인·차량을 대상으로 화염병·박카스병 및 벽돌을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행위는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sup>22)</sup>

[주변 상인의 일부 증언 소개]

건물 주변 상인 A씨의 증언

“망루 지을 때 물을 쓰니까 공격을 했다. 우리들은 지나가도 아무 것도 던지지 않았다. 배달하는 사람들도 다니고 애들도 그리로 다녔다. 치과도 다니고 유치원, 학원도 다니고 다 했다. 살수(물대포)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아침부터 점심까지 계속 쏘고”

한강로 상가 최모씨의 증언

“길거리 쪽으로는 안 던졌다. 용역을 제재하려고 던졌다. 차나 일반인에게는 안 던졌다. 돌 던지는 것도 살수차가 망루를 쌓을 때 물을 뿌리자 (살수차를 향해) 던지고 용역이나 경찰이 접근할 때만 던졌다.”

한강로 주변 상가 정모씨의 증언

“아침 빼고 나중에는 뭘 던지고 그런 건 없었다. 지장은 있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고 그런 것은 첫날은 별로 없었다. 단지 경찰들이 반대쪽 차선은 통제시키고 하는 바람에 위에서 뭔가 던질까봐 안전상 시민들을 통제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날 첫날은 그다지 아침빼고는 오후 3~4시경까지는 그냥 대치하다가 나머지 저녁 오후 늦게부터는 소강상태였다”

21) 서울지방경찰청 작성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22) 1. 19. 상황에 대한 인터뷰 녹취록 참조

이처럼 농성장 주변 주민이나 상인들의 일관된 증언은 농성자들이 경력이나 용역들이 건물로 접근하거나 물대포로 살수를 할 경우 이들을 상대로 골프공, 벽돌 등의 투척행위를 했으며, 한강로 방향으로 날아간 것은 많지 않았고 행인·차량의 피해상황을 목격하거나 듣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골프공에 맞은 듯한 차량이 1대 있었으나 언제인지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이 또한 용역을 향해 투척한 골프공이 의도와 달리 근접해있던 차량 유리창에 충돌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 19. 농성장 주변의 상인이나 주민들은 화염병을 보지 못한 경우가 많았고 목격한 경우에도 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다. 특히 염산이 든 박카스병을 목격한 주민은 없었다. 1차레 화재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방화가 아니라 농성건물 뒤편에 있는 신용산건물에서 용역과 경찰이 합동으로 쏘고 있는 물대포<sup>23)</sup>를 저지하기 위하여 화염병을 던지다가 공기<sup>24)</sup>에 잘못 떨어져 일어난 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경찰이 물대포 공격을 중단한 1. 19. 오후 1시경부터는 별다른 투척이나 공방이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평온한 상태가 유지되었다.



<사진 3> 1. 19. 오후 2시 31분 상황. 현장 앞 차량소통 원활하며, 승차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음.

23) 2009. 2. 3. MBC PD수첩 방영분 참조

24) 빈 상가(상호는 '동막골')



<사진 4> 1. 19. 오후 3시 30분 상황. 양방향 소통 원활, 점거건물 쪽 도로 차량소통 원활, 점거건물 안에 있는 철거민들도 쉬고 있음



<사진 5> 1. 19. 오후 4시 50분 상황. 점거 건물 앞 인도로 사람들 왕래, 일반 차량 소통 원활



<사진 6> 1. 19. 오후 5시 2분 상황. 용역·경찰의 도발이 없자, 창틀에 놓인 벽돌 제거

② 경찰이 작성한 1. 19. 상황개요 분석

경찰의 1. 19. 상황보고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농성장 진입계획 참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1. 19. 05:30 건물에 진입할 당시 용역들의 추적을 차단하기 위하여 병, 벽돌 등을 던졌고, 10:45경에 (경찰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경찰 및 주변 (경찰) 차량을 향해 돌 등을 던졌고, 10:50경 (경찰과 용역이 건너편 옆 풍산권투체육관 빌딩에서 물대포를 계속 쏘아대자) 건너편 옆 빌딩을 향하여 화염병을 투척하다가 실수로 그 사이에 있던 빈 상가(동막골)에 화재가 발생하였다.<sup>25)</sup> 그리고 12:10경 유리구슬 발사로 인해 용산서 경비과장의 차량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다. (12:10경 현재 총 화염병 50개, 벽돌 등 300개 투척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경찰의 주장만이 있을 뿐이고 수량에 대한 근거는 제시된 바 없다.<sup>26)</sup>)

- 05:30 전철연 용산 4구역 30여명 한강로 2가 소재 남일당 빌딩에 진입, 2~5층에 옥상 점거·대기 중
- ※ 05:30 현재 공사관계자 출입 차단하며 병·벽돌 및 염산 투척 중
- ※ 08:30경 편도 4차선 중 2차선 통제 / 11:00경 진행방향 3차로 통제
- ※ 09:00경 5기동대(진압복), 경찰특공대 2개 제대, 경찰 헬기 1대, 물포 2대 출동지시

25) 경찰은 10:50경 주변 가정집(공가)과 약국에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피해를 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용산소방서에서 작성한 「2009. 1. 19. ~ 1. 20.(2일간)」 용산 남일당 시위사고 관련 출동단계별 현장대응상황" 제4쪽에서 "10:35경 남일당 건물 인근 한강로 2가 221-6번지 건물에서 화재발생 (한강로 3가 63=196번지와 동일 건입) 하여 공가점포(2층 합석가) 1층 천장부위 화재진입"이라고 기재하고 있음.

화재가 난 곳은 '동막골'(음식점)이라는 빈 상가로 소방서에서 화재 발생 건물로 확인하고 있는 한강로 2가 221-6번지 공가 점포이다. 위 "현장대응상황"에 의하면 약국에는 불이 난 사실이 없다.

26) 더욱이 1. 21.자 경찰청의 행정안전위 현안업무보고에서는 "경력과 행인·차량 등 상대로 새총(유리구슬 400·골프공 300) 발사 및 화염병(150)·벽돌(1,000)·염산병(40) 투척 등 강력저항"이라고 적시함으로써 준비된 물품을 투척수로 기재하는 등 정보 자체가 명확하지 않음.

- ※ 10:45 현재 4층 동·서·남·북 방면 / 옥상 새총 2대 설치, 돌·쇠 등 경력 및 주변 차량을 향하여 투척 중
- ※ 10:50경 현재 건너편 옆 빌딩에 화염병 투척, 주변 가정집(공가)과 약국에 화재 발생
- ※ 11:05 현재 정101·국5 출동지시 / 국101, 4·6기동대, 9-1제대 출동대기 지시
- ※ 12:10경 남일당빌딩 단전·단수 완료
- ※ 12:10 현재 총 화염병 50개, 벽돌 등 300개 투척
- ※ 12:10경 용산서 경비과장 차량 유리창 파손(새총으로 발사된 유리구슬에 의한 타격)

따라서 농성자들의 시위물품 투척행위는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경찰이나 용역이 접근하거나 물대포를 쏘아대자 이에 대한 대항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이 발표한 1. 19.의 피해사례는 3차례에 걸친 부분적인 교통통제를 제외하면 단 2건에 지나지 않는다. 2개의 피해사례 중 차량 피해 1건은 승합차 유리창 파손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그 승합차는 전철연 차량으로 보이고, 화재 피해 1건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경찰의 살수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다.<sup>27)</sup> 그렇다면 과연 2건의 경미한 피해사례를 경찰특공대의 투입근거인 '도심 테러'로 볼 수 있는가?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주변 상인·주민들의 증언,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경찰채증사진을 종합하여 보면, 1. 19. 13시경 이후로는 농성자들에 의한 투척행위는 없었고 다음날 경찰의 진압 개시 이전까지 아무런 충돌 없이 평온하게 소강상태를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농성장 진입계획에 첨부된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 상황 보고' 2쪽에서 적시한 "15:50경 1개 중대(34) 기본근무로 전환/ 1개 중대(56) 미8군 시설근무로 전환, 16:05경 헬기 기본근무로 전환, 16:35경 5개 중대(국101, 5·6기동대), 여경 1개 제대, 물포3 기본근무로 전환" 등의 내용에 의해서도 충분히 뒷받침되고 있다.<sup>28)</sup>

요약하면 경찰이나 용역이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 시도를 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는 농성자들의 시위물품의 투척행위 내지 공격행위는 없었고 더욱이 1. 19. 오후에는 평온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이처럼 경찰 자신의 자료에도 철거민 농성자들이 용역이나 경찰의 추적 및 접근을 차단하거나 물대포 공격에 맞서 시위물품을 투척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일반 행인들이나 도로를 향해 무작위로 공격하였다는 경찰의 주장을 뒷받침할 상황보고는 찾을 수 없다.

(마)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행위와 그 피해 증거로 제출한 증거사진 및 영상과 관련하여 경찰은 "도심지였고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특공대를 투입했다"<sup>29)</sup>며 조기 진압작전 개시이유를 밝혔는데, 그 근거로 한강로를 지나는 차량 앞으로 화염병이 떨어져 불이 타고 있는 사진을 제공하고 있다.

27) 2009. 2. 9.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 8쪽 참조  
 28) 농성장 진입계획 첨부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 상황 보고"  
 29) "하루동안 도심에 테러라 할 정도로 화염병이 난무하고 골프공 등을 투척하고 차량이 파손돼 목과할 수 없었다. 주간에는 차량이 정체되는데 작전까지 하면 서울시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근 차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선택했다"(2009. 1. 21.자 경향신문)



<사진 7> • 19일 테러상황이었다고 주장하며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으로서, 20일 자료임이 분명히 표시되어 있음. • 화염병 투척상황에서도 경찰은 일반시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도로통제를 하지 않음.

그런데 경찰이 제공한 위 사진은 1. 19.의 상황이 아니라 경찰의 진압이 개시된 1. 20. 새벽 5:50경의 상황을 촬영한 것임이 밝혀졌다.

즉 경찰이 도심지에서 화염병이 난무한다는 근거로 제시한 위 사진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하기 위한 1. 19.의 상황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1. 20. 05:30경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하자 이에 대항하기 위하여 1. 20. 05:50경 농성자들이 경력 및 경찰 장비들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는 상황을 촬영한 것이다.

1. 20. 경찰은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을 위하여 05:30경 경찰병력을 남일당 빌딩 주변에 배치하였으나 한강 → 서울역 방향 4개 차로 중 2개 차로만을 부분 통제하여 진압작전을 시작할 때까지 상당 시간동안 서울역 방향 대로상의 차량 통행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 상황보고 자료에 따르면 '05:50경 양방향 전면 통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진술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왕복 3차로 정도만 통제시켰다. 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 서울역 쪽으로 한차로만 시켰으니 막혔다. 서울역방향으로 처음에는 2차선 통제시키다가 나중에는 1차선만 시키더라." (1. 19. 상황에 대한 인터뷰 녹취록 내용 중)

"6시께 진압이 시작됐는데도 주변 차량을 전혀 통제하지 않더라. 지나가는 승용차들이 멈춰서고, 경찰들이 진입하고 위에서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을 운전자들이 쳐다보느라고 사고가 날 뻔했다. 한강로에서 뒤따르던 차량이 급정거를 하기도 했고, 건물 가까이로 온 살수차를 향해 던진 화염병이 일반 승용차 근처에 떨어지기도 했다."(1. 19. 상황에 대한 인터뷰 녹취록 내용 중)

진압작전을 앞두고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경찰이 미숙한 것인가, 시위대의 폭력성을 알리기 위해 일부러 그런 것인가.

“둘 다인 것 같다. 경찰이 진입하고 화염병이 떨어지는데 시민과 차량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았다” (한겨레21 제746호 칼라TV팀의 증언 중)

“경찰은 건물 앞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 듯하더니, 이내 일반 차량을 막지 않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을 건물 앞 도로로 통과시키더군요. 만에 하나 이 차량에 화염병이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차량을 진입시킨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성 철거민들은 일반차량이 도로 앞으로 지나다니자 잠시 화염병 투척을 중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씨의 증언 중)

서울지방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에 첨부된 1. 20. 상황보고 내용에는 05:50경 양방향 전면 통제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 시각에 전면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문서상으로는 ‘안전’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실제 농성자들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도 지켜지지 않은 진압작전이었다.

**이처럼 경찰은 1. 20. 경찰특공대의 진압이 개시된 ‘이후’ 이에 대항하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 격렬한 저항 장면이 찍힌 사진을 마치 1. 19. 하루 종일 농성자들이 일반 행인이나 도로에 무차별적으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장면인양 제시함으로써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

(바) 소 결

**1. 19. 용산은 화염병이 난무하거나 ‘테러’에 준하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는 상황도 아니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농성건물 주변의 상인 및 주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경찰의 주장처럼 ‘테러’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농성자들이 벽돌이나 골프공을 투척한 시점은 경찰의 살수가 진행되거나 용역들의 접근이 있을 때였고 경찰이 살수를 멈추고 용역의 접근이 없었던 오후 시간대에는 경찰 자신의 보고에서도 확인되었듯이 투척행위가 발견되지 않는다. 1. 19. 투척된 물품의 대부분은 벽돌과 골프공이었으며, 화염병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염산병 투척행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화재는 1. 19. 10:30~11:00경 빈 상가에 1건, 차량 유리가 깨지는 피해가 1건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피해 또한 경찰과의 대치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 아니었다. 주변의 주민들이나 상인들은 농성자들이 자신들을 향해 위협을 가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도리어 그럴 이유가 있느냐며 역정을 낼 정도였다.

주변의 주민이나 상인들은 농성자들이 일반 행인이나 주민들을 겨냥하여 공격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위해도 가하지 않았다고 일치하여 말하였다. 경찰이 통제를 하여 다니지 못하였던 것이지 자기 아이들이나 자신들은 경찰이 통제하지 않는 한 농성 빌딩 주변을 자유롭게 다녔다고 말한다.

이처럼 증언자들은 농성자들이 일반시민과 이동하는 차량에 ‘무작위’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한 사실이 없으며, 경찰의 부분적인 통제 하에 남일당 빌딩 주변으로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증언하고 있다. 이처럼 경찰의 조기 진압 및 경찰특공대 투입을 정당화할만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영하의 기온에 철거민 농성자들을 향한 경찰의 살수가 1. 19. 오전 내내 계속되었으며 빈 상가에 붙어 붙어 화재진압을 해야 할 상황에도 화재 진화를 뒷전으로 한 채 농성자들에게 살수를 하는 등 당시 실제 상황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경찰의 주장과는 상반된다. 1. 19. 오후시간대에 이르러 경찰의 살수와 용역의 접근이 멈추자 농성자들은 어떠한 공격행위나 투척행위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경찰은 도로(행인)에 화염병·박카스(염산)병 및 벽돌을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의 과장과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한술 더 떠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은 1. 19. '하루 종일 화염병이 난무'했다고 보고하였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이유로 삼고 있는 1. 19. 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하루 종일 화염병이 난무하고 일방 행인들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돌과 골프공 등을 투척하는 도심테러 상황으로 보고함으로써 실제 상황을 왜곡하였다.

#### (4)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 (가) 1. 19. 상황 요약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하기 위한 이유로 철거민 농성자들이 일반 행인들이나 도로에 무작위로 화염병이나 벽돌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 흐름을 방해하였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농성자들이 경찰과 용역에 의한 물대포 진압에 맞서 물대포차나 경찰 및 용역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하여 이들에게 던진 것이 일부 도로에 떨어지거나 빗나가 세워둔 차량에 맞은 경우는 있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행인이나 도로에 무작위로 공격을 가한 사실은 없다.

경찰은 경찰특공대 투입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2009. 1. 19. 상황을 화염병이 난무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무법천지로 묘사하였다. 그러나 1. 19. 상황은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하여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려고 하자 이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과 용역들이 합동하여 인근 건물의 옥상에서 오전 내내 농성자들에게 물대포를 쏘아댔고<sup>30)</sup> 농성자들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화염병을 던지거나 돌을 투척한 사실이 있을 뿐이었다.

##### (나)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령 위반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으며,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다. 또한 위 시행규칙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

30) 2009. 2. 3. 방영 MBC 피디수첩, 다수의 목격자 진술

처리제대를 두고"라고 하여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경찰특공대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 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이라 할 것이고, 중요범죄란 각종 테러 및 요인에 대한 범죄 등 테러 및 인명구조 수준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명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며 공격적 진압방식을 구사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령에서 부여하고 있는 임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용산 4지구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은 임박한 철거를 앞두고 자신의 생존을 위하여 영업손실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요구하며 철거지역 내의 빈 건물을 점거하여 인명에 대한 위해나 공격 의사 없이 자신들의 의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시위를 벌였던 것이다. (화염병이나 벽돌 등의 투척은 경찰이나 용역들의 진압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일반인에 대한 위해행위로 간주할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찰특공대가 투입되기 이전인 2009. 1. 19. 일반 시민에 대한 농성자들의 폭력이나 상해행위는 발견되지 않으며, 물대포차나 경찰 및 용역의 접근 등을 막기 위한 대항적 폭력행사가 있었을 뿐인 사안에서 철거민들의 빈 건물 점거농성행위를 테러나 인명에 위해를 가하는 중요범죄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인명에 대한 위해나 공격 의사를 갖지 아니한 철거민들의 농성현장에 이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할 목적으로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경찰권의 행사에서 비례의 원칙(수단과 목적 적합성의 원칙)에도 현저히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찰청법령에서 정한 경찰특공대의 투입요건도 충족하지 못한 경찰권의 행사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시설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이므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 (다)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경찰권의 행사

##### ① 경찰 비례의 원칙의 의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에서는 "이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하여 경찰비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경찰권의 행사에서 준수하여 할 경찰비례원칙은,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의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수단의 목적 적합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침해가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수단의 최소 침해의 원칙' 및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목적상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최소한도 내에서'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다.

##### ② 경찰 병력 조기 투입의 문제점

용산4구역 상가세입자 철거민들은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강제철거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자신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남일당 빌딩을 점거하여 농성에 돌입하게 된다.

그러나 철거민들이 위 건물을 점거한 후 망루를 만들어 농성을 개시한 이후에도 사업시행인가권자인 관할 용산구청이나 사업주체인 재개발조합로부터 퇴거 조건이나 보상비에 대한 협의를 단 한 차례도 제안 받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세입자 철거민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분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용역들의 눈을 피해 2009. 1. 19. 새벽 정비지구 내에 있는 4층짜리 남일당 빌딩(퇴거로 비어있던 건물)으로 올라가 농성을 시작하였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sup>31)</sup> 최초 경찰기동대 및 경찰특공대, 물대포 등에 대한 출동지시가 내려진 시점은 2009. 1. 19. 오전 9시경이고 위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체포·진압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위 건물에 경찰특공대 등 경찰병력이 배치된 것은 2009. 1. 20. 오전 5:30경부터이다. 그리고 같은 날 06:30경 남일당 빌딩에 대한 진압작전이 개시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경찰 주장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에 대한 철거민들의 위해는 존재하지 않았다. 철거용역과 경찰의 진압 시도 행위에 대한 저항만이 있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철거민들의 농성을 풀기 위한 진지한 대화와 충분한 설득의 노력 없이 강제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빨리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진압하겠다'는 취지의 명분쌓기식 해산경고를 몇 차례 해왔을 뿐이다.

이 사건 건물 농성은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간의 보상 문제를 둘러싼 민사분쟁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공권력으로서의 경찰은 민사분쟁에 있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여야 하고 경찰권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사되어야 한다.

그런데 경찰은 철거업체의 용역들에 의해 자행된 폭력이나 협박 행위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신고나 고소고발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방관하거나 방치해둔 반면,<sup>32)</sup> 세입자 철거민들의 빈 건물 점거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시민들에 대한 위해나 공격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1. 19. 일부 시간을 제외하면 주변 교통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및 행인들에게 화염병 및 벽돌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sup>33)</sup> 도심테러에 준하는 위험 상황으로 왜곡하였고,<sup>34)</sup> 이처럼 호도된 상황을 근거로 점거농성이 시작된 지 불과 수 시간 만에 곧바로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하고 25시간 만에 진압작전을 개시하는 신속함을 보인 것이다.

이처럼 당시 남일당빌딩 주변은 경찰특공대를 시급히 투입해야 할 위험 상황이 아니었거나 위험 상황이 해소되었던 반면 농성자들의 빌딩 옥상 점거와 대량의 인화물질 소지로 인해 강제 진압시 안전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인화물질 및 유류화재에 대한 면밀한 안전대책 없이<sup>35)</sup> 농성 수 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진압 경찰 투입을 결정한 것은 매우 무모하고 성급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31)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에 첨부된 "전철연 용산4구역 관련 상황 보고"

32) 주민들과 세입자들의 다수 증언, 사진 등

33)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중 "경력투입 법적 근거"

34)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하루동안 도심에 테러라 할 정도로 화염병이 난무하고 골프공 등을 투척하고 차량이 파손돼 목과할 수 없었다. 주간에는 차량이 정체되는데 작전까지 하면 서울시내 다른 곳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출근 차량이 적은 새벽 시간대를 선택했다"(1. 21.자 경향신문)

35) 서울지방경찰청이 작성한 '농성장 진입계획' 중 진입대책에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 소화전 준비"라고 되어 있으나 다량의 인화물질 및 이로 인한 화재에 대한 대비책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경찰 비례의 원칙 위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법령상 대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를 선봉에 내세워 진압작전을 수행한 점, 설령 백보 양보하여 경찰특공대를 배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민들이 건물에 올라가 점거농성을 시작한 지 수 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한 점, 또한 농성자들의 일반 시민들에 대한 위해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특공대를 빌딩 옥상에 조급하게 투입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는 점, 이에 반해 농성자들의 완강한 저항, 면밀한 안전대책 없는 강제 진압시 다량의 인화물질로 인한 대형화재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볼 때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인명 침해 결과는 건물 점거농성자에 대한 체포·진압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본 사건에서의 경찰권의 행사는 ‘수단의 최소 침해의 원칙’ 및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 등 경찰 비례의 원칙을 현저하게 위반한 행위이다.

#### (라) 소 결

경찰은 법령상 경찰특공대의 투입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1. 19. 상황을 도심 테러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왜곡하여 경찰특공대 투입을 조기 결정하고, 진압시 예상되는 유류 화재 등의 위험에 대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성급하게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다.

일반 경찰이나 경찰기동대의 경우에는 방어적인 형태의 진압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경찰특공대는 매우 공격적인 방식을 구사하게 된다. 따라서 건물 위 망루에 특공대들이 투입될 경우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농성자들의 행동이 극단적으로 변할 가능성은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진압 전 경찰이 작성한 ‘농성장 진입계획’에도 농성자들의 극단적인 행동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찰은 이러한 위험의 현실화 가능성을 묵살하고 농성개시일인 1. 19.에 이미 경찰특공대 투입을 결정하였고 위험물질의 최대한 제거라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안중에 두지 아니하고 농성 시작 25시간 만에 경찰특공대를 건물 아래층과 공중으로 전격 투입하였다. 경찰의 진압작전은 누가 보더라도 잠재적 위험을 현실화시킬 만큼 심각하게 무모하고 무리한 과잉진압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1. 20. 용산화재참사는 다량의 인화물질에 대한 충분한 안전대비 없이 법령상 투입 요건을 일탈하여 공격적 진압방식을 구사하는 경찰특공대를 성급하게 투입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 결국 경찰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안전을 고려하지 아니한 성급한 진압작전이 용산화재참사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 다. 대형참사 원인 2 - 경찰 진압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및 업무상 중과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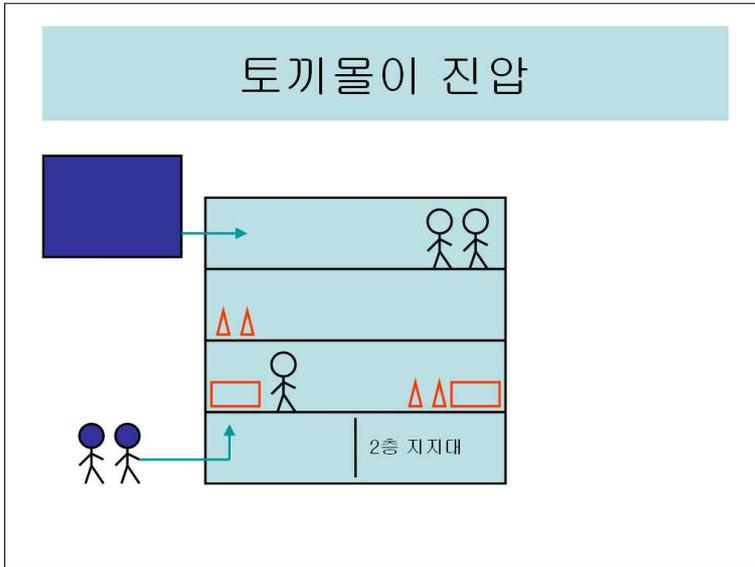
##### (1) 경찰 진압과정에서의 안전수칙 위반 요지

위와 같이 경찰특공대 투입사실 자체가 위법하였을 뿐만 아니라 진압과정에서의 위법성은 더욱 심각하였다.

**우선**, 건물 옥상의 점거시위는 추락 및 화재시 대피 수단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진압시에는 매우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자진 하강의 유도, 위험물질의 소진 및 제거 등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좁은 공간에 인원이 밀집한 경우에는 강제해산 시도를 자제하여야 한다. 특히 건물 망루 위 인화물질을 대량 소지한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위험성의 정도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배가되기 때문에 농성자들이 타인의 인명을 위해하려는 등의 급박한 상황이 아닌 이상 농성자들을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넣는 공격적 진압방식을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자진 하강의 유도나 위험물질의 소진 및 제거 등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선행되지 아니한 채 이미 진압 전날인 1. 19.에 농성자 진압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다. 그리고 인화물질로 인한 화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안전조치 없이 다량의 인화성 위험 물질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옥상 위 망루에 대해 토끼몰이식 진압작전이 강행되었다. 망루의 아래층에서 위층으로의 압박, 그리고 컨테이너를 통한 공중전으로 경찰특공대는 농성자들의 퇴로를 완전히 차단하였다.



<그림 1> 퇴로확보 없는 극단적 진압작전

경찰특공대는 망루로 진입하여 망루를 해체하기에 바빴고,<sup>36)</sup> 옥상 및 망루 내에서의 위험상황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최루액을 섞은 물포<sup>37)</sup>와 분말 소화가스만을 대량으로 쏘아댔다. 오로지 망루 해체와 농성자들에 대한 공격만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망에서 쏟아지는 엄청난 양의 물포, 그리고 망루 창문을 향해 뿌려지는 소화가스와 강력한 물대포, 망루 아래쪽과 컨테이너를 통한 양면 작전은 철거민들을 사면초가 상태로 몰아넣었다.<sup>38)</sup>

36) 경찰 무전교신 내용 참조

37) 이정희 국회의원의 자료 요구에 대한 경찰청 경비1과의 회신 참조

38) 칼라TV 동영상 참조



<사진 8>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서 물포를 쏘는 장면



<사진 9> 컨테이너로 망루에 충격을 가하는 장면

인화성 물질이 가득한 공간에서 퇴로를 차단하고 다량의 인화물질 및 유류화재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 대비 없는 경찰의 강경진압이 대형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위험물질의 소진 및 제거라는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화재로 인한 대형사고의 위험을 고려하지 아니한 경찰특공대의 중단 없는 진압작전은 죽음의 새벽을 향해 내달리고 있었다. 이것이 참사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목격자들의 한결 같은 반응이다.<sup>39)</sup> 다른 망루 농성 사태와 달리 용산사태에서 이례적으로 대형사망사고가 발생한 진정한 원인은 경찰의 강경진압작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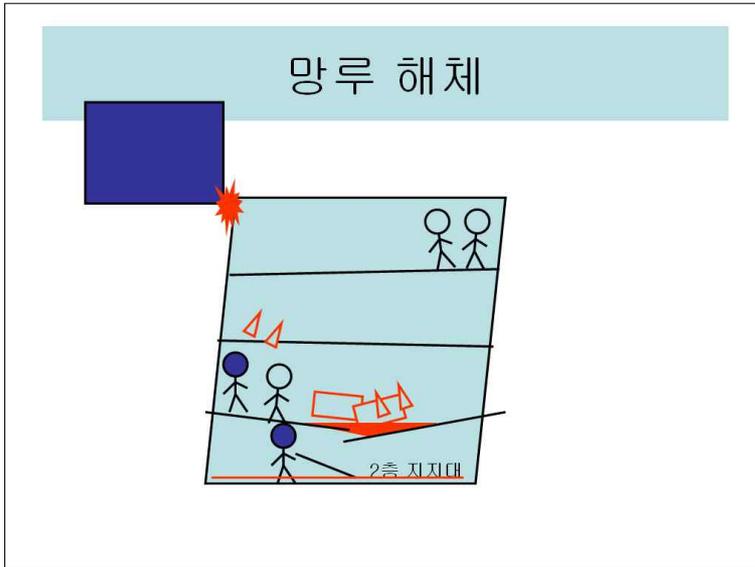
**둘째,** 이 사건 대형화재 발생 이전에 망루에서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화재(6시 58분 11초 및 7시 6분 57초)<sup>40)</sup>가 발생하여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사전에 인지되었고, 따라서 망루 내 2차 진입시에는 농성자들 검거에 앞서 망루 내에 있던 대량의 세녹스, 화염병 등 발화원 및 위험원의 제거 등 대형화재에

39) 한겨레21 제746호(2009. 2. 4. 발행) "작전은 죽음의 새벽 향해 내달렸다"

40)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 참조

대한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농성자들에 대한 공격적 진압을 중단하였어야 한다. 대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이 존재함에도 검거 전 발화원 및 위험원의 제거라는 안전수칙을 위반한 채 오로지 농성자에 대한 공격과 검거로 일관한 강경 진압은 이미 미필적으로 대형참사가 예견되는 것이었다.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1차 진입할 당시 망루 안의 지지대를 제거하고 한꺼번에 망루 안으로 들이닥침으로써 망루 2층과 3층의 바닥이 한가운데로 함몰되어 무너져 내렸다.<sup>41)</sup> 이로 인해 세녹스통과 화염병들이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등 인화물질의 유출로 인해 화재 위험성이 증대되었다.<sup>42)</sup>



<그림 2> 망루지지대 제거 및 컨테이너 타격으로, 망루 내 인화물질을 전복시키는 위험상황 초래

그리고 6시 54분경 경찰특공대가 망루 안으로 1차 진입하여 망루 2, 3층에 있던 농성자들을 제압하던 중 7시 6분 57초경<sup>43)</sup>(칼라TV상으로는 7시 5분경) 망루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불길이 급속히 번져가는 화재가 발생하였다(1차 화재).

41) 농성자들의 진술

42) 농성자들의 진술

43) 경찰의 무전교신 내용에 나타난 시각



<사진 10> 07:05경 망루 내 1차 화재 발생



<사진 11> 망루 모서리 틈새로 1차 화재 불길의 빠르게 번져가는 장면



<사진 12> 망루 내 1차 화재로 인한 경찰의 위험 인지

그리고 잠시 후인 7시 10분경 경찰특공대들은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 격렬한 저항에 부딪혀 망루 밖으로 잠시 퇴각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sup>44)</sup>

망루 안의 농성자들이 경찰특공대의 진압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망루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진압이 거세질수록 저항이 훨씬 더욱 격렬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미 인화물질의 유출로 인한 대형화재의 가능성이 1차 화재로 현실화되었고 경찰의 양동작전으로 인해 퇴로를 완전히 차단당한 채 망루 4층으로 내몰린 농성자들의 저항은 이성적인 대응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경찰특공대가 망루 내로 재차 진입하여 강경진압을 강행함으로써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대형사고를 촉발시켰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경찰은 진압 강행시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형화재의 가능성에 대비하여 망루 내에 있는 다량의 인화물질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때까지 그리고 엄청난 살수로 인해 물위로 떠다니는 인화물질에 대한 유화제 살포 등 화재의 확산 위험을 최소화할 때까지 극단적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망루 내 농성자들에 대한 공격적 진압과 검거작전을 즉각 중단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경찰특공대는 심각하게 고조된 위험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컨테이너와 건물 옥상에서 망루 외벽을 해체하는 작업을 더욱 가속화하였다.



<사진 13-1> 공중에서 망루해체를 시도하는 장면



<사진 13-2> 공중에서 망루해체를 시도하는 장면

44)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 10쪽 참조



<사진 14> 망루 모서리를 해체하는 장면



<사진 15> 컨테이너로 망루 지붕을 타격하는 장면

**[경찰무전교신]**

7시 15분 2초

**[지휘본부] 경력을 충분히 해서 망루 해체 작업을 지급으로 해요**

7시18분 48초

**[지휘본부]**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성자들 검거하면서 미란다 원칙 반드시 고지하고 연행과정에 다른 특이가 없도록 경력 요약조치 잘하세요.

7시19분33초

**[현장]** 컨테이너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07:18경 세녹스, 화염병 등 대량의 인화물질과 물 위에 떠있는 인화물질 등에 대한 아무런 안전조치

없이 경찰특공대는 곧장 망루 안으로 재차 진입하여(2차 진입) 공격적인 검거작전을 전개하였고, 이는 곧바로 2차 대형화재로 이어졌다.



<사진 16> 대형 참사로 이어진 2차 화재 발생



<사진 18> 유류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물포를 쏘아대는 장면

결론적으로 위험물질의 소진 및 제거라는 최소한의 안전수칙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무리한 과잉진압으로 인해 다수의 인명이 사망하는 참변이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용산화재참사에서 경찰 진압 과정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수사는 이 사건 대형참사의 실체를 밝혀줄 핵심적인 사안이었으나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투입에 의한 진압을 처음부터 정당한 공권력의 집행으로 전제하여 수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경찰에게 면죄부를 부여하였다.

자세히 살펴보자

## (2) 1. 20. 경찰의 진압경과

(가) 용산 철거민 진압 계획 당시 경찰이 인지한 내용  
경찰은 사전에 농성자들이 화염병 5박스(120여개), 신나(20리터) 60여개, 염산(박카스병) 100여개, LPG 가스통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위험원(危險源)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매우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sup>45)</sup>

(나) 경찰 무전교신 내용에 따른 진압과정

6시 58분 11초

[지휘본부] 현재 망루 쪽에서 계속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7시 6분 57초

[지휘본부] 망루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망루 안의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세요

7시 7분 9초

[현장] 알았다. 2단에 13명 정도 무력화놓고 있구요. 망루만 해체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7시 11분 25초

[현장] 특공대 경력들이 해체장구를 이용해서 망루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7시 15분 2초

[지휘본부] 경력을 충분히 해서 망루 해체 작업을 지금으로 해요

7시 18분 18초

[현장] 남일당 빌딩 4단에서 5단 시정장치 완전해 해체됐습니다. 경력들이 5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시 18분 48초

[지휘본부]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성자들 검거하면서 미란다 원칙 반드시 고지하고 연행과정에 다른 특이가 없도록 경력 요양조치 잘하세요.

7시 19분 33초

[현장] 컨테이너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 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시 20분 41초

[지휘본부] 마지막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농성자입니다.

7시 20분 57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지금 물포 이쪽으로 좀 쏘줘요. 옥상으로 물포

7시 21분 7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전부 지금 물포 옥상으로 좀 쏘줘 옥상

45) 1. 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압계획 중 "위험물 현황"

7시 21분 14초

[현장] 옥상에 물포를 집중으로 뿌려, 지금 신나가 뿌려지고 있어요

7시 21분 26초

[현장]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전원 지금 물포 옥상으로. 물포 있는 거 다 썩란 말  
이야 다 썩

(3)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검토

(가)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만든 위 교재 제2쪽에서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를 자제, 집회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법집행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제49쪽은 “폭력적 집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적법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제64쪽과 제68쪽은 “**강제해산 자제 대상 집회**”라는 표제 아래 “**일몰 후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한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

(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의 내용

그리고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sup>46)</sup> 제8쪽은 “II. 집회시위관리지침”에서 핵심목표로 “변수 없는 안전관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본방침”에서 “▶ 인권교육강화·현장점검 철저로 인권·안전의식 제고”, “집회시위 관리 매뉴얼화, 엄정하면서도 안전한 집회관리”, “절제된 공권력 행사”라고 하여 안전한 집회관리를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쪽은 “감정은 금물, 인권·안전에 유의”라고 하여 집회시위관리시 지휘관의 근무자세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제16쪽은 “경찰부대 훈련강화, 절제된 공권력 행사”, “**강제해산시에도 시위대 퇴로 확보, 무리한 추적 금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19쪽은 “인권 존중 및 안전활동 강화, 부대원 인권·안전교육 및 장비 안전사용훈련 강화”라고 하여 인권존중 및 안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 매뉴얼은 “제2장 유형별 법규 적용”에서 **고공 시위·농성**, 돌·쇠파이프 및 피켓 등 사용 공격, 불시항의 방문, **시설점거 농성**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현장관리요령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82쪽은 “화염병 투척시 산개대형 전개 후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화염병·돌 등을 소모하도록 유도”하도록 규정하면서 “화염병이 거의 소모되었다고 판단되면, 좌우측 검거부대가 먼저 전진하며 검거작전을 전개, 여타 부대는 뒤따라가며 엄호”라고 하여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라는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제83쪽은 “출동부대는 사전에 휴대용 소화기를 충분히 휴대하고 소방차·구급차·호송차 인접 배치, 우발상황 대비”라고 하여 소방차 등을 통한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46) 발행일: 2008. 8., 발행처: 경찰청 경비과, 발행인: 경찰청장

제92쪽 이하에서는 철탑, 다리, **건물옥상**, 타워크레인, 조명탑 등 높은 곳에 올라가 시위 또는 농성하는 고공 시위·농성 유형의 대처요령을 정하고 있는 바, “② 경고 및 제지, 차단, **고공 시위, 농성의 위협성 지속 경고 및 자진 하강토록 설득, 안전매트 신속 설치 및 구급차 등 배치로 응급체제 구축**, 경력 또는 P/L 로 시설물을 봉쇄, 추가농성, 외부세력 가세 차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시되어 있고(제92쪽),

“③ 해산 절차 진행 - 경찰특공대, 119등 투입,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진 하강 등 해산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제93쪽), 현장관리요령안에서는 “1)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낙하 걱정 지점에 안전매트, 안전그물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공농성장 주변에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 응급구호 대비, 2) 상황발생 즉시 고공농성자 설득과 동시에 안전조치에 착수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필히 완비 ※ 평소부터 안전매트 탑재차량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매트 승·하차, 이동, 설치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무실 등 집단 진입 및 점거 등에 대비한 “**불시 항의방문 및 시설점거 농성**”에서는 “8) 농성위치, 저항수위, **작전상 장애요소 등 사전파악, 제거** : 투신 등 극단적 저항 가능성, 외부지원세력 가세 여부, **화염병·인화성 물질·폭발물 등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적시하여 **진압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작전상 장애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60쪽), “10)우발상황 대비 특수 장비, 안전장구 등 준비철저, 에어매트, 고가사다리 및 소방·조명차 등 사전확보”를 명시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1쪽), “15) 농성자 연행시 안전하고 물의 없도록 연행”을 명시하면서 “전담지휘자 지정, 구타·욕설 등 가혹행위는 엄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2쪽).

또한 140쪽 이하에서는 집회시위 안전관리수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하기 쉬우므로 욕설,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사전 지형정찰을 실시하여 취약개소, 입·출구 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바람직한 집회관리는 상호간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제140쪽 내지 제141쪽)

(다) 경찰의 '1. 20. 농성장 진입계획'에서 제시된 안전조치

경찰은 위와 같은 매뉴얼 등에 입각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바, 이에 따르면, “○위험물 현황,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개, 신나(20ℓ) 60여개, 새총 10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철근·벽돌·작업공구(빠루, 망치 등) 다수”라고 하여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인들은 화염병·시너·염산·LPG 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극렬 저항하며”라고 적시하고 있고, “경력진입시 투석발사기(새총) 등 위해용품 사용하며 극렬저항 및 분신·투신·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 우려 : 화염병·염산이 든 병 및 벽돌 투척, 투석발사기(새총)를 이용한 골프공·유리구슬 및 쇠구슬 발사, 쇠파이프·각목 등 사용 경력 진입방해, 일부 강성회원 중심으로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화염방사 뿐만 아니라 자해·분신·투신 등 돌출행동 우려”라고 하여 위 건물 내로 경찰력이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으며,

“소방사다리차·대형크레인(컨테이너)·소방차·조명차 최대한 확보”하도록 사전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진입 전 살수 등을 통해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진입시 소방호수를 휴대진입, 화재 및 화염병

투척 등에 대비⇒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작전 개시전 안전매트·소방장비 등 장비확보, 안전대책 강구”라고 작전시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조명차 4, 구급차 2, 소방차 6, 고가사다리 4, 에어매트 3, 안전매트 16 등 진입에 필요한 장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기동본부장 주관 현장대책회의 실시 및 사전 충분한 FTX 실시, ○대비경력 안전교육 반복실시, 안전한 작전수행으로 변수 발생 방지, 구급차·소방차·에어매트 등 안전장비 최대 확보, 현장대기, 소방차 6대, 소방고가사다리차 2대, 바스켓차 2대, 반드시 확보”라고 하여 행정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에어매트·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 충분히 설치 및 점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4) 진입 과정에서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

① 경찰특공대는 다량의 화염병, 세눅스, 등유, LPG 가스통 등이 망루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망루 안으로의 무리한 진입 작전을 강행하였다.

② 화염병 등 시위용품에 대한 최대한의 소진, 진입시 소방호수 휴대진입 등의 안전수칙도 실행하지 아니하였다.

③ 유류화재에 대한 대비책이 절대적으로 미비하였다.<sup>47)</sup> 화학소방차는 망루 전소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했다(용산소방서, 마포소방소(07:41분경 현장 도착), 종로소방서(07:48분경 현장 도착))<sup>48)</sup>. 폼이 포함된 소방펌프차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시도하였으나, 이로는 불충분한 것이었다(망루 전체로 화재가 번진 이후에 화학소방차 출동을 요청하여 출동한 것이 그 근거라고 할 수 있다).

④ 안전매트는 남일당 건물 북쪽(장안약국 방면)으로만 몇 개 설치하고(이조차 알아보기 어렵다) 남일당 건물의 남쪽(주차장 방면), 동쪽(한강로 반대방면) 및 서쪽(한강로 방면) 등 다른 방면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⑤ 그물망, 에어매트는 아예 설치되지도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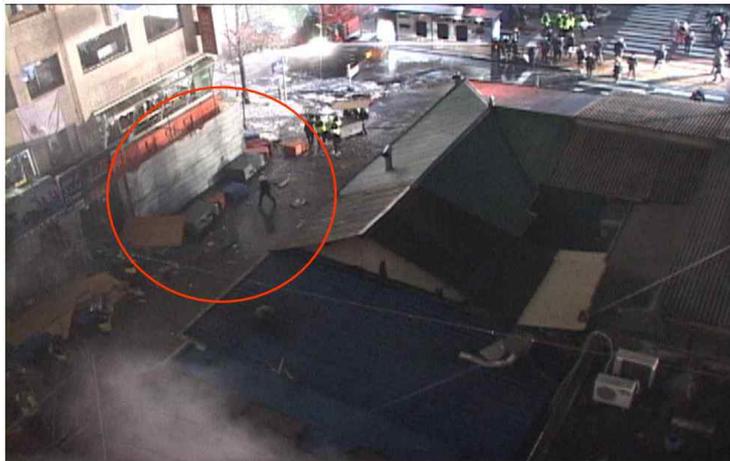
47) 이와 관련하여 경찰무전교신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인화물질 진화에 필요한 화학소방차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황해하는 기록도 나온다. 7시 20분쯤 망루에 불이 번지자 현장과 지휘본부 모두 "물포 있는 것 다 쏘"(7시22분6초) "물포를 다 쏘세요"(7시23분28초)를 다급하게 외쳤다. 그러나 불길이 진화되지 않자 7시26분 50초에 "지금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 소방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물로는 소화가 안 됩니다"라고 외쳤다. 경찰은 농성자들이 건물 안에 인화물질을 다량 비치한 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지만 인화물질 진화용 화학소방차를 준비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런 내용은 "화학소방차는 현장에서 화재 발생 뒤 자체 판단으로 오전 7시28분쯤 출동했다"는 소방당국의 발표와 일치한다.

48) 용산소방서에서 작성한 "「2009. 1. 19. ~ 1. 20.(2일간)」 용산 남일당 시위사고 관련 출동단계별 현장대응 상황"



<사진 19> 경찰특공대 진입, 건물 내 화재발생 당시, 안전매트 미설치

## 알아보기조차 힘든 '안전' 매트리스



<사진 20> 건물 밖 담벼락에 밀착 설치된 상태로, 안전매트 효용 전무.

### (5)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 진입과정에서의 안전수칙 및 고도의 주의 의무 위반

① 경찰은 '농성장 진입계획'에서부터 다량의 인화물질로 인한 대형화재 가능성에 대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진입 전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등 '농성장 진입계획'에서 세운 안전대책조차 거의 실행되지 않았다.

②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명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의 경우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을 무시하고 진입을 강행하였다.

③ 경찰청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범집행 매뉴얼'에 명시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하고 진입을 강행하였다.

④ 컨테이너로 망루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망루 안 농성자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고 위기감을 고조시켰으며, 최루액이 섞인 물대포를 사용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⑤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으로 1, 2차 두 차례 걸쳐 진입하였으며, 1차 진입시 망루 안에 세눅스, 화염병 등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및 위험원(危險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6시58분 11초와 7시 6분 57초(칼라TV상에는 7시 5분경)에 망루 안에서 상당한 정도의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위험성을 경험하였다.

⑥ 위와 같이 대형화재 발생 및 이로 인한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 위 법집행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먼저 다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을 망루 밖으로 소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고, 대형화재의 위험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망루 내 잔류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 작전을 잠정 중단한 다음, 망루 근처에 소방관을 배치하고 화학소방차를 출동하게 하여 유류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안전대책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압을 재개하여야 했다(결과 발생 회피의무 존재).

그러나 경찰은 진압작전 강행시 퇴로를 차단당한 농성자들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해 대형화재 위험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위험원에 대한 사전제거의무 및 피진압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여 아무런 안전조치도 취하지 아니 한 채 곧바로 망루 안 2차 진입을 시도하여 진압 및 검거를 강행하였고(결과 발생 회피의무 불이행), 곧이어 화재가 발생하고 대형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예견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강행한 경찰의 강경진압은 인식있는 과실로서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죄 성부

##### (1)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가) 경찰특공대가 옥상을 완전 장악한 후, 철거민들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망루 안으로 대피하였는데, 망루는 5층 옥상에 설치된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8미터의 구조물로, 1층의 출입문만 있을 뿐 다른 대피로가 없어 망루 안 철거민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고립무원의 상태였다. 게다가 농성자들이 마지막까지 몰려 있었던 망루 4층은 지상으로부터 상당한 높이(약 7~8층 높이)이고, 망루 3, 4층에 가로 60센티미터 세로 60센티미터의 창문이 여러 개 있었지만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창문을 통하여 탈출하는 것 역시 죽음을 무릅쓸 정도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상황이었다(실제로 이성수, 윤용현은 위 망루를 탈출하였음에도 사망하였다).

(나) 경찰특공대들이 1차 망루 진입시 다수의 철거민 농성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망루 안에 화염병, 세눅스, 등유, LPG 가스통 등의 발화원 및 위험원이 다량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였고<sup>49)</sup>. 또한 경찰특공대는 1차 망루 진입시 망루 안으로 대피한 농성자들로부터 화염병 등을 이용한 격렬한 저항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6시 58분 11초와 7시 6분 57초(칼라TV상에는 7시 5분경) 두 차례에 걸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sup>50)</sup> 망루 전체로 번질 수 있는 대형 화재 가능성 및 그로 인한 인명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49)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세눅스 20리터짜리 약 60여통(총 1200리터), 염산 20리터짜리 2통, 등유 20리터짜리 5통, LPG 20킬로그램짜리 5통, 화염병 400여개의 발화원 및 위험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0) 특히 7시6분 57초의 화재는 상당한 규모의 화재였음.

(다) 그럼에도 경찰은 7시 20분경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따른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인화물질 내지는 유류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로 재차 망루 안으로 진입하여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을 강행하였다.

(라) 7시18분경 경찰특공대가 2차 망루 안으로 진입하고, 곧이어 7시 20분경(경찰 무전교신에서는 7시 21분 26초 화재 발견) 화재가 발생하여 7시25분경 망루 전체로 화재가 확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망루 안에 있던 윤용현, 지식준, 이성수 등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으나, 윤용현, 이성수씨는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마) 경찰은 다량의 인화물질 존재와 1차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에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 소방관 및 화학소방차 배치 등을 통한 유류화재 예방 및 사전화재진압조치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2차 진압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는바, 예견된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없는 경찰특공대의 망루 안으로의 2차 진입 및 검거 강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危險)을 창출(創出)한 것이고, 그 위험의 창출이 6명의 인명피해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실현(實現)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발화원 및 위험원에 대한 사전제거조치의무, 소방관·화학소방차의 배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및 사전화재진압조치의무 등을 배제한 경찰의 과잉 진압과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충분히 수증된다고 할 것이다.

(바) 그리고 다수의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불이행과 그로 인한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부상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검찰 수사는 경찰의 업무상 과실 등 경찰권 행사의 위법성과 대형화재 참사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부를 밝히려는 진정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이유이다.

## (2) 경찰의 책임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성립

첫째,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경찰특공대는 매우 공격적인 진압방식을 구사하기 때문에 진압과정에서 피진압자의 대응수준을 고양시켜 이로 인한 위험의 정도를 증폭시키게 되므로 경찰특공대의 투입은 법령 요건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대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인명구호, 요인구출, 중요범죄 발생 등에 투입되는 경찰특공대를 인명에 대한 위험을 수반하지 아니 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투입하여 진압활동을 벌이게 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위법한 경찰권의 행사이다. 그런데 경찰특공대 투입이 결정된 2008. 1. 19. 철거민 농성자들이 일반 시민에 대해 테러를 가하거나 위협을 가하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경찰특공대 투입 자체가 법령 요건을 넘어서는 경찰권의 발동에 해당하는 것이다.

둘째, 경찰은 농성자들에 대한 진압 과정에서 이미 대형화재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경찰 자체 매뉴얼에서 명시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 ‘위험원과 발화원 등의 사전제거조치의

무’, ‘각종 안전대책강구의무’ 등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채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 없이 검거 위주로 공격적인 진압을 가속화함으로써 대형화재를 발생시키고 그 과정에서 6명의 고귀한 인명을 희생시켰다.

대형화재의 위험이 충분히 예견됨에도 그에 적합한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압을 중지하지 아니한 사실, 그리고 안전조치도 없이 공격적인 진압작전을 지속한 사실은 경찰이 진압과정에서 안전에 대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중과실에 해당한다.

앞서본 바와 같이 철거민 농성장에 대한 경찰특공대의 투입과 무리한 강제 진압은 경찰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즉 정당행위)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경찰이 2009. 1. 19. 상황을 현저하게 과장·왜곡하고 투입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전격적으로 투입하고 진압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되는 화재 발생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지 아니 한 채 공격적 진압방식으로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토끼몰이식 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다수의 사람이 사망과 상해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해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

### (3)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용산화재참사 당시 현장에서 진압작전을 지휘하지 않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의 경우,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린 다음, 같은 날 19:00경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차장, 경비·정보부장·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점, 또한 위 매뉴얼 제16쪽에 따르면 “여러 관할에 걸치거나 문제성, 대규모 집회는 지방청장이 현장임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 중요 작전시 지휘라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에 수시로 무전 등으로 현장상황이 보고되는 것이 상례인 점 등 비추어 보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참사 현장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무전 등을 통하여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관련 보도에 의하면 이송범 경비부장이 무선 상황을 총괄하였으므로 직근상급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크다.

또한 2009. 2. 4.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석기 청장이 집무실에서 무전기를 소지한 채 그 무전기를 통하여 진압과정을 청취했을 개연성도 크다),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개연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점은 용산 참사 바로 직전에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총수에 오른 정황 및 어청수 경찰청장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에 대하여 철저히 소외된 점을 고려하면, 진압작전의 최종승인권자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진압현장에 있는 자와 동일하게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

설령 김석기 청장 등이 현장 진압 상황을 수시로 보고받고 그에 대해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sup>51)</sup>;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sup>52)</sup>;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sup>53)</sup>; 대법원

51) 형법 제30조에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 의 " 죄" 라 함은 고의범이고 과실범이고를 불문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두 사람 이상이 어떠한 과실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하에 이룩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 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된다고 볼 것이므로(대법원 1962.3.29. 선고 4294형상598 판결) 원

1996. 8. 23. 96도1231 판결<sup>54)</sup> 등 다수 판결 참조), 위 김석기는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이고, 위 이송범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직속으로 경비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모두 결재선상에 있는 자들이다. 또한 김석기 청장 등이 위와 같은 진압계획에 대하여 결제를 한 것은 그 진압계획상에 적시된 안전대책이 철저히 실행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석기 청장 등은 그와 같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실행되지 않았으면 이의 시행을 지시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김석기 청장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재권자로서 그 진압작전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안전한 진압을 위한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는 것을 감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무전기를 끈 상태에서 집무실에서 근무하였다는 자신의 해명을 그대로 수용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근무태도는 오히려 안전한 진압작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이므로, 김석기 청장의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점은 판례의 태도를 따르더라도 명확하게 수긍된다고 할 것이다. 즉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자를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 함으로써 그 발파작업 중 그 책임자의 과실로 인하여 사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 사상과 그 선임자의 과실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례<sup>55)</sup>(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58

---

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에 기초하여 피고인을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정범이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가 있다거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52) 공동정범은 고의범이나 과실범을 불문하고 의사의 연락이 있는 경우이면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정기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부기관사이기는 하나 사고열차의 퇴행에 관하여 서로 상론, 동의한 이상 퇴행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책임을 면할 수 없다.

53) 터널굴착공사를 도급받은 건설회사의 현장소장과 위 공사를 발주한 한국전력공사의 지소장에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사례로, 한국전력공사 지소장의 책임 인정 부분은 아래와 같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고인 3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업무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한국전력공사 지중선사업처 지소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구간이 낙동강변이고 제방 안쪽에서 제방 밖으로 이어지는 지점이어서 지중구조가 갑자기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인데다가 중요시설물인 경부선 철도 밀을 굴착하게 되어 있었고 1992.8.월의 세창지질의 지질조사시 철로 밀부분에 대하여는 당초의 예정과는 달리 수평오링을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 2(위 현장소장을 말함)에게 실무자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시공변경절차에 따른 것을 조건으로 지중선사업처로부터 하달된 설계변경안과는 달리 우측으로 선형변경할 것을 승인하였으므로 위 조건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의 진행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철로 밀부분에 이르게 되면 막장 전방에 대하여 수평오링을 실시하여 안전상태를 확인하거나 철도청측과 협의하여 기차의 운행시간에 맞추어 발파시기를 조정하고 또는 피고인 2에게 이에 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탓으로 피고인 2, 공동피고인 1등으로 하여금 위 우측선형변경으로 공사거리가 짧아졌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중전의 설계에 따라 막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아직 철로와는 30미터 이상의 거리가 남아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그대로 공사를 진행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원심의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54) 건물(삼풍백화점) 붕괴의 원인이 건축계획의 수립, 건축설계, 건축공사공정, 건물 완공 후의 유지관리 등에 있어서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데에 있다고 보아 각 단계별 관련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단한 사례.

55)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원판결의 실시 이유에 의하면, 원심법원은 적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굴질공사를, 도급받은 대흥기업사 도계출장소 소장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출장소의 제반업무를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는데, 평소에 화약류에 의한 발파작업을 시키는데 있어서는, 법령에 의한 화약류 취급책임자 면허를 받은 숙달된 기술자를 선임하여, 발파작업을 하게 하므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이 면허가 없고 화약취급에 능숙하지 못한 공소의 1을, 위 출장소의 화약취급 책임자로 선임하여, 발파작업에 종사케하므로서, 동 공소의 1이 1965.5.14. 14:00경에 위 도계광업소 개발항 점

판결), 즉 선임감독상의 과실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법적 책임을 묻는 판례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다), 위와 같은 진압현장에 있지 않았던 김석기 청장도 안전한 진압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이는 위와 같은 인명 피해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진압 현장에 있었는지를 불문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이 있다.

#### 마. 소결 -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본질

경찰의 전례가 없는 신속한 진압은 시공사들의 재개발공사 착공시점이 이미 2008. 10.로 예정되어 있었다는 점과 무관한 것이었을까?

용산철거민 사망사건의 본질은 경찰이 ① 재개발을 둘러싼 이해당사자간(재개발조합, 시공사 및 철거업체 대 상가세입자)의 민사분쟁에, ② 철저히 용산 4구역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재개발조합, 시공사인 건설재벌들 그리고 철거용역업체들의 편에 서서<sup>56)</sup> ③ 세입자철거민들의 남일당 빌딩 점거농성을 하루 종일 화염병이 난무하고 일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적 공격이 가해지는 도심테러에 준하는 위험사태로 상황을 왜곡하여 충분한 대화와 설득 과정 없이 농성개시 25시간 만에 대테러진압을 주된 임무로 하는 경찰특공대를 조기에 투입하고, ④ 대량의 세눅스, 화염병 등 인화물질의 존재에 대한 인지 및 진압과정에서의 격렬한 저항으로 대형화재의 위험을 충분히 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압과정에서의 안전의무를 위반하여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검거 위주의 무리한 진압을 강행함으로써 발생한 대형참사이다.

이는 마치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우회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아니한 업무상 중과실(인식 있는 과실)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라고 할 것이다.

## 6. 발화점과 관련된 화재의 원인

리 제1구 7 수평향 현장에서, 발파 천공작업을 함에 있어서, 전에 사용한 잔류화약의 유무를 확인하고 작업을 시작하여야 할터인데, 위 제7수평향 3승막장에 잔류화약이 있고 없음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부 공소의 2, 공소의 3등에게 천공작업을 시킨 결과, 착암기의 끝이 잔류화약에 충격을 주어 폭발하는 바람에, 공소의 2는 두개골 파열로 현장에서 즉사하고, 공소의 3은 양안 각막결막이 물상으로 전치 6개월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확정하고, 피고인이 공소의 1을 화약류 취급책임자로 선임한 것이 업무상의 과실이고, 그 과실로 인하여 공소의 2가 사망하고, 공소의 3이 부상한 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취지임을 알수 있는 바, 피고인이 소속하고 있는 대흥기업사가, 채탄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대한석탄공사의 감독을 받으며, 피고인이 공소의 1을 화약류취급책임자로 선임하는데 있어서, 대한 석탄공사가 공소의 1의 화약류 취급기량을 시험해 보고, 화약류 취급책임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를 선임하였다고 하더라도, 화약류 취급책임자의 면허시험은 총포화약류단속법 시행령 9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가 하는 것이고 대한석탄공사는 그와 같은 면허 시험을 시행할 근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대한 석탄공사의 말을 믿고 공소의 1을 화약류 취급 책임자로 선임하였다고 하여서, 과실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며, 화약류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법령소정의 면허를 받지 못한 사람이 화약류를 취급할 때에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살상할지 모른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상식에 속한다고 할 것이니, 본건 사상과 피고인의 과실과의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고,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56) 용역들의 세입자들에 대한 횡포에 대한 묵인과 방치, 진압과정에서 드러난 경찰과 용역들의 협조관계와 합동 작전은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관계에서 경찰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었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검찰은 발화점과 관련된 화재의 원인을, 아래와 같이 최종 결론 내렸다.

-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망루를 해체하는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 쏟아부은 후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망루에 진입한 특공대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아래로 투척, 망루 내부 3층 계단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됨
- 화염병이 터져 발화한 불꽃이 계단과 벽면에 묻어 있던 다량의 시너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뚝이 1층으로 흘러내려 바닥 등에 있던 시너에 번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 결국 본건 화재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고 그로 인해 망루가 전소된 것임

가. 망루에서 시너를 뿌린 사실이 불명확함.

- 검찰은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리는 장면이라는 동영상을 제시했으나, 그 액체가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다.
- 농성자들은 망루 안에 세녹스를 뿌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랫면에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서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 결정적으로 검찰은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지 못했다.

나 설령 그 액체가 유류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이 발화원이 될 수는 없음.

다.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

- 망루 농성자들은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 원인불명의 가스에 의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천주석, 김성천 등 진술) 이때 발생한 가스는 경찰의 어떤 진압 장비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 이 가스가 발화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루 농성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인명을 잃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결국 가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농성자들이 마지막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는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다.

라. 경찰특공대 진압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

- 화재 직전, 경찰특공대가 장악한 망루 3단에서 고성능 랜턴 또는 어떤 특정한 경찰장비가 사용되었음.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경찰장비의 정확한 출납기록이 공개되고 이것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한다.
- 경찰은 19일과 20일 당일 서울경찰청 소속의 모든 경찰진압장비 출납기록 원본을 공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의혹을 해소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등 국회의원들의 자료 요청에 대해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마. 발화점과 관련한 검찰발표의 의혹

- 검찰에서 배포한 동영상 중 신용산 빌딩에서 촬영한 2차 화재 장면을 보면, 7시 20분 17초에 4층에서 불꽃이 보인 후 20초에 3층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고, 곧이어 망루 내외부에 화재가 발생하는 장면이 나온다.
- 검찰은 이에 대해 4층에서 보인 불꽃이 화염병 불꽃이며, 농성자들이 3층으로 던져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4층의 불꽃과 3층 불빛 사이에 직접적 연관성은 영상에서 나타나지 않으며, 3,4층의 불꽃이 화염병 불꽃이라는 것도 추정일 뿐 명확히 영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다.
- 더군다나 3층으로 화염병이 던져지거나 떨어지는 장면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3층 창문을 통해 계단 부근에 보인 불꽃은 수직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나타나는 듯이 보인다. 따라서 화염병을 아래로 던졌다는 검찰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불과하다.
- 검찰이 유일한 발화점의 진술로 제출한 김00의 진술과 관련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검찰 발표 내용

《피의자 김00 진술》

-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 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 발화지점을 특정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음
- ※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었음

그러나 피의자 김00의 검찰조사에 입회한 변호인에 의하면, <피의자 김00>는 검찰 진술시 발화점이라는 용어를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어 “불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 불을 보았던 곳”이라고 정정 진술하고 이를 조서에도 기록했다고 한다. 결국 검찰은 정정하기 전의 사실을 확인된 사실인양 발표함으로써, 검찰조사의 신빙성이 없음을 인정한 꼴이다.

가. 4층 창문으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20:17 - 프레임 #1



7:20:17 - 프레임 #2

나. 3층 창문에서 불꽃이 보이는 장면



7:20:20 - 프레임 #1



7:20:20 - 프레임 #2

## 7. 윤용현, 이성수 사망 경위 의혹

망루에서 탈출한 지식준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윤용현, 이성수가 본인과 함께 탈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2차 화재 이후 남일당 빌딩 남쪽 (주차장 방면)에서 빈곤사회연대 활동가가 촬영한 사진들과 MBC가 촬영한 동영상에 있다. 이 사진들과 영상으로 망루에서 탈출한 사람들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과 영상에서 이성수로 추정되는 이에 대해 현재 생존자(김대원, 김주환, 김재호, 지식준, 김성환, 김창수, 김영근, 천주석, 이충연) 중에는 아무도 그것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다. 실제로 천주석을 제외한 이들이 진술한 이동 경로는 영상에 나타난 인물의 이동 경로와 확연히 다르다. 그나마 비슷한 천주석의 경우, 영상 속의 인물과 다른 복장을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유족들은 MBC가 촬영한 영상의 원본으로 좀 더 선명한 화면으로 확인한 한 뒤, 문제의 인물이 이성수가 맞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성수의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실제로 베란다에서 있다가 창문을 넘어 들어가서 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 망루의 동쪽 면이 무너지고 찌그러들며 틈새가 벌어졌고, 이성수의 시신은 그 찌그러진 면 위에서 발견되었다. 이 위치는 망루 내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위치이며, 오히려 망루 외부에서 발견되었다고 볼 수도 있는 위치이다. 따라서 영상에서 이성수로 추정되는 인물이 실제로 이성수일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이성수의 시신이 처음 발견되었을 당시 장면을 촬영한 국과수의 사진을 통해 의혹을 좀 더 분명히 밝힐 수 있다.

※ 부록 [지식준, 이성수 등 주차장 쪽 탈출자 상황] 참조

## 8. 철거용역업체의 불법행위

용역업체는 용산4지구의 1월 19일 점거농성전부터 용산4지구 철거민들에 대한 폭력을 계속해왔다. 단 순협박에서 폭행까지 다양한 폭력을 행사했으며, 철거민들의 남일당건물 점거이후 건물3층에서 페타이어를 태워 농성자 들에게 연기를 올려 보내고 방화를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의 비호아래 남일당의 망루에 대한 지속적인 물대포를 쏘는 불법 행동을 했다.

또한 20일, 경찰의 특공대투입시기에 함께 투입되어 경찰대신 망루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기도 했다. 이것은 경찰의 1월 20일 6시 29분 42초 무전내용 “ 용역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서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해체할 진중입니다”라는 말을 통해 용역과 경찰이 합동 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용산4지구에서 철거를 진행해 온 철거업체는 경비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체이다.

1. 19일의 폭력 및 19일 오후 남일당 건물 3층에서 쇠파이프로 무장하고 대기 중인 용역업체직원들
2. 경찰과의 합동작전



경찰과 함께 물대포를 쏘고, POLICIA라고 쓰여진 사제방패를 이용하여 경찰과 합동작전 수행

## 9.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발화원인을 철거민의 화염병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수사

검찰은 철거민들을 구속하는 2009.1.22.경부터 용산참사의 화재가 철거민의 “화염병” 때문이라고 잠정 결론 내리고 수사하였다. 검찰의 잠정결론은 가해자일 수 있는 특공대원 김양신의 진술에 의존한 것이다.<sup>57)</sup> 연행된 일부 철거민들이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진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은 하였으나, 이번 용산참사의 대형화재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들이었다. 즉, 컨테이너를 통한 경찰특공대원의 망루 투입 직전 망루 밖으로 화염병을 던진 것에 대하여 일부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후 컨테이너 안에 있는 특공대원이 근접거리에서 망루 4층 안으로 살수를 계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망루 쪽으로 경찰의 살수가 20여분 동안 집중되면서 철거민들이 망루 밖으로도 화염병을 던지는 모습이 목격 되지 않는다.

(1) 경찰무선교신내용<sup>58)</sup>

6시 42분 12초

[현장] 현원도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옥상쪽으로 매동하고 있습니다.

6시 43분 12초

57) 연합뉴스 2009. 1. 22. 자, 검찰, “화염병이 발화원인, 고의성은 없어” “경찰에 법적 책임 묻긴 어려워”

58) 출처 : ["물로는 소화가 안됩니다! 소방지원을 해야 합니다!" - 오마이뉴스](#)

[지휘본부] 컨테이너에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컨테이너에서

...

6시 46분 30초

[지휘본부] 물포들은,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 투척중입니다. 망루에 집중하세요. 망루 이외의 지역은 특공대들이 있으니까 쏘지 말고 망루를 향해 쏘도록.

한편, 검찰은 발화지점에 대하여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철거민이 던진 화염병이 망루 안 3,4층 계단에서 발화하였다고 결론을 내렸다.<sup>59)</sup> 그러나 검찰의 결론은 특공대원 김양신 경사 및 용산경찰서장의 최초 공식브리핑과 모순된다.

## (2) 특공대원 김양신 경사의 진술

"화염병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불길의 확 치솟았어요. 순식간에 번지더군요" '용산참사' 현장에 직접 투입됐다가 부상으로 입원중인 경찰특공대원 김양신(31) 경사는 21일 "발화되는 순간을 직접 봤다. 망루 3층에서 **2층으로 던져진 화염병 2개**가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어 크게 번진 것"이라고 증언<sup>60)</sup>

## (3) 용산경찰서장의 2009. 1. 20. 최초 공식브리핑

"07시26분경 특공대원들이 망루 내 1단 진입하자 3단에 있던 농성자들이 특공대원들이 있던 **1단으로**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 발생, 특공대원 6명이 화상을 입고 철수하고 철수 즉시 살수차 및 소방차 이용, 즉시 진화조치(08시00분경 완전 진화) 후 망루 수색과정에서 사망자 5명을 발견"했다<sup>61)</sup>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순되는 특공대원 김양신의 진술을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다<sup>62)</sup>

또한 검찰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화재의 원인으로 1. 20. 07:15경(화재발생 약 5분전) 농성자중 일부가 망루 전면기준 좌측 4층 창문으로 붉은색 통에 든 액체를 3-4초가량 밖으로 뿌린 다음 통을 옥상바닥에 버리는 장면 촬영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sup>63)</sup>

59)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17쪽 참조

60) 연합뉴스 2009. 1. 22. 자, "화염병 때문에 발화"..특공대원 증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65722>

61) 조선일보 2009. 1. 20. 자, 경찰 "농성자, 진입 특공대원에 시너·화염병 던져 화재 발생" 공식 브리핑 전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0/2009012000816.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0/2009012000816.html)

62)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10쪽 참조

63)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12쪽 참조



《동영상화면 1 (1. 20. 7시 15분경 사자후 TV 촬영)》

그러나 이것은 용산참사가 된 대형화재 발생 시점과 시간 차이가 있고, 그 이후 망루 쪽으로 특공대의 물대포가 상당시간 동안 집중 분사된다.(관련 동영상 참조!) 오히려, 경찰은 소방지식이 없는 경찰의 살수로 인하여 유류를 번지게 하고 화재를 번지게 한 과실이 있다.

나. 경찰에 대해서는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수사

검찰은 2009. 1. 22.경 연행된 철거민들 6명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를 하면서, 철거민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의 혐의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란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한다. 용산4구역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의 범죄행위, 이들의 범죄행위를 방조하고 묵인하고 심지어 이들과 합동작전을 펼친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였는지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전에, 검찰은 경찰의 공무집행이 적법하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철거민들에게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를 인정하였다.

한편, 검찰에서는 경찰의 진압장비 및 그 사용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검찰은 경찰이 최루가스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구속된 김OO은 검찰 수사에서도 얼굴에 최루가스를 직접 맞아, 망루에서 탈출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고 이성수씨의 사인에 대한 진상규명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번 용산참사의 사망자들이 모두 망루 안에서 화재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현재 망루는 화재로 전소해서 모두 무너져 내려 층수 구별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민 사망자들이 모두 망루 4층 안에서 사망했다는 검찰의 결론은 추정일 뿐이다. 고 이성수씨의 사체만 다른 사망자들의 위치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용산경찰서의 첫 공식브리핑에서도 사망자를 5명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다.

한 방송국 보도 영상에 의하면, 고 이성수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화재가 난 후 망루 밖으로 탈출하여 건물에서 추락한 지OO씨 옆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검찰은 그 인물이 누구인지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구속자 포함하여 망루에서 탈출한 생존자 중 아무도 그 인물이 본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고 이성수씨의 사인에 대하여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

라. 검찰의 부검지휘의 문제점

검찰은 이번 용산참사에서 이례적으로 유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사고 당일 성급하게 사망자들의 부검

을 실시하도록 지휘하였다. 과연 긴급을 요하는 부검이었는가. 오히려 화재 사건의 부검은 화재 사고의 정황과 남은 증거를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사고정황에 대한 아무런 규명 없이 부검을 한 것은 비과학적이다.<sup>64)</sup>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체의 부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반적으로 검사는 유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은 후 부검에 착수한다. 형사소송법 제141조 ④항에도 “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유족들에게 시신 부검에 대해 알리지도 않고 동의도 받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부검을 시행하였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부검을 시행하는 과정도 매우 이례적이었다. 부검 감정서를 보면 사건 당일에 5구의 시신에 대해 5인의 부검의가 거의 동시에 부검을 실시한 것으로 나온다. 이 역시 매우 이례적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건 이후 시신을 수습하고 하루 정도가 경과한 이후 부검은 진행된다. 5구의 시신에 대해 5인의 부검의가 동시에 부검을 실시하는 것 역시 일상적이지 않다. 이 모든 과정은 검찰이 ‘작전을 치르듯이’ 부검을 속전속결로 끝내려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검사가 부검지휘할 때는 관행적으로 “사체 부검하여 사인 규명한 후 사체는 유족에게 인도”라고 지휘하고 있다. 그래서 부검이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유족에게 사체가 인도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용산참사 사건에서는 부검이 끝난 후에도 한참동안 유족들에게 사체가 인도되지 않았다. 경찰에서는 검찰의 지휘가 없기 때문에 사체를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왜 이와 같이 비윤리적이고 무례한 방식으로 부검을 재빨리 해치우려 했는가? 이에 대해 검찰은 대답해야 한다.

마. 발화지점이 망루 3,4층 계단이라는 결론의 근거로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 발표

검찰은 2009. 2. 9.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피의자 김OO이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 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발화지점을 특정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65)</sup>

그러나 이는 피의자 김OO의 진술을 왜곡한 것이다. 검찰이 피의자의 진술을 왜곡 발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병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차장검사는 언론에 “김씨가 조사받을 때 변호인의 거듭된 확인을 통해 발화점이라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며 “망루 도면을 보고 3층 계단의 약간 옆에 연필로 칠을 하고 ‘발화점’이라는 글을 직접 썼다”고 설명하고, 김씨가 연필로 불이 시작된 지점이라며 칠을 한 뒤 ‘이 부근에서 불이 올라오고 나서 큰불이 나 망루에서 탈출했다’고 진술했다고 해명하였다.<sup>66)</sup> 그러나 피의자 진의가 기재된 2009. 1. 24.자 피의자신문조서와 2009. 2. 6.자 영상녹화자료가 있는 상황에서도 검찰이 언론에 피의자 진의를 왜곡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009. 2. 6. 오후 4시경 조호경 검사(황윤성 수사관 참여)가 피의자 김OO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하면서 영상녹화를 하였다. 당시 피의자 김OO의 입에서 ‘발화’라는 용어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64)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무너진 망루-용산참사를 말한다’ 중 우석균 검안의 진술 참조

65)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12쪽 참조

66) 연합뉴스 2009. 2. 15.자, 檢 “'용산참사' 발화점 3층 계단 확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03453>

조호경 검사가 3층 발화지점을 보았는지 계속하여 유도질문을 하여 당시 입회하고 있던 변호인이 “발화지점”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불이 시작된 곳을 의미하는지, 불이 보인 곳을 의미하는지’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발화지점에 대한 오해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으로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구정연휴 전날인 2009. 1. 24. 11:00경 조호경 검사(황윤성 수사관 조사)실에서 피의자 김OO에 대한 피의자신문을 할 때, 수사관이 화재가 나는 상황을 그려보라고 하여, 김OO이 3층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 망루 창문으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도면에 '3층 발화점'이라고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당시 변호인은 피의자가 작성한 '발화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재확인하였다. 그동안 특공대원이나 연행된 철거민 중에서 아무도 3층 발화점에 대한 진술을 한 바가 없어, 김OO이 발화점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김OO은 불이 시작된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불빛이 보인 곳이라는 의미로 사용했다고 진술하였으며, 1,2층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1,2층에서 불이 났는지 아닌지, 불이 시작한 곳은 모른다는 의미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김OO이 탈출한 경로가 포함된 구체적인 도면을 다시 그려서 검찰에 제출하여 도면이 2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수사초기부터 용역의 폭력과 경찰과의 합동 진압작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러한 의혹을 묵살해오다 언론의 공개에 밀려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도 최소한으로 책임을 물었으며 경찰과의 합동작전에도 용역의 불법만을 인정하고 경찰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1) 사람이 건물의 윗층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질식시킬 목적으로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 올렸다.

- 현존건조물방화죄, 폭행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2)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3)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와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했다.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법위반죄 성립

(4)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되었다면 경비업법위반죄, 그리고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

(5)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함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
- 이와 관련한 검찰발표와 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

검찰발표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	-------------

<p>"폴리시아 방패를 들고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는 3명을 불러 조사한 결과 이들은 용역직원이 아니라 영세노점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므로 확인됐다"</p>	<p>영세노점상대책위원회는 이미 보상비를 받고 영업을 중단한 서서갈비, 이수카센타, 대패삼겹살, 풍산체육관을 운영하던 세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p> <p>영세노점상대책위원회는 용산4지구 철대위가 구성되고 집회를 시작한 08년 8월 갑자기 결성되어 용산4지구철대위의 집회 등에 찾아와 방해방송을 트는 등 집회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였다.</p>
<p>"20일 경찰의 진압작전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 6시~6시10분경, 화염병 벽돌 날아다녀 용역업체에서 방패를 빌려 화장실에 다녀온 것"</p> <p>"화면에 나온 특공대원은 건물 진입조가 아니라 건물에 매달려있다 떨어지는 농성자가 있는지 파악하는 확인조로, 방패를 들고 가는 노점상대책위 3명이 건물에 들어가는 시점과 차이가 있어 합동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p>	<p>PD수첩의 영상에는 경찰과 용역이 시차없이 거의 동시에 건물로 진입하고 있다.</p> <p>경찰의 1월 20일 6시 29분무전내용에서 " 용역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서 3층에서 4층 시정장치 해체할 진중입니다"라는 말을 통해 용역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수행했음을 알 수있다.</p>

(6) 용역업체와 관련 수사 전개에 따라 달라진 검찰 입장

1월 20일 사건 발생

검찰 "철저한 진상규명 뒤 책임소재 수사 방침"  
유족,시민단체 "경찰, 용역업체 불법 묵인, 합동작전까지 펼쳐"

1월 21일

김석기청장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해 보고만 받았다' ⇨ 본인의 사인인 담긴 진입계획서 확인후 최종승인을 시인  
백동산 사장 '사고 당시 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은 없다.' ⇨ '방송뉴스화면 공개'로 거짓말로 판명

1월 23일

경찰 '용역업체는 작전 개시 전에 건물에서 모두 빠져나갔다.'  
민주당 김유정, 강기정 의원 용역업체 동원 경찰 교신내용 공개

1월 25일

검찰, 용역업체 사무실 압수수색

1월 26일

검찰 "용역업체 직원 건물 안에 있었다라도 죄 안된다."

1월 28일

검찰 " 용역업체 직원의 불법행위 및 협박 관련 진술 없다."

2월 1일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경찰진압작전 직접 지휘여부' 논란

검찰 '김석기 청장에게 농성 시작과 끝에만 휴대전화 보고'

2월 2일

검찰 '용역업체 직원 폭력 정황 없다. 페타이어 태웠다는 진술있지만 업체는부인'

2월 3일

피디수첩 용역업체 직원 물포 방사하거나 불피우는 동영상 공개

김원준 서울청 경비1과장 '물포를 쏜 것은 경찰관이다'

2월 4일

검찰 '용역업체 직원 불법행위 확인하겠다.'

김원준 서울청 경비1과장 '현장에서 용역직원이 경찰장비인 물대포가 아니라 소방호스로 물을 뿌린것'

정병두 수사본부장 "페타이어로 불 지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드럼통에 넣어서 피우니까 치우면 없어진다."

2월 5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검찰, 용역업체 불법행위 채증 사진 이미 확보하고도 목살'

검찰(정병두 수사본부장) '용역업체 직원 5명 건물안에서 불피운 사실 확인 ...처벌가능성 검토'

서울중앙지검 정병두수사본부장 '소방대원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하는 작업을 마친 뒤 용역업체 직원이 분사하는 작업을 처음부터 수행

사. 현행법체포부터 구속기간 동안 반인권적 수사

검찰은 철거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 무감각했다. 이충연씨의 경우, 우측 무릎의 손상으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식적인 소환절차도 없이 무리하게 구속 수사를 감행했다.

용산참사로 연행된 피의자들은 화재참사의 생존자들이었다. 그러나 검찰은 현행법체포 48시간동안 밤 12시가 넘도록 강도 높은 반인권적 수사를 하였으며, 구속된 5명의 연행자에 대하여 구정 연휴 동안에도 한꺼번에 검찰청에 소환하여 장시간 대기시켜 놓고 있었다. 구속된 김OO의 경우에도 조사가 없었던 구정 전날인 2009. 1. 25.경 5명이 한꺼번에 검찰청에 소환당하여 각각 좁은 대기실에서 장시

간 대기하다가 조사 없이 돌아간 사실이 있으며, 이는 가족들의 면회권 및 변호인 접견권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는 생존자인 철거민들의 정신 건강에 적지 않은 위해를 가하는 것이다. 피의자들은 사건 직후 검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도록 강제되었다. 이번 사건과 같이 큰 화재, 특히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고는 그 사건을 경험했던 이들에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주어 정신적 외상을 남길 가능성이 많다. 특히 이러한 외상은 초기에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같은 심각한 정신 장애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검찰은 사건 발생과 동시에 무리한 수사 일정을 강행하여 피의자들이 반복적으로 그 사건을 경험하도록 강제했다. 이는 당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정신적 위해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들의 건강과 인권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비윤리적이며 반인권적인 수사다.

#### 아. 변호인 접견권 침해

검찰은 2009. 2. 9.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농성자 조사시 변호인을 26회 참여하게 하였다고 발표하였다.<sup>67)</sup>

그러나 이번 용산참사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변호인 접견 및 변호인 참여는 일선 경찰서보다도 비협조적이었고 시스템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변호인 접견실이 없다고 하여, 변호인 접견할 때 검사 집무실이나 민원 대기실을 이용하여야 하였다.

또한 2009. 2. 20. 14:30경, 변호인이 마포경찰서에서 연행되었던 9명의 접견한지 15분도 지나지 않아서 마포경찰서 형사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변호인 접견을 중단시켰다. 같은 날 16:00경 변호인이 조호경 검사실에 마포경찰서에 연행되었던 9명의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선임제와 변호인접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조호경 검사실의 최성현 수사관이 9명의 연행자명단과 인계검사실의 호실을 알려주었는데, 1명을 제외하고 8명의 검사실 호실이 없거나 틀린 호실로 알려 주었다.<sup>68)</sup> 변호인이 그 넓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사를 헤매다가 조호경 검사실에 가서 항의하였더니 1시간 후 쯤, 인계검사실이 수정된 명단을 주어서 같은 날 18:00경 이후부터 변호인 접견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수사 첫 날 당일, 구속된 김OO(용산주민)은 영상녹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인 접견을 거부하였고, 그 다음 날 망루 예행연습과 관련된 김OO의 진술로 다른 피의자들을 추궁하고 있었다.

법원행정처 발간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해설>에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제1항(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의 신청에 따라 변호인을 피의자와 접견하게 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이 수사기관은 피의자에 대한 조사 전후는 물론, 조사 중이라도 피의자에 대한 신문을 이유로 변호인의 접견 신청을 거부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다. 또한 피의자에 대한 신문 중에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변호인이 조언과 상담을 하는 것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내용으로서 당연히 허용되는 것이므로, 개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헌재 2004. 9. 23. 2000헌마138 결정 참조)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 첫 날 2009. 1. 20.경 현재 구속 상태에 있는 김OO에 대하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변호

67)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3쪽 참조

68) 검찰에서 제공한 검사실 호실에 대한 문서, PDF파일로 있음

인 접견을 거부한 것은 변호인 접견권을 침해한 것이다.

#### 자. 변호인 참여권 방해

이번 용산참사 사건 현장 팀의 주임검사였던 조호경 검사(최성현 수사관 참여)가 2009. 1. 24. 17:00경 부터(영상녹화됨) 현재 구속된 김O호의 조사 참여 과정에서 최수사관은 당시 임회하고 있던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와 관련하여 ‘월권이다’, 신문 전 후 ‘진실을 은폐하는 변호사’, ‘변호사님 방해만 없었으면 오늘 자백 받을 수 있었다’라고 운운하여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이를 항의하는 변호인 의견을 기재한 바 있다. 또한 당일 변호인이 구속된 김O호의 조사에 참여하겠다고 조호경 검사실에 알린 상태였으나 오후 늦게부터 조사를 한다고 하여 변호인 접견을 위해 조사예정 시간보다 1시간 이른 15:20경 조호경 검사실에 도착하였는데, 김O호에 대한 조사가 김형욱 검사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번 용산참사 사건 수사본부는 여러 검사가 수사하고 있다는 이유로 철거민들의 변호인들에게 조사 기일을 알려주는 것에 매우 비협조적이었고, 변호인들이 여러 검사실에 일일이 전화하여 조사 예정을 확인하여야 하였다.

#### 차.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표적수사 vs 철거현장의 폭력에 대해서는 눈감기

검찰은 2009. 1. 20.경 이번 용산참사를 이례적으로 직접 수사하겠다고면서 “우선 사망 및 화재 원인 규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경찰의 과잉진압 및 지휘보고 체계 가동 여부,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등 외부세력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 역시 불가피하다”하다고 발표하였다.<sup>69)</sup> 검찰은 구속된 철거민의 동의를 얻어 계좌추적도 하였지만, 전국철거민연합의 조직적 개입의 혐의는 나오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국철거민연합에 대한 수사를 공안부에 배당하고 이번 용산참사 이외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sup>70)</sup> 이는 명백한 표적수사이다.

그러나 검찰은 용산4구역의 철거업체 호O건설과 현O건설, 정비대행업체 파OOOO가 조직폭력집단과 연루되었다는 의혹<sup>71)</sup>에 대해서는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다. 이번 용산참사의 비극은 철거현장의 더 큰 폭력 때문이다. 용산참사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철거현장의 폭력, 행정당국 및 경찰과의 유착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공익의 대변자’인 대한민국 검찰이 할 일은 재개발 과정에서 최대의 피해자인 철거민들의 연합조직을 수사하는 것 보다 조직폭력 범죄 집단과 연루된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의 철거현장에서의 철거민들에 대한 폭력, 협박, 업무방해, 주거침입, 방화 등 범죄행위와 재개발 과정에서의 시공사, 행정당국, 경찰당국의 유착 여부 등을 수사하여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발본색원하는 것이다.

69) 국민일보 2009. 1. 20.자

70) 연합뉴스 2009. 2. 10.자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493892>

71) 시사인, 호림건설이 전남 목포의 폭력조직 사파와 깊은 관련

<http://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755>

한겨레 2009. 2. 16. 자, 용산4구역 정비용역업체 105억 챙겼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982.html](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8982.html)

카. 정병두 수사본부장의 중간 수사결과 발표의 문제점

###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

검찰은 이번 용산참사를 수사하기 시작한 2009. 1. 21.경부터 매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중간 수사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철거민들과 변호인들이 화재원인에 대하여 강력히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화재감식결과도 없고 객관적인 증거 없이 언론에 철거민들의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발표하였다. 이는 헌법의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고 형법 제126조에 의하여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대법원은 “일반 국민들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제반 범죄에 관한 알권리를 가지고 있고 수사기관이 피의사실에 관하여 발표를 하는 것은 국민들의 이러한 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라 할 것이나, 한편 헌법 제27조 제4항은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형법 제126조는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지득한 피의사실을 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198조는 검사, 사법경찰관리 기타 직무상 수사에 관계 있는 자는 비밀을 엄수하며 피의자 또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그 내용이 진실이라는 강한 신뢰를 부여함은 물론 그로 인하여 피의자나 피해자 나아가 그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치명적인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사기관의 발표는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들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한정되어야 하고, 이를 발표함에 있어서도 정당한 목적 하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공식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나 추측 또는 예단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을 피하는 등 그 내용이나 표현 방법에 대하여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되므로, 수사기관의 피의사실 공표행위가 위법성을 조각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표 목적의 공익성과 공표 내용의 공공성, 공표의 필요성, 공표된 피의사실의 객관성 및 정확성, 공표의 절차와 형식, 그 표현 방법, 피의사실의 공표로 인하여 생기는 피침해이익의 성질,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10215,10222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타.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국정조사의 필요성

검찰은 경찰의 면책과 관련하여 미국의 1993년 Waco(웨이코) 사건을 제시하였다.<sup>72)</sup>

그런데 미국은 1993년에 발생한 Waco(웨이코)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1999년 4월 19일 미국 법무부장관이 전 상원의원인 John C. Danforth를 4월 19일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로 임명하고, 조사는 완료까지 1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특별검사팀은 1,001명의 목격자를 면담하였고, 230만 페이지에 달하는 서류를 검토하고, 수천 파운드(pound)에 달하는 물적 증거들을 조사하였다. 특별검사의 최종보고서는 2000년 11월 8일 나왔다.

72) 검찰 수사 결과 발표문(2009. 2. 9.자) 23쪽 참조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적 판단으로 철거민들을 구속하는 자충수를 두어, 구속기간 20일에 허덕이며, 구속기간 만기일인 2009. 2. 8. 밤(검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전날 밤)에 구속된 철거민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기소하였다. 결과적으로 검찰은 진상규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부실수사, 편파수사, 뒷북수사라는 의혹을 자초하게 되었다.

#### 파. 결론

결과적으로 검찰은 이번 용산참사의 화재원인 및 발화원인에 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을 하는데 실패하였다. 또한,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여 왔다. 이는 검찰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정치적 판단으로 처음부터 철거민의 화염병 때문에 화재가 난 것으로 잠정결론을 내리고 구속 수사하는 등 편파적인 수사를 하였기 때문이다. 망루 안 화재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경찰특공대원들의 무리한 망루 해체 작업, 컨테이너를 이용한 망루 해체 작업의 위험성, 그 과정에서 망루 안에 있던 인화성 물질들이 쏟아졌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수 있었으나, 검찰은 경찰의 과실부분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소극적 태도만 일관하다가, 결국 용산화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 III. 용산참사 발생 원인 조사 결과 - 재개발 사업 문제

#### 1. 용산4구역 일반 사항

##### 가. 개발진행 과정의 개요

- 2006. 4. 20 : 도시환경정비사업 구역결정 고시(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서울시 고시 제2006-142)
- 2006. 10. 12 : 조합설립인가(조합장 이춘우)
- 2007. 5. 31 : 사업시행인가
- 2007. 10. 31 : 조합과 철거업체, 시공사 3자간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 체결
- 2007. 11.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 2007. 11. :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 현판식. 용산구청 직원이 용역 50여명과 함께 철거 시도.
- 2008. 2. : 관리처분인가가 나기 전부터 철거용역(호암건설, 현암건설)이 지역에 상주하기 시작.
- 2008. 3 : 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결성
- 2008. 5. 30 : 관리처분계획인가 (2009.2. 착공 예정 -용산구청 홈페이지)
- 2008. 7. :상가세입자 보상금 개별 통지, 퇴거 강요 이루어짐.
- 2008. 가을경 부터 빈집 철거 시작. 영업 중인 건물의 일부도 철거.
- 2009. 1. 19. : 새벽 5시경 서울 용산 한강로3가 63번지 남일당 빌딩에서 농성 돌입.

##### 나. 용산4구역의 개괄적인 상황 등

용산 참사가 발생한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이번 참사가 발생한 용산4구역의 정식 명칭)'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심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정법 제2조 제2호 라목) 구역으로서, 신용산역이 도보 5분 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용산역도 가까우며, 특히 국제빌딩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 음식점 등의 영업을 활발한 곳으로 상권이 발달한 곳이었다. 용산4구역 주변의 용산2, 3 구역과 더불어 이른바 용산역세권 개발의 한축에 해당하는 곳이며, 최근의 부동산경기 불황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으로 3.3㎡당 예상 분양가가 3,500만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난 개발 이익이 예상된 구역이다. 또한, 용산4구역 개발은 시공사 3곳(각 삼성물산 건설부분, 포스코건설, 대림산업이 40%, 30%, 30%)이 지하7층, 지상40층의 6개동(아파트 3개동, 오피스 3개동) 건설을 목표로 하는 곳으로, 개발 전에는 주거세입자 464명, 상가 세입자 439명이 각각 거주와 생활의 터전으로 삼았던 곳인데, 통상의 주택재개발지역 및 도시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가 세입자들의 수가 많다는 점(상가 세입자 중에는 주거 세입자를 겸한 경우도 다수 있음)이 눈에 띄는데, 이는 용산4구역의 상권이 그만큼 발달한 곳임을 잘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위 구역에서는 주거세입자의 문제보다 상가세입자들의 문제가 더 부각될 수밖에 없었는데, 2009. 1. 19. '남일당' 건물에 들어간 세입자 대부분은 상가 세입자들이며, 이들의 요구사항들도 개발 이후에도 계속적인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 다. 세입자의 현황

##### (1) 상가세입자 및 주거세입자

용산구에 따르면 세입자는 890명으로 주거세입자는 456명이고, 상가세입자는 434명이고, 그 중 주거세입자는 456명 중 417명, 상가세입자 434명 중 346명으로 총 763명(85.7%)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현재 재개발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세입자들은 남은 127명이라고 밝히고 있다.

반면 용산4구역 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세입자는 27명(노점상 운영하는 사람 4명 포함. 단 용산구는 노점상 운영하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있으므로 23명으로 볼 수도 있음)으로 모두가 상가세입자이다. 그 중 약 10명 정도는 주거세입자를 겸하는 지위에 있다.

##### (2) 상가세입자 입주시기의 문제

철거대책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가게를 가지고 있는 상가세입자들 23명을 기준으로 볼 때, 입주시기의 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1990년 이전	4명
1990년 이후 2000년 이전	7명
2000년 이후 2003. 12. 1. 이전	4명
2003. 12. 1. 이후 2006. 4. 20. 이전	5명
2006. 4. 20. 이후	3명

위 표를 보면 주민공람공고일 2003. 12. 1.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이 15명이고, 주민공람공고일 이후 구역결정고시일 이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이 5명, 구역결정고시일 2006. 4. 20. 이후에 영업을 개시한 사람은 3명이다.

이에 대하여 상업재개발의 경우 계획이 발표된 이후 들어와 무리한 권리를 주장하는 세입자들의 사정을 모두 봐 주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있다. 그러면서 용산 제4구역의 경우에도 2003. 12. 1. 공람 공고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 전체 상가세입자 26명 중 20명이라며 용산 세입자들 대부분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후에 임대료가 싸니까 들어온 사람들로 막판 되니까 욕심이 생겨서 투쟁을 하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먼저 위 표에서 보듯이 용산 세입자들 대부분이 재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지적은 잘못되어 있다.

오히려 A씨의 경우는 20년 넘게 식당을 했던 사람이다.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서 1986. 5. 23. 갈비집

을 개업하였고, 동일 장소에서 1993. 2. 8. 주점으로 업종 변경하였다(이는 2009. 2. 13. 자 용산 세무서장 발급의 갈비 집 폐업사실증명원과 주점 사업자등록증으로 확인되는 내용임). 그런데 사업장 소재건물이 2004. 4. 17. 매매되어 건물주가 바뀌면서(2009. 2. 20. 대법원 발급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된 내용임) 2004. 8.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새로운 건물주와 다시 썼던 것이다. 그러면서 2004. 8. 위 임대를 변경하는 계약서에서 ‘철거시에는 임차인은 이유없이 비워준다’는 특약사항을 기재하였고, 2006. 재계약을 하면서 또다시 ‘임차인은 기간 중이라도 재개발로 인하여 건물철거가 필요할 시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명도하여 준다. 건물수리는 임차인이 하며,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특약을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A씨의 경우도 2004. 에 비로소 이 지역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건물주가 바뀌면서 새로운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쓴 것일 뿐이다. A씨의 경우 2004.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였고, 개발로 인하여 명도한다는 특약까지 했음에도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지적은 현재 임차인에 대한 자료를 조합으로부터만 취득하고,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확인하지 않은 결과이다. 거꾸로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오히려 2004년 4월에 건물주가 왜 바뀌었느냐 하는 점이다. 자신이 실제 사용하지도 않고 임대해줄 계획으로 그냥 산 것이라면 개발이 될 지역에서 임대수입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그것은 개발이 되는 줄 개발 이익을 노리고 건물을 구입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용산지역에서 모든 건물을 조사한 바는 없으나 재개발 지역에서 위와 같은 개발호재를 타고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하지 않으면서 건물을 구입하는 사례가 다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세입자들은 새로운 건물주와 위와 같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개발로 인한 철거시에는 명도한다는 건물주의 요구를 특약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특약을 하고도 우선 입주권이나 대체상가 등의 동일 범위 지역 계속 영업을 주장한다는 것이 도덕적으로 무리라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공람 공고로 기존 세입자거나 일반인들(새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재개발의 확정을 인식할 수는 없다. 특히 이 지역에 새로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주민 공람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조)과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이 있고, 용산에서는 2003. 12. 1. 공람은 10년 단위의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수립한 정비계획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것을 말한다. 이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서울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용산구는 일간지 2개와 공보에 게재함으로써 위 공람 공고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공람의 형태에 대하여 일반 시민들이 눈여겨보아 인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등에 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구청에서 2003. 경에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을 물었다는 얘기는 세입자들로부터 들을 수 없었다(용산구청은 이에 대하여 누구의 무슨 의견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였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03. 12. 1. 공람공고 후에 들어온 세입자들 모두가 개발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온 사람들이라는 논리는 맞지

않는다. 용산 4구역에서 실제 구역지정 고시는 2006년 4월에 났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하는 ‘관계인’을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통상 사업인정고시일은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해석되고 있음. 한편, 주거이전비(이주정착금에 해당)에 대해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라고 규정되어 이것을 구역지정 공람공고일로 해석해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석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쟁점이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맡겨져 왔음. 2008년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이 있었고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사업시행인가일이 맞다는 1심 판결이 나온 바 있음)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보상의 기준을 삼는 해석은 비현실적인 것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할 시간도 없다. 너무 정보가 없는 것이 문제다. 보상의 기준을 사업시행인가일 정도로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설령 상가세입자들이 위와 같은 공람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이 개발될 것이니 상가를 얻어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하면서 보상금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 지역에 들어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오히려 보고된 바에 의하면 건물주들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를 하면서 개발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만약 개발 사실을 임차인이 소문을 들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개발이 되려면 시간이 5~1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말한 사례들이 있다.

제10조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는 별표 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는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별표 1의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2. 토지 및 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
3. 도시계획시설 및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이하 "정비기반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현황

4.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5.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과 임대차 현황

6.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한 주민의 의견

7. 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

③시장·군수는 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 질의4 : 2003년 12월 1일 최초 공람을 하면서 용산4구역 주민들에게 이행한 조사내용은 무엇인지?

☞ 답변 : 국제빌딩 주변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우리구에서는 용역을 실시하여 도정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2003. 12.1자로 열람 공고 하였습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하고 공람장소에 관계 서류들을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구에서는 일간지 2개지와 공보(시보)에 게재하는 것으로 공고하였습니다.

## 2. 개발 사업의 일반적인 문제점

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비롯한 각종 재개발 사업에서 소외되기만 한 세입자들의 문제

(1) 재개발 사업은 본래 도시계획의 하나로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용산4구역과 같은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에의한특별법에 따르는 뉴타운 사업 등은 모두 도시계획의 하나로 자치단체가 시행하여야 하나, 사업의 성질상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고 공공이 모든 재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재정적으로 많은 부담이 따르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토지등 소유자들로 구성된 민간 조합이 사업의 시행자가 되어 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 현상이 되었다(이와 같이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에서 검토되어야 할 도심 재개발사업이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개발이익을 위한 잔치로 변질되고, 일부에서는 도심 재생사업을 하나의 '비즈니스'로 격하시키는 것은 도심 재생사업의 본질에 비추어보더라도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다만, 도정법이나 도촉법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 등이 여전히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임을 감안하여 조합의 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재개발 사업의 주요 절차는 모두 관할관청의 인,허가를 받도록 하였을 뿐아니라(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의 많은 부분이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이유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보상 등의 문제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러나, 관할관청의 인허가 절차는 재개발 사업의 실질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이루어지는 형식적, 요식적 절차가 되고 있으며('용산4구역'의 경우, 용산구청에서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시 세입자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조합의 형식적 보상금 지급 계획만을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내주었으며, 이후에는 이전대책을 요구하는 세입자들을 '생떼쟁이'라며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다), 개발의 주체인 민간 조합은 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자금지원 등의 방법으로 시공사와 유착하여 온갖 부정, 부패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공사로부터 지원받은 막대한 금원으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조합의 집행부를 장악하면, 이후에는 서면결의서를 동원, 조합원 총회의 의결절차마저 무력화시키는 것이 관례화 되어 있을 정도로 조합의 운영은 불투명함에도 관리관청은 조합 내부의 일정도만 치부할 뿐 법에 부여된 어떠한 관리, 감독권도 행사하지 않고 있어,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조합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형사고소 및 관련 민사소송이 빈번해지게 되는 등의 악순환

이 발생하게 되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시행되었던 도심 재생사업은 오히려 기존에 형성된 공동체를 훼손하고,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쫓아내는 방식으로 전개되어 왔다. 이러한 종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도정법을 개정하여 조합의 민주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순차적 공영개발을 통해 도심 재생사업 본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도심 재개발에 따른 보상은 원주민의 재정착과 상가 세입자들의 계속적 영업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위에서 살핀바와 같이, 대부분의 재개발이 민간 조합에 의해 주도되다보니, 개발로 인해 종전의 거주지 및 영업장소를 떠나야 하는 세입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의 미비와 보상의 주체인 조합의 형식적인 보상금 산정, 조합을 관리, 감독해야 할 관할관청의 직무유기가 결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의 토지등소유자 이외에도 주거 및 상가 세입자들도 이주대책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토지보상법 제78조에서 및 시행령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만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입자들은 아예 이주대책자에서 제외되어 있다), 보상의 내용도 단순히 보상금 액수의 증액만을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현재와 같이 주변지역마저 재개발로 인해 소형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임대료 등이 폭등한다면 단순히 보상금 액수만을 증액한다고 하여, 세입자들이 개발 이후 같은 지역 또는 인근 지역에 재정착하거나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거 세입자들에게는 거주 이전비 지급과 동시에 개발로 인한 주거 이전 및 영업폐지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상가 세입자들에게는(아무런 이주대책을 세우지 아니한 채) 수입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통해 월 수입의 3개월분 상당의 휴업 보상금(용산4구역의 경우, 평균 2,500만원 상당)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위 보상금과 보증금만으로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인근지역의 임대료나 권리금을 감당하지 못할 뿐 아니라 개발 후 같은 지역의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보상의 문제뿐 아니라, 주거 세입자와 상가 세입자들은 정비계획의 수립 및 구역지정단계에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 자신들이 임차하려고 하는 곳에 어떠한 내용의 개발이,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질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뜻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개발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강제 퇴거되는 운명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용산4구역의 대부분 세입자들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오면서부터 구체적인 개발 정보를 전해 들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개발정보로부터 소외되고, 개발절차 진행 중 아무런 의사표현도 하지 못한 채 위와 같이 터무니 없는 보상금만으로 이주를 강요당하는 것이 얼마나 반인권적인지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할 것이다.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서는 상가 세입자와 달리 주거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권과 4개월간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주거 이전비 및 동산 이전비(이사비용) 등이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어느 정도 재정착을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재개발 조합 및 관할관청에서 각종 기망의 방법으로 주거 이전비의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가 다수 보고되고 있으며(주로, '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권과 주거 이전비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고 거짓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임대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더라도 세입자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임대료 등으로 종전 주거지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사정이 어떠한든, 주거 세입자들의 경우에

는 '임대아파트 입주'를 통해 이주대책이 미미하나마 확보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가 세입자들의 경우에는 계속적 영업을 가능하도록 하는 이주대책 등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상가의 영업권을 인수하면서 지출한 각종 비용(권리금, 인테리어 비용 등)과 그동안 형성한 상권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도외시한 채 조합이 선정한 감정평가사의 형식적인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금만을 지급하는 현재의 법과 제도는 상가 세입자들로 하여금 재개발로 사실상 영업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정이 수 십명의 상가 세입자들로 하여금 '망루'로 올라가게 만든 것이다.

용산4구역 상가 세입자들이 주장했던 주요 내용도 '대체상가 보장' '개발후 우선 임차권 보장' 등으로, 세입자들은 재개발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였다. 단순히 보상금의 많고 적음을 문제 삼았던 것이 아니다. 실제로, 과거 청계천 개발시 서울시에서는 청계천 주변 상인들로 하여금 문정동에 대체상가를 마련하여 이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상인들의 계속적 영업을 보장하여 주었다. 다만, 현행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책만으로는 위와 같은 대체상가 확보 등이 쉽지 않은 일이었으므로, 세입자들은 관할관청인 용산구청의 중재로 조합과 대화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망루 투쟁을 선택하였던 것이다.

도정법에서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심 또는 부도심의 기능회복 또는 상권활성화'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기존의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용산4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이미 충분히 활성화된 상권을 턱없이 비현실적인 보상금만을 지급하고 빼앗아가는 사실상의 재산 몰취'로 이해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세입자들의 이러한 안타까운 처지는, 영세 가옥주 및 세입자들에 대한 재정착 방안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개발사업만 밀어부친 관할관청, 중앙 정부(서울시), 건설업체의 공동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다.

(3) 무엇보다, 세입자들에 대해 충분한 이주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광역, 순환재개발 방식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이익만을 쫓아 난개발, 과속개발, 폭력개발이 난무하는 현재의 재개발-뉴타운 개발방식을 수정하여 공영개발과 민간개발의 두 가지 각 영역별로, <공영개발>의 경우에는 공공지원과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원주민재정착율을 높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면서 개발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는 공영개발로 발전시키고, <민간개발>(합동재개발방식)의 경우에는 개발이익만을 쫓아 추진하는 현행방식에서 조합민주주의를 강화하여 조합과 시공사를 견제함으로써 개발이익을 조합원, 세입자, 시공사, 공공 등에게 공평하게 분배하는 민주적 재개발로 발전시키며, <광역개발>을 위한 수 개의 정비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제외),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개발지구)을 포괄하는 광역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며 과속개발을 막고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미 서울 곳곳에서 뉴타운, 재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택의 멸실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소형주택가격 및 전세가격 폭등을 경험하였으며, 2009.과 2010.에는 예정대로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이루어지면 약 13여만채의 주택이 철거될 것이라고 한다. 제2, 3의 전세대란이 예상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점을 시정하고, 도심 재생사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의 경우 광역,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 나. 강제퇴거 및 철거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

본 보고서에 잘 나타나 있다시피, 세입자들은 '철거깡패들의 횡포를 피하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다'는 말을 서슴지 않을 정도로 철거를 위해 투입된 용역업체(현안건설산업, 호람건설)의 주민들에 대한 각종 폭력사태들은 '무법천지'가 따로 없음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하더라도 주민들을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절차(명도소송)를 거쳐야 하며, 위 소송의 결과 강제집행에 이르더라도 강제퇴거절차는 반드시 집행관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사집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같은 강제퇴거 절차가 모두 이루어진 이후, 비로소 철거를 위한 용역업체들이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것인데, 용산4구역은 비롯한 대부분의 재개발 현장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오자마자(용산4구역의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온 2008. 5. 이전(2008. 2.경)부터 이미 철거업체 직원들이 현장에 상주하면서 퇴거를 위해 공포분위기 조성에 들어갔다고 한다) 철거업무만을 담당해야 할 철거업체 직원들이 건물 경비를 한다는 명목으로(만약, 철거업체가 위와 같은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당연히 경비업법상 허가받은 경비업체라야 하나, 위 두 업체는 모두 경비업 허가를 받지 못한 업체이다) 현장에 투입되어, 공공연히 강제퇴거 업무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명백한 경비업법 위반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철거업체 직원들로부터 각종 폭력, 성희롱, 협박에 시달려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출동을 미루다 마지못해 출동해서는 쌍방폭행의 문제로 몰고 갔다는 보고가 빈번한 바, 경찰의 직무유기가 도를 지나쳐 사실상 조합과 철거업체의 비호자 역할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강제퇴거는 반드시 법원의 소송절차 및 강제집행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퇴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며, 강제퇴거에 있어서도 유엔에서 권고하는 기준 등을 지키도록 토지보상법 및 행정대집행법 등을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 3. 용산4구역 개발현장에서의 철거용역업체의 문제점

흔히 재개발 현장에 조합과의 계약을 근거로 들어오는 철거업체는 퇴거가 이루어진 건물의 철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로 세입자들의 퇴거 등에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철거업체의 직원들은 주민들에게 퇴거를 종용하고 협박하며 각종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에 공공연히 동원되고 있다. 용역업체의 이러한 행위는 개별적으로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여 처벌되어야 할 뿐 아니라, 경비업법 위반행위로 처벌되어야 하나, 이를 단속하고 처벌하여야 할 경찰과 용산구청은 오히려 용역업체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강제퇴거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아래에서는 용산4구역 주민 8명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철거업체의 횡포를 서술할 것이다. 또한 별첨 자료로 용산4구역에서 있었던 용역업체 직원의 폭력을 주민들이 그때그때 기록해놓은 일지의 내용을 첨부한다. 용산4구역에 들어온 철거업체는 호람건설(주)과 현안건설산업(주)으로, 둘 모두 경비업체 허가는 받지 않았다.

#### 가. 폭행

철거업체가 마을에 상주하기 시작한 이후로 크고 작은 폭행이 있었다. 대낮이나 동네 한복판에서도 폭행이 있었다.

“밤에 행패를 부릴까 봐 규찰을 도는데, 용역 깡패 젊은 놈들이 밤에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시비 걸면서 행패를 부리려고 하고, 실제로 또 발길로 얻어맞아가지고 갈비뼈가 나갔고. ... 약한 모습을 보이면, 뭐 슈퍼에 소금 사러 가다가 잡혀가지고 두들겨 맞고.” (ㄱ 씨)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이 밥 먹고 있고 우리는 거기 자주 있으니까. 괜히 지나가다 눈만 마주쳐도, 이 쌍년들 왜 쳐다보냐고 막 욕을 하고 뭐하고. 저희랑 같이 하던 사람은 그 사람들한테 진짜 맞이 맞고 끝내는 나갔어요. 포장마차에서 맥주 먹고 있다가 눈 마주치면 쳐다본다고 때리고.” (ㅇ 씨)

#### 나. 협박

용역직원들은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재산, 명예 등에 불리한 해를 끼쳤다. 특히 여럿이 몰려 다니며 위력을 보이거나 위협한 물건을 휴대하기도 했다.

“공장에도 당연히 들어왔죠. 저 없을 때 사장새끼 어딴냐고. 나타나면 꽤 죽인다니 뭐하니 조심하니 뭐하니 뭐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고.” (ㄱ 씨)

“2008년 6, 7월 경이예요. 그때 날씨가 더워서 밖에 테이블도 깔아놓고 편의점을 하니까, 우리는 동네 아줌마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가 새벽 한 시 몇 분인가 두 시 몇 분에 용역이 두 명 와가지고, 술이 약간 취한 상태에서 안으로 들어와서, 아줌마는 이제 가게 물건 정리하고 청소하고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이렇게 가운데에 앉아 있으면 양쪽에서 아줌마를 가운데 놓고 서가지고 ‘여기가 전철연 씨발년이 하는 데지?’ 장사 못하게 우리가 할 꺼라고 그러면서 ‘너도 전철연이냐? 전철연 개같은 년이냐?’ 하면서 아줌마한테 빨리 너도 나가라고 그러면서, 또 손님이 들어오니까 딴 데가서 사시라고 나가라고 그러면서 계속 이 아줌마한테 욕을 하니까, 아줌마는 대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다가 계속 씨발년, 개 같은 년,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면서, 그 두 명이 계속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112에 신고를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신고를 했는데도 안 와서, 30분이 지나도록 안 와서, 그래서 집에 있는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부랴부랴 택시를 타고 나왔어요.” (ㄴ 씨)

“그 사람들이 팬티 바람으로, 우리가 지나가는데 뛰쳐나와가지고, 처음에 저는 그게 칼인 줄 알았어요, 들고 있는 게, 회를 쳐버리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게 목검이었죠. 목검을 들고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ㄴ 씨)

“우리가 밤에 보초를 서잖아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혹시나 애들이 불을 지르지 않을까 해서 폐품을 수집하면서 하는데, 지나가면 ‘저 거지같은 년들 또 다닌다’고 빨리 안 나가냐고, ‘이사 빨

리 안 나가면 너희 보상 하나 없이 빨가벗겨서 내쫓는다’ 이렇게 말을 막 내뱉고.” (ㄴ 씨)

“재래시장에서 장사하는데, (공간이) 막 터져 있잖아요, 막힌 게 없고. 노점이잖아요. 용역이 막 뭉쳐다니고 그러면 무섭고 그랬어요. 가운데가 시장이고 양쪽에 길이 있는데, 이리로 막 뺑뺑 돌아다니고, 위협주고, 손님 앉아 있는데 시비걸고 가고.” (ㄸ 씨)

#### 다. 성희롱

용역 직원들은 특히 여성에게 성과 관련된 언어나 행동으로 불쾌하고 굴욕적인 느낌을 갖게 하였다.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해요. 개네들은 막 밀어도 이런 데(여성의 가슴 부위를 가리킴) 있잖아요, 일부러 막 이려고 그래요. 일부러 성적 모욕을 진짜 많이 해요.” (ㅇ 씨)

“막말로 ‘아우, 맛있겠다’ 뭐 이런 거.” (ㄴ 씨)

#### 라. 거주/영업방해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이 있는 경우 물의 사용을 어렵게 하거나 영업을 하는 공간에서 손님을 내쫓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들이 있었다. 이와 더불어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 바로 옆에 해골, 목을 매단 시체, 칼 등의 그림을 붉은 색 스프레이로 그려놓아 주민들의 안정적인 거주나 영업을 방해하기도 했다. (사진은 별첨한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공가 철거라 하더라도 사람이 살고 있는 건물의 옆 건물을 급하게 철거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감을 조성하고 거주환경을 해치기 위해 일부 철거한 상태에서 방치하거나 건축폐기물을 이용해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의 행위도 있었다.

“밖에 테이블이 있잖아, 여름이니까 더우니까 손님들이 앉아 있으면 못 앉게 해. 앉아가지고 인상을 험상궂게 하고 말 같은 거 험상궂게 하고 ‘전철연 이 씨발년, 씨를 말려버린다’, 용역들이 막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심했었어요.” (ㄴ 씨)

“겉핥하면 수도꼭지를 잠가 가지고 물도 안 나오게 하고, 집 안에 수도꼭지 말고 원래 계량기 있잖아요. 그걸 잠가 가지고 물 안 나오게 하면 밑에 가서 계량기 틀고서 쓰고, 가게 나가 있으니까, 항상 그런 식으로 살아왔어요.” (ㄸ 씨)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인지 함부로 욕은 안하죠. 욕은 안해도 어떻게 방해를 하나. 와서 앉아있어. 아침, 점심, 저녁. 막 젊은 사람 상대하듯이 욕을 한다던가 행패를 부린다던가 그게 아니에요. 무언으로 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어보세요. 험상궂잖아요. 당신이 뭐요, 나가라고 해도 대답도 않고.” (ㄹ 씨)

“손님들이 옷을 입고 그러는데 여자 손님들이 놀래서 도망가요. 그런 상황이었고. 앞에서 정말 죽치고 앉아있고. 다른 식당은 문을 열어놓고 하지만 저희는 문을 닫아놓고, 손님들 옷도 갈아입고

하셔야 하는데 장사는 안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물건은 다 진열되어 있잖아요. 손님들이 들어와 보기는 하세요. 보시긴 하지만 막상 구입은 못하시는 거죠. 위협적인 그런 걸 보였기 때문에. ... 그냥 들쭉날쭉 손님처럼, 자기가 손님인 것처럼 사는 것처럼. ... 나가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라고 하면 욱하고 싸우려고, 손님을 왜 내보내냐며.” (ㄱ 씨)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어느날 집에 들어갔더니 집 안에 물이 한강이 됐었어요. 작년 9월쯤. 주인도 이사 다 간 상태잖아요. 우리만 남고 다 갔어요. 주인집도 다 문을 잠그고 갔는데 집에 가서 불을 켜니까 형광등 천장에서 물이 막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고는 무서워서 그때 그냥 바로 이사나와 버렸어요. 너무 겁먹어서. ... 우리 아래층에 지하에 사는 사람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올라가 보니까 보일러를 뜯어가지고 물이 수도꼭지에서 막 흘러 나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 거예요. ... 우리는 거기서 임대아파트를 꼭 받아가지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게 물이 새고 전기가 불날까 싶어서 못 살겠더라고요. 무서워서, 일부러 빨리 나가라고 집을 아예 다 미는 것도 아니고 등성등성 부숴놓고 그림을 막 이상한 그림을 그려놓고, 칼그림 그려놓고 해골바가지 그려놓고 냄새나는 거 갖다가 퍼놓고, 집에 들어가는 문 앞에다 쓰레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ㄷ 씨)

#### 마. 오물투척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을 할 목적으로 각종 오물을 투척했다.

“똥탄 던지고. 용역애들이 장사 못하게 하려고 그 냄새나는 거 악취나는 거 있잖아요. 은행 같은 거 해가지고 가을에는, 여름에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뿌려대거든요. 냄새나서.” (ㄱ 씨)

“저희 집은 그런 적도 있어요. 한번은 새벽에 비둘기 죽인 거 그런 거 갖다 놓고, 계란, 똥 다 뿌려놓고.” (ㅇ 씨)

#### 바. 경찰의 방조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행이나 기타 범죄 행위에 대해 경찰이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일관된 증언이다. 이는 용산4구역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가중시키는 요소가 되기도 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맞고소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현장의 상황을 기록하기 어려운 조건(사진을 촬영하려면 욱설이나 협박 등이 있었음)에서 입증의 어려움도 있었다.

“그 때까지도 (경찰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112에 또 신고를 했어요. 하니깐 조금 있다가 와가지고 가게문 잠가놓고 용역 사무실로 갔어요. 갔는데 문을 안 열어 주는 거예요. 회사가 없다고 그러고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열려 있다, 경찰이랑 같이 갔는데 속수무책이죠. (경찰이) 좋게만 얘기하니깐 도저히 나올 기미가 안 보이죠. 그날 비가 많이 왔었어요. 비가 많이 와서 거기서 2시간이나 비를 맞고 서 있었어요. 그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은 열렸어요. 누가 나와서 그런 사람 없다(고 하길래) ‘아니다, 분명히 여기로 들어가는 거 봤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린 상태에서 한 두 시간 반이 지나니까 그 아줌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머리 쪽은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다리 쪽은 바깥쪽으로 하고 아예 드러누웠어요. 억울해서 못하겠다 하고 있으니까 그 광경이... 그러면서 비를 맞고 그런데도 경찰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간이 한 이, 삼십 분 지났어요.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딱 데다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경찰이 들어가서 그 두 명을 끌고 나온 거예요. 거기에는 용역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우리 가게에 왔던 두 명을 꼬집어서 데리고 나와서 파출소로 갔는데, 경찰은 저는 주인이니까 틀리다, 아줌마한테 신변의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아줌마하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먼저 파출소로 갔는데 이 아줌마가 나는 처벌하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몇 명이서 다 무릎을 꿇고 다 싹싹 빌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한 번만 용서해 달라,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럼 각서를 써라, 다시는 행패를 부리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라, 그래서 그 각서를 받고 나왔대요.” (ㄴ 씨)

“그때도 경찰들 오라해서 왔는데 딱 그 용역 깡패 우두머리가 가서 무슨 증 하나 보여주니까 경찰이 얼른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잡아라, 왜 안 잡냐, 그렇게 해도 그냥 말아버리더라고. 구청 직원이 용역 앞세워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ㄴ 씨)

“고소 건이 이만큼 있어도 상해 진단서 끊는 데 20만 원, 30만 원씩이에요. 저희가 그런 돈이 어딴어요. 고소를 못해. ... 저희 아버님이 거기 쫓아가서 용역 사무실에 들어가는 거 보고, 경찰이 왔어, 경찰이 잡아준대 기다리래. 그 새끼 도망갈 때까지 거기 가만히 서있어, 끝내는 들어가 보니까 도망갔어. 경찰이 잡아준대, 뭘 잡아줘. 저희 아버지는, 30대밖에 안된 새끼가 두들겨 패고, 칠십 먹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 노인네를 패놓고 그래놓고 노인네가 지들 뺐다고 자해하고 난리치고, 여기는 (상해진단) 3주 나오고 거기는 4주 나오고, 저희 아버님은 구속영장 떨어져서 도망다니셨어요. 어떻게 사냐고요.” (ㅇ 씨)

#### 사.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

용역직원들의 명백한 폭력이 지속되고 사법절차 등을 통해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이대로 쫓겨나겠구나 하는 절망감이 점차 커지게 됐다.

“용역들이 점심 때부터 해서 한 열 명 정도가 시커먼 옷을 입고, 키도 커요. 딱 보면 혐오감 느끼게 생겼어. 딱 보면 저 새끼 깡패야. 동네를 휘젓고 다녀.” (ㄷ 씨)

“2, 3월부터 돌아다녔어요. 점점 가면 갈수록 용역이 많아지면서 관리처분 떨어지면서 더 많아지고. ... 한 쪽 빈 공간에다 용역 사무실 차려놓고 또 이쪽에 차려놓고 이런 식으로 자꾸 내부적으로 안쪽으로 섬이 되는 거예요.” (ㄴ 씨)

“용역을 사서 노트 들고 패서 보내던가 꼬셔서 보내던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ㄱ 씨)

“(용역을 안 본 날) 없어요. 매일같이 봤어요. 계속 돌아다니죠. 좀 많이 드신 분들, 일부러 노인

네들만 찾아가서 빨리 이사가라고, 노인분들이 막 겁이 나가지고 진짜 이사비용 몇 푼도 안 받고 더 짜게 받고 나가신 분도 많고 그런 게 심했어요.” (ㄷ 씨)

“(아들한테는) 아예 집에 일절 못오게 했어요. 젊은 애들이라 싸움 붙고 그럴까 봐서 일절. 싸워 봐야 우리가 그 놈들한테 이길 재간이 없으니까 (친구 집으로 보냈다)” (ㄸ 씨)

“우리 애가 재작년까지는 자주 왔는데, 작년에는 간혹 왔는데, 엄마 힘들다고 그래서 오는데 무서웠다고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ㄹ 씨)

“낮이고 밤이고 애들끼리 내보낼 수가 없고 꼭 엄마랑 같이. 니 딸 조심하라고 이래가지고 꼭 같이 다니고 그래야지. 저희가 그렇게 당하는데, 부모가 내가 그렇게 당하는데.” (ㄴ 씨)

#### 아. 경비업법 위반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인 호람건설(주)와 현암건설산업(주)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2월 6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호람과 현암은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재개발 구역내 상주경비”를 계약 내용으로 하는 용역계약을 조합과 맺었다. 허가받은 업자만 경비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 ○ 조합·철거업체·시공사 공사도급계약조건 중 계약내용 일부

##### - 계약내용 중 ‘구조물 해체공사’ 부분

- 1) 사업지구내 건축물 일체의 철거
- 2) 철거공사와 관련된 인,허가 사항처리
- 3) 철거 방해에 행위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 4) 재개발 구역내 상주경비
- 5) 위험 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 형사상 책임처리
- 6) 공사에 따른 대 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책임처리
-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 혹은 인명피해 및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해결 및 책임처리
- 8) 토지수용 관련 행정 업무

##### - 인력운용

- 1) 현장대리인 : 1명
- 2) 공사과장 : 1명
- 3) 공무대리 : 1명
- 4) 기타직원 : 4명

#### 자. 강제퇴거 과정에서 철거용역업체의 문제점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호람·현암건설, 시공사(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는 2007년 10월 31일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자료;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도급계약서] 이들은 착공일로부터 10개월을 공사기간으로 정하고, 철거완료시 오십일여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으며 공사 기간 안에 준공하지 못할 경우 하루 1/1,000의 지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철거업체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은 시공사가 맡아, 철거업체는 업무 추진 계획, 실적 등을 시공사에 보고하고 시공사의 지시사항에 성실히 따르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는 철거업체가 주관하고 시공사가 관리감독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명도절차는 관리처분 인가가 난 후 조합이 연계 되는 사용수익권을 근거로 하는 소송이다. 그러나 용산4구역의 명도 절차는 관리처분 인가(2008. 5. 30)를 받기 전부터 추진되었으며 철거업체 역시 미리 들어와 거주 및 영업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인가 과정이 사후 승인과 다를 바 없는 현재 개발 제도의 문제점이 철거업체의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 결국 조합과 철거업체의 계약일 이후로 용산4구역에서는 강제퇴거가 집행되기 시작한 셈이다.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의 퇴거를, 법의 테두리 밖에서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철거업체의 근본적 문제이며 범죄이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4.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계약' 분석에 따른 삼성물산 등의 법적 책임

##### 가. 논의 배경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국제빌딩주변제4구역의 대형참사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호람, 현암의 직원들의 철거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괴롭힘과 영업방해, 폭력, 방화 등의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와,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삼성물산 등 시공사와의 관련성이다. 국제빌딩주변제4구역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은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갑), 호람건설 주식회사·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을), 삼성물산 주식회사·대림산업 주식회사·주식회사 포스코(병) 사이에 이뤄졌다.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위 '국제빌딩주변제4구역'의 개발이익은 약 4조원에 달한다. 그 중 많은 이익이 시공사의 이익으로 돌아갈 것으로 추정된다. 금번 용산참사의 배경의 이면에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삼성물산 등의 시공사의 막대한 이권이 있는 반면, 상가세입자 등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고서 쫓겨나야 하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 근원적인 부조리가 용산참사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므로, 용산참사 과정에서의 시공사 등의 법적 책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이 사건 계약을 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삼성물산 등의 법적 책임을 살펴본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주요 조항의 내용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위 갑, 을 및 병임

1. 공사명: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공사
2. 공사위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
3. 공사부지 면적: 47,161.8㎡
4. 사업의 내용: 관할구청장이 최종 인가한 건축시설(아파트 및 기타 건축시설)의 철거공사
5.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10개월(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2008. 6. 30.<sup>73)</sup>까지라고 함)
6. 계약금액: 일금오십일억원(5,100,000,000원) VAT 별도
7. 상기 계약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갑", "을", "병"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4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8. 첨부: 1.공사도급계약서, 2. 공동수급협정서, 3. 공사계획서, 4. 입찰제안서

▶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제2조(정의)

- (1) 발주자(이하 "갑"이라 칭한다)는 국제빌딩주변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 조합장으로서 계약 당사사자를 말한다.
- (2) 계약당사자(이하 "을"이라 칭한다)는 호람건설(주) 대표이사 마문학, 이기호/현암건설산업(주) 대표이사 박기진을 말한다
- (3) 공사 감독관(이하 "병"이라 칭한다)은 삼석물산(주) 대표이사 이상대, 대림산업(주) 대표이사 김종인, (주)포스코건설 대표이사 한수양으로서 "을"을 업무 전반에 관리감독으로 건축물 해체 및 잔재처리 공사에 대하여 관리위임을 받은 자를 말한다
- (4) 현장대리인은 "을"을 대신하여 현장 사중하여 건축물 해체 및 잔재물처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 해체/잔재처리 공사의 범위)

(1) 구조물 해체공사

- ▷ 사업지구내 건축물 일체의 철거
- ▷ 철거공사와 관련된 인·허가시행처리(비산먼지발생신고, 특정공사자진신고, 철거·멸실신고, 폐기물 배출자신고 및 종료신고)
- ▷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
- ▷ 재개발 구역내 상주 경비
- ▷ 위험 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처리
- ▷ 공사에 따른 대관청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책임처리
- ▷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재 혹은 인명피해 및 공사와 관련된 민·형사상의 해결 및 책임처리
- ▷ 토지수용 관련 행정업무

73) 그런데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3항 등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철거개시를 할 수 있고 공사기간을 철거개시일로부터 10개월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은 2008. 5. 30.이므로, 그 다음날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철거개시일로 본다면(이 사건 계약 조항에 따르면 언제가 구체적인 착공일 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일 이후에 착공개시를 하도록 되어 있음) 이 사건 계약의 공사기간은 2009. 3. 30.로 보아야 함. 따라서 위 보도가 정확한지는 의문임. 한편 공소장에는 공사기간이 2008. 5. 31.부터 10개월로 되어 있다.

- (2) 생략
- (3) 공사기간은 철거개시일로부터 구역내 모든 지장물을 구역외로 반출후 준공검사를 받는 날까지로 한다(단, 철거개시일은 관련법령에 의거 관리처분인가 고시일<sup>74)</sup> 이후로 한다)
- (4) 생략
- (5)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는 "을"이 주관하고 "갑"이 관리감독하며, 소송관련업무는 조합이 선임 을 한 변호사로 하여금 업무를 추진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는 "갑"이 부담한다.
- (6) 내지 (8) 생략
- (9) 상기와 관련하여 "병"이 요구하는 관련자료 및 업무관련 지시사항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철거공사 지분율)

- (1) "을"은 각각 50%씩의 건축물 철거 및 잔재처리공사의 지분을 소유한다.
  - 호림건설 주식회사-지분율 50%
  - 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지분율 50%
- (2) "을"은 공동으로 본 계약을 이행하며,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공동으로 책임지도록 하며, "갑"은 계약서 제7조에 의거 "을"에게 각각의 공사금액을 지급한다.

제5조(대금지급(기성부분금))

- (1) 내지 (5) 생략
- (6) 을의 철거 및 잔재처리 기성율은 "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공사감독관)

- (1) "병"은 "갑"을 대리하여 (이하 "공사감독관"이라 한다) 각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을"은 제3조 사항에 대하여 "을"의 업무추진상태를 "병"에게 보고
  - ② "을"은 제3조 사항에 대한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일일 "병"에게 보고
  - ③ 기타 당해 공사에 관련 발주처가 위임을 요청한 업무
- (2) "을"은 공사감독관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사 계획에 대한 협의)

"을"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공사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며, 착공시 착공계와 공사계획(일정, 장비, 인원 등)을 "병"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 한다.

제10조

- (1) "을"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병"에게 통지해야 한다.
- (2) "병"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긴급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에게 응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3) 생략

제11조(부문사용)

- (1) "갑"과 "을"은 공사목적물 인도전이라도 필요시 "을"과 협의하여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

74) 2008. 5. 30. 고시일임.

(2) 생략

제12조(공사기간의 연장)

- (1) "갑"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 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공사기간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제13조(부적합한 공사)

- (1) "병"은 "을"이 시공한 공사 중 공사계획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2) 공사계획서에 근거하지 않고 "병"의 일방적인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는 경우에는 "을"은 "갑"의 승인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4조

- (1)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에 대하여 천재지변이 의한 손해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2) "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갑"에게 조사내용을 보고한다.

제16조(준공)

- (1)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병"에게 통지하여 하며 "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을"을 입회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 (2) "을"은 제1항의 검사에 합격하지 못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 또는 보완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3) "을"은 검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병"은 이에 응하여 한다.
- (4) "병"은 준공검사 결과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지면 "병(갑의 오기인 듯)"에게 통보한다.

제18조(계약불이행에 대한 조치)

- (1) "갑"과 "을", "병" 상호간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계약내용을 이해하지 아니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상대방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 (2) "을"을 공사기간 내에 준공검사를 못하면 1일 1/1,000의 지체보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지체보상금은 "갑"이 "을"에게 지급할 기성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 호람, 현암 등의 법적 책임

(1) 무허가 경비업 영위로 인한 책임

(가) 호람, 현암의 형사책임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가 행하는 업무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고, 특히 '재개발 구역내 상주 경비'업무를 위 업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업무는 경비업법상의 시설경비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것이고(동법 제2조 제1호 가목75),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지방경찰청장(호람, 현암의 경우 그 본점 소재지가 서울이므로 서울지방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허가를 얻지

---

75)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많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났으므로, 동법 제28조 제1항 제1호76)에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나) 삼성물산 등의 책임

위와 같은 경비업에 해당하는 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드러난 바에 의하면 위 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 드러났는 바, 이러한 무허가 경비업체와 이 사건 공사를 체결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삼성물산 등이 호람, 현암 등의 경비업법상의 무허가 업체라는 점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나아가 법적으로도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정범 등의 공범이 성립할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위 조합을 대리하여 공사대금 지급 등 극히 일부사항만을 제외한 공사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위 호람, 현암의 업무를 감독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 제16조 등 다수 조항 참조), 무허가 경비업체라는 점을 알았다면 그러한 계약 내용에 기하여 공범의 책임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형법 제33조)

(2) 호람, 현암 직원들의 불법행위 및 범죄행위에 대한 삼성물산 등의 책임

(가) 도의적 책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철거 방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배제활동<sup>76)</sup>, '재개발 구역내 상주 경비',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특히 명도소송 및 명도집행업무는 세입자들의 퇴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를 호람, 현암이 주관하여 이를 수행하고, 이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위 호람, 현암은 업무 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일매일 삼성물산 등에게 보고를 해야 하므로, 삼성물산 등은 호람 등이 세입자들의 퇴거를 하기 위해 벌인 각종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 등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

(나)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행위에 대한 책임

다음으로 법적인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면,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행위인 방화행위, 물대포 살수행위, 각종 영업방해행위 등에 관하여 위 삼성물산의 직원들과 위 현암 직원들 사이에 의사연락이 있거나, 삼성물산 등의 직원 등이 그러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지 않은 이상, 그에 대한 형사책임을 위 삼성물산에 귀속시키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위와 같은 계약 내용으로만 그러한 의사연락 내지 교사 또는 방조의 정황적 기초가 될 수는 있을지라도 직접적인 인정 근거는 되기 어려움).

(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등

그러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지 살펴보면, 우리 대법원은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 피용자의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 호람, 현암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삼성물산 등은 호람, 현암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76)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을 영위한 자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호람, 현암 직원들의 영업방해로 인한 피해를 받은 세입자가 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삼성물산 등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삼성물산 등은 '용역업체의 활동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현재 호람, 현암 용역업체의 활동과 자신들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으나(서울신문 2009. 2. 7. 보도 등), 이는 계약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어불성설이고, 위 호람, 현암의 불법행위 등에 대해 상당 정도의 책임(일부 불법행위에 대한 민사책임과 도의적 책임 등)이 귀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5. 용산구청의 책임 방기(일방적 편들기)와 법과 제도상 문제점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 인허가권을 가진 자로서 개발사업계획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며, 지자체가 관할하는 영역 안의 모든 주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기관으로서 용산4구역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의 재정착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이 당연하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의 문제를 민간 조합의 문제로만 치부하며 협의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을 뿐더러 세입자들로부터 사업상의 문제에 대한 민원이나 문제 제기가 있을 때에도 시정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 게다가 세입자들의 결사인 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무단 철거하려고 시도하는 등 편파성을 보였다.

#### 가. 개발 과정에 대한 공식적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음

용산4구역은 2006년 4월 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용산4구역 세입자들은 대체로 2007년 말부터 2008년 봄 사이에 개발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본격적으로 인지하게 된다. 이때는 이미 사업시행계획까지 인가되고 관리처분 총회가 열리는, 개발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도시정비법에서 세입자대책이 포함되도록 규정한 사업시행계획에 대해 세입자들은 전혀 몰랐고 따라서 의견을 제시할 수도 없었다. 용산구청 역시 인가권을 가진 자로서 사업시행계획을 검토할 때 세입자들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았다.

한편, 세입자들이 알게 된 과정은 적절한 내용과 형식을 갖춘 문서를 통한 고지가 아니었다. 강제퇴거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의 시작에서부터 주요한 과정들이 개발로 인해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도시정비법은 개발구역지정과 사업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청의 공람공고와 관계인의 의견제시 기간 보장을 규정하고 있지만 공람공고는 접근성이 매우 떨어져 적절한 고지의 과정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용산4구역의 세입자들은 영업손실보상 액수를 결정하는 감정평가사가 갑자기 가게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개발을 인식하게 되고 세입자들이 이의가 있거나 요구가 있을 때 그것을 드러낼 행정적·사법적 절차를 보장받지 못했다. 조합이나 구청은 용산4구역의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이다.

“2007년 8월달쯤 감정평가사 그 사람들이 와서 알았죠. 감정평가하는 사람이 공장이니까 많이 나올 꺼다 얘기했거든요. 많이 나올 꺼다 하고, 얼마 금액은 얘기 안하고. 그때는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죠. 실제 보상금을 들은 건, 작년 가을 정도 될 거예요.” (ㄱ 씨)

“2008년 1월인가, 2월인가, 감정평가사 돌아다닐 때 알았어요. 평가단이 와서 여기 얼마 더 세들어살 건가 아닌가 그것만 썩 훑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ㄴ 씨)

“2007년. 그 전부터 말들은 많았죠. 하지만 2007년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로구나 하고 알았어요. ... (어떻게 알게 됐냐는 질문에) 피부로 느꼈죠. 왜냐하면 그 옆 동네가 개발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깐 그 다음엔 우리 차례구나 하고 느꼈죠. ... 감정 평가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은 관리처분 떨어지고 나서 7, 8월 쯤에.” (ㄴ 씨)

나.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인지하면서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음

용산구청은 용산4구역에 조합과 세입자들 사이의 갈등이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태 해결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자신을 변명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민주노동당 용산지구당은 전철연과 비슷한 시기에 용산4구역 주민들을 만나왔다. 민주노동당은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당한 재정착 계획을 요구하기 위해 용산구청에 여러 차례 항의집회를 열고 질의서를 보냈다. 그러나 용산구청의 답변은 세입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세입자와 협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라고 하거나 조합이 해야 할 일에 대해 “조치하겠습니다” 정도의 답변을 하고 실질적으로 요청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거나 도시정비법이나 토지보상법 등의 관련 규정을 세입자에게 불리하도록 해석하는 것을 고집해, 개발로 인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전철연 소속 세입자들의 경우, 민주노동당의 노력과 그에 대한 구청의 반응을 보면서 구청이나 조합과 협의할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

다. 세입자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불법적으로 철거 시도

2007년 11월 용산구청은 세입자들이 구성한 비상세입자대책위원회 사무실(가건물)을 철거하기 위해 용역 50여 명을 끌고 나왔다.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거를 시도한 것이다.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가건물을 세운 자리는 점유하는 자가 없이 방치되어 있는 공터였다. 건물을 짓고 하루도 채 되지 않은 시각에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구청이 나온 것은, 일반적인 구청의 관할 구역 관리 현실에 비추어볼 때 매우 민첩한 대응이었다. 이런 용산구청의 행위는 불법 행위이기도 하지만 조합과 세입자 사이에서 중재자나 공공기관으로서의 자세보다는 조합을 옹호하는 편파적인 자세라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세입자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용역들이 최초에 들어온 건, 우리가 비상세입자대책위 사무실을 가건물로 지었는데, 십시일반해서 지었는데, 그때 용산구청에서 용역깡패 50명을 사서 데리고 나왔어요. 구청에서 20명인가 30명 데리고 나왔고 전문적인 용역깡패를 인천에서 데리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동지들이 그때는 열두 명인가 열 명이 막아냈죠. 얻어 맞아가면서.” (ㄱ 씨)

“처음에 사무실 만들 때, 좀 춥고 비가 왔었어. 갑자기 구청에서, 우리가 현수막 걸잖아요, 불법이라고, 그리고 사무실을 가건물이라고 이걸 부수러 온 거예요. 용역들 데리고 밤에. 그래서 우리하고 한바탕. ... 그때 우리가 카메라를 뺐었는데 그걸 다시 달라고 해서. 그러면 다시는 이러지 않겠다 하는 거 하고 누구인지를 밝혀라, 그래가지고 그때 한번 그런 것(증표를 제시한 것) 같아요.”  
(ㄴ 씨)

#### 라. 주민에게 퇴거 강요

지자체는 강제퇴거의 위협에 놓여있는 주민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면접 사례 중에는 오히려 동사무소로부터 퇴거를 강요당한 사례가 있었다. 명도절차의 강제집행으로 주거지를 잃고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한 주민이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신청하려고 동사무소를 방문했으나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야 가능하다”는 거짓말을 하며 수급신청 절차를 방해한 것이다. 이는 관련 지자체들이 법적인 의무도 따르지 않은 채 구역 내 세입자들의 퇴거를 오히려 종용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구청에서 생활보호자 그걸 했는데 안 해준대. 주거가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 그걸 빼야지 해주겠다, 수급 대상자가 되려면 부동산에서 퇴거를 해라. 동사무소에 몇 번 갔는데 해결이 안됐어요.”  
(ㄹ 씨 사례를 동석한 ㄱ 씨가 진술)

#### 마. 퇴거 기한에 대한 일방적 통지

주민들에 따르면, 작년 7월 경 철거업체는 8월 4일까지 이주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주민들은 현수막과 조합의 보상금 통지를 통해 퇴거에 대한 압박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되었다. 이는 명도절차에 따른 공식적 고지가 아니었지만 세입자들의 불안을 가중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강제 퇴거에 대한 통지만 있을 뿐, 협의나 협상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퇴거 절차에 대한 정보가 공지되지 않음으로써 세입자들은 더 이상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통보 왔어요. 언제쯤 왔더라... 나왔어요. 그리고 빨리 이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 확정금액을 정해주고 이사를 해라, 조합에 와서 도장을 찍고 돈을 받아가라 그랬어요. 한 달, 통보해주고 한 달. 7월달 즈음 해주고 8월 30일까지 이사하라고 팻말에 써있었어요.” (ㄴ 씨)

“조합에 얘기하러 가도 사무실 앞에 용역 애들 세워놓고 못 들어가게 했지.” (ㄴ 씨)

“이걸 평가금액을 가지고 왔어요. 용역 소장이. 평가금 나온 고지서를 그래서 내가 너 이거 가져가라, 나는 돈을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요만한 장소를 마련해줘라. 내가 그렇게 해서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이후로는 안와요.” (ㄱ 씨)

#### 바. 퇴거 절차에서의 문제점

현재 법으로 정해져있는 퇴거 절차는 명도소송과 행정대집행이다. 명도소송의 개시는 고지되지만 강제집행 일시는 고지되지 않아 세입자들은 갑작스럽게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었다. 명도에 따른 강제집행은 점유자의 완전 퇴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강제집행은 순식간에 주민을 거리로 내모는 상황을 낳았다. 또한 원칙적으로 법원 집행관만이 할 수 있는 민사집행을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느끼는 불안과 분노는 더욱 커졌다.

“저희 집은 비대위 그래가지고 주인이 저를 개인 명도로 쳤어요. 한 날은 제가 집에 있는데 문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법원하고 용역이 문을 따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가라고, 누구 마음대로 문을 따느냐고. 없는 줄 알았대. 없는 줄 알았으면 문을 따면 안되는 거잖아요. 조합하고 상관없이 나를 개인 명도로 쳤다며 근데 왜 용역이랑 같이 다니면서 사람 집에 있는데 문 따고 들어오고 협박하고. ... 그래가지고 저는 제일 먼저 집달 당한 거예요. 2008년 9월쯤이에요. 말이 안되잖아요. 집을 어떻게 철거해요? 저희 집 흔적도 없이 다 철거됐어요.” (오 씨)

“불현듯이 딱 와가지고 상상도 못했죠. 예측이라도 했으면 준비라도 해놨을 텐데. 그리고 집행 날 짜가 아직 한 달이 있었으니까. 난 그 안심을 하고 일주일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느날 아침에.” (르 씨)

“명도소송이 들어왔는데 다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가집행이 떨어져버렸어요. 아침에 그냥 장사를 하려고 왔는데, 새벽 장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가집행이 들어왔는데, 용역이 한 백 명 정도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집행 하시는 분, 법원에서 집달관이 왔고, 그 날 물건을 다 끄집어냈어요. 이게 작년 11월 28일.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한 시간만 봐달라고 했어요. 손님이 있었거든요. 컨테이너 달려있는 트럭을 가게 앞에다 대 놓고 문 열어 놓고 짹짹 싣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음식은 자기들이 알아서 다 빼서 놓고 물건 다 싣고 가집행이 시작됐는데, 가집행 과정은 사실 그렇게 해서 문 닫고 딱지 붙여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집을 부술 권리는 없어요. 그런데 가게가 전면이 유리문이었어요. 용역 아이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 가집행 과정에. 왜냐하면 그때는 철대위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 철거민 동지들이 함께 있어서. 그런데 그 문을 버젓이 가집행자 있는 데서 쇠파이프로 쳐 버렸어요. 그 큰 유리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거는 집행관이 와서 할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버렸어요.” (르 씨 사례를 동석한 ㄱ 씨가 진술)

※ 피면집자 기본 정보

ㄱ	남	54	타지역 거주	15년 구두공장
ㄴ	여	41	구역 내 보증부 월세	7년 도서대여점
ㄷ	여	58	구역 내 보증부 월세	23년 포장마차
ㄹ	여	67	구역 내, 영업건물 내	15년 식당
ㅁ	여		타지역 거주	옷가게
ㅂ	여	43	타지역 거주	4년 편의점

스	여	47	구역 내 보증부 월세	17년 포장마차
ㅇ	여	38	구역 내 세입자	30년 식당, 최근 호프로 업종변경
ㅈ	여		* 타 지역에 거주하는 지인	

#### IV. 제언

**먼저, 1. 19. 상황은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 여부를 가릴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1. 19.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특공대를 조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특공대의 조기 투입을 결정할 당시인 1. 19.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전적으로 경찰의 주장에 동조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1. 19. 상황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 없이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의 합목적성을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둘, 1. 20.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보아 경찰특공대의 진압작전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다량의 인화물질 존재와 1차 화재로 인한 대형화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도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조치의무, 소방관 및 화학소방차 배치 등을 통한 유류화재예방 및 사전화재진압조치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격렬한 저항이 예상되는 2차 진압을 강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였는바, 예견된 화재에 대한 안전대책 없는 경찰특공대의 망루 안으로의 2차 진입 및 검거 강행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위험(危險)을 창출(創出)한 것이고, 그 위험의 창출이 6명의 인명피해 발생에 상당한 정도로 실현(實現)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격렬한 저항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인화물질에 대한 안전대책 없는 무모한 경찰특공대의 진압 강행과 그에 대한 대항과정에서의 화재 발생 그리고 그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특공대의 진압과정에 대한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는 이유이다.

**셋,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가 요구된다.**

검찰은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두 차례의 서면조사, 여타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단순 진술로 경찰의 진압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면제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태도는 봐주기 수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공권력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검찰의 편파 수사와 부실수사의 원인이자 배경이다. 따라서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규명하고자 한다면 용산 진압에 관여한 경찰지휘부 및 현장 진압 과정에서의 경찰 책임자들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필요하다.

**넷, 용산4구역에서 철거용역업체들이 자행한 광범위한 폭력행위, 진압과정에서 경찰과의 합동작전 의혹, 그리고 시공사와의 관련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경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은 1. 19. 남일당 건물 점거농성 훨씬 이전부터 용산4구역 철거민들을 내쫓기 위하여 갖은 협박과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이러한 행위는 일상적인 협박과 물리적 폭행, 언어를 동반한 성폭력까지 다양하게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철거민들이 남일당 건물을 점거한 이후에 용역들은 경찰들과 함께 진압에 참여하였다는 정황과 함께 건물 3층 계단에서 폐목재 등을 태워 철거민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 보내는 등의 방화와 위협행위를 계속했다. 이에 대해 연행된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은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용역들의 광범위한 폭력행위에 대해 언급했고, 경찰과의 합동 진압작전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한 요구를 묵살해오다가 언론보도에 밀려 수사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는 용역업체 직원들의 폭력행위에 대한 불구속기소만으로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음 뿐이다.

이 사건 점거농성의 중요한 배경이 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자행한 광범위한 폭력행위 등 불법사실과 진압과정에서의 경찰과의 합동작전 의혹, 그리고 용역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지위에 있던 시공사와의 관련성 역시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한다.

**다섯, 경찰의 조직적인 수사방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경찰은 용산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위협하고 폭력적인 진압을 축소하고 은폐하기 위하여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로 일관하여 왔다. 김석기 전 내정자는 처음에는 용산 철거민 진입계획에 대하여 ‘보고’만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김석기 내정자의 최종 승인으로 서명된 ‘진입계획서’를 제시하자, 용산 참사 진입계획을 ‘승인’하였다고 시인하였다. 또한 경찰은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 및 망루 안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질이 있는 줄 몰랐다고 발표하였지만, 경찰의 진입계획서 및 상황보고서에는 인화성 물질 등 화재위험에 대하여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아가, 용산 참사 현장을 진두지휘한 신두호 기동본부장이 2009. 2. 6.경 당시 현장에 투입된 중대장 등을 소집해 ‘피디수첩’ 동영상을 보여주며 ‘검찰이 불러 나가면 용역 요원을 본 적이 없다고 진술하라’고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며 의혹이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악의적으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한 것이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한 것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여섯, 청와대의 사건 축소 은폐 및 검찰 수사 개입여부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검찰은 용산 참사가 발생한 이틀만인 2009. 1. 22.경, 연행된 철거민들 일부에 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로 구속영장청구를 하였다. 경찰진압과정의 적법성이나 화재감식결과가 나오기도 전이었다. 이는 신속한 진상규명을 원하는 청와대와 정치권의 의사를 반영하여 검찰이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판단을 하였음을 드러내 것이다.

검찰이 이번 용산 참사 수사과정에서, 엄정한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켰는지 의문이다. 이번 용산 참사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차기 경찰청장으로 내정한 김석기 전 내정자가 최종 승인한 진압작전으로서, 청와대에도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이었다. 실질적으로 청와대 이성호 전 행정관(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군포 연쇄 살인사건을 적극 홍보하여 용산 참사를 덮으라는 지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는 명확한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일개 행정관이 상관의 지시 없이 개인적인 메일을 보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며, 검찰의 수사에 영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일곱, 용산4구역 환경정비사업 과정에서의 철거업체 및 정비업체의 조직폭력 범죄집단 연루여부, 시공사의 지휘감독 과실, 용산구청과의 유착여부, 경찰과의 유착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서울 용산 4지구의 재개발 조합이 충청향우회로 용산구청장과 친분이 있고, 과거 서방과 김OO계 조폭이라는 의혹이 있는 이가 실소유주인 정비용역 업체 파OOOO와 통상 가격의 갑질이 넘는 값에 계약을 맺었고, 정비용역 업체는 경찰 진압작전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철거용역 업체 호OOO, 현OOO 등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6명의 철거민과 경찰관의 사망이라는 비극이 빚어진 용산4구역의 경우, 환경정비사업 및 강제퇴거, 철거가 매우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철거민들과 조합의 협상, 용산구청의 감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등은 철거업체 용역직원들의 철거민에 대한 폭력, 업무방해, 주거침입, 재물손괴에 대하여 직무유기한 형사책임이 있다. 용산 참사의 비극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재개발 현장의 폭력과 이와 유착한 행정당국과 경찰당국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가 요구된다.

**여덟, 제2의 용산참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등 세입자 문제를 포함하여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재개발 관련 제반 분쟁들을 해결할 정책과 법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도심 재개발 사업은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공의 주도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과도한 재정적 부담, 비효율성 등)로 토지등 소유자가 주체가 된 민간조합이 재개발의 주체가 되면서 재개발은 도시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개발이익의 쟁탈장이 된 듯한 모습만이 나타나고 있다. 재개발이 대표적인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한 이유 역시 공공성을 상실한 재개발 절차 전반의 문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며, 서울 강북지역과 같이 서민들의 주거 밀집 지역 등에서는 여러 정비구역을 하나의 광역재정비구역으로 포괄하여 순차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재개발 절차 내에서 재개발로 인한 이주수요를 흡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1지역의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 1지역의 주민들을 이미 개발이 이루어진 2지역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도록 하는 등), 상가 세입자들에게는 '대용상가'를 확보하여 공급함으로써 상인들로 하여금 인근지역에서 유사, 동종 업종의 영입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이와같은 광역, 순환개발은 공영개발에 의하도록 하고, 공영개발에 따를 경우, 용적을 인센티브나 기반시설을 공공이 설치하도록 하여 주민들의 추가 부담금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철거업체 직원들이 강제퇴거에 동원되는 것이 오히려 당연시되는 현재의 무법상태를 청산하여, 강제퇴거와 철거 절차를 명백히 구분한 다음 퇴거가 모두 이루어진 후 철거가 가능하도록 하고, 강제퇴거 시에는 유엔의 권고기준(야간퇴거금지, 보상을 위한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도심 재개발이 단순히 개발이익을 쫓는 수익성 좋은 사업이 아니라,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는 도시계획의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개발과 관련한 행정 하나하나, 법률 규정 하나하나에 위와 같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부록

※ 부록 내 모든 쪽번호는 해당 문서의 표기와 다릅니다.

## 1월 20일 시간대별 상세 상황

시간	출처	상황 설명	단계
6시 0분 8초	경찰지휘무전	어제 옆건물에서 물포 활용을 잘 했는데, 크레인 설치할 때, 화염병이 투척되면 물포를 옥상쪽으로 과감하게 사용하면서 설치하세요	물대포 사용 시작, 진입 작업 준비 중
6시 4분 47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도로쪽 말고, 안쪽에 머가 있어요? 그쪽에 왜 화염병을 투척하지?	
6시 4분 56초	경찰지휘무전	그쪽에 물대포차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6분 5초	경찰지휘무전	지금부터는 화염병 투척하면 바로 살수하세요. 투척하는 농성자를 향해서, 아주 강하게 살수해도 좋아요.	
6시 6분 51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눈에 보이면 물포를 충분히 쏘세요 모든 물포 총동원해서 충분히 쏘세요	
6시 9분 35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2층에, 철거반들 아직 경계하고 있지요?	
6시 9분 57초	경찰지휘무전	지금도 장비 중에 있습니다	
6시 10분 2초	경찰지휘무전	바깥쪽에서 비호 크레인 설치를 하게 되면, 안쪽에서는 철거반들이 3,4층 장애물 제거 작업도 병행해 주세요	
6시 12분 38초	경찰지휘무전	남일당 빌딩 농성자들 향해 살수하겠습니다. 지금 살수차를 향해 화염병 투척중입니다.	
6시 14분 0초	경찰지휘무전	진입 전에 기선을 제압해야 하니까 전 물포를 다 쏘시다	
6시 14분 51초	경찰지휘무전	그러니까 소방차 물포하고 우리 물포하고 전 물포를 다 가동해요	
6시 16분 46초	경찰지휘무전	크레인 설치하라	
6시 18분 58초	경찰지휘무전	준비된 크레인이 우리가 어제 예정했던거보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	
6시 20분 38초	경찰지휘무전	외곽에 안전매트 설치하겠습니다	
6시 24분 29초	경찰지휘무전	<b>물포 쓰고 있고, 경력이 건물 출입구를 열고 있는 중</b>	건물 진입, 컨테이너 준비
6시 25분 8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지요?	
6시 25분 16초	경찰지휘무전	용역들은 작전이 시작되면서, 전부다 건물 밖으로 철수 한 것 같습니다	
6시 25분 25초	경찰지휘무전	그럼 3,4층 잠금장치는 누가 여는 거예요	
6시 25분 42초	경찰지휘무전	아니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 안되면 우리 경력들이라도, 3,4층에 있는 장애물 지급으로 제거하도록	
6시 26분 16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2층까지 장악했음	
6시 26분 43초	사자후티비	나레이션 '갑자기 전기가 빠졌음'	
6시 26분 50초	사자후티비	건물 입구 앞에 화염병이 떨어져서 불길. 경찰이 합판으로 머리를 방어하면서 건물로 진입 중	

6시 29분 10초	사자후티비	건물 입구로 경찰특공대 진입 중	
6시 29분 42초	경찰지휘무전	아울러 용역경비들 해머 등 시정장구 지참하고, 우리 경력 뒤를 따라 가지고 3,4층 시정장치 해제 하는 중입니다	
6시 30분 6초	사자후티비	장안약국 뒤쪽 건물 앞에 화염병 불길이 있음	
6시 30분 10초	사자후티비	장안약국 뒤쪽 건물 옥상에서 살수	
6시 30분 13초	칼라티비	건물 입구로 특공대와 사진기를 든 사람이 들어가고 있음	
6시 31분 37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건물 정문으로 진입하는 것이 어느 경력인지	
6시 31분 47초	경찰지휘무전	국5입니다	
6시 32분 4초	경찰지휘무전	국6은 아직 바깥에 장비하고 있나?	
6시 32분 10초	경찰지휘무전	국6은 국5 진입 후에 투입입니다	
6시 32분 32초	사자후티비	장안약국 뒤쪽 건물에 불길이 붙음.	
6시 32분 39초	경찰지휘무전	우리 경력 들어갔어요?	
6시 32분 39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계속 살수중인 가운데, 안으로 진입하는 우리 경력 향해 화염병 투척하면서 완강하게 저항 중	
6시 33분 26초	사자후티비	녹색 옷 입은 기동대가 건물 입구로 접근	
6시 33분 41초	칼라티비	녹색 기동대가 건물 입구로 접근하자 4층에서 기름통을 아래로 붓고 있음	
6시 33분 48초	사자후티비	기동대가 건물로 들어가지 않고 시장쪽 골목쪽으로 비켜섬	
6시 34분 18초	칼라티비	건물 3층에 중앙 통로 쪽에서 특공대가 문을 열고 있음	
6시 34분 41초	사자후티비	도로에서 지게차에 실려 대기중인 컨테이너에 화염병 불이 붙음	
6시 34분 51초	칼라티비	건물 3~4층 중앙 통로 쪽에 화재 발생	
6시 35분 48초	사자후티비	도로 중앙 버스정류장 왼쪽 경찰 모여있는 곳 가운데 짚에 흰 하이바 쓴 사람(KBS영상으로는 서장처럼 보임) 경찰과 이야기 중	
6시 37분 26초	사자후티비	장안약국 뒤쪽 건물 1층이 불타고 있음. 경찰이 바로 옆에 있지만 아무도 불을 끄지 않음	
6시 37분 28초	칼라티비	건물 3층에 경찰이 지렛대로 문을 따고 있음	
6시 37분 59초	경찰지휘무전	그 뒤편에 불이 붙는데 소방차로 빨리 소화시켜요	
6시 38분 9초	사자후티비	신용산 빌딩(장안약국 뒤쪽 건물) 옥상에 경찰방패들이 있고 흰 하이바를 쓴 용역이 있음. 경찰방패를 든 이들은 일부는 용역이나 경찰도 있는지는 잘 보이지 않음	
6시 38분 35초	칼라티비	건물 3층에 경찰이 해머로 자물쇠를 부수고 있음	
6시 39분 44초	사자후티비	신용산 빌딩 앞 녹색옷 경찰들 대열 뒤 흰 하이바의 용역들이 한무리 있음	
6시 41분 18초	사자후티비	신용산 빌딩에 난 화재가 여전히 크게 타고 있으나 불을 끄지 않음. 물대포는 본 건물 4층에만 쏘아지고 있음	
6시 42분 4초	칼라티비	컨테이너가 올라가기 시작	

6시 42분 12초	경찰지휘무전	크레인을 이용해서 비오경력들 컨테이너 이용해서 옥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6시 44분 10초	경찰지휘무전	컨테이너 놓으면서 농성자와 충돌 안일어나도록 정확하게 조정하세요	
6시 44분 48초	경찰지휘무전	완벽한지 안전한지 확인해가지고 컨테이너 안착시키세요 확인 함 더하고	
6시 44분 58초	경찰지휘무전	비오경력 컨테이너 4단 옥상쪽에 종착했습니다. 3단까지는 우리 경력이 장악했습니다	
6시 45분 22초	칼라티비	컨테이너에 뭔가 작고 밝은 하늘색 불빛이 여러번 비침	
6시 45분 29초	경찰지휘무전	3,4단 바리케이트 설치해 해체가 잘 안되나요	
6시 45분 42초	사자후티비	<b>컨테이너 1차 안착, 특공대 1차 옥상 투입</b>	
6시 46분 10초	사자후티비	옥상 창고 문을 열고 흰 하이바의 농성자가 보임. 3명 정도?	
6시 46분 30초	경찰지휘무전	물포는 망루를 향해 쏘도록. 나머지는 경력들이 있으니까	
6시 47분 1초	사자후티비	옥상 창고 문을 닫음	
6시 47분 18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3층 4층 사이에 통로 개척중입니다	
6시 47분 25초	경찰지휘무전	빨리 하도록 지급으로 해요	
6시 48분 6초	사자후티비	<b>옥상 출입통로 문을 절단기? 용접기를 써서 열고 있음. 불꽃이 튀</b>	
6시 48분 49초	사자후티비	옥상 출입통로 문을 열고 진입	
6시 49분 13초	경찰지휘무전	3,4층 해정 빨리 해요	
6시 49분 25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시 49분 30초	경찰지휘무전	3층에서 4층 갈 때 소화전(4점?) 같이 끌고 올라가요	
6시 50분 44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하단 쪽에 안전매트 설치됐습니까? / 네	특공대가 옥상 장악
6시 50분 58초	경찰지휘무전	매트 설치 됐습니다.	
6시 51분 51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3,4층은 철망이 있어서 절단기로 해체 중	
6시 52분 19초	경찰지휘무전	두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종착됐는데, 작전의 관건은 망루 한 면을 뜯어내서 물포를 쏘면서 설치하는 것	
6시 53분 7초	경찰지휘무전	옥상에 올라간 경력들이 건물 4/5층 통로 여는 것도 돕도록	
6시 54분 18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 내부에 화염병 불	
6시 54분 20초	칼라티비	컨테이너 내부에 화염병 발화	
6시 54분 30초	경찰지휘무전	정확한 좌표는	
6시 54분 34초	경찰지휘무전	1,2제대는 건물 2층, 3제대는 비오경력과 함께 건물 3층에 있음	
6시 54분 44초	칼라티비	컨테이너 내부에서 소화분말 뿜어져나옴	
6시 54분 53초	칼라티비	컨테이너 내부에서 망루로 살수 시작. 총 4군에서 살수 중	
6시 55분 0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건물 3->4층이 철문으로 막혀있음. 철문 해체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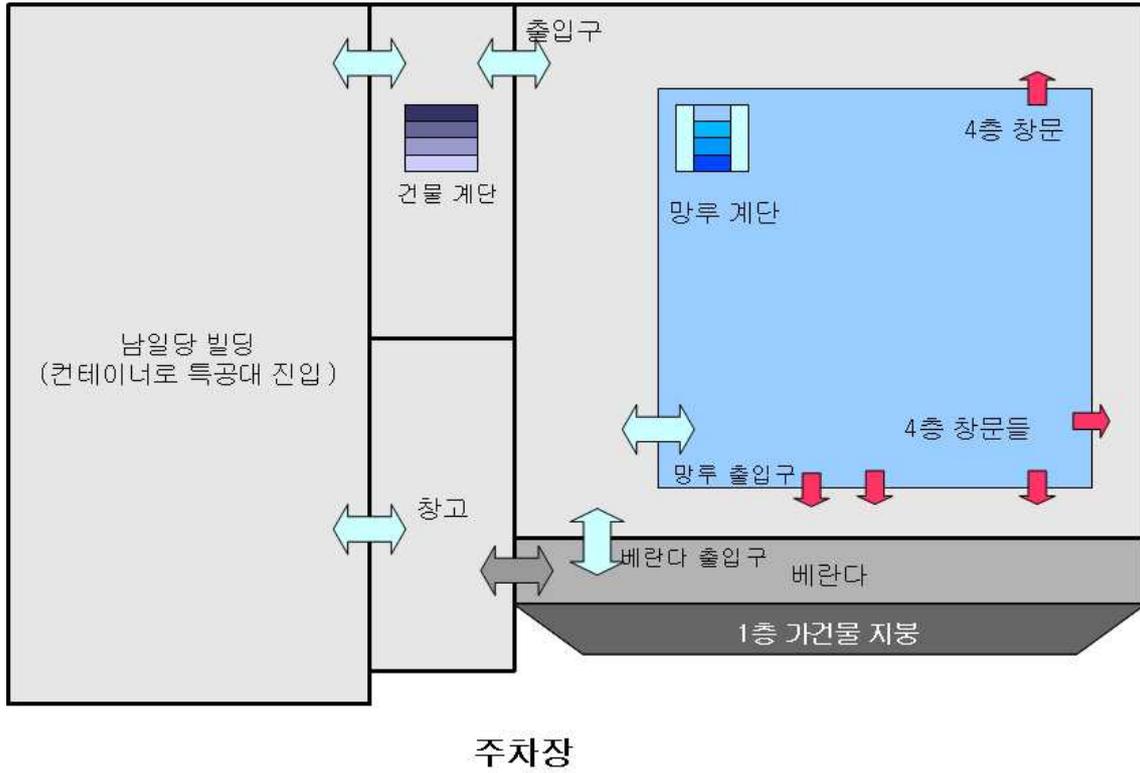
6시 55분 8초	경찰지휘무전	얼마나 걸리겠냐/ 워낙 견고해서 시간이 걸리겠다	
6시 55분 41초	경찰지휘무전	경력이 건물 4층을 점령했다	
6시 55분 57초	경찰지휘무전	2차로 컨테이너가 옥상에 종착했으니, 망루를 해체하는 것이 급선무	
6시 56분 15초	사자후티비	<b>컨테이너 2차 안착, 특공대 2차 옥상 투입</b>	
6시 56분 15초	칼라티비	컨테이너 2차 안착, 특공대 옥상 투입	
6시 56분 33초	경찰지휘무전	3층 바깥 출입문 해정 완료	
6시 56분 40초	경찰지휘무전	비오경력도 옥상에서 검거 진행할 예정이니까 마지막 제거 작업도 지급으로 하라	
6시 56분 42초	칼라티비	컨테이너 망루로 살수하며 떠오르기 시작	
6시 57분 8초	경찰지휘무전	망루 가운데 창문으로 물포 집중하도록	
6시 57분 48초	경찰지휘무전	건물 2층은 국6, 3층은 국5이 장악. 3->4층 잠금문도 해체했음	
6시 58분 0초	사자후티비	도로에 경찰 3번 파란색 살수차가 보이고 컨테이너 살수 호스와 연결된 듯 보임	
6시 58분 0초	경찰지휘무전	옥상 쪽으로 계속 살수 해야할 지 판단 바람	
6시 58분 11초	경찰지휘무전	망루쪽에서 계속 연기가 나고 있음. 화재 위험 때문에 계속 살수를 해야 할듯	
6시 58분 15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4층 높이로 떠올라 살수 중	
6시 58분 29초	경찰지휘무전	4단 창고에서 1명 체포해서 주역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보냈음	
6시 59분 32초	사자후티비	나레이션: '아래 도로 쪽에서 시민 분이 연행되고 있음'	
6시 59분 57초	사자후티비	나레이션: '위에서 연행된 사람이 한두 분씩 내려오고 있음'	
7시 0분 38초	사자후티비	나레이션: '많은 전경들이 골목에 배치되고 있음. 긴 줄을 만들었음'	
7시 1분 18초	경찰지휘무전	119 동원해서 연행자들 빨리 병원으로 후송할 것. 물 많이 먹었으니까. 병원 잘 지키도록	
7시 1분 21초	사자후티비	경찰특공대원으로 보이는 얼굴이 망루 3층 대로측 오른쪽 창문에 얼굴을 내밀	망루에 1차 진입
7시 2분 30초	경찰지휘무전	<b>비오 경력이 망루 안에 들어갔으니 살수 중단</b>	
7시 3분 18초	경찰지휘무전	체포 7명, 건물 2층에서 억류 중	
7시 3분 30초	칼라티비	<b>망루 3층 북쪽 창문으로 경찰특공대원이 상반신을 내밀고 아래쪽과 뭔가 신호를 주고 받음. 손에는 손전등</b>	
7시 4분 53초	칼라티비	컨테이너에서 살수 중단	
7시 5분 24초	칼라티비	<b>망루 3층 동쪽 창문으로 경찰특공대원이 보임</b>	
7시 5분 38초	경찰지휘무전		
7시 5분 48초	경찰지휘무전	체포 10명, 건물 2층에서 국5 병력으로 억류	
7시 5분 54초	사자후티비	망루 4층에서 불빛 반짝임	
7시 5분 54초	사자후티비	<b>1차 발화: 망루 모서리 틈새로 4층 계단 부근에서 불길기 보이면서 화재 발생</b>	경찰이 망루 3층까지 진입한 상태에서, 1차 화재 발생
7시 5분 59초	경찰지휘무전	호송차로 인계하세요	

7시 6분 2초	칼라티비	<b>1차 화재: 망루 3층 북쪽 창문과 지붕 틈새로 망루 계단쪽에 불길이 보임</b>	
7시 6분 8초	경찰지휘무전	통로 확보되면 인계하겠습니다	
7시 6분 10초	칼라티비	망루 3층 동쪽 창문으로 경찰특공대원이 보임	
7시 6분 21초	사자후티비	망루 3층 대로측 오른쪽 창문으로 누군가가 보임	
7시 6분 24초	칼라티비	망루 4층 동쪽 창문으로 한대성씨(추정)가 상반신을 내밀고 있음	
7시 6분 34초	칼라티비	한대성씨 얼굴 잘보임. 주변으로 연기가 나고 있음	
7시 6분 57초	경찰지휘무전	<b>망루 안에 불이 많이 나서 끄고 있으니 안에 있는 농성자 안전하게 체포하도록 유념</b>	
7시 7분 4초	사자후티비	망루 3층 대로/북측 모서리가 흔들리고 있음. 경찰이 뜯고 있는 듯 보임	
7시 10분 57초	칼라티비	컨테이너의 특공대원들이 살수 호스와 도구를 써서 망루 지붕을 뜯고 있음.	
7시 11분 4초	칼라티비	망루 지붕 6회 타격	
7시 11분 6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에서 망루 치는 소리 6회	
7시 11분 15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높이로 상승 중	
7시 11분 25초	경찰지휘무전	<b>비오 경력이 해정장구로 망루 해체중</b>	
7시 12분 10초	사자후티비	옥상 출입통로 문 앞에 경찰특공대원들이 일부 나와있음.	
7시 14분 17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근처에 떠있는 상태에서 살수 시작. 지붕 뜯는 것?	
7시 14분 35초	경찰지휘무전	5층 망루에 채증해야 되요	
7시 14분 51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망루에 해체작업 하고 있어요?	
7시 14분 53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걸려서 기우뚱한 상태로 밀고 있음	망루 해체 작업 중.
7시 14분 56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망루에 계속 해체작업 하고 있습니다	
7시 15분 2초	경찰지휘무전	경력을충분히해가지고망루해체작업을지급으로해요	
7시 15분 8초	사자후티비	<b>컨테이너가 크게 기우뚱 하며 망루 지붕에 내려앉음</b>	
7시 15분 9초	칼라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을 스침	
7시 15분 10초	칼라티비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내려 앉아 걸림	
7시 15분 32초	사자후티비	망루 북측면 4층 동쪽 창으로 세녹스통을 버림	
7시 16분 5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지붕에서 내려오기 시작	
7시 16분 33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가 걸려있다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옆면을 타격	
7시 17분 41초	사자후티비	탕탕 소리가 나면서 망루 옆면이 제껴짐. 망루 아래쪽에서 망루 면을 뜯는 듯	
7시 18분 18초	경찰지휘무전	남일당빌딩 4->5층도 완전히 뚫었음	
7시 18분 47초	사자후티비	망루 3층 틈새로 흰 불빛이 새어나옴	
7시 18분 48초	경찰지휘무전	망루제거하고 검거만 하면 됨. 마무리단계. 검거할 때 미란다고지	

7시 18분 51초	사자후티비	흰 불빛 사라짐	
7시 19분 0초	사자후티비	망루 계단 쪽 옆면이 많이 제껴짐	
7시 19분 24초	사자후티비	망루 옆면 제껴진 틈새로 액체가 흘러나옴	
7시 19분 32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전국철거민연합여러분 이제 그만 집회를 중단하고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19분 33초	경찰지휘무전	<b>컨테이너를 사용해서 망루 해체작업 진행 중 (경고 방송: “중단하고, ”)</b>	
7시 19분 37초	사자후티비	<b>컨테이너 안에서 소화분말이 뿜어져 나옴</b>	
7시 19분 40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경찰은~~~~~.”	
7시 19분 44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이제 그만”	
7시 19분 45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집회를 중단하시고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19분 49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7시 19분 55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7시 19분 59초	사자후티비	<b>컨테이너와 망루 사이로 소화 분말이 새어나옴</b>	
7시 20분 5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 “우리 경찰은 여러분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시고 건물에서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20분 5초	칼라티비	경찰 방송: “우리 경찰은 여러분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시고 건물에서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	
7시 20분 7초	경찰지휘무전		
7시 20분 22초	사자후티비	경찰 방송으로 뺨이~소리	
7시 20분 30초	사자후티비	<b>2차 발화: 망루 4층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기 시작</b>	
7시 20분 33초	경찰지휘무전		
7시 20분 36초	사자후티비	망루 계단쪽 바깥 옥상에서 뭔가 폭발하며 불길기 피어오름	2차 화재 발생. 또다시 “안전하게 체포”할 것을 지시.
7시 20분 38초	칼라티비	2차 화재	
7시 20분 38초	경찰지휘무전	162-1입니다	
7시 20분 41초	경찰지휘무전	<b>마지막에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 안전하게 체포해야. 제일 격렬한 사람들이니까</b>	
7시 20분 43초	칼라티비	북측면 4층 창문으로 세녹스 통들(5개이상)을 버림	
7시 20분 57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옥상으로 싸줘요	망루에서 몇몇 사람들이 탈출함.
7시 21분 7초	경찰지휘무전	비오장 물포 옥상으로 싸줘요	
7시 21분 14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옥상으로 싸줘요. 신나가 뿌려지고 있음	
7시 21분 20초	칼라티비	남측(주차장쪽) 옥상벽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7시 21분 26초	경찰지휘무전	지금도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전원 옥상으로 물포	
7시 21분 29초	칼라티비	남측(주차장쪽) 베란다 난간 끝에 1명 나타남	
7시 21분 35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있는거 다 싸란 말이야	
7시 22분 26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있는거 다 싸	

7시 22분 50초	칼라티비	베란다 난간 끝에 있던 이는 이동	
7시 23분 4초	칼라티비	옥상벽 난간 끝에 있던 이도 이동	
7시 23분 12초	주차장쪽사진	왼쪽부터: 김대원, 김재호, 지석준	
7시 23분 28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있는거 다 쏘세요	
7시 23분 53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망루 상황이 어때요	
7시 23분 56초	경찰지휘무전	<b>지금 경력들이 진압하고 있는데 1,2층은 진압이 됐는데 3층까지는 안됐습니다</b>	
7시 23분 59초	주차장쪽사진	지석준, 이성수	
7시 24분 6초	경찰지휘무전	망루 상황이 어떠냐고 망루	
7시 24분 18초	경찰지휘무전	옥상에 집중적으로 물포 사용 해요	
7시 24분 23초	주차장쪽사진	지석준, 이성수- 이성수씨가 난간에 왼쪽 다리를 걸치고 있음	
7시 24분 28초	경찰지휘무전	망루 앞쪽에 불길이 상당히 강합니다 전 물포 옥상 망루 앞쪽에 투하하도록	
7시 24분 39초	사자후티비	옥상 창고 위로 사람 1명 머리 나타남	
7시 25분 6초	경찰지휘무전	물포 빨리 쏘	
7시 25분 20초	경찰지휘무전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7시 25분 24초	경찰지휘무전	그까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비오경력 나온거 보니 나온거 같습니다	
7시 25분 28초	칼라티비	망루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짐	망루 쓰러짐
7시 25분 28초	사자후티비	<b>망루 쓰러짐</b>	
7시 25분 35초	경찰지휘무전	물포를 전부다 가동하세요 전부다	
7시 25분 53초	주차장쪽사진	망루가 쓰러진상태	
7시 25분 57초	주차장쪽사진	지석준, 이성수 - 이성수씨가 난간에 걸터앉음	
7시 26분 9초	주차장쪽사진	지석준씨는 난간에 매달리고 이성수씨는 위를 살펴보고 있음	지석준 추락
7시 26분 50초	경찰지휘무전	이거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됩니다 소방이 지원해야 합니다	
7시 26분 59초	주차장쪽사진	지석준씨 추락, 이성수씨는 사라짐	
7시 27분 5초	경찰지휘무전	지금 검거한 게 몇명이나	
7시 27분 10초	경찰지휘무전	남자 13, 여자 3, 16명	
7시 27분 11초	사자후티비	컨테이너에서 살수 시작	
7시 27분 15초	경찰지휘무전	총 30명인데 나머지는 어딴나	
7시 27분 20초	경찰지휘무전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
7시 27분 21초	사자후티비	대로측 옥상벽 난간 위에 2명 나타남	
7시 27분 45초	경찰지휘무전	옥상에도 국5가 있나	
7시 27분 49초	경찰지휘무전	국5는 4층까지만 있음	
7시 27분 59초	경찰지휘무전	옥상 끝 쪽에 2명 있는데 빨리 구호 해야돼	

남일당 빌딩 옥상/망루 평면도



삽입

[경찰자료-농성진입계획] 파일

[경찰자료-상황보고] 파일 = 총 13쪽

## 참사 당시 경찰 무전 내용

※ 아래 녹취록은 1월 25일 <오마이뉴스> 기사를 발췌한 것입니다.

5시 51분 54초

[현장]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농성자들 4층 옥상에서 우리 경력들을 향해서 화염병 염산병 염산이 든 병을 계속 투척하고 있습니다.

5시 55분 36초

[현장]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옥상 전철연 농성자들 경력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고 방송등을 이용해서 불법 행위 중단할 것을 방송하고 있다.

5시 55분 53초

[지휘본부] 알았다. 경고방송하면서 살수도 하겠다고 경고하세요.

5시 56분 27초

[지휘본부] 옥상 쪽으로 살수할 수 있도록 준비는 돼 있어?

5시 57분 37초

[현장] 준비 진행중에 있습니다

5시 57초 41초

[지휘본부] 알았다. 경고하고 살수 시작해요 화염병 계속 투척하면.

6시 16분 59초

[현장] 크레인 설치하겠습니다

6시 18분 00초

[지휘본부] 물포 활용은 잘 되는데 준비된 물포가 동시에 떨어지지 않도록 교대교대 하면서 하도록 통제해줘야하고 소방물포도 준비시켜서 우리 물포가 다 끝나면 물을 채우는 동안 소방물차 활용할 수 있도록 물차 관련해선 순서를 미리 정해놓도록 설치하시고. 3, 4층 건물 내안에 설치된 바리케이트 장애물 설치제거가 진작에 됐어야됩니다.

6시 18분 44초

[현장] 물포는 사전에 물차와 연결돼 있어서 계속 가능합니다. 건물 내 장애물은 다시 한번 점검확인 해서 참고하겠습니다

6시 18분 58초

[지휘본부] 준비된 크레인이 어제 우리 예정보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금일 진압작전은 계단을 통해 계단 진입하는 경력이 먼저 진입해야할지도 몰라요, 3,4층 장애물 먼저 설치하고 옥상 4층 진입하는 통로를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세요.

6시 20분 38초

[현장] 외곽에 매트리스 안전매트 설치하겠습니다.

6시 25분 8초

[지휘본부] 건물 2단에 철거반들이 있는데 왜 시정이 됐죠(잠겨 있죠)?

6시 25분 16초

[현장] 용역들은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건물 바깥으로 철수한 것 같습니다.

6시 25분 25초

[지휘본부] 통로 3, 4층의 장애물은 그럼 누가 제거하는 거예요

6시 25분 36초

[현장] 현장에서는 종료입니다.

6시 25분 42초

[지휘본부] 철거반원들이 3,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설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장애물 철거반들이 설치 하도록 하고 만약에 바로 설치가 안되면 우리 경력이라도 3,4층에 있는 장애물 지금으로 제거설치하도록.

6시 26분 16초

[현장] 우리 경력이 남일당 빌딩 2층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컨테이너를 이동시켜서 잠시후에 설치할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농성자들은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습니다

6시 29분 42초

[현장] 아울러서 용역경비원들 해머 등 해체장구를 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가지고 3층에서 4층 그 시건장치를 해제 진행중입니다.

6시 29분 59초

[지휘본부] 알았다. 경력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돌출된 장애물 해체할 준비중.

6시 32분 10분

[지휘본부] 계속 화염병 위쪽에서 투척하니까 소화기 준비했다가 불붙게 되면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6시 35분 41초

[현장] 물포 계속 살수 진행중인 가운데 전철연 농성자들 안으로 진입하는 화염병을 연속 투척하면서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6시 35분 59초

[지휘본부] 경력들 진입할 때 산개해서 진입하도록 하세요. 가끔 몰려 있으면 화염병 목표물이 될 수 있습니다.

6시 37 분 59초

[지휘본부] 불이 붙은 데는 소방차로 빨리 소화시켜요

6시 40분 52초

[지휘본부] 3단까지 우리 경력이 접수했으면 3단에는 물을 뿌리지 말게 하세요, 우리 경력이 접수한 데는.

6시 41분 46

[지휘본부] 뒤편에 불이 붙은 건물 진압을 소방차로 하세요.

6시 42분 12초

[현장] 현원도 크레인을 이용해서 컨테이너 옥상쪽으로 매동하고 있습니다.

6시 43분 12초

[지휘본부] 컨테이너에서 살수를 할 수 있도록 해요, 컨테이너에서.

6시 43분 51초

[지휘본부] 물포는 옥상쪽으로 하지 말고 건물 밑으로 4단 5단 건물쪽으로 쏘도록 하세요.

6시 44분 10초

[지휘본부] 컨테이너를 옥상에 놓으면서 농성자들과 충돌이 안 일어나도록 정확히 겨냥을 하세요.

6시 44분 48초

[지휘본부] 안전한지 확인을 해서 컨테이너를 안착을 시키세요, 확인 한번 더 하고.

6시 44분 58초

[현장] 컨테이너 4단 옥상쪽에 중착됐습니다. 아울러 4단까지는 우리 경력이 장악했습니다.

6시 45분 29초

[지휘본부] 1, 2, 3층은 완전장악. 통로에 바리케이드 설치돼 있는 것은 해체가 잘 안되나요.

6시 45분 47초

[현장] 컨테이너 완전 종착됐습니다. 옥상에.

6시 45분 56초

[지휘본부] 3층은 망루 안에 애들 갖다놔으니까 3층은 빠질 예정이에요.

6시 46분 2초

[현장] 망루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6시 46분 19초

[지휘본부] 옥상은 물을 뿌리지 마세요. 우리 특공대들이 진압작전중이니까.

6시 46분 30초

[지휘본부] 물포들은,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화염병 투척중입니다. 망루에 집중하세요. 망루 이외의 지역은 특공대들이 있으니까 쏘지 말고 망루를 향해 쏘도록.

6시 47분 18초

[현장] 지금 불났습니다. 지금 3층과 4층 사이에 통로개척하고 있습니다.

6시 48분 2초

[지휘본부] 호송차 지급으로 설치하도록.

6시 49분 13초

[지휘본부] 3층에서 4층 통로개척을 지급으로 해야지 경력이 올라가니까 빨리 해요.

6시 50분 18초

[지휘본부] 망루를 해체를 좀 잘해야겠어요.

6시 50분 44초

[지휘본부] 건물 하단쪽은 안전매트는 전부 설치됐습니까?

6시 50분 58초

[현장] 매트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호송차는 2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6시 51분 6초

[지휘본부] 4단에서 5단 진입은 안됐습니까

6시 51분 19초

[현장]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시 52분 19초

[지휘본부] 두번째 컨테이너가 옥상에 종착됐는데 현재부터 진압작전의 관건은 망루를 뜯어내야 됩니다. 망루 한쪽면을 뜯어내서 물포를 쏘면서 설치를 해야 할 것 같아요.

6시 52분 35초

[현장] 지금 그 전부 출입구를 완전히 봉쇄해서 상당히 해제하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 인원으로 망루를 제거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6시 52분 7초

[지휘본부] 옥상에 올라간 경력들 보고 4, 5층으로 통하는 통로개척에도 좀 도와주라 그래요.

6시 54분 34초

[현장] 1, 2 계대는 2층, 3계대는 특공대 경력과 3층에 있습니다.

6시 54분 54초

[지휘본부] 그런데 왜 4, 5층으로 진입을 못하는 겁니까.

6시 55분 00초

[현장] 4, 5층이 철문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철문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6시 55분 08초

[지휘본부] 얼마나 걸립니까.

6시 55분 12초

[현장] 워낙 견고하기 때문에 절단기로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6시 55분 51초

[현장] 우리 기동대가 4층을 접수했습니다.

6시 55분 57초

[지휘본부] 2차로 컨테이너가 옥상에 종착했으니까 망루를 해체하는 게 급선무예요.

6시 56분 33초

[현장] 3층, 4층 출입문 해체 완료했습니다.

6시 56분 40초

[지휘본부] 알았다. 잘했어요. 특공대도 잠시 후면 옥상에서 검거 진행할 예정이니까 마지막 제거작업

을 지급으로 진행시키도록.

6시 57분 8초

[지휘본부] 물포 물포, 옥상에 올라간 특공대들한테 화염병 계속 투척되고 있어요, 망루 가운데 보면 창문이 있는데 그쪽으로 집중해서 물포를 쏘도록.

6시 57분 41초

[현장] 남일당 빌딩 2단에는 국내선, 3단에는 국제선 경력이 완전 장악했습니다. 3단에서 4단 올라가는 잠금문도 해체를 했습니다.

6시 58분 00초

[지휘본부] 3, 4단 바리케이드도 완전 해제했는데 옥상쪽에도 계속 살수해야 하는지 판단 해줘요.

6시 58분 11초

[현장] 현재 망루쪽에서 계속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화재 위험 때문에 살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6시 58분 29초

[현장] 농성자 1명 4단에서 1단으로 내려갔습니다.

7시 1분 18초

[지휘본부] 119 통해 가지고 검거자 연행자 빨리 병원으로 취급하도록 해요,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러니까.

7시 1분 31초

[지휘본부] 그리고 병원 잘 지키도록 해요.

7시 2분 30초

[현장] 살수 중단. 망루에 살수 중단. 우리 특공대들이 망루에 들어갔으니까.

7시 3분 56초

[지휘본부] 호스가 터져서 중간에 물이 새고 있거든 그건 살수를 안하는 게 좋겠어요.

7시 5분 46

[현장] 4층에서 검거한 농성자 10명. 2단에서 기동대가 무력화.

7시 6분 57초

[지휘본부] 망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있어요, 망루 안의 농성자들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유념을 하세요.

7시 7분 9초

[현장] 알았다. 2단에 13명 정도 무력화해놓고 있구요, 망루만 해체하면 됩니다. 안전하게 하겠습니다.

7시 7분 18초

[지휘본부] 망루 안에서 농성자들이 자해를 할 수도 있어요. 무력화를 잘해야 합니다.

7시 8분 7초

[현장] 농성자 남자 13명 여자 3명 2단에서 기동대 경력으로 무력화중.

7시 11분 25초

[현장] 특공대 경력들이 해체장구를 이용해서 망루를 해체하고 있습니다.

7시 14분 35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망루 안에 체증을 하세요.

7시 14분 56초

[현장] 지금 망루 해체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7시 15분 2초

[지휘본부] 경력을 충분히 해서 망루 해체 작업을 지금으로 해요.

7시 18분 18초

[현장] 남일당 빌딩 4단에서 5단 시정장치 완전히 해제됐습니다. 경력들이 5단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시 18분 48초

[지휘본부] 망루만 남았습니다. 망루만 제거하면 농성자들 검거될 텐데, 마무리 단계입니다. 농성자들 검거하면서 미란다 원칙 반드시 고지하고 연행과정에 다른 특이가 없도록 경력 요양조치 잘하세요.

7시 19분 33초

[현장] 컨테이너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 작업 진행중에 있습니다.

7시 20분 41초

[지휘본부] 마지막 망루에 있는 농성자들 안전하게 설치를 해야 합니다. 제일 위험한 농성자입니다.

7시 20분 57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지금 물포 이쪽으로 좀 쏘줘요, 옥상으로 물포.

7시 21분 7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전부 지금 물포 옥상으로 좀 쏘줘 옥상

7시 21분 14초

[현장] 옥상에 물포를 집중으로 뿌려. 지금 신나가 뿌려지고 있어요.

7시 21분 26초

[현장] 지금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으니까 전원 지금 물포 옥상으로. 물포 있는 거 다짜란 말이야 다 썩.

7시 22분 6초

[현장] 물포 있는 것 다 썩.

7시 23분 28초

[지휘본부] 물포를 다 쏘세요.

7시 23분 53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지금 망루 상황이 어때요.

7시 23분 56초

[현장] 우리 기동대들이 진압을 하고 있는데요, 2층까진 진압이 됐는데 3층까진 진압이 안됐습니다.

7시 24분 6초

[지휘본부] 망루 상황이 어떠냐고, 망루.

7시 24분 18초

[지휘본부] 옥상에 집중적으로 물포를 사용해요.

7시 24분 28초

[현장] 옥상 망루에 불길이 상당히 강합니다. 전부 물포 옥상 망루 앞쪽을 향해서 집중적으로 투하하도록.

7시 25분 6초

[현장] (다급한 목소리로) 물포 빨리 썩!

7시 25분 17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7시 25분 24초

[현장] 그까지는 확인이 안되는데요.

7시 26분 50초

[현장] 지금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는 소화가 안됩니다. 소방이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거는 물로는 소화가 안됩니다.

7시 27분 5분

[지휘본부] 농성자들 무력화하고 검거한 게 전부 몇 명이에요.

7시 27분 10초

[현장] 남자 13, 여자 3명입니다.

7시 27분 15초

[지휘본부] 총 30명인데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7시 27분 20초

[현장] 옥상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7시 27분 59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옥상 끝단에 농성자로 보이는 보이는 두 사람 빨리 구호를 해야 돼.

7시 28분 13초

[지휘본부] 컨테이너를 대서 구호해라. 특공대장, 옥상 끝단에 있는 두 사람을 빨리 구호해라.

7시 28분 28초

[현장] 특공대에서 환자 1명을 호송중에 있습니다.

7시 31분 18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옥상에 4명이 보이는데 위험해요, 신속히 위치를 해야겠어.

7시 32분 17초

[지휘본부] 밑에 그물망, 안전매트, 경력을 이중 삼중으로 까세요, 옥상에 4명이 투신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비하세요.

7시 32분 39초

[지휘본부] 옥상에 농성자 4명이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혹시 투신할 수도 있어요. 그 밑에 그물망 안전매트, 기동대, 기동대들이 받을 수 있는 조치까지 다 하세요.

7시 33분 5초

[현장] 지금 현장에는 소방관들이 투입돼 있고요, 바깥에 4명 2단에 17명 총 21명인데,

7시 33분 35초

[지휘본부] 특공대장은 옥상에 있는 농성자에 대해서는 설득과 진압을 병행하세요.

7시 34분 7초

[현장] 2단 무력화 17명 통로 확보 했기 때문에 전부 호송차로 호송시키겠습니다.

7시 36분 10초

[지휘본부] 바깥쪽 농성자 4명 , 무력화하고 있는 21명 총 25명이라고 상부보고했는데, 상부보고됐던 30명에서 부족한 9명은 어떻게 됐는지 상부보고하세요.

7시 36분 36초

[현장] 애초에 30명이라고 상부보고됐던 것은 농성자들이 건물 진입할 때 주변 주민들 진술을 종합한 것으로 정확한 인원은 아니었습니다. 면밀히 명검확인해서 상부보고하겠습니다.

7시 36분 52초

[지휘본부] 옥상에 있는 탐 안에 농성자들이 들어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옥상에 화재가 나고 있는 망루 내 안에 농성자들은 없었는지.

7시 37분 13초

[현장] 확인해서 상부보고하겠습니다.

7시 39분 12초

[지휘본부] 소방차를 전부 동원하세요. 동원해서 집중 물을 공급해줘야 돼.

7시 39분 21초

[현장] 알았다. 물을 너무 많이 뿌려도 문제된다고 해요, 건물이 노화돼 갖고. 하여튼 불은 소방서에서 끄도록 하겠습니다.

7시 41분 43초

[지휘본부] 국과수 인원은 검거자 연행이 완료 됐으면 건물 내 안 수색 지급으로 실시하고 수색이 완료되면 건물 바깥으로 신속하게 나오도록.

7시 42분 2초

[현장] 남자 15명 여자 3명 18명 연행 완료했습니다. 지금부터 수색하고 철수하겠습니다.

7시 43분 42초

[현장] 추가로 환자 2명 연행했습니다.

7시 46분 10초

[지휘본부] 에어매트 지급으로 설치해요. 소방 에어매트.

7시 47분 26초

[현장] 후방에선 건물 주변 구조가 하단에 유리 파편이 많기 때문에 에어매트 설치하면 바로 터진답니다. 설치가 어렵다고 합니다.

7시 48분 11초

[지휘본부] 일반 매트 깔고 그 위에 에어매트를 설치할 지급으로 하세요.

7시 52분 29초

[현장] 옥상에 있던 농성자 3명 특공대 넷이 안전하게 설치하고 포박.

7시 52분 56초

[지휘본부] 옥상이 완전히 진압된 것 같은데, 망루 무너진데 수색을 완전히 좀 해보세요.

7시 53분 57초

[지휘본부] 마지막으로 정리 수색을 잘 하고 채증을 잘하도록 그렇게 설치해요.

7시 54분 39초

[지휘본부] 특공대장, 망루가 불에 탔는데 망루 안에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옥상에서 최종 검거된 농성자 3명 지급으로 점검 확인해서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점검 확인해서 상부보고해주세요.

국과수 부검 결과서

양희성 4p

윤용현 5p

이성수 5p

이상림 5p

한대성 5p

총 24p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분석 결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2009. 2. 4

### ■ 의뢰 사항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5인의 유족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의 부검감정서 분석을 요청해옴에 따라, 5인의 부검감정서 사본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음

### ■ 분석 결과

#### 1. 희생자 5인의 부검 결과 요약

##### 가. 윤용현

-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 나. 이성수

- 두개골 골절, 오른쪽 대퇴골 및 하퇴골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다. 이상립

- 하지골 골절 있음, 두개골 외판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가슴 정중앙 앞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 라. 한대성

- 양쪽 손가락과 오른 손목 소실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허리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 마. 양희성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우측 종아리 앞 부위에 피하출혈 있음

#### 2. 결론

가. 희생자 5인의 사인은 화재사(火災死)로 추정됨

○ 국과수의 부검소견으로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불에 탔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보임

나.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음 :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골절 등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화재사의 특성상 외력에 의한 것인지 화염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

○ 소량의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구타에 의한 것인지 기타 물리적 충격 등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

○ 화재로 손실된 부위가 있어 이 부위의 외력에 의한 손상유무는 시신 부검으로 판단이 불가함

다. 추정되는 화재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1. 본 분석은 부검감정서 사본의 기록과 사진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한계가 있음

2. 부검결과서는 5구의 시신이 각각 다른 의사들에 의해 부검되었고 그 시간이 사체수습 직후로 보임. 통상 부검이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임.

## 1월 19일 상황에 대한 증언

### 1. 남일당 건물 건너편 상가 정씨 (녹취)

- 처음부터 다 목격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출발하기 전부터 사람들은 올라가 있었으니까요

- 몇시에 보셨어요?

8시 4~50분쯤에 오픈을 하거든요 그때쯤에 이미 그 분들하고 대치상황이었으니까

- 어디서 대치중이었나요?

철거민들은 옥상하고 4층하고 대치하고 있었고, 경찰들은 건너편 권투도장, 풍산체육관 옥상에서 물대포를 쏘고 있었고, 밑에서는 전경들하고 건물 주변으로 대치하고 있었고,

- 옥상에서 물대포 쏠때, 용역은 없었는지

멀리서 봤을 때는 나중에 안거지만, 그때는 전철연만 올라가 있는 줄 알았다.

- 건물 밑에는 없었는지?

상황이 벌어진 다음이라 누가 올라가 있는지는 몰랐고, 그때는 유리가 다 안깨져있었고, 안이 보이긴 보이는데, 빈가라서 다 열려져 있는 상황이고, 대치중이어서 일부는 닫아 놓고 일부는 열어 놓은 상황. 위에서 옥상에서 제일 많이 한거다.

- 경찰들이 권투도장 옥상에서 물대포 쏠때, 경찰 말고 하얀 헬멧 쓴 사람 있었나? 용역과 경찰 모두 검은 옷인데, 다른 점은 용역은 하얀 헬멧을 쓴다.

하얀헬멧을 쓴 사람도 있었다. 있기도 하고 권투도장 옥상에는 경찰하고 전경들이 꽤 있었다. 물대포 쏘는 사람들이 있었다.

- 물대포 쏜 쪽에 경찰, 전경 다 합쳐서 몇 명이나 있었는지?

다 합쳐서 4-50명정도 되었다. 총 인원이 3,40명 혹은 4,50명정도 되었다. 주변은 제외하고 옥상만 그렇다. 이쪽 편, 농성자들은 한 3-40명 정도 된다고 들었다.

- 밑에는 경찰차들이 깔려 있고 경차들이 많았고, 하얀헬멧 쓴 사람은 정확히 기억이 안나는지?

확실히 있었지만, 시위하는 건물에 있었는지, 아니면 건너편 물대포 쏘는 건물 옥상에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 첫날 아침에 화재가 있었다고 하는데?

치과건물 3층에서 용역직원들이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 직접본건 아니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

라. 불난 게 오전 10시 반 경이다. 용역들이 불을 지폈다고 들었다. 철거민들이 올라가지도 내려오지도 못하게끔 만들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들었다.

- 혹시 장안약국 길쪽 상가 있고, 권투도장 맞은편에 상가가 있는데, 그쪽에서 화재난거 봤는지? 이쪽에서는 잘 안보인다. 뒤편에서 연기나서 위에서 밑으로 쏘는 건 봤다. 골목길이 있는데, 골목길 그 쪽에서 연기가 올라왔다. 10시 반경에서 11시 사이에, 금방 꺼졌다. 3층에서 화재 난거는 꽤 오랫동안 유독가스하고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

- 소방차는 안왔나?  
소방차가 처음 물대포를 쏘서 유리창이 많이 깨진거다. 11시 2-30분에는 도로 쪽에 소방차가 와서 위에서 화염병도 던지고 벽돌도 던지고, 골프공도 던지고 그래서 소방차가 파손이 돼서 뒤로 빠져 10분 정도 대치하다가 뒤로 빠졌다.

- 주로 던진 것이 ?  
벽돌, 화염병, 골프공을 소방차를 향해서 많이는 아니고 다 합쳐서 십여개 정도 된다.

- 들어가서 끄질 못하고 도로 나왔다는 건지?  
횡단보도 조금 뒤편에서 차량이 들어온거다.

- 그럼 불은 어떻게 꺼졌나?  
권투 도장 옥상에서 건물 안쪽으로도 쏘고, 옥상에도 쏜거다. 화재도 끄고 사람도 끈거다. 물대포가 좀 췌다. 날도 춥고 유독가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겠다라는 걱정도 많이 했다. 19일날.

- 유독가스가 좀 심했나?  
좀 많이 심했다. 여기까지 냄새가 난다. 3층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왔다. 3층에 지금 하얀 플랜카드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나서 위로 솟구친거다.

- 불났을 때, 3층에 사람이 있었나? 하얀헬멧을 쓴 사람들이었나?  
사람은 있었는데, 하얀헬멧인지는 모르고, 용역이 불을 냈다고 들었다.

- 어느 정도 지속되었나?  
화재나서 끄는 데 까지 한시간 조금 못 미치는 시간이 걸렸다.

- 물대포를 많이 쏘서 주변 사람들이 위험해 보였다고 하는데?  
물대포 굉장히 많이 췌고, 그날 엄청 추운 날이었는데, 그 상태에서도 물대포 많이 쏘고, 옥상이기에 그 사람들은 피할 곳도 없고, 실제로 어떤 사람은 물대포 맞아서 쓰러지는 것도 보았다. 그 정도면 그 위에서 추위로 죽어간 사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 11시에 있었던 화재 말고 또 다른 화재가 있었는지?

그 이후에는 3층에 화재가 나면서 뒤편 골목에서 불길의 있는지, 그 쪽으로 물대포를 쏘더라. 정확하게 보인 것은 아닌데, 호스 방향이 그 쪽이었다. 유독가스 올라 올 때. 그거 말고는 또 없다.

- 언제까지 보았는지?

밤 12시까지 일을 했기 때문에 보았고, 그날 저녁 10시쯤에 전경들하고 경찰들이 와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우리 옥상으로 올수도 있으니 문단속 잘하라고 했다. 퇴근하면서 다음날 새벽에 무슨 일이 터질 것 같다고 예상을 했다. 그 이유는 그 날 위에 사람들이 계속 대치하고 있었고, 전경들이 첫날은 많이 들어왔다가도 많이 빠졌다. 저녁 9시, 10시 경에 많이 빠졌다. 남아있는 차량이 얼마 안되었다. 아무래도 야간에 낮에 화염병을 던졌으니까 새벽에 한바탕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 낮에도 아까 말하던 화재 이후에 계속 던지고 싸우고 그랬는지?

아침 빼고 나중에는 뭘 던지고 그런 건 없었다. 통행에 지장은 있었지만, 그다지 위협적이고 그런 것은 첫날은 별로 없었다. 단지 경찰들이 반대쪽 차선은 통제시키고 하는 바람에 위에서 뭔가 던질까바 안전상 시민들을 피해시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날 첫날은 그다지 아침 빼고는 오후3-4시경까지는 그냥 대치하다가 나머지 저녁 오후 늦게부터는 소강상태였다.

- 화재 말고 누가 다치거나 차가 부서진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지? 상가를 향해서 던져진 것이 있는지?

첫날은 들은 게 없다. 여기까지 골프공 날라와서 셔터문을 내리고 있었는데, 골프공을 막 던지게 아니고 한 개가 여기로 날라와서 셔터문을 내리고 있었다. 한시간 넘게 오전 12시까지는 셔터문 내리고 있었다. 오후는 소강상태이다. 많이 날라 오지는 않고 골프공 한 개 뿐이다. 보통 화염병 던질 때는 이 방향(남일당 건물 건너 상가쪽)보다는 저쪽 차선 쪽(남일당 건물 앞)으로 몇 개 안 던져 졌고, 나머지는 저쪽 장안약국 골목길로 바닥으로 던져졌다.

- 도로 쪽으로 던져진 것은 사실상?

몇개 안되는 거다.

- 경찰이 있는 쪽이 그쪽이라서 그쪽바닥에 떨어진거지 이쪽으로 오는 건 그닥 없었다는 것인가?

많지는 않았다. 던져봐야 10여개 밖에 안되었다. 화염병이.

- 화염병말고는 본게 없는지?

벽돌같은 거 한 두개 던지 거 말고는 없다.

- 구슬, 염산병은?

그런 것은 본적이 없다.

- 기억에 남는 것들은?

그날은 특별한 것은 없고,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심했었는데, 4시, 5시 반부터 치열하게 했다는데 보지는 못했다.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출근했다.

- 옥상에서 쏘다는 물대포가 소화전인가?

소방호스 같은 걸로 쏘는거다.

- 물대포 차량은 있었는지?

그거 말고 소방서에서 쓰는, 살수차가 있었다.

- 영업에 손실은?

명절이라 그런 것은 그닥 없다. 저희는 워낙 명절시즌이라 그 부분에서는 피해는 없다. 심리적으로 와 닿는 것이 있다. 이 일이 마무리 되면 이곳도 재개발 지역이라, 여기는 2구역인데, 용산역 전면개발이라고 해서 한 구역당 200명이 넘으면 상가법상 임대주택이 주어지는데, 그것을 해주기 싫어서(분할하기 위해서) 조합에서 임의대로 나누었다. 1-5구역까지 나누어서 지금 개발이 추진되는게 4, 2, 3구역이다. 저희 쪽에서는 건물명도까지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이다. 소액의 보상비만 지급을 하고, 자기 임의대로 수억원대 변호사 선임해서 저희 나와있는 세입자들을 그냥 강제로 내보내려 하고 있다. 지금 법원까지 명도소송하러 갔다왔다. 2/11 우리는 명도소송 때문에 "합당하지 않다, 이걸 헌법에 위반되는 위헌이다."라는 서류를 제출했다. 3/11로 연기를 했다. 그래서 저기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생긴다. 이곳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안쪽에 들어가보면 웬만한 건물은 다 헐고 거의 공터가 되었고, (상가가)몇 개 안 서있다. 주위환경이 저렇게 되다보니 상권이라는게 서서히 죽어간다. 저게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이러는데, 여기도 영향을 꽤 많이 미친다. 사람들이 먹을 공간이 없으니까 다른 공간으로 옮기고, 자연적으로 근처에서 영업하는 사람은 거기에서 오는 영업 손실이 꽤 크다.

- 여기는 임대를 얻어서 하는건가?

그렇다.

- 19일 상황을 말씀해 주셨다. 경찰 쪽에서는 그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민들 안전상에서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위에서 있는 사람들도 시민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다.

- 시민이나 행인들이나 지나가는 차량에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다는건가?

그런 의도는 보이지 않았다. 19일 첫 발생하고 나서 오후에 소강상태라고 했는데, 협상을 한다던가, 방송을 해가지고 "요구조건이 뭐냐" 그런 취지조차 경찰 쪽에서 없었다. 단지 방송차량 가져다 놓고, 저희 가게 앞에서 시민들에게 위협하니깐 되도록 피해다녀라는 이야기만 했다. 저 위에 철거민들에게는 방송자체를 안했다. 그래서 왜 저런 이야기를 안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 신용산 치과는 그때 영업이었나?

이 건물은 죄다 비어있었고, 지하에 J&B라는 바가 있는데 그 집이 그날 영업을 하고 있었던 거 같은데, 그 전날 그 앞에 남일당 건물 앞에 모닝 차가 한 대 서있었고 그 상태에서 계속 대기중이었다. 그 차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 그래서 경찰관에게한테 "저 차도 치워야 하는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경

찰이)“누구건지도 모르는데”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옆에 세계일보기자도 있어서, 금색 모닝이었던 것 같은데,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들은 척도 안하고 개의치 않아 했다.

- 약국골목에 깡통집이라고 있는데, 그 집은 원래 화재가 안 났었나? 영업을 계속 했었나?  
해골그림이 그려져 있는 길로 봐서, 다 철거를 하고 용역들이 그렇게 해놓으니 영업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장안약국에서 그 다음 골목까지 영업을 한 집인가, 두 집만이 영업을 했다. 치킨 집은 영업을 했다. 치킨 집만 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영업을 하지 않았다. 영업을 하는 집도 계속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오늘까지 할지, 내일까지 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영업을 한다.

- 19일날 아침에 출근했을때, 교통흐름은 어땠는가?  
그때는 엄청 많이 막혔었다. 집이 신림동인데, 여기까지 오는데 한 시간 3-40분 정도 걸렸다.

- 이 앞에 교통상태는 어떠한가?  
저쪽 차선은 한차선만 통행시키고, 이쪽 차선은 거의 경찰차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왕복 3차선정도만 통행시켰다. 이쪽차선도 인파들하고 경찰차하고 취재차량들이 있었다.

- 그럼 경찰차들이 한차선 자리 잡고 취재차량도 있었던건가?  
왕복 3차로 정도만 통행시켰다. 한강대교 방향으로 2차로, 서울역 쪽으로 한차로만 시켰으니 막혔다. 서울역방향으로 처음에는 2차선 통행시키다가 나중에는 1차선만 시키더라. 8시전부터 그랬던 것 같다. 아침에 빨리나오는 날은 25분이면 도착하는데, 1시간 2-30분이 걸렸으니.

- 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도로상으로 날라오는게 있었나?  
저 맨 끝에 4차선까지는 화염병이 떨어졌다. (남일당 건물앞)

- 그건 경찰차를 향해서 던진건가?  
그렇다. 경찰차, 물대포, 소방차가 있었으니까.

- 경찰이 위험한 상황이라고 했는데, 그 위험한 상황이라 경찰이 조치를 취한 게 있었나?  
시민들 약간 통행을 금지시키고, 반대편은 완전히 금지시켰다. 이쪽은 인파들이 굉장히 많았다.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 저쪽까지도 절반은 통행금지시키고, 이쪽까지는 사람들 못다니게 했으니깐...

- 통행금지 상황이 오전에 그랬는데, 오후에도 그랬나?  
오후에는 일부만 다니게 했다. 오후에는 소강상태라서 통제 하에 다니게끔 했다.

- 시민들이나 일반 행인들, 일반 차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나?  
그런 건 없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저 위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서 저렇게 까지 시위 말고 방송상으로 시위한 것은 몇 개월이 되었다. 전철연이라는게 이 동네 들어와서 한 게 작년 하반기쯤에는

주둔해서 있었다. 8월 넘어서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다. 오후 1시반에서 2시되면 항상 노래를 틀어놓는다. 굉장히 크게 틀어놓는다, 동네사람들이 다 놀랄정도로. '뽕밭에 돼지가 빠진 날' 그집앞에서 점심을 먹고 노래를 틀고 동네를 한 바퀴 순회했다. 그 노래를 우리도 외울정도였으니깐. 그 노래 틀고 다녔으니까, 몇 달동안 그렇게 다녔으니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다. 그 사람들이 왜 시민들에게 던지고 그러겠느냐? 물론 전철연 시위한 사람들이 잘했다는 것은 아닌데, 저 사람들도 저렇게 하면 안되는건데, 경찰 쪽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너무 강압적으로 진압을 한 거다. 제일 의아한 것은 '경찰이 왜 협상을 안했는가'이다. 여기서 방송으로 저 위에 사람들에게 확성기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 자기네끼리 속닥속닥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이라던가 그런게 없었다.

- 19일 오전에 해산명령은 어떻게 했나?

그런 말은 못 들었다. 안에 있어서 그런지 그런 말은 듣지 못했다. 여기 안에 있으면 그 만큼 크게 이야기 했으면 들었을텐데, 여기까지 못들었다.

## 2. 남일당 건물 건너편 상가 최씨 (녹취)

- 몇 시에 출근했나?

오전 7시 40분 출근

벌써 올라가 있었고 소방차는 장안약국 앞에서 물대포를 쏘고, 또 하나는 풍산체육관에서 호스로 쏘았다. 망루를 설치하는데 그걸 못하게 썼다.

물대포를 쏘는 빨간 소방차를 향해서 화염병을 1번 던졌다. 새총으로 돌을 쏘고.

- 돌은 얼마나 썼는지?

돌을 얼마정도 날렸는지 잘 모르겠다. 물대포 쪽으로 새총을 썼다. 건물 밑으로는 접근을 막기 위해 건물 아래로 돌을 떨어뜨렸다.

기아자동차 건물있는 곳부터 통행을 통제시켜 사람들이 남일당 건물 근처로 다니지 않았다.

(경찰이)버스를 정류장을 정차않고 통과시키려 했으나 사람들이 정류장에 내렸다.

- 건물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이 경찰인지, 용역인지?

진입하는 사람이나 옥상에 있는 사람 중 하얀 헬멧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나?

하얀 헬멧을 쓴 사람들이 있었다. 남일당 건물 앞에서 들어가려는 사람들은 하얀 헬멧을 쓰고 있었고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는 잘 안보인다.

권투도장 옥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고 헬멧을 안썼다.

- 건물당시에 철거민과 용역이 대치했나?

그것은 구분하기 어렵다. 용역이라고 하더라도 검은 옷을 입었으면 경찰하고 구분하기 어렵다.

- 건물 내 상황은 어땠는지?

내부 상황은 여기서 안보였다. 건물 입구 쪽으로 진입하는 것과 큰길 쪽에 있는 사람들은 보여도 건

물내부나 복도 상황은 볼 수 없었다. 첫날은 2층,3층 창문은 그 당시 안 깨져 있었고 다음 날 특공대가 들어가서 켜다.

다음날 아침7시경에 봤는데 처음에는 검은 연기가 올라오다가 불이 확 올라왔다. 컨테이너가 2번째 접근할 때부터 봤다.

- 19일 첫날 건물 안에 불을 피운 것은 봤는지?

그건 안보였다. 연기가 안 나왔다. 첫날 저녁 7시 반에 퇴근했다.

- 인근지역에 불이 난 것을 보았나?

골목 모서리에 있는 집이다. 동막골이다. 아침 10시나 11시 정도인거 같다. 불꽃은 아니였고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소방차가 뒷골목으로 와서 불을 껐다.

- 화재가 났을 때도 살수는 계속 되었나?

살수는 계속했다. 망루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

- 그리고 또 다른 화재가 있었나?

거기밖에 없었다. 19일 오전에 있었다.

- 살수는 얼마나 진행되었나?

낮에도 계속 되었다. 날이 추웠는데 조금 기다렸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새벽에 진압이 들어가서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했다.

- 19일 오전에 길거리로 마구잡이로 던진 게 있었나?

화염병 한번 던진 것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있는 길거리로는 안 던졌다.

경찰 접근을 막기 위해 돌을 던지기는 했어도 사람들이나 차에 그런 것은 없었다.

파편이 튀긴 것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었다.

- 주위에 차나 사람이나 피해를 봤다는 소리를 들었나?

그런 것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살수차로만 집중적으로 돌을 던졌다.

-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있었나?

오후에도 계속되었다. 오전에는 여기 있었고 1,2시쯤 외근 나갔다가 5시 좀 넘어서 돌아왔는데 그때는 소강 상태였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다.

- 통행하기에 위험했나?

그쪽으로 다닐 생각은 안했다. 계속 통제해서 다니지 못했다.

다닌 사람들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경찰인지 아닌지는 구분하기 어려웠다.

- 하얀 헬멧을 쓴 사람들이 계속 있었나?

그렇다. 10명 내외의 사람들이 계속 접근하려고 했다. 낮에(외근 전에), 저녁때(외근에서 돌아와서)에도 하얀 헬멧 쓴 사람들이 접근하려 했다.

- 몇 명 정도 있었는지?

접근을 한 건 10명 안팎정도

- 주로 날라온 것은 뭐였는지?

화염병 1개와 주로 돌이었다.

- 가게 셔터를 잠깐 내렸었다고 했는데?

혹시 튀어서 깨질까 하여 앞문만 남기고 닫았었다. 저녁 7시반쯤인가 가게 닫고 갔다.

20일 새벽에 진압하는 과정에서 건너편에서 보던 사람들이 울고 사람이 있다고 외치고 뛰쳐나가려 하니까 경찰들이 방패로 막고 패고 짓밟고 그러는데 마음이 안좋았다.

- 19일 행인에게 무작정 던졌다고 하는데?

첫날 조기진압의 이유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신뢰, 신빙성이 안간다.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첫날 돌이 날라온 것도 살수차로 물을 뿌리지 말라고 한번 던진거, 화염병도 1번 던졌는데, 건물 아래로 접근을 막으려고 돌 떨어뜨린 것밖에 없지 그렇게 마구잡이로 한건 아니었다.

### 3. 남일당 건물 뒤편 골목 상가주민 A씨 (녹취)

- 19일 상황이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상황이었는지?

19일 새벽 5시반정도에 시끄러워서 깬데 경찰차가 와있었고 용역이 20명 정도 있었다. 경찰이 위험하다고 용역보고 나오라고 하는 상황이었다. 용역이 길가에 모여 있어서 옥상에서 골프공을 던지는 상황이었다. 이때는 통제를 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망루를 지으려고 뼈대가 세워져 있었고 벽을 만들고 있었다. 지붕은 없었다. 새벽 5시 30분정도였다. 일어나서 보니 용역이 늘어났고 길가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고 병력이 많이 늘었다.

- 그 상황에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아침에 경찰은 통제만 하기 시작했다. 위험하니까.

망루를 못짓게하기 위해 물을 계속 썼다. 아침부터 물대포를 썼다. 9시30분경

- 19일 실제로 철거민들이 공격을 했는지.

망루 지을 때 물을 쓰니까 공격을 했다. 우리네는 지나가도 골프공을 쏘거나 맞거나 하지 않았다. 용역들이 있으면 던지고 없으면 안 던지고. 경찰들은 뒤에 물러나있었다.

-실제로 왔다갔다 다녔다는 것인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을 다녔다. 애들도 그리로 다녔다. 절대로 애들한테 벽돌 던지고 그러지 않았다.

- 살수는 얼마나 지속됐는지..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계속 쏘고, 점심때만 소강상태였다. 12시부터 1시는 소강 오전 10시나 11시쯤에 불이 나서 껐다.

- 화재가 난 곳이 동막골인가? 화염병으로 불이 난 것을 보았나?

동막골이다. 연기가 나니까 불부터 꺼야 한다고 했다. 화염병으로 불이 난 것을 본것은 아니지만 불이 났으니 화염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살수차가 불을 꺼야지 망루에 쏘냐, 불 번진다 꺼라"고 요구했다. 보다못해 골목에 있는 소화전을 우리가 끌어다 썼다.

- 옥상에서 살수하던 것을 화재가 난 곳으로 돌렸나?

나중에 소리 지르고 하니까, 불부터 꺼라 하니까 물줄기를 돌려서 불을 껐다.

- 용역에 대한 공격은 어땠나?

용역이 오니까, 위에서 새총을 골프공을 쏘고 용역들이 그걸 다시 망루로 던졌다.

- 화염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나?

화염병도 봤는데, 날아오는 화염병은 보지 못했고, 떨어져있는 것만 봤다. 우리가 깨져서 잔해가 있었다. 남일당 부근에 우리가 깨져있었는데 아마도 유리창이 깨진 것이었을 것 같다. 화염병이나 불타는 것은 못 본 상황이다. 오후에는 휴전상황이었다. 불이 나니까, 화염병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다. 동막골 화재 이후에는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

불을 끄라고 했는데 안 끄고 망루에만 물을 줬다. 소방차는 가까이 들어오지 못하고 물을 껐다. 그 외의 화재는 없었다. 낮에는 아무 일이 없었고, 밤에는 용역이 남일당 3층에서 불을 질렀다.

- 용역이 밤에 3층에 피운 불은 어땠나?

연기가 매캐했다. 까만 연기가 4층으로 올라갔는데 일부러 연기를 올리려고 그런 것 같다. 소방관이 끄려고 했는데 용역이 끄지 못하게 해서 못 껐다. 옥상에서 불 끄라고 요구했다.

소방관이 안 꺼서 주민들과 함께 항의해서 불을 껐다. 소방관에서 방화범으로 용역을 잡으라고 했지만 사법권이 없어서 잡지 못한다고 했다.

- 1시 이후의 상황은?

아침처럼 그런 것은 아니고 좀 뜸했다. 용역도 거의 안보였다.

오후에는 물대포도 덜했다.

낮에는 우리네가 통행을 했다. 배달을 하는데 경찰이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나가고 들어오는데 애먹었다. 남일당 주변으로 왔다 갔다 했다.

- 동막골 화재는 어땠는지?

지붕에 불이 조금 붙은 정도

- 다른 화재도 보았나?

없었다.

- 낮에도 용역들이 불을 질렀나?

낮에는 없었고 동막골에 화재를 보러 갔을 때 용역들이 남일당 건물 3층 안에 있었다.

용역이 3층에서 돌을 던져서 철대위위원장 가게인 레아호프 유리창을 다 깨뜨렸다. 이상립씨 가게.

- 용역들 복장은 어땠는지?

용역은 헬멧을 하얀 것을 쓰고 있었다. 현암, 호람 사람들이 쯤 있었다. 낮이 익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 경찰들이 밀고 들어올때 골목으로 현암소장하고 용역들이 나왔다. 새벽에 철거민들이 올라가는 걸 보기는 했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못막았다고 했다.

- 그 용역들은 늘 있는 사람들인가?

그렇다. 날마다 밤에 보초를 돌았다.

- 도로나 행인에게 위해가 있어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했는데?

경찰들이 물대포를 쏘서 길에다 돌을 던진 것이지 도로나 시민들에게 던진 것은 아니었다. 경찰과 용역에게만 했지 시민들에게는 하지 않았다. 화염병 던지는 것은 못봤고 돌은 여기저기 떨어져있었다. 행길로 화염병이 떨어진 것은 진압작전때만 있었던 것이다. 병깨진 것은 보지 못했고 돌 깨진 것만 많이 봤다.

- 그 밖에 구슬, 염산병 등을 봤나?

구슬도 몇 개 봤다. 염산병은 보지도 못했다. 19일날은 병이 깨진 것은 거의 못봤다. 대부분 돌이었고 구슬과 골프공만 조금 있었다. 유리 깨진 것은 봤지만 병 깨진 것은 전혀 못봤다.

- 차량이 파손되었다는데?

차량이 파손되었다는데 본적은 없다. 전철연 차량은 용역이 다 부셨다. 골목 사거리에 차가 한 대 주차되었는데 멀쩡했다. 1톤 트럭인데 아무런 흠집없이 있다가 차량을 밤에 뺐다. 용역들이 밤에 불냈을 때 뺐다. 낮부터 계속 있었지만 파손은 전혀 없었다.

- 한강로 대로변 상황은 보았는지?

우리는 거기로 가지 않았다. 한번 나가면 들어오기가 경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아이들 데리고 치과도 가고, 유치원도 가고, 학원도 갔다.

- 남일당 건물에 영업하는 곳이 있었나?

J&B라는 바만 영업했다.

19일 밤에 새벽 4시에 특공대로 진압한다는 말을 들었었다. 동네 건달들이 용역 일을 한다. 용역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녔다. 컨테이너 신고가서 진압한다라는 말을 했었다. 소문은 낮부터 돌고 있었다.

기자들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밤새도록 있었다.

- 경찰 진압의 명분은 무고한 시민의 피해 때문이라는데?

무고한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했다는 경찰의 주장은 명분이 약하다. 우리들은 계속 돌아다녔고 피해사항이 없었다. 하다 보니 실수로 우연히 깨지거나 금간 경우는 있어도 고의적으로 던진 적이 없었다.

#### 4. 남일당 건물 뒤편 골목 상가주민 B씨 (녹취)

- 19일 차를 언제 세워 두었는지?

19일 전에 남일당 옆 주차장에 세워뒀다가 차 빼온 시간이 5시20분정도였다.

침에는 경찰차가 앞에 있었는데, 가게에서 자니까, 불이 깜박거렸었다. 자고 있는데,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밖에서 싸우는 걸로 생각을 했었다.

포장마차 아저씨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를 빼라고 해서 알았다. 이때 위에서부터 던졌다. 경찰차가 4대 정도 있었고, 벽돌 같은 것, 오물쓰레기등도 사방으로 던졌었다. 왜냐하면 4,5층에서 자기네서 망루를 만들려는데 깨진 것들이 있으니 던졌다. 돌이 아니라 잡다한 쓰레기들을 던졌다.

나중에 보니 용역애들이 막을려다가 몇 명 안되서 못막았다. 접근을 못하게 던진 거였다. 차를 빼기 위해 '아저씨 잠시만요'했더니 4,5층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보고 던지지 않았다. 여자고 차를 빼려가려니까, 멈춘 거 같다. 큰길로 차를 빼서 오니까, 장안약국부터 우리 골목 입구까지 경찰기동대차, 봉고차들이 쭉 있었다. 그때가 5시 정도였던 거 같다.

그래서 상가 앞 골목으로 와서 주차했다.

- 주차하고 난 상황은?

차를 대고 나니까 구슬과 골프공이 용역만 보이면 바로 던지기 시작했다. 용역이 불을 피워서 못 피우게 했다.

- 살수는 언제부터 했나?

살수는 9시 이후에 했다. 용역이 경찰방패를 가지고 있어서 경찰인줄 알았다. 시장건물 옥상에서 물을 쏘기도 했다. 경찰이 아닌 것 같은데...경찰방패 비슷한 거 같고 있었는데. 경찰인지 용역인지...얼굴은 안보여서 정확히 모르겠다.

- 차는 언제 파손되었는지?

19일인 것 같은데, 아침 아니면 밤일 것 같다.

용역들이 많이 있던 곳이라 맞았을 것 같다. 아침과 밤에 주로 던지고 낮에는 안 던졌다.

#### 5.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씨 증언 (메일로 보냈음)

제가 용산 현장에 처음 간 건 19일 오후 5시쯤이었습니다. 경찰과 철거민이 대치하고 있었고, 특별한 충돌은 없었습니다. 금방 날이 어두워졌고, 기자들은 밤에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을 거라는 정보를 주고 받았습시다. 건물 앞 도로에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차들이 지나다녔고 특별한 위협행위는 없었

습니다. 9시쯤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용산 현장을 찾은 건 이튿날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경찰은 아직 진압작전을 펼치지 않는 듯 보였으나, 서서히 진압을 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망루 건너편 도로에는 철거민 동료들이 밤새 추위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눈에 띄게 진압움직임을 보인 건 새벽 5시 30분 무렵이었습니다. 경찰의 움직임이 포착되자, 농성철거민들이 화염병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쪽으로 화염병을 던졌죠. 도로는 매우 한적했으므로 화염병에 맞은 사람이나, 차량은 없었습니다. 버스정류장 쪽으로도 화염병이 날아왔으나 이곳 역시 맞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건 이 시점입니다. 경찰은 건물앞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 듯하더니, 이내 일반 차량을 막지 않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을 건물 앞 도로로 통과시키더군요. 만에 하나 이 차량에 화염병이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차량을 진입시킨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성 철거민들은 일반차량이 도로 앞으로 지나다니자 잠시 화염병 투척을 중지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물대포를 쏘기 시작한 건 6시가 조금 넘어서입니다. 물론 이때부터 차량은 완전히 통제되었습니다.

제가 두번째로 납득하기 어려운 건, 본격적인 진압작전에 돌입하면서, 건물 아래 추락에 대비한 충격 완화장치가 거의 전무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어 매트리스는 진압작전 내내 깔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망루가 다 타버리고, 작전이 다 끝난 다음에야 매트리스를 깔았습니다. 건너편 옥상에서 이걸 지켜보던 기자들이 "이제야 매트리스를 깔고 있다"고 어이없는 대화를 나누었으니까요.

6시무렵부터 본격적인 진압작전이 시작되면서 철거민들의 저항도 격해졌습니다. 화염병과 물대포가 난무하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6시 30분께 : 경찰의 진압 컨테이너가 실려옴. 농성 철거민이 컨테이너 운반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잠시 불이 붙었으나 이내 소화. 건물 1층으로 경찰 진입.

6시 40~7시 10분께 : 경찰의 진압 컨테이너가 대형 크레인에 묶여 망루 위로 운반되기 시작. 컨테이너에서 내린 경찰특공대원들이 건물 옥상으로 진입. 치열한 공방전. 한편 건너편 철거민 동료들은 경찰의 고착작전으로 포위된 채 움직이지 못함.

7시 10분 : 경찰의 진압작전이 거의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경찰은 건물을 거의 장악하고, 마지막 망루를 진압하기 위해 물대포를 집중함. 그러는 한편, 컨테이너를 망루와 충돌시키기 시작. 수차례의 충돌이 발생하였음. 건너편에서 촬영하던 기자들도 "저러다 큰 일 나겠다"는 얘기를 주고받음.

7시 20분 : 망루 왼쪽 아래쪽에서 화염이 치솟음. 1분도 안돼 거대한 불길로 확산. 경찰이 있는대로 물대포를 쏘니 잠시 수그러들며 검은연기를 내는듯하다가 다시 거대한 불길이 치솟음.

7시 25분 : 가장 큰 불이 치솟음. 옥상에 진입한 경찰들은 망연자실하게 망루의 화재를 지켜봄.

7시 26분 : 망루가 무너짐. 불길을 전혀 잡지 못함.

7시 30분 : 경찰 컨테이너에서도 소화액 분사.

7시 40분 : 화재 진화

7시 54분 : 농성자들 연행, 그제서야 건물 아래 매트리스 깔기 시작.

8시 무렵 : 사실상 작전 종료.

위의 진술은 사건당시 건너편 옥상 건물에서 진행과정을 지켜본 사실 그대로입니다. 일부 제가 볼 수 없었던 시야각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당일의 촬영사 진과 시간을 대조하면서 확인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진술은 사건당시 건너편 옥상에서 촬영을 했던 다수의 사진기자들도 함께 증언할 수 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 6. 장안약국

- 19일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
- 약국 골목에서 화재 있었음
- 약국에는 화재가 나지 않았고 약국 앞으로 화염병이 한번 떨어졌다.
- 오후 1-2시경 가게 문을 닫음.

#### 7. ○○매장

- 19일 오전 10시30분에 영업을 시작
- 오전에 매장 건너편에서 골프공을 목격  
사람 쪽으로 날라 온 것은 보지 못하고 길가로 굴러온 것을 봄
- 약국 골목에서 화재가 났다고 들음
- 교통체증이 심했음
- 피해상황 들은 것 없음
- 오후 4시경 영업 종료

#### 8. 농성 건물 뒤편 시장골목 (2인)

- 19일 낮에 화재가 났음

소방차가 와서 금방 진압

- 시장골목 주변에 경찰들이 있었음

#### 9. 전철연 (1인)

- 19일 오전 11~12시경 현장에 도착
- 통행이 많은 시간에는 경찰이 물대포를 살수를 해도 최대한 한강로 쪽으로 투척 등이 이루어지지 않음
- 대로가 아니라 옆 골목쪽(철거진행 된 곳)의 경찰과 용역을 향해 돌과 화염병을 던짐
- 19일 낮 경찰이 살수를 진행한 곳 근처(옆골목 철거 된 곳)에서 화재가 발생  
상가의 차양 등 비닐물질에 불이 붙음  
화재가 난 상황은 구체적으로 모름  
소방차가 1번 정도 출동했던 것 같음

#### 10. 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 (2인)

- 주로 건물 4층에서 식사 준비 등을 하고 있었으므로 밖의 상황은 구체적이지 않음
  - 벽돌, 화염병 투척은 있었지만 염산병은 없었을 것, 본인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음
  - 용역들이 옆 골목에서 불을 냈다는 소리를 들음
- 그러나 바로 진화하지 않고 시간을 지체하면서 옆으로 번져갔음  
시간이 흐른 뒤 소방차 출동

#### 11. 시민 (3인)

- 19일 2:30 경 현장 도착
- 19일 낮 시간에는 투척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
- 철거민들이 낮에 옥상에서 손으로 하트모양을 그린 것 외에 투척행위 없었음.
- 낮부터 새벽 경찰의 진압이 있기 1시간 전까지는 건물주변으로 통행이 가능했음. 진압 1시간 전부터 건물주변을 통제하였고 진압 30분 전에는 언론사 차량을 옮기도록 하고 전경차로 차벽을 만들

## 진상조사단 발표문 모음

보/도/자/료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발 신 :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가)

문 의 : 박진(017-268-0136) / 미류(010-3667-2256)

제 목 : [보도자료]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조사단 구성 발표 및 우리의 요구

일 자 : 2009년 1월 20일(월)

###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조사단 구성 발표 및 우리의 요구

시민사회단체로 긴급하게 구성된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대책위원회>(가칭, 구성중)는 오늘(1월 20일) 오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권단체 등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였다.

진상조사단은 오늘의 참사가 경찰의 이례적이고도 무리한 강제진압작전에 기인한 것이므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공권력 범죄수사에 있어 공정성이 의심되는 검찰 역시 사건의 진상을 밝히려라고 기대하기 어려워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공정한 진상조사를 위해 구성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번 참사에 대해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부끄러워해야 할 참사이며,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경찰, 곧 국가에 의해 이 같은 참사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

가족과 진상조사단 등 최소한의 인원이 현장을 방문하고, 진상을 확인하자는 기본적인 요구마저 외면해선 안 된다. 끊임없이 현장을 통제하고 봉쇄하는 경찰의 태도는 이번 참사를 넘어 경찰, 나아가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해 되묻게 하고 있다.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의 경우에도, 고문치사라는 참사에 뒤이어 고문진상을 은폐하고 왜곡하였던 정권의 시도가 전국민적 분노를 불러왔고, 마침내 거대한 항쟁을 낳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책무로 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참사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의 요구

1. 경찰은 현장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언론사와 진상조사단, 특히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1. 경찰은 사망한 철거민 중 신원이 밝혀진 ‘고 이성수’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옮겨 유족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부검을 실시하려 하고 있다. 경찰은 이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하며 만약 부검이 필요하다면, 공정하고 신속한 진상 규명을 위해, 적어도 유가족과 유가족이 지명하는 의사, 이번 사건의 대책위 대표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부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1. 검찰수사의 공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장을 가진 제3자 또는 피해 당사자도 참여한 가운데 진상규명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정권만의 진상규명활동은 진상을 밝히기보다는 정권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은폐와 왜곡으로 점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진상조사단의 진상조사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요구를 정부가 즉각 받아들일 것을 요청합니다.**

**용산철거민살인진압 진상조사단(가)**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기자회견

2009. 1. 22. 오후 2시, 용산 참사 건물 옆 공터

□ 순서

1. 인사말 및 진상조사단 소개 : 장주영 진상조사단장
2.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 인권단체연석회의 박진
3. 용산 참사에 관한 법적, 인권적 문제점 : 민주사회를변호사모임 오윤식
4. 시신 검안 결과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상윤, 우석균

□ 첨부 자료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및 의문점
-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의 법적 문제
- 시신 검안 결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1차 조사결과 및 요구사항 발표

### 1.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의 구성

2009년 1월 20일 경찰의 진압과정에서 벌어진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1월 21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이 구성되었다. 진상조사단은 장주영 변호사(민변부회장)를 단장으로 하고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서 조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경찰은 사건 초기부터 사건 은폐와 자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유족의 입장에서 진상을 찾아내려는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진상조사단은 20일부터 사건 현장을 방문하고 연행자, 사망자 유족, 부상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아울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을 종합하여 사건의 진실을 재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를 1차로 발표함과 아울러, 정부와 경찰 등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아래와 같이 밝히는 바이다.

### 2. 진상조사 결과

별첨

### 3. 진상조사단 향후 활동 계획

- 이후 석방된 연행자에 대한 심층조사, 시신 부검 보고서 분석, 법원에 대한 증거보전신청 등을 통한 현장조사, 경찰 등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 조사 등 추가 진상조사를 진행
- 설 이후 2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예정

### 4. 진상조사단의 요구사항

가. 사고 현장을 즉각 공개하고 현장을 원상대로 보전하여야 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일하는 언론사와 진상조사단, 특히 가족들에게 현장을 공개해야 한다.

나. 사망자들에 대한 국과수 부검 소견을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중전의 부검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많은 문제와 의혹의 여지를 낳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부검 소견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 경찰은 사건과 관련 내부 자료, 현장 채증 동영상 등 사건의 진상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라. 사망자들의 사망 과정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 용역직원들의 방화 등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바. 일부 언론은 사건의 본질을 호도하는 악의적 보도를 중단해야 한다.

2009. 1. 22.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1. 사건의 배경 및 개요

- 철거민들이 농성에 들어간 19일부터 철거 용역들은 건물에 진입하여 건물 2~3층에서 격렬하게 대치했으며, 용역들이 아래층에서 페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방화를 시도하고 유독가스를 발생 시킴. 농성자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러한 위험한 행동을 제지하지 않고 방조함. 이러한 상황은 20일 새벽 경찰의 강제 진압 시작 직전까지 이어짐.

- 경찰은 브리핑과 홈페이지를 통해 농성자에 대한 충분한 설득 과정과 안전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함. 그러나 경찰 내부 문건과 언론보도, 현장 생중계 등의 객관적인 증거에 따르면 경찰 주장은 여러 군데에서 사실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실제 진압과정에서도 경찰은 위험을 키우는 작전을 반복해서 사용함.

- 경찰은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졌다고 주장. 그러나 경찰은 시너를 뿌렸다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좁은 망루 안에서 시너를 뿌리는 건 자살행위라는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을 참고할 때 경찰의 주장은 원인 규명을 위한 상당한 노력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임. 검찰 역시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였으나, 엇갈리는 진술들 외에 어떠한 객관적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게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 2. 실태 및 문제점

### 1) 용역의 불법행위 및 경찰 방조의 문제점

#### □ 개요

-19일(월) 16시경 용역들이 건물 3층에서 페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용산 4지구 철대위 회원들 항의를 함. “협상을 하겠다면서 용역들이 저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냐”고 항의하자, 경찰이 용역회사 쪽에 전화한 것으로 확인됨.

-21시경 경찰이 계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3층에 있는 용역들에게 경찰 방패를 쥐서 들고 있는 것이 보임.

-20일 새벽 1시경 용역들이 3층에서 나무, 페타이어 등으로 불을 질렀으며, 이것은 새벽 내내 여러차

레 반복된 것으로 보임.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고 다시 불을 붙이는 과정이 반복 됨.

-20일(월) 새벽 4시경, 경찰투입 직전까지 용역들이 배치되어 있던 것으로 확인 됨.

#### □ 경찰의 주장

경찰은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용산 참사 사건 해명자료 2항. “인화물질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한 경위” 에서

○ 1. 19(월) 05:30경부터 농성자들이 건물옥상을 점거한 후

-대형 새총(8개) 발사대를 설치하고 골프공을 쏘거나 화염병을 인접건물에 던져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염산이 든 박카스 병을 도로에 투척하고 준비한 벽돌 등을 지나가는 행인과 차량을 향하여 무차별 투척하므로

\* 투척한 위험물 : 화염병 150개, 염산병 40여개, 벽돌 1,000여개, 골프공 300여개, 유리구슬 400여개

○ 더 이상 지체되면 일반 시민들에게 보다 큰 심각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경력을 투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함.

#### □ 용역의 불법행위와 경찰의 방조에 대한 책임

그러나 경찰은 앞서 밝힌 대로 용역 직원들이 페타이어 등을 불태우고 소방차가 이를 끄고 가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등 농성 현장을 위험에 빠뜨리고 농성자들을 자극해, 끊임없는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이 분명함.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함.

#### 2) 20일 새벽, 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 진입을 시도한 과정의 사실과 문제점

#### □ 개요

-20일(월) 새벽 3시경 진압을 예상하며 철거민들 11명 내려옴. 36명 또는 37명이 건물 안에서 농성 중. 용역들이 경찰에 보고하자 경찰은 통제를 더욱 강화해 건물을 봉쇄함.

-4시경 기존에 있던 경찰병력과 추가 경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함. 특공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가

건물 주위로 들어와 에워싸기 시작함. 진입장비(크레인 등)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짐.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3대로 증강하여 3면에서 살수함. 물에 맞으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다가왔다는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최루액이 섞여 있던 것으로 추정함. 경찰은 근처에 매트리스를 배치했으나 건물 아래에 설치하지 않음.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농성자들은 지게차 등 경찰 장비를 향해 화염병 투척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6시 50분 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거민들 20여 명은 망루 구역으로 철수. 망루 구역으로 통하는 '주차장 반대쪽 편' 문이 봉쇄된 것으로 보임. 경찰이 봉쇄된 문을 여는 동안 농성자들은 망루 창에서 불붙은 화염병을 그쪽으로 투척.

-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하강 조정됨.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 경찰의 주장

위 해명자료 3.항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망루에 불이 붙게 된 경위”에서

○ 경찰은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습니다.

※ 컨테이너 박스는 옥상 대로변쪽에 안착하고 망루는 반대편에 설치되어 있었음

○ 경찰특공대원이 컨테이너를 이용해 옥상으로 진입 후 망루에 접근하자 망루안에 있던 농성자들이 신나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지는 과정에서 불이 붙게 되었습니다.

라고 주장함.

#### □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찰특공대 진압작전의 문제점

- 경찰특공대 진입 초기, 농성자들의 공통된 증언에 의하면 ‘경찰특공대가 망루의 2단을 지탱하고 있던 중앙의 기둥을 뽑았고, 이로 인해 2단 가운데가 함몰되면서 무너질 것 같았다. 그때 2단에 보관하고 있던 인화물질 등이 가운데로 모여들면서 매우 위험해졌다.’는 것으로 드러남.

- 또한 언론에 보도된 대로, 경찰특공대는 옥상 대로변쪽에 컨테이너 박스를 안착시키고 진압하는 경찰특공대를 내려준 후, 2차로 컨테이너를 기중기를 이용해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충격을 가한 후 위치 이동을 하여 수평 방향으로 밀고, 컨테이너에 탄 특공대원이 망루 안을 향해 빠루를 이용 타격을 하는 등 진압작전을 벌임.

- 공통된 증언과 촬영된 동영상 자료 등을 통해 경찰이 컨테이너 박스로 망루를 밀지 않았다는 주장은 확실히 사실이 아님. 진상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해명이 필요하며, 진압과정에서 초기 연행된 사람들이 증언하는 폭행에 대해서도 진상을 규명해야 함.

“특공대가 들어와서 나는 자진해서 내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런데 계속 곤봉으로 때리고 폭행했다. 끌려나오면서도 계속 맞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경찰은 욕설을 퍼부었고 한 사람씩 다 때리는 것 같았다. 발길질이 계속됐다. 지금 갈비뼈 부위가 매우 아프다.” - 1차 진압 초기 연행자

#### 3) 망루 내 화재 발생 책임에 대한 수사기관 입장의 문제점

##### □ 개요

- 특공대들이 망루 안으로 진입하자 농성자들은 저항하며 망루 3단까지 밀려 올라감. 이 과정에서 일부 농성자들 연행됨. 농성자들이 망루 3단에서 아래를 향해 돌이나 골프공, 빈 병, 화염병 등을 던지는 대로 던지며 격렬하게 저항하자 특공대가 망루 아래쪽으로 철수.

- 이 때 일부 농성자가 망루 1~2단으로 내려가 동태를 살핌. 바닥 중앙이 아래쪽으로 꺼져있었다는 증언 다수 나옴. 인화물질들은 엉망으로 흩어져있었고 주위는 온통 흙뻘 젖어 있었음. 어두웠기 때문에 젖은 액체가 물인지 인화물질인지는 알기 어려웠다는 증언 있음.

- 망루의 창으로는 줄곧 살수차의 물대포가 쏘아져 들어왔고, 어느새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 3단으로 접근한 특공대들이 소화기와 살수호스를 이용하여 망루 안을 향해 공격. 망루 3단 내부는 물대포와 소화기 가루로 정신없는 상황이었으며, 온통 흙뻘 젖어 화염병에 불붙일 겨를조차 없었다고 증언.

-당시 농성자들은 시너를 망루 안에 뿌린 사실 역시 없다고 주장.

## □ 발화 원인에 대한 객관적 증거 미비의 문제점

- 우리가 조사한 농성자들은 공통적으로 시너를 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고의로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가 ‘인화물질이 가득한 좁은 공간에서 자살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경찰 특공대가 진입하는 과정에서 망루 내에 화염병에 불을 붙여 던지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음.

- 수사기관 역시 화염병에 의해서 발화가 되었다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발화 원인에 대해 객관적 증거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경찰특공대의 증언 등에만 의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움.

“정신없이 쫓겨 올라가면서 시너를 뿌릴 겨를이 없었다.”

“불나면 우리도 다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시너를 뿌릴 이유가 없었다.”

“불타서 죽느니 떨어져 죽는게 나아서 떨어졌다.”

“살기 위해서 뛰어 내렸다.” - 화재 발생시 마지막까지 망루에 있었던 부상자들의 증언

### 4) 사망 상황 조사에 대한 정확한 규명 필요성

- 경찰은 화재가 발생 후 망루에서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에게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흔적이 보이지 않으며, 이로 인해 부상자와 사망자가 더욱 늘어남. 옥상으로 뛰어내린 사람들의 부상 및 사망 경위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함.

## 3. 결론

- 일방적인 개발과 철거는 재개발조합과 세입자 사이의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본적으로 사 인간의 문제이며 민사적인 문제임.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가는 형사적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양자가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해 철거민들의 항의를 무력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여러 사망자와 부상자까지 발생하게 된 우려할 만한 상황을 발생 시켰음.

## 경찰의 무모한 진압에 의한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한 법적 문제

### 1. 조기 경찰력 투입과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 ▶ 조기 경찰력 투입의 문제점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들과 전철연 회원들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재개발지역 내에 있는 4층 빈 건물을 점거하고 시위를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된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이다.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것은 2009. 1. 20. 오전 6시경이다. 이와 같이 전광석화 같이 경찰력을 조기에 투입하기 이전에 철거민들과 한 차례라도 퇴거를 위한 설득과 협상을 벌인 적인 있는가? 만일 없다면 이는 중대한 문제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철거민들 등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위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마치 그 철거민들이 제거되어야 할 대상인 것처럼 경찰력을 투입하여 진압하는 것은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에 반한다. 또한 그것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우리 헌법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경찰특공대 투입의 문제점

별지 관련 법령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다. 그리고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본부, 경호지원제대 등의 분장사무로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설령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에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철거 지역 내의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를 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비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위와 같이 경찰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위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위 25조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 2.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에 대한 문제점

### ▶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

다수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위 건물 내로 진입하기 이전에 위 건물 내에 신나, 화염병 등의 위험물질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또한 위 건물로 경찰 병력이 진입할 경우 분신과 투신, 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이 우려되고 화염병과 염산이 든 병을 투척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러한 예상에 기해 경찰은 진압대책에서 유류 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와 소화전을 준비하고 건물 하단에 에어매트와 그물망, 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을 충분히 설치할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소방차 6대와 소방 고가사다리차 2대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장 옥상으로 투입될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이 전부였고, 에어메트나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트리스만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고 유류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준비하지 않았다.

### ▶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했다.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타격하여 뒤흔들음으로써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 관련 동영상에 의하면 그 직후 현재로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망루 전체로 번져 6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 ▶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부재와 망루에 갇힌 철거민에 대한 위해를 가한 것 등으로 인한 법적 문제

사실이 위와 같다면, 금번 용산구 한강로 2가 철거민에 대한 진압과 체포를 위한 경찰권 발동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정면으로 반하는 경찰권 남용임이다. 또한 이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것에 대하여도 형법에 의한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개연성도 농후하다.

### ▶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문제

고가 사다리차를 통해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태워 5층 건물 옥상 위 망루까지 이동시킨 후 위험한 현장에 투입한 방식은 철거민 뿐 아니라, 진압 경찰의 인권에 대해서도 인권적 고려가 전혀 없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식은 철거민은 물론, 많은 경찰의 사상을 낳았던 원인이었다. 경찰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서도 이러한 진압 방식은 재고되어야 한다.

### ▶ 국가배상청구

위와 같이 경찰은 진압 과정에서 경찰비례원칙을 위반하고, 사고발생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이 예견되고 실제로 이를 인지하였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를 어긴 과실이 있으므로,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 3. 참사 현장 등에서의 부상자 방치 문제

경찰은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건물 옥상 등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철거민 등을 한 동안 방치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4. 용역에 의한 방화 및 폭력 문제

2009. 1. 20. 오전 6시경 경찰이 본격적으로 진압을 개시하기 이전에 철거민들 등과 철거 용역 직원들 사이에 격한 대립이 있었다. 철거 용역 직원들은 철거민들을 건물에서 쫓아 내기 위하여 방화를 서슴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역 직원들의 방화는 범죄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만일 경찰이 이를 알고서도 제지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또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 등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것은 형법 및 폭력행위 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범죄행위이다. 이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

### 5. 유족의 동의와 참관이 없는 상태에서 부검의 강행으로 인한 문제점

현행 형사소송법 제141조, 제219조에 의하면 부검(형사소송법 용어는 사체의 해부)을 할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서 부검을 강행하였다. 이는 위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형사소송의 최고의 이념이자 우리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행위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그리고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부검의 강행은 유족들의 참여를 보장한 상태에서 부검을 하던 기존 전례 및 관행과도 어긋난다. 부검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경찰의 법적 책임 문제가 중차대한 현안으로 부각한 현 상황에서 유족을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에서 부검을 강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실체진실에 입각한 사인을 은폐하기 위함인가? 경찰의 책임을 축소시키기 위함인가?

검찰의 적법절차에 반하는 부검 강행을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별지

## 관련 법령

### 경찰관직무집행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 경찰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제3조 (국가경찰의 임무<개정 2006.7.19>)

국가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치안정보의 수집, 교통의 단속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그 임무로 한다.<개정 2006.7.19>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

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7.19>

제13조 (하부조직)

③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60호]

제42조 (직할대)

①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8.8 행정안전부령 제29호]

제22조 (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제25조 (직할대)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1991. 7. 31. 훈령 제1호 제정)

제25조(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체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체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체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07. 6. 4 개정>

#### 1. 본부

- 가. 경무, 인사, 상훈,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일반장비, 통신·차량·무기수급 및 관리유지
- 다. 경리 및 시설관리
- 라. 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마.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 바. 전·의경 관리
- 사.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2. 체대

- 가. 대테러 범죄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무장경호 및 안전검측활동)업무

#### 3. 교육대

- 가. 대테러 특수전술 편성, 교육 및 운영
- 나. 수탁훈련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다. 대테러 전술 및 교리 연구개발
- 라. 교육훈련장 관리 및 정비
- 4. 폭발물처리대
  - 가. 폭발물처리 및 탐지전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업무

##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268조 (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 형사소송법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1조 (신체검사에 관한 주의)

①신체의 검사에 관하여는 검사를 당하는 자의 성별, 연령, 건강상태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그 사람의 건강과 명예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는 증적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여자의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의사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④사체의 해부 또는 분묘의 발굴을 하는 때에는 예를 잊지 아니하도록 주의하고 미리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제219조 (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 내지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제2항, 제118조 내지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제486조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단,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및 제132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함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개정 1980.12.18, 2007.6.1>

## 시신 검안 결과

검안의사 : 김정범(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가정의학과 전문의),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검안 일시 : 2009. 1. 21 오전 1시 30분경

검안 장소 :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 시체안치실

1. 철거민 사망자 시신 5구의 부검이 시행될 시 유족측 참관인으로 참관해줄 것을 요청받고 저녁 9시경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으로 감.
2.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도착 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상태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유족들이 알려옴, 경찰들이 시체안치실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태였음.
3. 유족들 및 대책위측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 및 협상 끝에 1월 20일 새벽 1시경 시신 1구당 유족 1명과 의사 2인(김정범, 우석균) 변호사2인 포함 10명이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안하기로 합의하고, 시체안치실에 들어가 검안함.
4. 시신 5구를 검안함.
5. 시신 5구 모두 안면부 포함 전신 부위가 마치 숯 모양으로 새카맣게 타서 가족들조차 신원을 알기 어려웠음. 팔다리가 굽어지고 뒤틀어진, 불에 탄 시신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신체 변형이 있었음
6. 시신 모두 두개골은 원형으로, 하악 정중선부터 전경부 그리고 전흉부까지, 일부 시신에서 양측 하지내측이 직선으로, 이미 칼로 절개되어지고 봉합된 상태였음. 이를 통해 이미 부검한 상태임을 알 수 있었음.
7. 시신 한 두 구를 제외하고는 손 부위가 화재로 인한 심각한 변형으로 지문 채취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됨.
8. 시신들이 불에 심하게 타서 변형된 상태라 진압과정에서의 폭력 등에 의한 직접적 외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 없었음.
9.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사진 몇 장을 찍을 수 있었음.
10. 일부 시신에 대해서는 충치, 금니, 몇 가지 유품(타다 남은 신발, 잠바, 자동차키, 휴대 등) 등으로 신원을 추정해볼 수 있었음. 이성수씨의 경우 신분증(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이 있었음

## 잠정적 결론

1.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검안소견만으로는 사인을 판단할 수 없었음. 시신들이 화재로 인해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화재사(소사)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겠으나 사망시 정황을 알 수 없고 부검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사인을 추정하는 것은 어려움.
2. 시신들이 불에 심하게 타서 변형된 상태라 폭력적 진압에 의한 직접적 외상 유무 등을 판단할 수는 없었음.
3. 시신의 사인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부언**

1. 시신안치실에 의사들의 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검안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주로 신원확인을 위한 유족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검안소견임
2. 유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사건 발생 후 24시간 내에 검찰과 경찰 단독으로 부검을 시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비상식적임. 특히 신분증이나 실종자 명단, 여러 정황으로 시신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에게 사망 사실을 알리고 부검 동의 및 부검 참관을 요청하지 않았음

[보도자료]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2차 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일정 : 2009년 1월 28일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 인사말 : 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 고발장 제출경위에 대한 보고 : 권영국 변호사
- 연행과정 등의 경찰폭력 의혹과 부상자 방치 의혹에 대한 보고 : 이상윤 의사
- 고발장 내용 요지 발표 : 오윤식 변호사
- 고발장 접수

### <보도자료 순서>

1. 고발장 접수에 이르게 된 배경
2. 경찰의 강경진압 및 구호의무 위반 내용
3. 고발요지

용산 철거민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1. 고발장 접수에 이르게 된 배경

검찰은 용산 참사사건이 일어난 20일부터 체포된 철거민들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 검사 25명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 본부장)과 수사관 40명을 배치하는 등 대규모의 수사팀을 배치했다. 그리고 이후에도 13명의 검사가 수사팀에 결합하여 철거민들과 전철연 등에 대한 조사, 경찰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설 연휴기간에도 진행하는 신속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검찰의 유례없는 규모의 신속한 수사가 발화원인의 정확한 규명없는 상태에서 농성 철거민에 대한 혐의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사건의 중요한 요점인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한 조사보다는 철거민들의 배후를 찾는다는 이유로 전철연에 대한 조사를 전격적으로 진행하는데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점 등이 조사에 있어서의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우리가 진상조사 초기(1월 22일 1차 진상조사보고)에 제기한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23일 “‘용산 참사’ 당시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였다”며 경찰의 무전내용을 공개하고서야 착수되었다. 그러나 27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 관계자는 ‘용역업체 직원이 진압당시 건물 안에 있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고, 무전내용 역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취지일 뿐이라는 경찰 쪽 해명’을 인용하며 잠금장치 해제 정도의 역할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소극적 자세를 언급했다.

결국 검찰은 철거민쪽에 대한 의혹은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수사를, 경찰과 용역업체쪽에 대한 의혹은 소극적이고 회피하는 듯한 태도의 수사를 통해, 검찰이 이번 사건에 공정하고 중립적이지 못하다는 강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우리는 고발장 제출을 통해 검찰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수사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 □ 사건 발생이후 검찰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 언론 분석

< 1월 20일 >

### ▪ 서울중앙지검 수사본부

검사 28명을 투입해 농성 현장 연행자 22명과 경찰특공대원 6명 등 28명을 상대로 화재원인을 집중조사

### ▪ 서울 용산경찰서장 브리핑

망루 화재 원인이 농성자에게 있다고 강조 - 오전 7시26분쯤 경찰특공대원들이 망루 안의 1층에 진입하자 3층에 있던 농성자들이 1층으로 시너를 통째로 뿌리고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했다

### ▪ 김수정 서울청 차장 용산참사 관련 브리핑

- 19일 특공대 투입 결정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건의, 청장 최종승인)
- 시너가 있는지 몰랐음
- 용역에 관한 부분 일축, 확인되면 조사하겠다는 입장

당시 현장을 지휘했던 신윤철 경찰특공대 제1제대장 - 망루 위에서 농성자들이 시너를 뿌리고 망루

아래 층으로 화염병을 투척해 발화했다고 본다

- 사망자 유족 동의 없이 부검 실시

< 1월 21일 >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소방방재청이 합동으로 현장감식

양측 40명으로 구성된 감식반은 진압작전 당시 최초 발화지점과 발화원인 등에 대해 집중감식

- 사망자 확인작업

- 검찰

- 경찰이 망루에 인화물질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무리하게 진압작전을 벌인 것으로 확인

- 농성 철거민들이 사전에 농성교육을 받았다는 정황 확보

화재 당시 망루에서 가장 마지막에 탈출한 4명의 농성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

- 경찰 진압의 적정성과 책임성 여부는 화재 원인 규명 이후에 수사할 계획

서울지방경찰청특공대 소속 김양신(34) 경사 - 2차 진압을 시도하던 당시 망루 3층에서 2층으로 던져진 화염병 2개가 바닥에서 터지면서 불이 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김석기 청장은 이날 에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 "보고만 받았다"며 우회적으로 본인의 최종결정 의혹을 부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김 청장의 사인이 들어간 '1.20 「전철연」 '한강로 3가 남일당빌딩 점거 농성장' 진압계획' 문서를 들고 "거짓말 하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하자 인정

- 경찰

경찰청 홈페이지에 '용산참사' 당시 상황을 담은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하고 진압 과정의 정당성을 주장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지는 장면, 시너를 뿌리는 장면 등을 담은 동영상, 사진을 강조하고 △철거민 해산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한 근거와 이유 △인화 물질이 산적해 있는 현장에 강제 진압한 경위 △철거민과 경찰이 사망한 망루에 불이 붙게된 경위 △경찰 특공대 진압시 철거민에 대한 안전 조치 여부 등 네 가지 항목을 만들어 해명했다.

< 1월 22일 >

- 검찰

- 경찰 과잉진압, 전철연 적극 개입으로 수사 확대

- 경찰에 대한 수사 시작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소환 - 사건 당시 특공대원을 투입한 경위와 최종 투입 결정 당시 정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김석기 경찰청장 소환계획 없음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식 절차를 밟아 결정한 작전이므로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렵다

-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들 중 김모씨(44) 등 5명만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화염병 사용 처벌법 위반, 일반건조물 방화, 일반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
- 화재의 원인을 세입자의 화염병으로 판단, 고의성은 없다고 봄

< 1월 23일 >

▪ 검찰

- 서울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과 이성규 정보부장을 소환 조사
- 인천시 도화동 철거대책위 사무실 압수수색  
용산참사 전철연 개입 파악 주력
- 검찰 편파수사 아니다 해명

▪ 김유정의원 경찰무전내용 공개

경찰과 용역업체가 합동 진압작전을 벌인 증거로 경찰의 무전내용을 공개  
경찰 진압 시 용역업체가 잠금장치 해제작업 진행

▪ 서울경찰청

경찰이 용역업체 직원과 함께 용산 철거민을 진압했다는 내용의 경찰 무선 기록이 공개된 것과 관련 "작전 시작부터 끝까지 용역업체 직원이 작전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밝힘  
"용역업체 직원들이 내부 진입을 시도하는 것을 경찰이 여러 차례 차단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것을 순간적으로 오인해 무전 보고했다"고 밝힘

< 1월 24일 >

▪ 검찰

- 용역업체 가담 여부 수사  
참사 당일 서울지방경찰청 상황실에서 현장을 지휘했던 서울청 경비부장과 현장에서 보고했던 경찰관의 무선 교신 내역과 현장 CCTV 녹화 화면을 제출받아 분석
- 전철련 의장 남경남 씨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고 보고 수배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과 신두호 기동본부장, 김삼복 특공대장 등 경찰 고위 간부들을 소환 조사
- 컨테이너와 망루 충돌 경위, 화재와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 시작

< 1월 25일 >

▪ 검찰

- 용역업체 수사  
현장 철거용역업체 흥건설 본사와 용산사무소를 압수수색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 직원 2명을 불러 조사

- 경찰을 태운 컨테이너가 망루와 부딪힌 것에 대해서는 접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일어났을 뿐 고의로 충돌한 것은 아니며 화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
- 용산 철거대책위와 전국철거민연합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산 철대위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

< 1월 26일 >

▪ 검찰

- 농성 진압 당시 경찰특공대 투입 배경과 과잉 진압 여부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
- 백동산 용산경찰서장을 재소환 조사
- 서울경찰청 경무관급 간부들을 재소환 조사
- 철거대책위원장 이 모 씨를 강제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
- 화재 원인과 관련한 감식 결과를 받았지만 발화지점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한 단서를 얻지는 못했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화지점을 한정하기 어렵고 발전기나 전기기기에 의한 점화 가능성은 없으며 시너로 인해 불이 크게 번졌다'는 정도의 감식결과

< 1월 27일 >

▪ 검찰

- 경찰이 철거민 강제 진압 작전에 용역업체 직원을 동원했는지와 철거민 시위의 배후로 지목된 전국 철거민연합(전철련)에 대한 수사,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 등 3가지 방향으로 집중
-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점거 농성 진압 과정의 지휘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
- 남경남 전철련 의장 자택 압수수색
- 화재 원인은 화염병에 의한 발화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지만 정확한 발화 지점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못함

## 2. 경찰의 강경진압 및 구호의무 위반 내용

### 1) 구호 의무 위반

#### (1) 부상당한 농성자를 오랜 시간동안 방치한 사례

김창수씨가 5~6미터 높이의 망루에서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려 부상을 당한 것을 경찰 특공대가 발견(시선이 마주침)하였으나 해당 경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음.(용산서에 연행되었던 김창수의 진술)

#### (2) 안전 장치 미비로 인한 부상의 격화

농성중이다 망루에서 떨어져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식준씨는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건물 옥상 난간에 2~3분 매달려 있다가 추락하였음. 지식준씨와 함께 여러 사람이 격렬한 화재를 피해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으므로, 경찰은 이러한 사태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 그러나 경찰은 안전매트, 그물망 등의 안전 장치를 준비하지 않았으며, 컨테이너를 통한 구호 작업을 시도하지도 않았음. 이로 인해 추락한 지식준씨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음. (현재 다리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며 수술일정을 조율중에 있음.)

#### (3) 화학소방차가 배치가 되지 않았다

- 경찰 진압 계획에 따르면 경찰은 농성자들이 인화물질을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였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화학소방차를 현장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었음. 이 단계에서부터 경찰은 유류화재 진압에는 화학소방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
- 그러나 용산소방서에 따르면 화학소방차는 미리 배치되지 않았으며, 용산소방서 자체 판단에 의해서 사건발생 이후 7시 29분경에야 화학소방차를 출동시켰음.
- 또한 경찰 교신 내용(7:26:50 - "이거는 기름이기 때문에 물로 소화가 안됩니다")을 살펴봐도 경찰은 현장에 발생한 화재가 물로는 진화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였음. 그럼에도 계속하여 물대포 살수에만 의존하였음. 그러나 최성룡 소방방재청장의 증언에 따르면 이처럼 "시너에 불이 붙은 곳에 물을 뿌리는 일은 매우 위험한 행위"임.(국회 행안위 보고 내용중)

#### (4) 부상자를 호송차량 내에 방치

김영근, 천주석씨는 부상당한 상태에서 연행되어 호송차량 내부에 방치되어 있었음.

"망루에서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기절했습니다. 눈을 떠 보니 누군가가 올라와(김영근씨는 건물 1층 높이에 튀어나온 가건물 샌드위치 판넬 지붕위에 떨어져 구조) 끌어 내리면서 경찰이 '너 새끼 잘 걸렸다'며 옆구리를 걷어찼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 다쳤으니 건들지 마'라고 소리쳤고, 경찰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 호송차에 실렸습니다. 이미 떨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청

했으나 경찰들은 화상자국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 호송차 바닥에 30분 가량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제 옆에 저와 같은 부상자가 있었습니다.” (현재 김영근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 정도는 다리, 귀, 손 등에 부상을 입은 상태임, 옆에 있던 부상자는 아래의 천주석씨임이 밝혀짐, 천주석씨는 다리 깁스 중이며 오늘 중 왼쪽 눈밑이 함몰된 부분에 대해 얼굴 성형 수술을 할 예정임. 그 외에 천주석씨와 같은 위치에서 피신해 있었다고 추정되는 순천향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김성환씨는 복숭아뼈 수술 중임.)



사진 설명: 김성환씨가 망루에서 떨어지면서 당한 부상



사진설명: 김영근씨가 뜨거운 망루에 매달리며 손에 입은 화상.

“옥상바닥에서 떨어져서 엎드려 있는 것을 소방관들이 보았으나, 본척만척 하였고 ‘살려달라’고 하니까 경찰특공대를 불러, 자신을 질질 끌고나가 호송차에 태워서 방치해 두었습니다.”(현재 천주씨는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이며 부상정도는 왼쪽 눈밑 함몰, 우측발 복숭아뼈 아래에서 위로 30센티미터까지 그리고 무릎위에서 엉치 아래까지 석고를 데어 붕대를 감아둔 상태이고 엉덩이 오른쪽 옆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음.)

## 2) 사망자와 관련된 의혹 ‘망루에서 뛰어내려 멸절하던 사람이 왜 죽었나’

- 순천향 병원에 입원중인 지식준씨는 화재발생후 망루 가장 위층에서 윤용현, 이성수씨와 함께 옥상으로 뛰어내렸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나 윤용현, 이성수씨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됨.
- 지식준씨 본인은 망루에서 떨어지는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윤용현, 지식준, 이성수 순으로 망루에서 떨어졌고 이성수가 지식준의 다리위에 떨어져 이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었다고 함) 바로 난간을 넘어 지면을 향해 추락하였으므로 다른 두 사람의 이후 행적에 대해 알지 못함. - 그러나 지식준씨의 확고한 증언에 따르면 윤용현씨와 이성수씨는 뛰어내린 후에도 스스로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상태였음. (망루에서 뛰어내린 후 쓰러져 있는 자신을 흔들었던 것은 윤용현씨였으며, 자신을 불타는 망루에서 떨어지도록 부축한 것은 이성수씨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이들이 뛰어내린 장소는 주차장 방향이며, 곧바로 베란다로 이동하여 옥상 벽이 불길을 차단하여 보호받는 장소에 있었음.
- 따라서 윤용현, 이성수씨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하며, 이들의 사인이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음.

“망루에서 떨어져 있는 나를 향해 윤용현씨가 ‘성우야(지식준씨의 아들이름) 정신 차려, 여기있으면 죽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용현씨는 남일당 빌딩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윤용현, 이성수씨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셨다면 골절상으로 돌아가셔야지, 왜 불타서 돌아가셨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지식준씨의 진술)

<사진>



사진설명 : 지석준씨가 난간에 매달리는 모습. 다리가 부러진 지석준씨를 이성수씨(추정: 지석준씨는 이성수씨라고 진술하고 있음)가 돕고 있음. 이 상황 바로 전 윤용헌씨는 사진 왼쪽으로 이동하였음(지석준씨 진술)

### 3) 위험한 강경진압

- 다수의 진술에 따르면, 경찰특공대가 처음으로 망루에 진입하였을 때, 망루 2층 바닥을 지지하는 지지대가 사라져 2층 바닥이 아래로 가라앉았다고 함.
- 망루 내에 위험한 인화물질이 다수 있고 물과 섞여 망루 내에 많이 퍼져있는 것은 물론, 실제로 망루 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경찰도 이를 인지하였음(경찰 교신 기록 7:06:57 - "망루 안에서 불이 많이 나고 끄고 있어요.")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행하였음.
- 특히 다수의 진술과 다수의 동영상 증거에 따르면, 경찰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매달아 망루 지붕을 내리 눌러 흔들었으며, 또한 옆으로도 밀어 여러 차례 망루가 기울었음. 이처럼 컨테이너를 망루에 충돌시키는 방식은 경찰 무전 교신(7:19:33 -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5층 망루 해체작업 중입니다")이나 동영상(안티이명박 카페 제공, 진상조사단 보유 필름)에 의해서도 뒷받침되듯이 우연이나 실수가 아니라 망루를 해체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으로, 매우 위험한 작전이었음.

## □ 시간별 상황

6:50 경찰특공대 1차 망루 안착, 건물 옥상 내 경찰특공대 진입

7:05 망루 3층까지 경찰 진입하여 다수의 연행자 발생. 연행 과정에서 폭행 당하는 이 다수. 망루 2층의 바닥이 가라앉음. 망루 붕괴를 우려하며 특공대원들 빠져나감.

7:06 망루 내에서 1차 화재 발생, 1~2분 내 진화

7:16 컨테이너로 망루 지붕을 내리 찍음

7:19 컨테이너로 망루 옆면을 밟

7:20 망루 내에서 2차 화재 발생, 망루 내에서 특공대 병력 철수

**※이미 1차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진압을 멈추지 않고, 2차 진압을 강행 결국 대형 참사로 이어지도록 한 정황은 상당히 중요함.** 2차 화재 이후에도 현장지휘관의 경찰무선교신내용(7:25:20~24 - “그 망루 안에 농성자들 다 나왔어요? / 7:25:24 우리 경력들 다 나온 걸로 봐서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에서 알 수 있듯 경찰은 화재 현장에서 농성자들의 안전에 대해 매우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음.

## 4) 폭력 위협 사례 및 연행 중 폭행 사례

-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특공대가 곤봉을 휘두름.(아래 사진 참조)
- 옥상 난간의 농성자들은 경찰들에게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위험한 물건을 들거나 소지하지 않은 상태임.
- 오히려 불타는 망루 내에서 여러 사람이 사망한 직후인 만큼 흥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충분한 설득을 통한 안정과 자생 하강 유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이것만 보더라도 경찰이 농성자들의 안전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증거 사진>







사진 설명: 마지막까지 옥상 난간에 남아있던 농성자들에 대해, 아래 쪽의 특공대원이 곤봉을 휘두르고 있음. 이 농성자들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것도 아니고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었음. (출처: 진상조사단 보유 동영상, 안티이명박 카페 제공)

### 3. 고발요지

2009. 1. 20. 개시한 무모하고 안전 대책을 거의 갖추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진압작전에 의해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다. 그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이하 진상조사단)을 결성하였다.

진상조사단은 경찰의 무모한 진압 과정, 6명의 희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발화의 원인 등에 관하여 실제진실에 입각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다.

그와 같은 활동의 결과, 진상조사단은 남일당빌딩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이 철거민들 등에 대한 안전 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위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안전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전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고발인들은 위 진상조사단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6명의 인명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아래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어떤 점에서 성립하는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경찰과 철거 용역업체의 합동 진압작전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 이외의 피고발인들의 행위가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먼저, ①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압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채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② 또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 공동으로 마련)에 명시대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이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성급하게 진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성급하고 무모하게 진압을 개시하였다는 점, ③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해가며 화염병, 세눅스 등 위험물질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건물에 진입한 하였던 점, ④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를 뒤흔들어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였다는 점, ⑤ 위 망루에 1차로 진입하여 그 안에 세눅스, 화염병 등 다수의 위험물질이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경찰청 독자적으로 만들)이 명시한 대로 세눅스 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눅스 등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에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체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위 망루에 진입하였다는 점, ⑥ 그 과정에서 원인불명의 화재가 발생하여 6명이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는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하여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합니다.

다음으로,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철거업체 등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순수한 철거업무 이외의 업무, 가령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을 주거 등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시설경비업무에 포함된다.

그런데 호람, 현암 철거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경비업법상의 무허가 경비업 영위행위를 한 것이므로 동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면 동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된다. 그런데 경찰과 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

동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이에 적극적으로 동조·묵인·방조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 또는 교사범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또한, 망루 전체로 번졌을 당시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음에도 사망한 윤용현, 한대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이 사망한 경우에는 직무유기죄, 유기치사(또는 유기죄)가 성립한다. 역시 옥상으로 탈출한 김창수를 경찰특공대가 구호하지 않은 행위는 직무유기죄, 유기죄가 성립한다. 또한 김영근, 천주석을 경찰이 병원으로 이송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도 마찬가지이다.

점거농성자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게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마지막으로, 철거민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나무와 타이어 등에 불을 지른 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고, 철거민들에 대해 집단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

##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박진 (017-268-0136)

제 목 : [보도자료]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

발송일자 : 2009년 2월 4일(수)

###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1. 유가족들이 제기한 용산 참사 희생자들의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하여 검찰은 명쾌하지 못한 답변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의견과 부검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 위해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진상조사단은 곧 발표할 예정인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검찰의 수사발표 내용은 강제진압으로 인해 사망한 고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건을 은폐할 우려가 크다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

일시 : 2009년 2월 4일(수) 오후 2시

장소 : 민변 사무실

순서 :  인사말(장주영 변호사,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장 / 민변)

사망경위 설명 (박진 활동가, 진상조사단 / 인권회의)

동영상 상영 (MBC 동영상 / 지식준씨 증언 영상)

유가족 증언 (권명숙 / 고 이성수씨 부인)

국과수 부검감정서 분석결과 발표 (이상윤 의사, 진상조사단 / 인의협)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자료 순서

-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개요**  
검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 3
-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1.**  
지석준씨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 4
-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2.**  
신분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분확인 충분히 가능했다.  
- 8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 분석 결과**  
- 11
- “용산 참사관련 사망자 발견 위치**  
[(09.01.30, 화재조사팀제공]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제공  
-13
- “유품사진 중 이상림씨 유품 일부**  
-14

검찰은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대해 먼저 답해야 한다

검찰은 오는 5일 또는 6일 용산 참사사건에 대한 수사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검찰수사가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화재 원인을 비롯, 경찰 과잉진압 문제가 핵심적인 사안인 이번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검찰은 경찰과 용역 수사에는 미온적인 반면 농성중이었다가 죽거나 다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1월 28일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 1차보고 및 경찰과 용역 고발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망자 고 이성수, 고 윤용현 사망경위와 관련한 의혹을 분명히 밝힌 이후에도 검찰은 이를 수사하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부검과정에서 이유를 알 수도 없이 배제된 이후 끊임없이 사인 은폐와 조작의혹을 제기하는 유가족들의 의문을 풀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고인들의 사망원인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했어야 한다. 그러나 진상조사단이 진술과 사진 등을 제시하며 사망 경위와 사인 규명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검찰이 지금, 철거민들에게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이전에 진상조사단이 제기하는 사망경위와 사인의혹부터 조사하고 밝힐 것을 요청한다. 그 이유는 바로 두가지이다.

1. **지석준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 지석준의 진술과 사진, MBC동영상에 등장하는 이성수, 윤용현의 사망 경위에 대해 검찰은 수사하고 의문을 밝혀야 한다.
2. **신분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분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다. 검찰이 밝힌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 문제역시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 유가족들을 배제한 채, 사건발생 하루도 지나지 않아, 부검을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었나. 무엇을 은폐하기 위함이었나.

■ 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1.

지석준씨의 진술은 MBC동영상과 일치했다. 살았던 자가 왜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되었나.

농성 중이던 망루에서 떨어졌던 지석준의 일관된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 우리가 처음 지석준의 진술을 접했을 때, 그 주장은 상당히 구체적이었고 일관되었다. 1월 22일 가졌던 첫 번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진술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발표하지 못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 이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증거로써 사진이 등장했고, 이에 대해 우리는 같은 달 28일 두 번째 진상조사단 기자회견에서 이를 밝히며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MBC를 방문, 고화질의 원본 동영상을 확인**

똑같은 시간대의 동영상이 MBC에 보도된 이후, 고화질의 동영상을 보면 좀 더 확실한 정황을 판단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유가족과 진상조사단은 함께 MBC를 방문, 공개된 영상의 원본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 지석준의 진술이 정확하다는 확신에 이르렀다.

**MBC 화면에 잡힌, 고 이성수씨의 이동 경로**

첨부한 사진자료와 오늘 기자회견에서 보여주는 MBC 영상에 등장하는 A는 분명히 고 이성수씨다. 그는 지석준의 애초 진술대로 망루에서 옥상바닥으로 떨어졌다. 지석준의 다리위에 떨어진 그는 부상당한 지석준과 함께 베란다로 통하는 벽을 통과하고 지석준을 베란다 난관위로 올려준 후, 다시 베란다로 내려와 등을 보였다.

**MBC 화면에 잡힌, A가 이성수씨인 근거**

**1. 지석준의 진술 정리(면담자 : 권영국 변호사)**

- 불이 번지자 주차장 편으로 나 있던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윤용현 순화동위원장 → 지석준 본인→ 이성수 용인신봉위원장 순으로 차례로 뛰어내렸고, 이성수 위원장이 지석준 다리 위로 떨어져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

- 망루에서 뛰어내린 당시 윤용현 위원장, 이성수 두 분은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 지석준 본인보다 앞서 떨어진 윤용현 순화동위원장이 지석준에게 "승우(지석준의 아들 이름)야 빨리 일어나 거기 있으면 타죽는다"라고 말하였고, 그 후 옥상 벽체와 망루 사이의 공간에서 대로변 방향(사용하지 않는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 당시 이성수 신봉위원장은 주차장 편 옥상난간에 다리 한쪽을 걸친 상태로 있었으며(사진 속에서 지석준씨 옆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사람이 이성수위원장으로 보인다고 확인함), 지석준 본인은 같은 옥상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끈이 풀려 팔 힘이 빠져 아래로 떨어졌는데, 건물 2층(1층)에서 튀어나온 슬라브지붕(샌드위치 판넬) 위에 떨어졌다.

- 그리고 특공대들에 의해 지붕 위에서 끌려 내려졌으며, 내려진 이후 주차장 바닥에 한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 지석준씨는 윤용현 위원장과 이성수 위원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 2. 지석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사진 등 자료

- <http://blog.daum.net/yongsantrue>에 링크시킵니다.

## 3. 지석준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동영상 발견

- MBC의 동영상을 확인한 유가족과 지석준씨는 영상에 나타나는 A씨가 고 이성수씨임을 확인 함

## 4. 동영상에 보인, A는 산자 중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 4층 망루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구속자 김재호, 김주환, 김대원, 김창수, 이충연(부상, 병원에서 추후 체포), 부상자 지석준, 김영근, 김성환, 천주석이다. 그리고 망자는 이성수, 윤용현, 이상림, 양희성, 한대성이다. 4층 망루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이들은 14명이었다.

- 이들중 MBC화면에 등장하는 이들은 1. 김대원(이미 옥상베란다쪽에서 발견, 화면에서는 베란다 왼쪽 방향으로 진행, 바로 옥상으로 난 문으로 진행, 이후 옥상 계단쪽에서 경찰특공대에게 체포됨, 체포된 이후 망루가 불에 타 넘어졌음) 2. 김주환(얼굴을 내밀고 화면에서는 사라짐. 건물 건너편의 옥상으로 이동, 다른 쪽 옥상 난간에서 저항하다가 경찰특공대에게 체포) 3. 김재호(가장 최초로 사진 오른편 에 등장, 곧바로 건너편 옥상으로 이동함. 김주환, 김창수와 거의 동시에 건너편 옥상에 등장, 망루가 완전히 소실된 이후 경찰특공대에게 연행) 4. 지석준(망루와 베란다 사이에서 베란다 쪽으로 넘어옴. 누군가의 부축을 받으며 베란다로 넘어와 베란다에 매달려 있다가 밑으로 추락, 건물 1층의 가설지붕위에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남. 5. 김성환(나뭇 가지 사이에서 등장, 독도 참치 밑의 금속 재질의 가림막 밑에서 베란다에 고인 물에 고개를 박고 생존, 망루가 완전히 소실된 후 경찰특공대에 의해 구조 119로 실려감)

- 그 외 살아있는 사람 중에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6.김창수 7.김영근 8.천주석 9.이충연은 각각 이렇게 움직였다.

\*김창수 : 망루의 주차장 쪽 창문으로 뛰어내린 후 기어서 문을 통해 베란다로 나옴. 베란다에서 창고 문으로 나가기 위해 쓰레기를 치우다가 사다리로 올라가서 건너편 옥상으로 넘어감. 창고 문으로 나가기 전, 지석준 등으로 파악되는 인물 2명이 베란다에 있었음을 목격.

\*김영근 : 망루의 주차장 쪽 창문으로 나와서 망루에 매달려 있다가 손이 뜨거워서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음. 깨어나니 주차장 쪽 1층 가설지붕 위 었음. 김영근은 뒤에 줄이 없는 우의를 입고 있었음.

\*천주석 : 망루에서 뛰어내린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으며 김성환씨와 함께 엎드려 있다가 체포됨. 이날 천주석은 골덴 바지를 입고 있었음.

\*이충연 : 망루의 한강로 반대편 창문으로 뛰어내린 후 옥상 바닥의 물 고인 곳에 엎드려 있다가 불이 꺼진 후 체포됨.

## 5. 이성수씨의 시신 발견 장소

- 첨부자료 [사망자발견위치(09.01.30,화재조사팀제공)]

## 6. 이성수씨 뿐만 아니라 윤용현씨에 대한 사망경위 확인도 필요하다

- 아직까지 윤용현씨와 관련된 증거자료가 없으나 진석준의 진술이 사실로 확인되어가는 정황에 따라, 윤용현씨 사망경위에 대한 확인 역시 필요하다. 진석준의 진술대로라면 윤용현씨 역시 망루 4층에서 옥상바닥으로 떨어졌고, 바로 남일당 건물 쪽으로 이동했다면 주차장 방면의 베란다로 통하는 건물 외벽에 의해 시야가 가려져 영상 등에 촬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건물 전체에 배치되었던 경찰특공대를 조사해, 윤용현씨와 같은 인물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한 의혹을 풀 실마리를 찾기 위해 검찰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

- 이성수씨와 윤용현씨에 대한 사망경위를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대형 참사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의혹을 풀어 나가야하는 검찰의 당연한 의무이다.

■김찰은 고인들 죽음의 의문부터 풀어라2.

신원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했다는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 부검 전에 신원확인은 충분히 가능했다.

사건이 발생한 날 20일 저녁 9시경 시신을 찾아 해매던 유족들은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후 순천향 병원에 안치되었다는 것을 확인한다. 유족들은 경찰들에게 계속적으로 항의하고 물리적 충돌을 한 이후에야 의사, 변호사들과 함께 시신 검안을 할 수 있었다. 유족 동의 없는 시신의 조기부검은 왜 진행되었나. 신원확인을 위한 것이었다면, 대답이 되지 않는다. 사망자 유품은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

**유족 동의 없는 시신 조기부검 경과**

- 진상조사단의 1월 21일 진상조사 보고기자회견의 시신검안결과(김정범 인의협 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 연합 정책실장 보고) 참조.

철거민 사망자 시신 5구의 부검이 시행될 시 유족측 참관인으로 참관해줄 것을 요청받고 저녁 9시경 순천향대학교병원(중앙의료원)으로 감.

순천향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도착 후 유족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시신 5구 모두 국과수에서 부검을 완료한 상태로 영안실에 안치되었다고 유족들이 알려옴, 경찰들이 시체안치실 입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고 있는 상태였음.

유족들 및 대책위측과 경찰간의 물리적 충돌 및 협상 끝에 1월 20일 새벽 1시경 시신 1구당 유족 1명과 의사 2인(김정범, 우석균) 변호사2인 포함 10명이 신원확인을 위해 시신을 검안하기로 합의하고, 시체안치실에 들어가 검안함.

시신 5구를 검안함.

**경찰, 신원확인을 위해 조기 부검을 한다고 말함**

- 사건발생 당일 1월 20일 날 저녁 7시 못 미친 시간, 양희성씨 유족 김\*\*씨에게 문자로 용산경찰서에서 ‘시신을 가지고 있으니 찾으러 오라’고 문자가 옴. 김\*\*씨와 동행해서 용산 경찰서로 찾아간 고 이상림씨의 자부 정\*\*씨의 말에 의하면, “한분은 신원이 나왔는데 왜 나머지 분들은 신원이 밝혀지지 않느냐”고 경찰에게 묻자, 경찰은 “시신상태가 훼손이 너무 많이 되어서 아직도 조사 중이다. 그래서 부검을 했다.” 라고 말함.

**검찰,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 문제 언급**

- 검찰은 당시 시신의 신원을 알 수 없었고,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들의 체포 시한이 48시간이어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하여는 급박하게 시신을 부검할 수 밖에 없었다고 변명하고 있음. (조호경 검사, 체포된 피의자들의 변호인 김종웅 변호사에게 말함.)

경,검이 말하는 신원확인 또는 48시간 체포시한의 문제는 거짓말이며 법적 연관관계가 없다

**1. 경찰은 신원확인을 하고 있었다. 사망자 유품에는 이상림씨 앞으로 온 공문이 있었다.**

- 그러나 사망자들의 신원은 유품들로 확인 가능했다. 가장 뚜렷한 증거물은 고 이상림씨 앞으로 용산구청으로부터 온 민원회신 자료였다. [사망자 유품 확인 내용 및 유품 사진 참조]

**2. 농성자 체포시한 48시간 문제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다.**

-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농성자들의 체포시한이 48시간이어서 급박하게 부검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변명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렇게 빨리 부검한 후 보름 가까이 지금까지 검찰이 밝혀낸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만 더욱 키우고 있다.

- 체포시한과 부검의 급박한 필요와는 법적으로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고, 이번 참사의 경우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있는 점 및 사건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절차, 특히 유족들의 승낙이나 통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부검을 실시했어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당국은 수사의 편의만 내세워 부검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후 2월 2일해야 비로소 유족들에게 부검감정결과를 통보했을 뿐이다. 이런 사정에서는 수사의 진실함과 공정함을 믿을 수가 없다. 검찰은 자신들이 그토록 강조하는 수사의 공정함과 정당함을 인정받고 싶다면, 지금까지의 부검과 관련한 절차 및 그 결과에 대하여 한 점 감춤도 없이 낱낱이 공개하고, 유족들에 대하여 진심이 담긴 사죄를 공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희생자들의 사망 경위와 사인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설명이 없이 철거민에게는 형사처벌을 경찰, 용역에게는 면죄부를 줄 것이 예상되는 수사발표를 해서는 안된다.

**사망자 유품 확인 내용**

- o 일시 / 장소 : 2009. 2. 3. 17:00 / 순천향병원
- o 참가자 : 촬영(황필규), 정리(김중웅), 입회(고 이상림의 장남)

용산경찰서 경찰들이 참관하면서 검사의 지휘 범위(사체는 눈으로만 확인하고, 촬영은 불가, 유품은 몸에서 분리되어 비닐백에 보관된 것만 촬영 가능) 안에서 확인할 것 요구

① 한대성

모자, 검은색 점퍼, 청바지, 양말, 속옷, 고무줄, 신발 없음

② 이상림

시계, 안경집, 안경알 한짝, 가위, 버클, 병, 볼펜, 전철연 회의자료, 젖은 포스트잇, 용산구청 공문 (민원 회신, 이상림 귀하 :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 신발 없음

③ 윤용현

차키, 열쇠, 라이터 2개, 장갑 오른쪽 한짝, 소지품 목록 문서, 플라스틱 병, 바지 방한복, 허리띠 조각, 신발 없음

④ 이성수

분리되어 비닐백에 보관된 소지품 없음  
몸에 부착된 소지품 : 등산화(KEEN), 방한복 바지, 녹색 볼펜  
왼쪽 엄지, 중지, 새끼 손가락 첫마디 절단

⑤ 양희성

신발 양쪽, 목장갑 양쪽

■ 의뢰 사항

용산 참사로 돌아가신 5인의 유족들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행한 부검의 부검감정서 분석을 요청 해옴에 따라, 5인의 부검감정서 사본에 대해 분석을 시행하였음

■ 분석 결과

1. 희생자 5인의 부검 결과 요약

가. 윤용현

- 특기할 만한 사항 없음

나. 이성수

- 두개골 골절, 오른쪽 대퇴골 및 하퇴골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다. 이상립

- 하지골 골절 있음, 두개골 외판 골절 있음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가슴 정중앙 앞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라. 한대성

- 양쪽 손가락과 오른 손목 소실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허리 부위에 소량의 피하출혈 있음

마. 양희성

- 두개강 내 연소 혈종 있음
- 우측 종아리 앞 부위에 피하출혈 있음

2. 결론

가. 희생자 5인의 사인은 화재사(火災死)로 추정됨

- 국과수의 부검소견으로는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후 시신이 불에 탔을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임

로 보임

나.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 외력에 의한 손상 여부는 있다고도 없다고도 할 수 없음 :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음
- 골절 등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이는 화재사의 특성상 외력에 의한 것인지 화염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
- 소량의 피하출혈이 관찰되는 이들이 있으나, 구타에 의한 것인지 기타 물리적 충격 등에 의한 것인지 특정하기 힘들
- 화재로 손실된 부위가 있어 이 부위의 외력에 의한 손상유무는 시신 부검으로 판단이 불가함

다. 추정되는 화재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만으로는 판단하기 힘들므로, 여러 가지 정황을 참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1. 본 분석은 부검감정서 사본의 기록과 사진만으로 이루어졌으므로 한계가 있음
2. 부검결과서는 5구의 시신이 각각 다른 의사들에 의해 부검되었고 그 시간이 사체수습 직후로 보임. 통상 부검이 유족들과의 협의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는 매우 이례적임.

[붙임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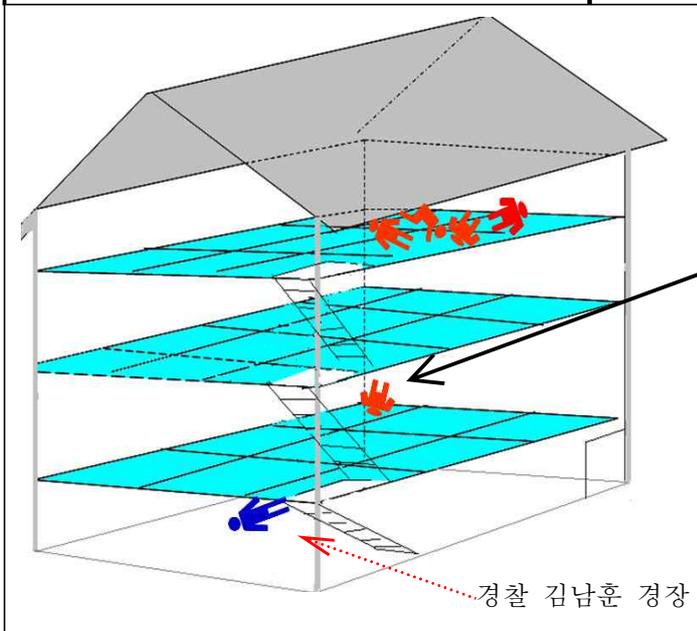
### 용산 참사관련 사망자 발견 위치

○ 사망자별 위치는 가건물의 층바닥(단)이 모두 무너진 상태여서 정확한 위치판단은 확인할 수 없으나 시신 4구가 무너진 3단 바닥(4층)위에 위치하고 소rak물이 덩어리 있지 않는 점으로 볼 때 4층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사망자 이성수(남 57세)씨는 무너진 가건물 2층 찌그러진 합석외벽사이에서 발견되었고 경찰 특공대 복장을 하고 있는 김남훈(남 32세) 경장은 옥상바닥(1층)에서 소rak물에 묻혀 있는 상태로 발견됨.

※ 사망자의 상세위치는 국과수 정밀 감식결과에서 발표될 예정임.

### 사망자 위치도 (추정)



[이성수(57세)씨 발견 장소]



시신4구 발견위치

무너진 층 바닥 모습

다함께 참여해요! "승용차 요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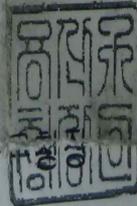
# 용산구



수신자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197-1 이상림귀하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평소 구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는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2007.12.12일자로 우리구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내용검토한바,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세입자와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므로 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보상계획의 공고·토지 및 열람, 보상액의 산정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배한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조합측과 협의 원료시까지 관리처분계획인가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이나,
3.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므로 앞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상기 조합과 세입자들간에 보상협의를 진행 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세입자 보상계획에 대한 협의가 없다고 해서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을 중단할 수 없는 사항임을 회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용산

2009.02.01 17:23

도시관리국 전결 12/20  
이종남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발송일자 : 2009년 2월 6일(금)

<기자회견 보도자료>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일시/장소 : 2. 6.(금) 오후 2시 민변사무실

순서

- 1. 19. '철거민들의 폭력행위'? 진실은 무엇인가? 2p, 별첨
-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대한 위법성 설명 8p
- 망루 탈출자 고 이성수 씨에 대한 검찰의 왜곡에 대한 반박 11p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 농성시작 3시간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될 만큼 농성현장 주변이 위험했을까?

### 1. 19일 농성현장조사 배경

용산농성 현장의 진압은 농성 만 하루 만에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6명의 사망자를 낳는 결과를 빚었다. 이를 놓고 많은 언론들은 2005년 6월 54일간 계속된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철거민들의 농성을 해산하는 과정과 비교하는 기사를 실었다. 이것은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해 진압하는 방식은 같으면서도 다른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경찰권 발동은 최소화하는 것이 시위 진압의 기본 원칙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신중함이 필요함에도 많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빨리 진압작전을 진행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것에 대한 경찰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 1월 20일 연합뉴스 인용

20일 오후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치안감)의 브리핑

"도심지였고 하루 종일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일찌감치 특공대를 투입했다"고 조기 진압작전 개시 이유를 밝혔다.

"조기 작전개시를 하려면 폭력성과 위험성을 많이 보는데 예전에 없던 화염병이 난무하고 새총으로 골프공 등을 무작위로 투척한 점으로 미뤄 시내 중심에서 '테러'라고 할 만큼 과격했다"고 강조했다.

▷ 1월 21일 YTN 보도 인용

[녹취: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화염병, 염산병, 시너 난무해 도저히 묵과 못하는 상황이어서 검거 이전에 설득을 많이 했습니다."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브리핑과내용은 상당수 거짓으로 밝혀졌으며,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은 보고만 받았다고 책임을 회피했다.

21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경찰로부터 제출받은 '용산 4구역 관련 상황 보고'. 문건에 따르면 경찰은 19일 오전 5시30분 철거민들이 용산 한강로 남일당 건물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3시간30분만인 오전 9시에 대테러 진압용 특수부대, 즉 경찰특공대 2개 제대에 대한 출동지시가 내려졌다. 또 시너가 있는 줄 몰랐다는 답변과 달리 사전에 매우 자세히 시위물품의 종류 및 규모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처럼 경찰 자신들의 신속했던 진압작전을 숨기려고 했었던 경찰의 태도를 미루어 생각해보면 19일 현장의 상황이 경찰이 발표했던 것처럼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정도로 '테러'에 준하는 상황이었는지, 다른 한편 해산명령을 하기에 앞서 철거민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과정이 충분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농성현장과 맞은편에 위치한 상가주민과 뒤편에 있는 상가주민을 대상으로 19일

당시 상황에 대해 조사하였다.

## 2. 19일 농성현장조사 대상

- 17인을 대상으로 1~3회 면담을 진행
- 전철연 회원 (1인)
- 용산 4구역 상가세입자 철거대책위 (2인)
- 한강로 주변 상가 (6인)
- 남일당 빌딩 뒤편 상가 주민 (4인)
- 시민 (4인)

## 3. 조사내용

### 1) 19일 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목적

- 벽돌, 골프공, 화염병, 염산병, 구슬 투척과 관련한 내용
- 화재와 관련한 내용
- 인명, 차량 피해에 대한 내용
- 영업과 관련한 내용
- 경찰과 용역에 대한 내용

### 2) 19일 농성현장에 대한 느낌

- 시민과 차량에 대한 의도적인, 무작위적인 공격으로 보여졌는지
- 경찰의 대응, 경찰특공대 투입에 대한 의견

## 4. 조사내용을 근거로 한 19일 상황

- 농성자들이 19일 새벽 남일당 건물로 진입하고 난 이후 건물 밖 용역들과 대치하면서 돌이나 골프공 투척
- (신용산 3길)
- 망루를 설치하기 시작하면서 경찰의 살수가 2방향에서 진행 (풍산권투체육관 옥상과 대로인 한강로 쪽)
- 살수는 아침부터 낮까지 지속적으로 진행 (오전 7:00경 ~오후 1:00경으로 추정)
- 살수를 하는 곳으로 농성자들이 돌, 골프공을 투척
- 오전 10:30~11:00 경 동막골에 화재발생 (신용산 3길)
- 오후 1:00 이후 소강상태 유지

## 5. 서울경찰청의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점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와의 비교

### 1) 경력투입 법적근거

망루설치를 저지하는 경력·용역뿐만 아니라 도로(행인)에 화염병·박카스(염산)병 및 벽돌 무차별 투척하고 방화를 시도하는 등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위해와 주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 행인·차량을 상대로 새총 발사 및 투척행위 없었다.

1차례 화재발생은 방화가 아니라 경찰의 물대포를 저지하다 일어난 일으로 추정된다.

### 2) 진입대책

진입작전 전 위해용품 반납 후 자진퇴거토록 설득 및 경고 방송

→ 19일에 경찰의 설득이나 대화를 요구하는 방송을 듣지 못했다.

"제일 의아한 것은 경찰이 왜 협상을 안했는가 이다. 여기서 방송으로 저 위에 사람들에게 확정기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한번도 없었다. 자기네끼리 속닥속닥해가지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요구사항이라던가 그런게 없었다." (인터뷰 내용 중)

### 3) 19일 상황개요

9:00경 경찰특공대 2개제대 출동지시

10:45현재 옥상에 새총 2대 설치, 돌·쇠 등 경력 및 주변 차량을 향하여 투척 중

10:50현재 건너편 옆 빌딩에 화염병 투척, 주변 가정집(공가)과 약국에 화재발생

→ 경찰보고에도 새총과 화염병이 등장한 것은 10:45 이후임에도 9시경 경찰특공대 출동지시가 내려졌다.

약국에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다.

화재가 난 곳은 공가인 상가 1채였다. (동막골)

## 6. 농성자들의 투척행위와 그 피해상황 증거로 경찰이 제출한 증거사진, 영상과 관련하여

(경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찰제공자료)

- 앞 유리가 파손된 승용차는 용산서 경비과장의 차량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12:10경 용산서 경비과장의 차량 유리창이 새총으로 발사된 유리구슬에 의한 타격에 파손되었다고 보고했다. 이는 오전까지 진행되었던 경찰의 살수를 저지하기 위해서 철거민이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 추정된다.

- 한강로를 지나는 차량 앞으로 떨어진 화염병은 20일 새벽 진압작전 중에 일어난 상황이다. 20일 새

벽은 19일 오전상황과는 달리 한강로의 차량통제가 뒤늦게 되었다. 19일 오전에는 남일당 건물주변을 통제함과 동시에 한강로 교통도 통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강한 저항이 우려되는 실제 진압작전이 진행되기 전에는 교통통제가 안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건물앞 도로를 잠시 통제하는 듯하더니, 이내 일반 차량을 막지 않고 버스와 택시, 승용차 등을 건물 앞 도로로 통과시키더군요. 만에 하나 이 차량에 화염병이 떨어질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도로를 통제하지 않고 차량을 진입시킨 건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성 철거민들은 일반차량이 도로 앞으로 지나다니자 잠시 화염병 투척을 중지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노순택씨의 증언 중)

서울경찰청의 '한강로 3가 남일당 빌딩 전거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의 1월 20일 상황보고 내용에는 5:50경 양방향 전면 통제라고 기록되어 있다. 진압작전이 시작하기 전에 교통통제가 되어야하나 진압 이후에 통제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진압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찰의 작전으로 위험이 초래된 것을 농성자들의 과격시위의 근거로 제시하여 경찰특공대 투입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 7. 19일 용산은 '테러'의 상황이 아니었다.

농성건물 주변의 상인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사실은 경찰의 주장처럼 '테러'와 같은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농성자들이 돌이나 골프공을 투척한 시점은 경찰의 살수가 진행되거나 용역의 접근이 있을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살수를 멈추고 용역의 접근이 없었던 오후 시간에는 투척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투척된 물품의 대부분은 돌과 골프공 이었으며, 화염병의 사용은 극히 제한적 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염산병의 투척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진다. 화재는 오전 10:30~11:00 경 1건, 차량 유리가 깨지는 피해가 1건, 공부방 유리창이 깨진 피해 1건 있었으며 그 밖의 다른 피해는 없었다. 이러한 피해도 경찰과의 대치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지 의도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증언자의 대부분은 농성자들이 일반시민과 이동하는 차량에 '무작위'로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없었으며 경찰의 통제 하에 통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등 조기 진압을 뒷받침해줄 만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영하의 기온에 경찰의 살수가 장시간 지속되었으며, 화재진압을 해야 할 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농성자들에게 살수를 하는 행위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경찰의 행동으로 볼 수 없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시간에는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하루 종일 화염병이 난무'했다고 하는 김수정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말은 전혀 사실과 다른 새빨간 거짓이었으며 오히려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경찰 제공한 피해상황	진상조사단의 의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주변상가 등 물적 피해	
1.19 10:50경 접거농성건물 옆 신용산빌딩(5층건물) 4층화재 *동빌딩 1층에 상가 2개소(MK치킨·한강지물포, 각 5평 규모)영업중	신용산빌딩 1층의 상가 MK치킨과 한강지물포는 영업중단상태였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인 피해상황 및 진술	
① 나00(61세) 1.19 09:20경 71다1060호(카운티 용산초교 실내수영장차량) 승합차를 운전하여 남일당 건물 앞 도로를 지나가다 건물 옥상에서 시위대가 던진 돌에 맞아 운전석 앞 유리창 파손(견적25만원) *당시 시위대가 일반 차량이 다니는 도로상으로 화염병과 돌 등을 투척하는 것을 직접 목격	①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용산초교 실내수영장서틀차량으로 신용산빌딩에 손님 승차를 위해 매일 09:40분에 도착. 각 경유지를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기 때문에 20분 일찍 올 수가 없으며 특히 19일 오전은 교통소통이 어려웠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늦게 도착할 수 밖에 없다.
② 김00(61세) 1.18 17:00~1.19 14:00경 남일당 건물 출입구 앞에 42누2022(모닝) 차량을 주차했다가 돌에 맞아 뒷유리·문짝·사이드미러 등 파손(견적 12만원) *차량이동을 위해 현장에 갔을 때, 옥상에서 시위대가 건물 아래로 돌을 던지는 것을 목격	② 1.19 14:00경 차량이동을 위해 김00씨가 갔을 때는 양측의 소강상태로 돌을 던지지 않았음. (당시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음) 인근상가 주민이 차량이 파손될 지도 모르니 옮길 것을 경찰에게 요구했으나 경찰은 차주를 알 수 없다며 방치해두었다. 경찰이 차량이동조치를 취했다면 피해는 없었을 것이다.
③ 오00(48세) 1.19 10:00경 자가용으로 이동하여 남일당 건물에서 돌을 도로로 던지는 것을 목격, 피해는 없음	③ 용산4지구 철거민에 따르면 1.19 10:00경 전철연 시위대가 남일당 건물앞 차로를 점거하고 있어서 남일당 건물에서 전철연 시위대가 있는 도로로 돌을 던질 수 없었다. (경찰측자료에도 10:00경 남일당 앞 차로 점거로 하위 2개 차로(남일당건물에 붙은 차로) 통제했다고 함)
④ 최00(67세) 1.19 08:50경 남일당 건물에서 화염병 수십개를 투척하는 것을 한강대교북단 고가에서 목격	④ 한강대교북단 고가에서 사고현장인 남일당 건물까지는 1km의 거리이며 우측으로 약간 굽어진 길이라 상식적으로 남일당 건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화염병투척을 목격하기 어렵다.

피해자의 피해상황에 대한 구체적 자료(사진, 수리영수증, 현장에 있었던 증거)가 부족.

경찰에서 파악한 목격자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 아닌 차량으로 이동 중 현장을 본 사람들로 어떻게 경찰에 목격진술을 하게되었는지와 구체성 부족.

**경찰과 철거 용역업체의 합동작전에 의한 진압과  
철거 용역업체 방화 등에 대한 형사책임**

**1. 경찰과 철거 용역 업체의 합동작전에 대한 형사책임**

● **밝혀진 진실**

- ① 2009. 1. 19. 모 철거업체의 과장이 경찰의 호위 아래 철거민들에 대한 물대포 발사
- ② 2009. 1. 20. 새벽 진압이 개신된 이후 POLICIA(‘경찰’이라는 스페인어)가 적힌 방패를 들고 철거업체 5명이 경찰병력의 뒤를 따라 이동하여 남일당 건물 진입 시도
- ③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입니다” 등의 경찰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무전교신 내용에 의하면,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진압에 동원됨

● **합동작전에 대한 형사책임**

- ▶ ① 2009. 1. 19. 모 철거 용역 업체의 과장이 경찰의 호위 아래 철거민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위 철거 용역 업체 직원이 물대포를 발사한 것은 철거민들에 대한 폭행죄 및 경비업법위반죄(제15조의 2 제1항, 제28조 제5항)를 구성함.

○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범죄의 진압 및 예방에 대한 책무가 있는 현장 경찰책임자는 그 행위를 제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인·방조하였음. 따라서 폭행죄 및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물리력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비업법위반죄(제15조의 2 제2항, 제28조 제2항 제6호)를 구성하고 또한 직무유기죄도 성립함.

○ 그리고 물대포를 발사하게 한 것은 경찰이 직권을 남용하여 진압 업무가 없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으로 하여금 진압 업무의 일종인 물대포를 발사하게 한 행위이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함

- ▶ ② POLICIA가 적힌 방패를 들고 철거업체 5명이 경찰병력의 뒤를 따라 이동하여 위 건물 진입을 시도한 행위

○ POLICIA가 적힌 방패를 들고 다니는 것은 경찰공무원을 사칭한 것임

○ 또한 그 방패를 들고 진압업무를 하기 위해 위 건물로 진입을 시도한 것은 경찰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한 것임

○ 따라서 형법 제118조의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에 해당하는 공무원자격사칭죄를 구성함

- ▶ ① 내지 ③ 사실에 의할 경우 2009. 1. 20. 진압 작전은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 사이에 긴밀한 협조하에 합동작전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경비업법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

준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음(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그런데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행하는 철거 및 진압 현장에서 위험발생방지 등을 위해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에 해당하는 업무이므로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 소속 직원들만이 할 수 있음. 따라서 무허가 철거용역 업체의 책임자는 **경비업법위반죄**에 해당(제28조 제2항 제1호)

○또한 무허가철거업체인 호람, 현암 철거업체 직원들은 건물을 부수는 등 순수한 철거업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펴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에 해당(제15조의 2 제1항, 제28조 제5항).

○그리고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은 경찰이 철거 용역 업체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경찰책임자 등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이 성립함과 아울러 그러한 물리력 행사를 제지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도** 성립함. 또한 물리력을 행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비업법위반죄**(제15조의 2 제2항, 제28조 제2항 제6호)를 구성함

○또한 경찰이 합동 작전에 의해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로 하여금 진압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은 위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가 아니고 또한 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임. 따라서 경찰이 직권남용하는 것이고 형법 제123조의 '타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이므로 관련 경찰들은 **직권남용죄 성립**

## 2. 철거 용역 업체의 방화 등에 대한 형사책임

### ● 드러난 진실

- 용산소방서가 작성한 '용산 남일당 시위사고 관련 단계별 현장대응상황'에서 "철거용역직원"들이 남일당 건물 내에서 수차에 걸친 방화가 사실로 드러나

○2009. 20:30경 남일당 건물 3층 계단에 적치되어 있던 목재 등 폐건축자재화재발생

○2009. 1. 20. 02:13분경 남일당 건물의 3층 계단에 적치된 폐목재에서 화재 발생

○2009. 1. 20. 03:06경 위 건물의 3층 부분의 폐목재에서 화재 발생

○2009. 04:26경 위 건물 2층에서 모닥불을 피운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에게 소방관이 모닥불 끌 것을 요구함

○위와 같은 정황은 2009. 1. 19., 20. 새벽에 여러 차례 나무와 페타이어 등을 이용하여 불을 질렀다는 철거민들 및 목격자들의 진술과 일치함

### ● 방화에 대한 형사책임

○위와 같은 방화는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철거민들과 격렬하게 대치하는 과정에서 방화한 것임

○그 당시 위 남일당 건물에는 철거민 등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방화는 현존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함

○또한 철거민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함

○그리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와 같은 방화는 물리력 행사를 금하는 경범죄법 제15조의 2에 저촉되므로 **경비업법위반죄**에 해당함(제15조의 2, 제28조 제5항)

● 철거 용역 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 등을 소지하고 위 남일당 건물에서 위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남일당 건물에서 호람, 현암 업체 직원 들이 쇠파이프를 들고서 위력을 행사한 것이 드러남

○이는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업체 직원들에게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함(동법 제7조)**

● 경찰이 위와 같은 방화와 쇠파이프 등의 소지한 것을 알고서도 묵인·방조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등이 성립하고, 역시 직무유기죄가 성립함.

## 지석준, 김영근 면담 (2009. 1. 27.)

일시 : 2009. 1. 27. 21:30 ~ 2240

장소 : 순천향병원 825호

방문자 : 권영국, 이재호 변호사 등

### 1. 지석준 면담내용

지석준 (순화동철대위 총무)

- 망루 내 각 층의 바닥은 베니다판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의 베니다판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의 판으로 짜맞추어진 것이며, 그 사이 사이로 틈이 있어 아래층이 보이는 구조임
- 경찰특공대의 2차 진입 당시 망루 4층 계단 입구 쪽에 이충연 용산4구 철대위원장과 그 아버지 이상림씨 등이 있었고, 본인은 주차장 편의 창문 가까운 곳에 서있었다.
- (망루에서) 불이 번지자 주차장 편으로 나 있던 망루 4층 창문을 통해 윤용현 순화동위원장 → 지석준 본인 → 이성수 용인신봉위원장 순으로 차례로 뛰어내렸고, 이성수 위원장이 지석준 다리 위로 떨어져 자신의 다리가 부러졌다.
- 망루에서 뛰어내린 당시 윤용현 위원장, 이성수 두 분은 모두 생존해 있었으며 외관상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다.
- 지석준 본인보다 앞서 떨어진 윤용현 순화동위원장이 지석준에게 "성우(지석준의 아들 이름)야 빨리 일어나"라고 말하였고, 그 후 옥상 벽체와 망루 사이의 공간에서 대로변 방향(사용하지 않는 문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동해가는 모습을 보았다.
- 당시 이성수 신봉위원장은 주차장 편 옥상난간에 다리 한쪽을 걸친 상태로 있었으며(사진 속에서 지석준씨 옆 난간에 걸터앉아 있는 사람이 이성수위원장으로 보인다고 확인함), 지석준 본인은 같은 옥상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끝이어서 팔 힘이 빠져 아래로 떨어졌는데, 건물 2층(1층)에서 튀어나온 슬라브지붕(샌드위치 패널) 위에 떨어졌다.
- 그리고 특공대들에 의해 지붕 위에서 끌려 내려졌으며, 내려진 이후 주차장 바닥에 한참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 지석준씨는 윤용현 위원장과 이성수 위원장이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사망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믿기지 아니하였다.

### 2. 김영근 (지금동 위원장) 면담 내용

- 컨테이너로 망루 지붕을 내리 누르고, 옆으로 밀자 망루가 휘청함.
- 망루에 균열이 생기자 물대포를 마구 쏘
- 물대포가 소강된 상태에서 아래에서 열기가 올라옴
- 창문으로 바깥으로 고개를 내밀었으나 뜨거워서 다시 안으로 들어왔음
- 잠시 방황하다 숨을 못쉬어서 망루 주차장 쪽 창을 통해 나옴.
- 벌어진 틈 잡고 매달려 소리치다 뜨거워서 손 놓고 떨어짐
- 그대로 주차장 쪽 건물 벽면에 붙어있는 1층 위 샌드위치 판넬 지붕 위에 떨어져 기절함. 이로 인해 허리와 다리가 부러지는 증경상을 입음
- 눈떠보니 누군가가 올라와 끌어내려 감.
- 증상을 입은 본인에게 경찰이 "너 새끼 잘 걸렸다"며 발로 옆구리를 걷어찼.
- "나 다쳤으니 건들지 마"라고 하자 옆 동료가 팔꿈치로 치면서 "하지마"라고 함
- 허리와 다리가 부러진 채 경찰 호송차에 태워져 30분간 방치되었고, 이후 병원으로 후송됨.

=====

참고 :

- 1) 김영근씨는 2. 2. (월) 검찰조사시 검찰이 보여준 영상이 매우 흐리고 작아서 잘 구분할 수 없었고 검찰은 건물의 1층 슬라브 지붕(샌드위치 판넬) 위에 떨어진 사람이 본인이라고 물어 본인이라고 대답하였음, 그런데 나중에 보니 검찰의 질문이 건물의 외벽난간에서 떨어진 것으로 되어 있어 이것은 사실과 다르므로 자신은 망루에서 떨어진 것으로 정정함.
- 2) 사고 당시 건물 1층의 스라브 지붕(샌드위치 판넬) 위에 떨어진 사람은 지석준과 김영근 두 사람이었으나 검찰은 1명만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 - 부실수사의 또 다른 사례임.

2. 6. 보도자료 첨부자료 삽입

[090206\_보도자료\_첨부.pdf] 2쪽

[2\_진입계획 문서비교.ppt] 4쪽

[3\_경찰피해내용비교.ppt] 9쪽

[2\_090206-지식준이아니라고.ppt] 10쪽

총 25쪽

보/도/자/료

수 신 : 제 언론 및 사회단체

발 신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문 의 : 김낙준 (02-522-7284)

제 목 : [보도자료]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발송일자 : 2009년 2월 9일(월)

[보도자료]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일시 : 2009년 2월 9일(월) 오후 2시

장소 : 민변사무실

순서 :

-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 권영국변호사, 오윤식변호사, 김랑희활동가
- 화재원인과 관련된 진실 : 박진 활동가
- :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 입장 정리 및 요구사항 발표 : 장주영변호사(진상조사단장)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진상조사단

[입장 정리와 요구]

**I.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밝힐 의지가 없었다.(편파 왜곡수사)**

- 발화원인에 대해 경찰이 주장한 화염병으로 인한 발화라는 애초의 주장 이외에 어떠한 구체적 증거도 밝히지 않았다.
- 경찰의 과잉진압 실체를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수사를 전개, 예상된 결론만을 내렸다.
- 용역업체의 폭력과 불법사실에 대해 언론을 뒤쫓는 수사로 일관, 결국 용역들에게 최소한의 책임만을 물었다.
- 수사초기부터 전철연 배후설에 대해서만 집중 수사하면서 사건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정치적 수사로 일관했다.

**II. 검찰은 철거민들과 진상조사단, 언론 등이 제기한 많은 의혹에 대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축소 은폐수사)**

- 경찰의 사망에 대해서는 철거민들에게 책임을 묻는 반면, 사망한 철거민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
- 시공사의 개입과정과 실체에 대해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사인의혹과 관련한 실체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
- 법 의학자를 동원한 사체 부검이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되었다며, 유족동의 없는 조기 부검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해명하지 않았다.

**III.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 검찰은 참사의 원인을 발화원인에서만 찾음으로써, 참사의 근본원인을 밝히지 않았다.
- 참사의 원인은 조급한 진압,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 명백한 위험을 경고했던, 1차 화재 당시 진압을 멈추기만 했어도 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

**V. 우리의 요구**

- 심지어 우리는 경찰호스를 든 용역은 처벌하면서, 호스를 들도록 시킨 경찰을 처벌하지 않는 검찰의 결정을 보며, 검찰에 대해 어떠한 신뢰도 할 수 없음을 밝히며 용산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를 요청한다.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에 관한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검찰 수사 요지	진상조사단의 의견
경찰특공대 투입의 위법성	철거민들이 화염병 투척, 새총발사로 시민 안전이 크게 위협됨.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하고자 경찰특공대를 조	- 검찰은 진압작전 전과 후의 농성자들의 투척과 피해사례를 분리하지 않음으로써, 농성자들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특공대 조기 투입 결정은 적법했다고 판단함. 그러나 <b>전 경찰특공대 투입 근거인 19일의 급박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시하지</b>

	<p>기 투입한 조치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p>	<p><b>못함.</b></p> <p>- 검찰의 발표는 19일 오후 7시경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승인했다고 발표했으나, 서울경찰청의 '농성장 진입계획' 문서에 의하면 19일 오전 9시경 경찰특공대 2개계대 출동을 지시했다. 17분후 철수했다고 하더라도 경찰특공대의 출동은 농성진압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설사 경찰특공대 투입결정이 19일 오후 7시였다고 하더라도, 19일 약 오후 1시경부터 오후 7시까지는 소강상태를 유지했던 시간으로 경찰특공대 투입의 근거를 찾기 어렵다.</p> <p>- 경찰특공대들의 임무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단속활동"이다.이라고 할 것이고, 중요범죄란 각종 테러 및 요인에 대한 범죄 등 테러 및 인명 구조 수준의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명에 대한 위협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일반 시위 현장이나 농성 행위에 대테러진압을 주요임무로 하고 공격적 진압방식을 사용하는 경찰특공대를 배치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법한 것이다</p> <p>-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p> <p>1)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전에 농성자들과 경찰과 용역의 대치 상황에서 공가의 화재발생이 1건 이외의 화재나 일반시민의 피해는 없었음.</p> <p>2) 진압작전 전인 19일 오후에는 소강상태로 통행이 자유로웠음</p> <p>3) 주변 상가와 주민들은 19일 농성자들이 시민이나 차량에 무차별적인 피해를 가하는 등의 위협적인 상황은 아니었다고 증언</p> <p>4) 경찰의 협상시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의 모색보다는 경찰의 의견을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었음. 해산이후의 대책 제시 없이 무조건 망루에서 내려올 것을 요구.</p>
<p>철거민들 죽음 등에 대</p>	<p>-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p>	<p>- 다른 유사 망루 농성 사례(오산 세교지구 등)와 비교할 때, 본 사건에서의 경찰의 진압방식 등, 용산 철거민들의 대형 참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임.</p>

<p>한 경찰의 직무집행에 있어서의 과실 및 위법성</p>	<p>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p> <p>-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그 작전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p> <p>※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23438 판결도 같은 취지임</p> <p>따라서 경찰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과 같은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b>경</b></p>	<p>-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조 제2항의 경찰비례원칙에 어긋나는 경찰권 행사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음.</p> <p>우리의 경우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위반된 다수의 사안에 대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의 위법성, 과실 등을 인정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고(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3다57956 판결;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대법원 2008.2.1. 선고 2006다6713 판결 등 다수 판례), <b>또한 경찰관이 잘못된 총기사용으로 인한 피체포자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음(창원지법 2003. 6. 17. 선고 2003노167 판결).</b></p> <p>※ 마약에 취한 범인이 자신의 동거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면서 가스렌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칼로 끊어 가스렌지를 집어던진 후, 한 손에는 가스호스를, 다른 손에는 라이터를 들고, “다 죽어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더욱 격렬하게 난동을 부렸다. 이에 경찰관들은 원고가 환각상태에서 가스를 폭발시킬지도 모른다고 판단, 구경 나온 동네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한편, 가스총 발사를 경고한 후 2회 발사하여 체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위 범인의 오른쪽 눈이 실명된 사안(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7218 판결). 이러한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고, 그 집행에 과실이 있다고 봄.</p> <p>- <b>본 용산화재참사는 안전수칙을 지키지 아니한 경찰의 ‘위법한’ 과잉 진압이 주요원인이고 따라서 철거민의 사망에 대한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b></p> <p>구체적으로 보면</p> <p>1) 경찰이 농성자들에 대한 설득과 대화 과정을 사실상 생략한 채 '09. 1. 19. 용산 4구역 상황을 도심 테러 수준의 위험 상황으로 왜곡하여 '경찰특공대의 투입 요건이 아님에도' 공격적 진압방식을 구사하는 대테러부대(경찰특공대)를 투입함으로써 극단적인 대처상황을 초래함.</p> <p>2) 진압 과정에서의 안전조치의 실행 여부</p> <p>① 다량의 화염병과 세눅스가 망루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p>
----------------------------------	---	--

<p><u>찰특공대를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상태로 조기 투입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u></p>	<p>망루로의 진압 개시</p> <p>② 유류화재에 대비책: 화학소방차는 망루 전소 이후에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사용되지 못함{(용산소방서, 마포소방소(07:41분경 현장 도착), 종로소방서(07:48분경 현장 도착)). 폼이 포함된 소방펌프차를 이용하여 화재진압 시도하였으나, 이로는 불충분한 것(화학소방차의 출동한 것이 그 근거).</p> <p>③ 안전매트: 남일당 건물 북쪽(장안약국 방면)으로만 몇 개 설치하고 남일당 건물의 남쪽(주차장 방면), 동쪽(한강로 반대 방면) 및 서쪽(한강로 방면)다른 방면에는 미설치.</p> <p>④ 그물망, 에어매트는 미설치.</p> <p><b>3) 경찰의 업무상 중과실- 진압시 안전수칙 및 고도의 주의 의무 위반</b></p> <p>① 계획한 안전대책이 거의 실행되지 않음.</p> <p>②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와 공동으로 마련한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에 명시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의 경우 진압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p> <p>③ 경찰청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에 명시된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하고 진압을 강행.</p> <p>④ 컨테이너로 망루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망루안의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함.</p> <p>⑤ 경찰특공대는 망루 안으로 1, 2차 두 차례 걸쳐 진입하였는데</p> <p><b>1차 진입시 망루 안에 세눅스, 화염병 등 다수의 발화원(發火源) 및 위험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특히 6시58분 11초와 7시 6분 57초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위험성</b></p>
---	--

		<p><b>을 경험.</b></p> <p>따라서 위 매뉴얼에 따라 대형화재 위험에 대비하여 다량의 발화원 및 위험원을 제거하는 조치, 즉 망루 밖으로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p> <p>그리고 위와 같이 대형화재의 위험에 대한 최대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망루 내 잔류 농성자들에 대한 검거 및 진압 작전을 잠정 중단하는 당연함.</p> <p>⑥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진입 및 진압 강행하다가 화재 발생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된 것이므로 진입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결여한 것임.</p>
<p>경찰의 과잉진압과 철거민 등 사망과의 인과관계</p>	<p>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p> <p>이번 <u>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u></p>	<p><b>-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사망과 주의의무 위반과의 상당인과관계 존재</b></p> <p>① 경찰특공대가 옥상을 완전 장악한 후, 철거민들은 부녀자들을 포함하여 망루 안으로 대피, 망루는 4층 옥상에 설치된 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10미터의 구조물로 망루 안 철거민들의 퇴로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p> <p>② 경찰특공대 망루 안 1차 진입시 다수의 철거민 농성자들을 체포, 그 과정에서 망루 3층까지 진입하여 망루 안에 화염병, 세눅스가 다량 존재하는 것을 인지함. 특히 6시58분11초와 7시6분 57초(경찰 무선 교신 내용임, 사자후 TV 동영상 분석에 따르면 두 번째 화재시각은 7시5분54초임) 등 두 차례에 걸쳐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고도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인지함.</p> <p>③ 07:20분경 매뉴얼에 따른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제거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 및 진압을 강행.</p> <p>④ 경찰특공대들이 2차로 망루 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7시 20분경 화재가 발생하여 07:25분경 망루 전체로 화재가 확산.</p> <p>⑤ 망루 안에 있던 윤용현, 지식준, 이성수 등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하였으나, 윤용현, 이성수씨는 불에 타 사망한 채로 발견.</p>

		<p>⑥ 따라서 다량의 인화물질의 존재 및 고도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인지도도 불구하고 발화원 및 위험원의 사전 제거의무 등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2차 망루 안으로의 진입 및 검거 강행. 화재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진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그 화재로 인하여 6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사망과 발화원 및 위험원 사전제거의무 위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고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존재함.</p> <p>⑦ 또한 다수의 부상자들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안전조치 미이행과 그로 인한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부상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한다고 할 것이다.</p> <p><b>결국 경찰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성립</b></p>
<p>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책임</p>	<p>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거나 작전을 지휘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론 무전기 꺼냈다는 답변에 대해 무전기 로그인 기록이 24시간만 저장되는 시스템이어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결론지음.</p>	<p>1) 우리 대법원은 “ 2인 이상이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과실행위를 하여 범죄 되는 결과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대법원 1979. 8. 21. 선고 79도1249 판결;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781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 대법원 1996. 8. 23. 96도1231 판결 등 다수 판결 참조)</p> <p>2) 또한 선임감독상의 과실 또는 관리감독상의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 발생의 현장에 없던 자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임(대법원 1966. 6. 28. 선고 66도758 판결; 대법원 1994. 5. 24. 94도660 판결)</p> <p>3) 따라서, -이송범 경비부장은 진압 당시 무선 상황을 총괄한 자로서, 진압 작전의 결재선상에 있던 자임,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 김수정 차장 등의 현장지휘자 등과 무선을 총괄.</p> <p>-김석기 청장은 진압을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로서, 서울지방경찰청장이자 실질적인 경찰 총수임,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진압 대책회의 주재함,</p> <p>-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 지휘관들의 안전한 진압 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한 잘못이 있음</p>

		<p>-이미 자신이 밝힌 바와 같이 진압개시 전과 진압완료 후에 현장지휘자와 통화한 사실이 있어(집무실에서 무전기는 가지고 있었으나 이를 켜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으나 통상 중요작전 상황에 무전기를 켜둔다는 점 등에 비추어 그러한 진술은 믿을 수 없고 <b>그 자체로 직무유기이자 관리감독을 해태한 증거에 해당</b>), 김수정 차장 등 현장지휘자와 의사연락이 있었음.</p> <p>-결국 <b>진압 현장에 없었던, 김석기 서울방경경찰청장, 위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에 대해서도 업무상과실 치사상죄가 성립함</b></p>
화재원인	발화원인	<p>시너를 계단에 뿌린 상태에서 화염병불이 옮겨 붙음</p> <p><b>1) 농성자들이 망루 내에서 시너를 뿌린 사실이 불명확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은 그 근거로 망루 내 계단에서 흘러내리는 액체 동영상 제시하고 있으나, 그 액체가 물대포에 의해 쏟아지는 물인지, 아니면 유류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통에서 나왔다고 보기에 너무 많은 양임.</li> <li>- 농성자들은 망루 안에 세녹스를 뿌린 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함.</li> <li>- 농성자들이 망루에서 시너를 뿌렸다면, 같은 시간 망루 아랫면에서 망루를 뜯고 있던 경찰특공대의 옷에서 다량의 시너성분이 포함되어있어야 함. 이것을 증거로 내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li> <li>- 결정적으로 검찰은 망루 내 농성자나 경찰 특공대원으로부터 “망루 계단으로 시너를 부었다”거나 “붓는 것을 봤다”는 진술을 받아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고 함(연합뉴스 09. 1. 29. 자 <a href="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9/2009012901151.html">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29/2009012901151.html</a>)</li> <li>- 검찰수사발표내용중 화재원인및 사망자의 사인 부분(12p)에서 밝힌 &lt;소방관진술&gt;과 관련해서는 “망루밖에서 시너를 부었다”고 증언한 것이 애초에는 그러나 “망루 3층”에서 철거민 세녹스통을 붓는 채증 영상은 없는 듯함, 오히려 다른 동영상과 망루 층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짐.</li> <li>- 이와관련해서 &lt;피의자 김00&gt;의 진술은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gt; 그러나 김00씨는 발화점이라는 용어에 대해 불이 시작된 곳이 아니라,</li> </ul>

		<p>불을 보았던 곳이라고 정정 진술하였음.</p> <p><b>2) 설령 그 액체가 유류라고 하더라도 유류를 부었다는 사실이 발화원이 될 수는 없음.</b></p> <p><b>3) 유증기로 인한 화재 발생 가능성</b>  - "동영상과 당시 소방 무전 기록 등을 보면 순식간에 불길 이 치솟아 망루 지붕까지 치솟는데 이는 서서히 진행되는 화재가 아니라 폭발로 보인다", "시너를 화염병으로 옮기면서 유증기가 발생, 공기 중에 쌓여있었던 것 같다."  (검찰 참고인 조사 / 용산소방서 관계자의 진술 09. 2. 2. 서울신문)</p> <p>- 만일 시너에서 발생한 유증기로 인한 폭발이라면, 이미 두 차례의 화재 발생으로 화재 위험성을 충분히 경험한 경찰은 인화성 물질의 소진 등을 기다리면서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때까지 진압을 중단하였어야 하는 것임.</p> <p><b>4) 발전기 작동 및 살수로 인한 누전 가능성</b></p> <p>이충연 용산4지구 철대위원장, 김영근 지금동 위원장, 김성천 사당동 철대위원장 등은 경찰특공대가 망루로 진입할 무렵까지 망루 2층에 설치한 발전기가 작동되고 있었다고 진술함.</p> <p>- 발전기가 물에 젖어 누전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함(이충연의 진술).</p> <p><b>6) 화재 발생 직전 발생한 원인 불명의 가스 등의 실체와 화재의 연관성</b></p> <p>- 망루 농성자들은 화재가 나기 바로 직전, 원인불명의 가스에 의해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에 빠짐.(천주석, 김성천 등 진술) 이때 발생한 가스는 경찰의 어떤 진압 장비 등에서 비롯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음.</p> <p>- 이 가스가 발화와 직접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망루 농성자들의 탈출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인명을 잃게 만드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됨.</p>
--	--	--

		<p>- 결국 가스로 인해 완전히 무력화된 농성자들이 마지막 발화원인으로 추정하는 화염병을 던져서 화재를 일으켰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었음.</p> <p><b>7) 경찰특공대 진압시 소지한 진압 물품에 의한 발화 가능성에 대한 확인 필요성</b></p> <p>- 화재 직전, 경찰특공대가 장악한 망루 3단에서 고성능 랜턴 또는 어떤 특정한 경찰장비가 사용되었음.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경찰장비의 정확한 출납기록이 공개되고 이것이 사실을 은폐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만 함.</p> <p>- 국회의원들의 사용된 경찰 장비에 대한 증거제출 요구에 대해 경찰은 차일피일 미루며 증거 은폐의혹을 높였음.</p>
발 화 시 점		<p><b>화재는 두번이었고, 명백히 드러난 화재 위험 앞에서 경찰의 멈추지 않는 진압으로 인해 6명의 생명이 사라졌음.</b></p> <p>- 07:05:54 [1차 화재] 망루 모서리 틈새로 4층 계단 부근에서 불빛 보이더니 화재 발생.</p> <p>- 07:07:04 망루3층 대로측 / 북측 모서리가 흔들리고 경찰이 망루를 뜯고 있음.</p> <p>- 07:11:15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높이로 상승.</p> <p>- 07:14:17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근처에 떠 있는 상태에서 살수 시작. 지붕 뜯는 것으로 보임.</p> <p>- 07:14:53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걸려서 기우뚱한 상태로 밀고 있음.</p> <p>- 07:15:08 컨테이너가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지붕에 내려앉음.</p> <p>- 07:15:10 컨테이너가 망루 지붕 끝에 내려 앉아 걸림.</p> <p>- 07:15:32 농성자들 망루 북측면 4층 동쪽 창으로 세눅스통을 버림.</p> <p>- 07:16:05 컨테이너가 지붕에서 내려오기 시작.</p> <p>- 07:16:33 컨테이너가 걸려있다 크게 기우뚱하며 망루 옆면을 타격.</p> <p>- 07:17:41 탕탕 소리가 나면서 망루 옆면이 제껴짐. 경찰특공대 망루 아래쪽에서 망루 면을 뜯는 듯.</p> <p>- 07:18:47 망루 3층 틈새로 희 불빛이 새어나옴. 경찰 진압 장비중 발화가능성 있는 장비가 있는지 밝혀져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18:51 흰 불빛 사라짐.</li> <li>- 07:19:00 망루 계단 쪽 옆면이 많이 제껴지는 것 육안으로 관찰됨.</li> <li>- 07:19:24 망루 옆면 제껴진 틈새로 액체가 흘러나옴.</li> <li>- 07:19:32 경찰방송 “전국철거민연합여러분 이제 그만 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와주시기 바랍니다”</li> <li>- 07:19:37 컨테이너 안에서 원인불명의 가스가 다량 새어나옴.</li> <li>- 07:19:59 컨테이너와 망루 사이로 같은 가스가 새어나옴.</li> <li>- 07:20:30 [2차 발화] 망루 4층 틈새로 불빛이 새어나오다가 아래로 불길기 번짐.</li> <li>- 07:20:36 망루 계단쪽 바깥 옥상에서 뭔가 폭발하며 불길이 피어오름</li> <li>- 07:20:38 2차 화재.</li> <li>- 07:20:43 북측면 4층 창문으로 농성자들 세눅스 통 5개 이상을 버림.</li> <li>- 07:21:20 남측(주차장쪽) 옥상벽 난간 끝에 1명 나타남.</li> <li>- 07:21:29 남측(주차장쪽) 베란다 난간 끝에 1명 나타남.</li> <li>- 07:25:28 망루가 주차장 쪽으로 쓰러짐.</li> <li>- 07:25:28 망루 쓰러짐</li> <li>- 07:27:11 컨테이너에서 살수 시작함.</li> </ul>
전 철 연 배후설	제3자인 전철연이 망루농성에 배후로 개입하여 폭력시위로 발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철연은 지역철거대책위가 가입한 시도연합을 중심으로 조직된 철거민들의 결사체임.</li> <li>- 따라서 전철연은 용산4지구 상가세입자철거대책위원회가 가입한 중앙조직으로 제3자라고 볼 수 없음.</li> <li>- 전철연은 자신의 회원조직인 용산4지구 철대위의 강제철거에 맞선 투쟁을 지원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li> <li>- 이 사건의 폭력시위의 배후로 전철연의 폭력성을 거론하고 있으나, 철거민들이 망루에 오른 이유는 대형건설사와의 철거계약으로 경찰의 비호를 받으며 온갖 횡포를 자행하는 용역깡패들의 폭력에 맞설 힘이 모자라 요새를 만들고 화염병을 들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설득력이 있음 (2009. 2. 28. 시사IN "용산철거 용역 목포 조폭과 관련" 참조)</li> </ul>
철 거 용 역 업 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1) 사람이 건물의 윗층에 현존함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질식시킬 목적으로 건물 아래층에서 불을 놓아 연기를 피어

<p>의 불법 행위</p>	<p>틀위반 (집단폭행) 용역이 건물 내에서 불을 피워 농성자들에게 연기를 올려보낸 행위와 경찰과 합동으로 농성자들에게 물포를 쏜 행위에 대해 폭행으로 기소함.</p>	<p>올림. - 이는 현존건조물방화죄, 폭행에 해당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p> <p>2)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이 쇠파이프를 들고 위력을 행사한 행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p> <p>3) 경비업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공사인 건설사와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철거용역업체인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과 시공사인 삼성물산, 대림산업, 포스코건설과 체결한 도급계약서 참조). -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경비업법위반죄 성립</p> <p>4) 경찰과 합동으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 - 경비업무의 일환으로 행사되었다면 경비업법위반죄, 그리고 폭행으로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성립</p> <p>5) 경찰을 뜻하는 "POLICIA"라는 표기의 방패를 사용함 - 공무원자격사칭죄에 해당함.</p>
<p>경찰과 용역의 합동진압작전에서의 경찰의 책임</p>	<p>경찰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 처리 경찰진압작전 후 용역직원 참여사실 없는 것으로 결론</p>	<p>※ 경찰권 행사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쳐오는 대표적인 침익적 행정작용임 따라서 적법절차에 따라 권한이 부여된 자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사인이 이를 행사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리에 위배됨</p> <p>1) 그런데, 경찰과 용역이 합동작전을 한 것은 경찰이 용역의 물리력 행사를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관련 경찰에 대해서는 경비업법위반죄의 공동정범 및 직무유기죄가 성립함.</p> <p>2) 또한 이는 위 용역 직원들로 하여금 자신의무가 아니고 자신의 일이 될 수도 없는 진압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므로, 직권남용죄도 성립</p>
<p>시공사의 책임</p>	<p>수사 대상에서 제외됨</p>	<p>※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용역업체, 그리고 시공사인 삼성물산·대림산업·포스코건설 간의 「철거 및 잔재처리 공사계약서」 제6조에 의하면, 시공사는 조합을 대리하여 철거업무를 감독하고, 용역업체는 “제3조 사항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한 일정 계획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p>

		<p>일일 "시공사"에게 보고" 하여야 함.</p> <p>1)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이 행하는 "재개발 구역 내 상주 경비"업무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그럼에도 위 업체는 경비업법상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경비업체임, 만일 삼성물산 등이 위 업체에 철거용역을 발주한 것이라면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의 공범이 성립한다고 할 수 있음</p> <p>2) 호람건설, 현암건설산업에 대하여 포괄적인 감독을 하는 삼성물산 등은 호람, 현암의 직원들에 대하여 사실상의 사용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호람, 현암의 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에 발생시킨 범죄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삼성물산 등은 민법 제756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49542 판결 등).</p>
<p>이성수 씨 등의 사망경위에 대한 축소·은폐수사</p>	<p>검찰은 이성수씨의 망루에서의 탈출 자체를 부정함</p> <p>- 도리어 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을 목격하였다는 지식준의 진술을 허위인 것으로 발표함.</p>	<p>이성수씨의 망루 탈출에 대한 지식준의 진술과 동영상은 일치함.</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준의 진술에 의해 망루를 탈출한 것으로 확인된 이성수, 윤용현의 사망경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의지 부재로 사인의혹에 대한 아무런 진척이 없음..</p>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이었다.

###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검찰은 애써 참사의 책임을 화염병이라는 발화원인에서 찾고 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는 관련성 없음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사건초기부터 건물에서 불을 지르는 용역들의 방화, 철거민 농성자들이 던지는 화염병 등, 화재와 연관된 요인들이 상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화재는 일어나지 않았다.

20일 새벽에 발생한 대형화재, 6명의 생명을 앗아간 화재의 궁극적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발화원인 찾기라는 퍼즐 하나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발화원인은 화재의 원인과 다르다” “발화원인은 참사의 원인과 다르다” “참사의 궁극적 원인은 경찰의 무모하고 과격한 진압에 있었다”고 정의한다. 6명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화재가 아니라 바로 경찰의 조급한 진압과 불안한 작전, 사라진 안전에 있었다.

#### **\*안전이 무시된 조급하고 불안한 진압**

- 1시간 동안 작전 독촉횟수 8차례 이상
- 농성자의 안전 확보 지시 2차례
- 7:15경 화재 발생후 망루가 탈대로 타다 무너질때까지 10여분 간, 경찰은 농성자 안전은 관심 밖
- 7:25경 ‘처음으로’ 농성자의 안전을 확인 - 그마저도 경찰병력이 나왔으니 나왔을 것 같다는 무책임한 답변
- ‘안전’매트릭스의 실상

#### **\*출구 없는 진압**

- 망루 위 아래서 동시 진압
- 농성자를 극한으로 내몰 출구 없는 진압
- 그동안의 진압방식과의 차이

#### **\*위험의 단계적 상승**

- 1단계 과격한 망루해체작업 -> 인화물질로 엉망이 된 망루 안팎
- 2단계 무분별한 살수 -> 새어나온 인화물질이 망루 내 확산
- 3단계 실제로 발생한 1차 화재를 무시 -> 7:20경 15분 뒤 2차 화재발생, 대형화재로 번짐

#### **\*2차 발화의 원인**

- 검찰주장 “시너와 화염병”
- 다양한 점화가능성
  - > 발전기에 의한 누전가능성
  - > 유증기에 의한 발화가능성
  - > 경찰진압장비 사용과 관련된 발화가능성

삽입

[시간표\_보안.pdf] 3쪽

[090209-참사의원인.ppt] 30쪽

총 33쪽

## 고 발 장

고발인                    별지 1과 같음

피고발인 1. 김석기(서울지방경찰청장)

2. 김수정(서울지방경찰청 차장)
3. 신두호(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4. 이송범(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
5. 백동산(용산경찰서장)
6.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직속 경찰특공대장
7. 용산참사에 투입된 신윤철 제1제대장 등 경찰특공대 각 제대장
8. 그 이외 용산참사 현장에서 진압을 지휘한 경찰지휘관 등
9. 점거농성자를 체포·연행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경찰특공대원
10. 용산참사 현장에 투입된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책임자 및 그 업체

직원

죄명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직무유기죄, 경찰관직무집행범위반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경비업범위반죄 등

## 고 발 취 지

위 피고발인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경찰관직무집행범위반죄, 직무유기죄, 유기죄, 유기치사죄, 폭행죄, 상해죄, 현주건조물방화죄, 경비업범위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위 각 죄에 관한 공동정범 또는 교사범 내지 방조범 등으로 고발하오니 엄정하게 수사하여 위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원 인

### 목차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2. 용산참사 발생 경위와 그 배경
  - 가. 용산참사 발생 경위
  - 나. 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3.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 가. 실질적 법치주의의 의미
  - 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한 배경
  - 다.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위헌성
  - 라.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

마.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내용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 4. 피고발인들 중 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가. 관련 법령

나. 용산참사의 흐름

다.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 검토

라. 피고발인들의 개별적인 형사책임

마. 진압 경찰 등의 직무유기와 연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

바. 소결

#### 5. 피고발인들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

나. 관련 법령 검토

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형사책임

라. 위와 같은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기의 경우

마.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

#### 6. 종합 결론

##### 1.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지위와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2009. 1. 20. 개시한 무모하고 안전 대책을 거의 갖추지 않은 피고발인들의 진압작전에 의해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된 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등 다수의 시민단체는 ‘용산 철거민 사망 사건 진상조사단’을 결성하여, 경찰의 무모한 진압 과정, 6명의 희생의 직접적인 원인인 발화의 원인 등에 관하여 실체진실에 입각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습니다.

그와 같은 활동의 결과, 진상조사단은 남일당빌딩에서 전개된 진압작전이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거의 확보하지 않는 등 경찰이 집회시위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위해 만든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등에 의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안전한 진압에 필요한 업무상 주의의무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진압작전을 전개하였다고 판단하여, 고발인들은 위 진상조사단을 대표하여 아래와 같이 6명의 인명 피해 등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2. 용산참사 발생 경위와 그 배경

###### 가. 용산참사 발생 경위

###### (1) 이 사건 사업의 추진 일정 및 규모

서울특별시장에 의해 **2006. 4. 20.** 국제빌딩 주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 용산제4구역(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합니다) 등에 대해 **정비구역결정고시**(서울시고시 제2006-142)가 이뤄진 다음, **2006. 10. 12.경**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춘우, 이하, ‘이 사건 정비조합’이라 합니다)은 관할 용산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합니다) 제16조}, 이 사건 정비조합은 위 구청장으로부터 **2007. 5. 31. 사업시행인가(용산구 고시 제2007-17)**, **2007. 11. 29. 사업시행변경인가**, **2008. 5. 30.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은 다음(도정법 제28조, 제48조),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을 본격적으로 추

진하였습니다(증제1호증).

한편, 이 사건 정비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63의 70번지 일대 53,441.6㎡(16,166평)에 지하 7층 지상 40층 빌딩 7개동을 신축하는 것이 그 주요내용인데, 위 빌딩은 연면적은 385,429.61㎡(116,591평) 규모로 이에는 아파트 493세대와 함께 업무·판매·종교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삼성물산 주식회사, 대림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공을 맡고 있고, **이 사건 정비사업의 공사착공은 2009. 2.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입니다(증제1호증).**

(2)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한 갈등 발생

위와 같이 이 사건 정비사업이 본격화되자, 2008. 3.경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88개 점포와 39개 주택 세입자들(이하, '이 사건 세입자들'이라고 합니다)은 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한 다음, 이 사건 정비조합이 법정 보상금으로 내세운 휴업보상금 3개월분이나 주거이전비 4개월분 등으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 즉 **상가세입자들은 임대상가와 가수용 상가, 주거세입자들은 임대주택과 가이주 단지를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정비조합과 관할 구청인 용산구청 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이러한 요구를 묵살하였습니다(증제2호증). 이에 이 사건 세입자들이 2009. 1. 19. 새벽에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개시하였습니다(증제5호증).

나. 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1) 관련 법령

별지 2와 같습니다.

(2)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문제점

(가) 정비사업 결정 과정에서의 세입자에 대한 철저한 배제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인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정비사업이 당해 해당지역의 토지소유자, 건물소유자 등 물권의 소유자만이 조합 설립의 주체가 되고, 상가 세입자, 주택 세입자 등 세입자는 정비사업 시행 여부와 그 추진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어(도정법 제2조 제2호, 제9호, 제16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비사업지구 내에서 일방적으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합니다.

(나) 세입자에 대한 미미한 보상금의 지급

다만 세입자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합니다) 등에 따라 영업보상 및 주거이전비의 지급의 대상이 되지만(도정법 제40조, 토지보상법 제77조, 제78조), 그것도 상가 세입자에게 주어지는 영업보상의 경우 휴업보상을 원칙으로 하여 3개월분의 휴업보상금이 지급되고,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는 4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택임주권이 지급되는 것<sup>77)</sup>에

77) 2007. 4. 1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되기 이전에는 3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거이전비와 주택임주권 중에서 선택적으로 주어졌으나, 동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4월분의 주거이전비와 주택임주권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 무허가건물등 세입자도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과하여, 그 금액이 아주 적은 금액에 불과합니다(토지보상법 시행규칙 47조, 제54조)

가령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제3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를 계산하면, 2007년 4/4분기 4인 가족 기준 ‘도시가계조사통계의 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는 3,177,705원이므로(중 제3호증),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4인 가족의 주택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12,710,820원(3,177,705원\*4개월)에 불과합니다. 반면 이 사건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지가 및 전세가의 몇 배씩 오르는 지가 및 전세가의 양등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적은 금액으로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의 주택 세입자는 그 지역 인근에서 주거지를 구할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이 사건 정비구역 보다 더 외진 외곽으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가 세입자의 경우에는 위 토지보상법 제47조에 따라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만이 지급되고, 권리금은 일절 지급되지 아니하고 시설투자비도 위 산정기준에 포함되는 극히 일부의 비용만이 지급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가 세입자들은 자신들이 다년에 걸쳐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궈온 피땀의 대가이자 상권형성의 대가인 권리금 등은 전혀 지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실비로 투자한 시설투자금에 대하여도 극히 일부만을 지급받은 채, 영업장의 이전을 강요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서 ‘독도참치횃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상가 세입자인 갑이라는 상인이 그 사업장 개장을 위해 1억원의 권리금과 인테리어비용 등 시설투자금 5천만원, 그 이외 비용 3천만원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조합이 제시하는 4천만원 가량의 휴업보상금을 손에 쥌 채 위 횃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경우에, **만일 우리가 갑과 같은 처지에 처한다면 이 사건 세입자들과 같이 철거대책위원회에 결합하여 농성하거나 시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누구든지 위 보상금과 그 보상금의 원인이 정비사업 자체에 불과만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신이 투자한 금액과 보상금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자신의 피땀으로 상권 형성이 크게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세입자들은 극한 투쟁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는 무허가건물의 주택 세입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법의 미비점 내지 부조리한 점은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철거민들의 극한 투쟁의 좋은 자양분이 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개발이익 귀속 주체와 세입자의 개발이익으로부터 배제

어떤 토지가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되어 정비사업이 추진된다고 한다면, 그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 또는 그 인근지역의 부동산 가격의 양등을 가져오는 것이 지금까지의 상례인데, 이와 같이 토지가 개발됨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당해 토지의 소유자 등의 이익만으로 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는 ‘개발이익’은(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은 일정부분 개발부담금이라는 형태로 국가 등에 귀속됩니다(동법 제3조 내지 제7조). 그러나 이러한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100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개발이익 자체도 지가양등분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구조로 되어 있어(동법 제8조 내지 제13조), 개발사업 시행자나 그 토지 소유자 등에게 돌아가는 개발이익은 막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사건 정비사업의 개발이익도 약 4조(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개발이익은 기존의 상가세입자 등이

이뤄 놓은 상권형성 등의 이익이 이전된 것 등을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까지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2009. 1. 22. 문화방송 100분 토론회 발언 내용).

반면, 누구든지 살아온 곳을 떠나지 않고 기존의 주거지 또는 그 근처에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인 지상정이고(그곳을 중심을 인간관계 등이 형성되므로), 또한 특히 상가 세입자의 경우 기존 상가를 중심으로 단골손님 등 상권이 형성되어서 더욱 기존 상가에서 영업하기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은 개발이익의 향유는 고사하고, 상가암차인은 기존 상가 인근 지역에서 위와 같은 지가양등으로 인하여 기존 비용으로 영업을 하기 어렵게 되고 또한 주택 세입자의 경우 전세가의 양등으로 인하여 기존 주거지 근처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외곽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세입자의 경우 정비사업 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② 당해 개발이익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며, ③ 자신이 들인 비용에 비하여 아주 적은 금원 또는 인근 지역의 전세가가양등에 비하여 아주 적은 금액만을 휴업보상금 내지 주거이전비 명목으로 지급 받고, ④ 기존 상가나 주택의 인근 지역에서 영업 또는 주거를 계속할 수 없는 등의 구조적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세입자들이 벌인 점거농성과 같은 극한 투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도정법이 적용되는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 모든 개발사업에 내재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문제로 인한 극한 투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전국의 철거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고, 가까이는 1명의 인명이 희생된 오산 세교지구(수청동)의 개발사업에서 그 전형적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증제4호증).

이러한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세입자의 불만을 야기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위와 같은 도정법의 내용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에 비추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전광석화와 같은 금번 경찰력 투입이 실질적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원리의 일내용인 경찰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하여 항을 바꾸어 계속하여 논의합니다.

### 3.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 가. 실질적 법치주의 의미

우리 국민의 근본적 가치 결단이자 총화인 현행 헌법은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비록 명시적으로 법치주의라는 문언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이를 규정하지 있지 않지만, 이것이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데 이의를 다는 아무도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이 형식적인 법치주의가 아닌 실질적 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데도 역시 이의가 없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작용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거나 이에 근거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와는 달리, 그 법률도 자유, 평등, 정의를 추구해야 하고 이로써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sup>78)</sup> 요컨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제한 또는 박탈은 형식적으로 합법성(Legalität)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정당성(Legatimität)을 갖추어야 하고, 실질적 정당성의 내용은 자유, 평

78) 계획열, 신정2판 헌법학(중), 2005, 347쪽;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신2판), 2008, 295쪽.

등, 정의의 추구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마약사범만을 가중하여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현저히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함으로써 죄질과 그에 따른 행위자의 책임 사이에 비례관계가 준수되지 않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보호하려는 실질적 법치국가 이념에 어긋나고”라고 판시하여 실질적 법치주의 내용을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보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 11. 27. 2002헌바24 결정)

#### 나. 실질적 법치주의가 등장한 배경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가 형성된 것은 나치의 형식적 법치주의에 의한 반성에 기한 것입니다. 나치도 형식적으로 법률에 근거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했으나, 그 법률이 자유, 평등, 정의에 부합하지 이를 추구하는 법률이 아니었기에 나치 정부 자체가 거대한 불법정부였고, 그 불법정부에 의해 주지하다시피 홀로코스트 등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된 역사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법률의 합법성(Legalität) 뿐만 아니라 정당성(Legitimität)을 고민하게 되었고, 그 정당성의 내용은 자유, 평등, 정의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에 있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 다. 자유, 평등, 정의의 추구를 통한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라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에 비추어 본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위헌성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면서, 상가 세입자 등에게는 희생을 강요하는 도정법 및 토지보상법의 관련 규정은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나누어 주라(suum cuique tribuere)’는 정의의 관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한 토지소유자 등과 세입자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본질적으로 차별하여 배분적 평등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도 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 라.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구체적 내용

우리 헌법에 구현된 실질적 법치주의의 내용으로는 ① 기본권 보장, ② 권력 분립, ③ 법률유보의 원칙, ④ 포괄적 위임입법의 금지, ⑤ 사법적 권리보장, ⑥ 법적 안정성의 원칙, ⑦ 과잉금지(비례의) 원칙을 들 수 있고,<sup>79)</sup> 특히 용산참사와 관련해서는 경찰권 발동이 비례의 원칙에 맞추어 이뤄졌는지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 마. 실질적 법치주의의 일내용인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본 용산참사

##### (1) 조기 경찰력 투입과 비례의 원칙

전철연 회원을 비롯한 이 사건 정비지구 내에 있는 4층 빈 남일당 빌딩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한 것은 2009. 1. 19. 새벽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위 건물에 대해 시위 진

79) 계획열, 앞의 책, 352-373쪽 참조.

압 및 철거민 체포를 위해 경찰력 투입이 결정된 시기는 2009. 1. 19. 오전 9시경입니다(증제1호증). 그리고 실제 위 건물에서 농성 중인 철거민들을 체포·진압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위 건물에 대해 경찰력이 본격 투입된 때는 2009. 1. 20. 오전 5시 30경입니다(증제5호증).

이와 같이 전격적으로 경찰력이 투입이 결정되기 이전까지 경찰 주장과는 달리 일반시민들에 대한 화염병 등을 통한 철거민들의 위해는 없었습니다.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과 경찰에 대한 저항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철거민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엄동설한에 강제 철거를 당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해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에 이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철거민들이 위 건물을 점거한 후 망루를 만들어 농성을 시작한 이후에도 관할 용산구청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사업시행을 인가받아 행정권을 대행하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인 당해 재개발조합에 의한 보상비 협상이나 퇴거를 위한 설득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경찰에 의한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빨리 해산하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집압하겠다’는 식의 회유와 강압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경찰권을 발동함에 있어서 본디 민사불개입 원칙을 견지해야 합니다. 민사불개입은 경찰권은 사인 간의 민사문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용산참사의 발단이 된 적정한 보상비의 지급은 비록 이 사건 정비조합과 이 사건 세입자들 간의 문제로 민사적 성격이 강하므로, 경찰권이 개입은 최대한 신중하게 이뤄져야 하고, 민사 문제의 일방에 대한 편파적인 경찰권 개입은 더욱 신중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검토해야 할 부분은 오산 세교지구에서의 경찰력 투입과정 및 진압과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오산 세교지구에서도 철거를 반대하는 세입자들의 거센 저항과 검거농성이 있었는데, 오산 세교 지구 내의 점거농성을 진압하기 위하여 경찰은 철거민들과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 사이의 격렬한 충돌로 인하여 철거 용역업체 직원 1명이 사망한 2005. 4. 16.로부터 약 53일이 지난 같은 해 6. 8.에 경찰력을 투입하여 이를 진압하였습니다(증제4호증). 이러한 전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입자들의 점거 농성이 시작된지 약 3시간만에 초고속으로 경찰력 투입을 결정하고 하루만에 진압을 하였고, 그것도 대테러 임무를 특수범죄를 전담하는 경찰특공대를 선봉에 세우고 진압을 강행한 것이 과연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 (2) 경찰특공대 투입과 비례의 원칙

### (가) 관련 법령

**별지 3과 같습니다.**

### (나) 경찰특공대 투입의 비례의 원칙 위반

경찰법 제13조는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 등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차장 밑에 직할대인 경찰특공대를 둘 수 있으며, 위 대통령령의 재위임을 받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에 의하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밑에 경찰특공대를 두도록 되어 있고, 제25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분장사무는 경찰정장의 승인을 얻어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 시행규칙 조항의 위임을 받아 규정된 ‘서울특별시

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라고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경찰특공대의 본부, 경호지원제대 등의 분장사무로 중요범죄의 발생에 대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것이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항의 중요범죄는 각종 테러, 요인에 대한 범죄 등에 그야말로 중대한 범죄에 국한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철거민이 자신의 생존권을 위하여, 얼마간의 이주보상비를 더 받기 위하여 철거 지역 내의 건물을 점거하여 시위벌이는 곳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다고 함이 상당합니다. 또한 위 건물 점거농성자에 대한 영장 범죄사실에도 경찰특공대 투입 이전의 범죄사실은 공동건조물침입죄만 적시되어 있었고, 일반 시민에 대한 폭력이나 상해는 전혀 없었고, 사후적으로 경찰 1인에 대한 상해가 한건 보고되었을 뿐이므로, 단순한 공동건조물침입죄를 위 법령에서 정한 “중요 범죄”의 발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범죄를 범한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위해 경찰특공대를 투입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현저히 어긋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경찰은 경찰특공대운영규칙 제6조 제5호 ‘인질·총기·폭발물 및 불법점거·난동 등 중요범죄의 예방 및 진압’을 경찰특공대 투입의 법적 근거로 내세우나, 이는 법률과 법규법령의 위임이 없는 경찰 내부의 단순한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데 비해, 위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 제25조는 위와 같이 경찰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해 위임된 것이므로 위 경찰특공대운영규칙이 위 제25조보다 우선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찰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4. 피고발인들 중 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 가. 관련 법령

별지 4와 같습니다.

##### 나. 용산참사의 흐름

아래 시각은 점거농성자들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이므로 경찰이 작성한 갑제5호증의 2와 일부 다른 점이 있습니다.

##### 1) 1월19일(월)의 상황

###### □ 검거농성 돌입 및 용역업체 직원들과의 충돌

- 새벽에 이 사건 세입자들 등 소재의 남일당빌딩 옥상으로 진입, 망루를 쌓기 시작함.
- 동이 트자 용역들 100여 명이 건물로 몰려와 건물 내로 진입해왔고 건물의 계단에서 몸싸움 등 격렬하게 충돌하며 대치함.
- 같은 날 밤 4층 건물 옥상 위에 계단, 외벽 등을 급조한 ‘아시바’ 철골구조물 3단의 망루가 설치되었음.

###### □ 경찰배치

- 오전 9시 경찰특공대 2개 제대 현장배치 됨.
- 같은 날 오전 10시경 경찰차가 도로에 주차하고 건물 앞에 대기하기 시작했음.

- 같은 시간대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2층에 10여명 있었음. 시간이 지나면서 용역업체 직원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용역업체 직원 100명 이상이 집합 함.
- 10시 30분경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함. 경찰이 막고 있어 건물과 골목으로 진입하지 못했음.
- 11시20분 위 사람들 건물 쪽으로 진입 시도하였으나 들어오지 못하고 건물 맞은 편 길가에 계속 서 있었음.
- 16시경 서울 시경에서 저녁 10시까지 자진해산을 해산종용, 대치 상황이 같은 날 저녁 22시까지 계속됨.

□ 용역업체 직원들의 방화와 경찰들의 방조

- 오전부터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 3층에서 페타이어를 태우기 시작함.
- 21시경 경찰이 계속적으로 해산을 요구함과 동시에 3층에 있는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경찰 방패를 쥐서 들고 있는 것이 보임.
- 새벽 1시경 용역업체 직원들이 3층에서 나무, 페타이어 등으로 불을 질렀으며, 이것은 한 시간 간격으로 3차례 이뤄진 것으로 보임. 시간은 1시, 2시, 3시로 추정됨. 간간히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림.

**2) 1월20일(화)의 상황**

- 4시경 기존에 있던 경찰병력과 추가 경찰병력이 배치되기 시작함. 경찰특공대가 주변에 배치되어 있다가 건물 주위로 들어와 에워싸기 시작함. 진압장비(크레인 등)가 들어와서 한 바퀴 돌고 빠짐.
- 4~5시경 용역업체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페타이어 등으로 계속 불을 질렀다는 주장 있고, 소방서에서 불만 끄고 가버렸음.

□ 경찰특공대 진압작전 본격 개시(5시경~7시경)

- 5시경 전경 기동대가 출동하여 건물 주변을 에워싸고, 먼저 살수차 한대가 건물 가까이 와 살수를 하기 시작함.
- 6시경까지 크레인, 조명차, 컨테이너를 실은 지게차 등이 건물 주변에 배치.
- 6시 30분 경찰 병력 건물 1층에 투입하기 시작함. 한편 경찰은 컨테이너에 경찰특공대를 싣고 크레인에 연결하고 있었음.
- 6시 50분 경찰특공대를 가득 실은 컨테이너를 크레인에 실어 건물 옥상의 대로변 구역으로 접근

□ 경찰특공대가 컨테이너를 이용하여 옥상 진입 후 격렬 대치(7시경~7시20분경)

- 7시 경 컨테이너가 옥상 위에 근접하여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 철
- 경찰특공대들이 봉쇄된 문을 열고 망루 구역으로 진입.
- 컨테이너가 망루 꼭대기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2~3회 충격을 가함. 이후 망루의 대로변 쪽 창 바로 옆으로 기울어짐
- 컨테이너로 망루를 수평 방향으로 밀어 망루가 흔들림
- 컨테이너에 탄 경찰특공대원 한명이 호스를 들고 망루 안을 향해 살수하고, 다른 한명이 빠루로 망루 외벽을 반복하여 타격

## □ 망루 내 화재 발생

-망루 내부 혹은 근처에서 탕, 탕, 탕 하며 무거운 무언가로 철판을 세게 때리는 듯한 소리가 10여 차례 들림

-7시20분경 망루 내부에서 큰 불이 나서 전체로 번짐

-7시30분~40분경 농성자 일부가 망루의 주차장 쪽 창을 통해 빠져나와 건물 옥상으로 떨어짐. 그 중 두 명이 건물의 주차장 쪽 난간 위로 나타남. 한 명은 다시 옥상으로 내려서서 대로의 반대편 방향으로 이동. 다른 한 명은 옥상 최외측 난간에 두 손으로 3~4분 간 매달려 있다가 바닥으로 떨어짐.

-7시 45분경 불붙은 망루가 무너짐. 경찰특공대는 계속 옥상 위 점거농성자들 검거

-8시 15분경 옥상의 대로 쪽 벽의 안쪽 테두리 난간에서 저항하던 마지막 3명을 경찰특공대가 연행

-8시 20분경 경찰특공대가 옥상에서 철수. 소방대가 옥상에 올라가 망루 해체 작업을 시작.

-9시경 망루 해체 작업 중 시신 5구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림

## 다. 경찰의 집회시위현장 범집행 매뉴얼 등 검토

### (1) 경비분야 인권교육 교재의 내용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만든 위 교재 제2쪽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하는 경우에도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를 자제, 집회참가자의 인권과 안전이 침해되지 않도록 경찰의 범집행이 국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제49쪽은 “폭력적 집회를 해산하는 경우에도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또한 같은 쪽에서는 과잉 진압 사례를 예시하고 있고, 제51쪽은 “살수차, 차벽 등 안전진압장비를 이용하고, 이용 시에는 시위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라고 적시하고 있으며, 제64쪽과 제68쪽은 “강제해산 자제 대상 집회”라는 표제 아래 “일몰후 좁은 공간에 다수 인원이 밀집한 경우”를 적시하고 있습니다(증제6호증의 1).

### (2) 집회시위현장 범집행 매뉴얼의 내용

그리고 경찰청이 독자적으로 만든 집회시위현장 범집행 매뉴얼(발행일: 2008. 8., 발행처: 경찰청 경비과, 발행인: 경찰청장) 제8쪽은 “II. 집회시위관리지침”에서 핵심목표로 “변수 없는 안전 관리”를 두고 있으며 또한 “기본방침”에서 “▶ 인권교육강화·현장점검 철저로 인권·안전의식 제고”, “집회시위 관리 매뉴얼화, 엄정하면서도 안전한 집회관리”, “절제된 공권력 행사”라고 하여 안전한 집회관리를 핵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쪽은 “감정은 금물, 인권·안전에 유의”라고 하여 집회시위관리시 지휘관의 근무자세의 하나로 강조하고 있으며, 제16쪽은 “경찰부대 훈련강화, 절제된 공권력 행사”, “강제해산시에도 시위대 퇴로 확보, 무리한 추적 금지”라고 밝히고 있으며, 제19쪽은 “인권존중 및 안전활동 강화, 부대원 인권·안전교육 및 장비 안전사용훈련 강화”라고 하여 인권존중 및 안전활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매뉴얼은 “제2장 유형별 법규 적용”에서 고공 시위·농성, 돌·쇠파이프 및 피켓 등 사용 공격, 불시항의 방문, 시설점거 농성 등으로 구분하여 유형별 현장관리요령 등을 정하고 있는데, 제82쪽은 “화염병 투척시 산개대형 전개 후 상황에 따라 시위대가 화염병·돌 등을 소모하도록 유도”를 규정하면서 “화염병이 거의 소모되었다고 판단되면, 좌우측 검거부대가 먼저 전진하며 검거작전을 전개, 여타 부대는 뒤따라가며 엄호”라고 하여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라는 원칙을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또한 제83쪽은 “출동부대는 사전에 휴대용 소화기를 충분히 휴대하고 소방차·구급차·호송차 인접 배치, 우발상황 대비”라고 하여 소방차 등을 통한 우발상황에

대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제92쪽 이하에서는 철탑, 다리, 건물옥상, 타워크레인, 조명탑 등 높은 곳에 올라가 시위 또는 농성하는 고공 시위·농성 유형의 대처요령을 정하고 있는 바, “② 경고 및 제지, 차단, -고공 시위, 농성의 위협성 지속 경고 및 자진 하강토록 설득, -안전매트 신속 설치 및 구급차 등 배치로 응급체제 구축, -경력 또는 P/L 로 시설물을 봉쇄, 추가농성, 외부 세력 가세 차단”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시되어 있고(제92쪽), “③ 해산 절차 진행 -경찰특공대, 11 9등 투입,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진 하강 등 해산조치”를 취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제93쪽), 현장 관리요령란에서는 “1) 추락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낙하 적정 지점에 안전매트, 안전그물 등을 신속하게 설치하고, 고공농성장 주변에 구급차 등을 배치하여 응급구호대비, 2) 상황발생 즉시 고공농성자 설득과 동시에 안전조치에 착수하고, 설득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안전조치는 필히 완비 ※ 평소부터 안전매트 탑재차량 우선순위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안전매트 승·하차, 이동, 설치 등의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등 집단 진입 및 점거 등에 대비한 “불시 항의방문 및 시설점거 농성”에서는 “8)농성위치, 저항수위, 작전상 장애요소 등 사전 파악, 제거, -투신 등 극단적 저항 가능성, 외부지원세력 가세 여부, -화염병·인화성 물질·폭발물 등 위험물질 소지 여부”를 적시하여 진압작전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염병 등 위험물질의 작전상 장애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이를 제거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제60쪽), “10)우발상황 대비 특수 장비, 안전장구 등 준비철저, -에어매트, 고가사다리 및 소방·조명차 등 사전확보”를 명시하여 우발 상황에 대비한 안전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1쪽), “15) 농성자 연해시 안전하고 물의 없도록 연행”을 명시하면서 “전담지휘자 지정, 구타·욕설 등 가혹행위는 엄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62쪽).

또한 140쪽 이하에서는 집회시위 안전관리수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시위대는 쉽게 흥분하고 감정이 격하기 쉬우므로 욕설, 폭언 등 감정적인 언행이나 불필요한 행동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 “사전 지형정찰을 실시하여 취약개소, 입·출구 등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안전 위협요소를 파악하여 대처해야 한다”, “바람직한 집회관리는 상호간에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하여야 하며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40쪽 내지 제141쪽)

### (3) 경찰이 세운 위 건물에 대한 진입계획에서 나타나는 안전조치 등

경찰은 위와 같은 매뉴얼 등에 입각하여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 계획을 세웠는데 이에 따르면(중제5호중), “○위험물 현황, -대형 쇠파이프 50개, 염산(박카스병) 약 100개, 신나(20ℓ) 60여개, 새총 10개, 화염병 5박스(120여개), 철근·벽돌·작업공구(빠루, 망치 등) 다수”라고 하여 위험물 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인들은 화염병·시너·염산·LPG가스통 등 위험물을 다수 소지한 채 극렬 저항하며”라고 적시하고 있고, “경력진입시 투석발사기(새총) 등 위해용품 사용하며 극렬저항 및 분신·투신·자해 등 극단적 돌출행동 우려, -화염병·염산이 든 병 및 벽돌 투척, -투석발사기(새총)를 이용한 골프공·유리구슬 및 쇠 칩 발사, -쇠파이프·각목 등 사용 경력 진입방해, -일부 강성회원 중심으로 가스통을 이용한 방화·화염방사 뿐만 아니라 자해·분신·투신 등 돌출행동 우려”라고 하여 위 건물 내로 경찰력이 진입할 경우 예상되는 상황을 적시하고 있으며, “소방사다리차·대형크레인(컨테이너)·소방차·조명차 최대한 확보”하도록 사전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며, “진입 전 살수 등을 통해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진입시 소방호수를 휴대진입, 화재 및 화염병 투척 등에 대비⇒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

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작전 개시전 안전매트·소방장비 등 장비 확보, 안전대책 강구”라고 작전시 유의사항을 적시하고 있고, 조명차 4, 구급차 2, 소방차 6, 고가사다리 4, 에어매트 3, 안전매트 16 등 진압에 필요한 장비를 열거하고 있으며, “○기동본부장 주관 현장대책회의 실시 및 사전 충분한 FTX 실시, ○대비경력 안전교육 반복실시, 안전한 작전수행으로 변수 발생 방지, -구급차·소방차·에어매트 등 안전장비 최대 확보, 현장대기, -소방차 6대, 소방고가사다리차 2대, 바스켓차 2대, 반드시 확보”라고 하여 행정사항을 확인·점검하고 있으며, 또한 “에어매트·안전매트리스 등 안전시설 충분히 설치 및 점검”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4) 용산참사 현장에서의 위와 같은 안전확보 대책 등의 실행 여부

위와 같은 안전확보대책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가 농성장 옥상으로 투입될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 2대와 구급차 1대 등이 전부였고, 에어매트나 그물망은 설치하지 않았고 매트리스만 드문드문 설치했을 뿐이고 유류화재에 대비한 소화기도 준비하지 않았고(증제7호증), 경찰이 작성한 ‘전철연 용산 4구역 관련 상황보고’에서도 “옥상 농성자 3명이 투신하겠다고 언동하며 옥상난간에서 경력과 대치⇒빌딩 아래 매트리스 설치 등 안전조치 무전지시”만을 적시하고 있을 뿐, 사전에 안전 확보를 위한 에어매트, 그물망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으며, 또한 위 문건에는 망루가 전체에 화재가 번져 망루가 쓰러진 이후에 비로소 유화제를 첨가하여 소화작업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는데(증제5호증의 2), 화재전문가의 지적에 의하면 신나, 휘발유 등 유류화재의 경우에는 기름의 특성으로 인하여 물을 분사하는 경우 불이 더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유화제 등을 첨가하여 이를 분사하여 한다고 밝히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경찰은 그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음이 분명하고, 이는 경찰 스스로도 위에서 명시한 바와 같은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와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경찰의 무모하고 주먹구구식의 작전 진행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료라고 할 것입니다.

## 라. 피고발인들의 개별적인 형사책임

(1)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검토

(가) 구성요건해당성 및 위법성 검토

① 다수의 인명피해의 발생

경찰의 위 건물에 대한 무모하고 무분별하며 준비되지 않은 경찰력 투입으로 인하여 이성수(51세), 윤용현(49세), 이상림(72세), 양희성(58세), 한대성(54세) 등 5명의 이 사건 세입자들 등이 사망하였고, 지식준, 이충연 등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② 용산참사에서 사망 등에 대한 예견가능성 존재, 경찰의 업무상 주의의무와 사망 등 결과발생의 사이의 인관관계의 존재

경찰권 발동은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끼치는 대표적인 침익적 공권력 행사이라고 할 것 이어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와 적법절차에 따른 직무집행, 경찰권 행사의 대상자 등에 대한 사전 안전 확보 노력 등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경찰청장은 위 매뉴얼을 만들어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법집행의 전범으로 삼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위 건물에 대하여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을 투입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울 당시(증제5호증의 2), 화염병, 신나(사실은 세눅스임),

가스통 다수의 안전위해요소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위 건물 자체가 4층 건물인데다가 위 건물 옥상에 망루를 쌓고 장기적인 점거농성을 벌이는 것으로 파악하여, “진입 전 살수 등을 통해 시위용품 최대한 소진”, “유류화재에 소화 가능한 소화기·소화전 준비”, “투신대비, 건물 하단에 매트리스·그물망 등 설치” 등을 진입대책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행할 것을 계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특히 유류화재에 대비한 준비로 화학소방차를 대시시키는 등의 유류화재에 대비한 준비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위 교재에 명시대로 좁은 공간에 다수의 사람이 밀집해 있는 건물 점거농성 상황이므로 이에 대하여 성급하게 진압을 해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무시한 채로 성급하게 진압을 개시하였으며, ‘선 화염병 소진, 후 검거’ 원칙을 무시해가며 화염병, 세눅스 등 위험물질을 최대한 소진하게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위 건물에 진입한 하였고, 경찰은 대형 크레인에 컨테이너를 매달아 옥상에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컨테이너로 4층 옥상에 설치된 망루(가로 6미터 세로 6미터, 높이 10미터)를 여러 차례 타격하여 이를 뒤흔들음으로써 이에 대피한 철거민들 등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해를 가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며(위와 같은 흔들림 과정에서 위 망루안에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 유실되어 그로 인하여 발화가 되었다고 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위 망루에 1차로 진입하여 그 안에 세눅스, 화염병 등 다수의 위험물질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나아가 진압과정에서 실제로 작은 규모의 화재가 발생하여 상황의 위험성을 확인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매뉴얼에 따라 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세눅스 등으로 인한 발화의 가능성을 차단한 이후에 망루에 진입하여 농성자들을 체포해도 늦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시 2차로 위 망루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와 같이 무모하고 무리한 진압을 한 경찰은 위와 같은 매뉴얼 등에 명시된 안전확보 노력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진압 업무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경찰관의 진압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망루에 갇힌 점거농성자들로 하여금 위 매뉴얼에 따라 화염병 등 위험물질을 소진하게 한 다음 진압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또한 화염병, 세눅스 등의 발화원(發火源)을 사전에 제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거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망루로의 2차 진입을 감행하여 이로 인한 망루 안의 점거농성자들의 격한 대응 유발을 유발하였고 그 과정에서 현재까지는 정확하게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인하여 6명의 인명이 희생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과 위와 같은 결과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존재하고 또한 위와 같은 인명피해를 충분히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결국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경찰의 아무런 대책 없는, 무모한 진압으로 인하여 위 망루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망루 4층에서 옥상으로 뛰어 내린 다음, 다시 옥상 난간에 매달리다가 힘이 다하여 2층 난간으로 떨어져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지식준의 경우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증제8호증).

③ 경찰비례원칙 비추어 본 용산참사: 위법성 검토

경찰비례원칙은, 경찰행정의 목적과 그 실현을 위한 수단 관계에서 그 수단은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 적합해야 한다는 ‘수단의 목적적합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침해를 가져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 및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목적상의 이익을 넘어서서는 아니 된다는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위 제1조 제2항의

‘최소한도 내에서’ 부분)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 헌법 제37조 제2항 등에 근거한 경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를 이루는 원칙이라 할 것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조기 경찰력 투입이 가지는 문제점, 경찰특공대를 투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를 선봉에 내세워 위 건물에 진입한 점, 설령 백 보 양보하여 경찰특공대를 위 건물에 투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세입자들이 위 건물에 대해 점거농성을 시작한지 약 3시간만에 경찰특공대의 투입이 결정되었는데, 일반 시민들에 대한 명백한 위해가 없는 이상 경찰특공대까지 투입할 필요성은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특공대 등 경찰력의 투입은 ‘수단의 최소침해의 원칙’에 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경찰이 사전에 다수의 위험요소를 예견하였음에도 그에 걸맞는 안전장치 등을 갖추지 않은 채 위 건물 점거농성자 등의 체포·진압에만 급급한 나머지 자신들이 스스로 정한 위와 같은 매뉴얼에도 어긋나는 방식으로 진압작전이 전개되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점은 경찰특공대 등의 투입의 물리적 행사로 인한 침해가 위 건물 점거농성자의 체포·진압의 목적상의 이익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수단의 상당성의 원칙’에도 반하여, 결국 위와 같은 경찰력 행사는 경찰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 (나) 책임 요건 검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의 체포·진압을 위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다수의 사상자의 발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에 요건을 충족하고, 나아가 별다른 책임 조각사유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에 따른 공권력 행사로 부득이하게 발생하였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책임을 조각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2) 경찰관직무집행범위반죄 검토

또한 위와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한 행위는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를 처벌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2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3) 경찰 피고발인들 중 현장에 없었던 자에 대한 형사책임

위 김석기 서울방경경찰청장, 위 이송범 서울지방경찰청 경비부장(다만 현장에 있었는지 현재로서는 불분명)이 위와 같은 죄책에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봅니다.

우리 대법원은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위 김석기는 위 건물에 대한 경찰력 투입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제한 자이고(증제5호증), 위 이송범도 서울지방경찰청장 차장 바로 밑에서 경비부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모두 결제라인에 있는 자들로서, 위 자들이 위와 같은 진압계획에 대하여 결제를 한 것은 그 진압계획상에 적시된 안전대비책이 철저히 실행될 것임을 전제로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자들은 그와 같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감독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위와 같은 인명 피해 발생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자들이 비록 용삼참사 현장에 있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범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경우, 2009. 1. 19.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가 열린 다음, 같은 날 19:00경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차장, 경비·정보부장·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사실(증제5호증의 2), 또한 위 매뉴얼 제16쪽에 따르면 “여러 관할에 걸쳐거나 문제성, 대규모 집회는 지방청장이 현장임장”하도록 규

정되어 있다는 사실, 중요 작전시 지휘라인에 의해 지방경찰청장 등 경찰수뇌부에 수시로 무전 등으로 현장상황이 보고되는 것이 상례인 사실 등 비추어 보면,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용산 참사 현장에 임하지 않았더라도, 무전 등을 통하여 수시로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관련 보도에 의하면 이송범 경비부장이 무전 상황을 총괄하였으므로 위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러한 상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아주 큼), 이에 대한 지시를 내렸을 고도의 개연성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은 용산 참사 바로 직전에 어청수 경찰청장 후임으로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총수에 오른 정황 및 어청수 경찰청장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진압작전에 대하여 철저하게 소외된 점을 고려하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 진압 경찰 등의 직무유기와 연행자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구타

한편 망루 전체로 화재가 번지기 이전에 옥상을 경찰들이 완전히 장악했으므로(증제5호증의 2), 망루 화재로 인하여 윤용현(사망), 지석준, 한대성(사망)이 망루에서 옥상으로 탈출했을 당시 위와 같이 옥상에 있었던 경찰특공대원 등 경찰들이 위와 같이 탈출한 사람을 구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아, 윤용현, 한대성이 등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이를 구체화한 위 매뉴얼 141쪽의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직무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형법상 유기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수사하여 만일 위법사항이 드러나면 직무유기죄, 유기죄 또는 유기치사죄 등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점거농성자 중 김창수가 옥상에서 5-6미터 높이 정도의 망루의 문을 통하여 건물 옥상으로 뛰어내렸고 그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목격한(시선이 마주침) 경찰 특공대는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았고(당시는 망루 전체로 불이 번지는 위급한 상황이었고 망루가 넘어지면 그에 깔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김영근, 천주석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현재 수술 받을 정도의 부상임) 병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호송차량 내부에 방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이는 경찰관의 보호조치를 규정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와 이를 구체화한 위 매뉴얼 141쪽의 “부득히 부상자가 발생시에는 인근 병원에 긴급히 후송조치를 취하여 한다”는 직무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형법상 유기죄,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진압 경찰이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을 실력으로 완전히 제압하여 체포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람들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가하여 이로 인하여 다수의 연행자들이 상해 등을 입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철저하게 수사하여 관련자를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바. 소결

따라서 위 경찰 피고발인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경찰관직무집행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위와 같이 윤용현, 한대성 등을 구호하지 않아 이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직무유기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의 추가로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5. 피고발인들 중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책임

### 가. 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

이 사건 세입자 등 다수의 증언에 의하면 위 건물을 점거하여 농성을 시작한 이래 호람, 현암 등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은 위 건물에 다수의 사람이 존재한 상황에서 2009. 1. 19. 새벽부터 거의 온종일 나무와 타이어 등을 모아 불을 질렀고, 이에 소방차가 출동하여 불을 진화하고 돌아가기를 반복하였으며, 또한 2009. 1. 20. 새벽에도 같은 일이 있어났습니다.

또한 2009. 1. 19. 동이 트자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떼로 몰려와 위 건물에 진입하여 이 사건 세입자들 등에 대해 폭력과 협박 등을 일삼았습니다(증제11호증).

## 나. 관련 법령 검토

별지 5와 같습니다.

### 다. 용역업체 직원들의 형사책임

위와 같은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행위는 이 사건 세입자와 격렬하게 대립하고 하는 과정에서 방화를 한 점,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이뤄진 점, 그 방화로 소방차가 출동하여 이를 진화하고 되돌아가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방화로 인하여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화행위는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함을 물론 이는 곧 위 건물 점거농성자들에 대한 협박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위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고 폭행을 한 행위는 역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위와 같은 행위를 한 사람들이 경비업법상의 경비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죄 이외에도 경비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제28조 제5항). 그리고 만일 경비원에 해당하는 자가 쇄파이프, 각목 등 흉기를 폭행 협박 등을 하였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 라. 위와 같은 철거용역 업체 직원들의 범죄에 대한 묵인 또는 방기의 경우

만일 위와 같은 범죄행위를 위 건물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등이 이를 알고서도 묵인하거나 이러한 범죄행위를 제지 또는 진압하지 아니하고 이를 방기하였다면, 이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무를 방기한 것으로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 부분도 엄정하게 수사하여 의법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마.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

#### (1) 김유정 국회의원이 공개한 무전교신 녹취록의 내용

김 의원이 공개한 무전교신 녹취록에 따르면, 경찰은 진압작전 직전인 20일 오전 6시 29분 42초에 "용역 경비원들, 해머 등 시정장구를 솔일곱(지참)하고 우리 병력 뒤를 따라 3층에서 4층 그 시정장치 해제할 진중(진행중)입니다"라는 내용의 무전 교신을 했고, 오전 6시 29분 59초에 "18(알았다) 경넷(경찰)과 함께 용역경비원들 시정장구 솔일곱(지참)하고 3단 4단 사이 설치된 장애물 해제할 중 18"이라는 내용의 교신이 이뤄졌고, 또한 김 의원이 추가 공개한 경찰 무전 교신에 따르면 진압 당일인 지난 20일 오전 6시25분8초에 "건물 2단에 철거반이 있는데 왜 잠겨 있죠"라고 묻는 내용이 들어 있고, 이어 6시25분42초에는 "철거반원들이 3, 4층에 있는 장애물 제거 설치(조치)를 해야지, 가급적이면 철거반원들이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되면 경력이라도 3, 4층에 있는 장애물을 신속하게 제거하도록"이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증제9호증).

(2) 경찰과 철거용역 업체의 합동 작전에 의한 진압에 관한 형사책임

경비업법은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등의 직무를 경비업으로 정하고, 일정한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춘 법인만이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경비업에 종사할 수 있는 바(동법 제2조 제1호, 제4조), 철거업체 등이 건물에 대해 철거를 진행하는 순수한 철거업무 이외의 업무, 즉 이 사건 정비사업과 같은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을 주거 등에서 강제로 퇴거시키는 등의 업무에 동원되는 것은 경비업법이 정한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은 법인만이 이러한 사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호랍, 현암 철거용역업체는 위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업체로 드러나고 있는데, 위 업체를 운영하는 자는 경비업법 제2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처벌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동법 제15조의 2에 의하면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반하면 동법 제28조 제5항에 따라 처벌되는데, 경찰과 위 철거 용역업체 직원들이 합동으로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것은 위 용역업체 직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경찰이 이에 적극 동조하는 행위인바, 이는 위와 같은 행위를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묵인하거나 방조하는 것으로 경비업법위반죄(제28조 제5항)의 공동정범 내지 방조 또는 교사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참여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증제11호증).

## 6. 종합 결론

이 사건 세입자 등에 의해 위 건물에 대한 점거농성이 시작된지 3시간여만에 전광석화처럼 이뤄진 경찰특공대 등 경찰에 의한, 철거민의 안전에 대해 준비하지 않은 무모한 진압 과정에서 6명의 고귀한 인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우주와 같은 6명의 무고한 인명이 희생된 것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한 죽음에 의한 원혼이 편안한 안식을 얻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 것입니다.

실질적 법치국가를 지향하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정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공권력에 의한 야만(野蠻)과 폭력(暴力)이 난무하는, 참기 어려운, 견디기 어려운 이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시민단체 활동가, 법률가, 의사 등 본고발인들은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야만적인 법집행에 대하여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어, 끓어오르는 분개심을 찾을 수 없어, 또한 다시는 위와 같은 야만적인 법집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객관의무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검사들의 집합체인 서울지방검찰청에 피고인들의 만행에 가까운 범죄를 고발합니다. 이성과 양심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외풍에도 굴하지 않고 피고인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여 본 참사로 인해 땅에 떨어진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만천하에 드러냄과 아울러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숨쉬는다는 점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 증명 방법

- |             |                 |
|-------------|-----------------|
| 1. 증제1호증의 1 | 국제빌딩 주변 제4구역 개요 |
| 1. 증제1호증의 2 | 관리처분계획고시        |



## 별지 2

### 관련 법령(용산참사 발생의 근저에 있는 배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타)일부개정 2007.4.27 법률 제8404호<sup>80)</sup>]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6.5.24>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음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호 내지 다호 생략-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3호 내지 9호 생략-

9.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자를 말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나호 생략-

제16조 (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등소유자의 5분의 4이상의 동의를 얻어 정관 및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의 동의없이 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 생략-

제36조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하여 당해 정비구역 내·외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급의 용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임시수용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2.28>

-제2항 내지 제3항 생략-

제40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준용)

80) 이 사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인 2007. 5. 31. 당시 시행된 법률입니다. 이하 다른 법령도 같습니다.

①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을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 내지 제4항 생략-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12.30 법률 제7835호]

제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①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참작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3항 생략-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방법과 보상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

-제1항 내지 제4항 생략-

⑤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제6항 생략-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3.17 건설교통부령 제504호]

제47조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

①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에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원재료·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써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휴업기간으로 하되, 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당해 공익사업을 위한 영업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상의 기간동안 영

업을 할 수 없는 경우

2. 영업시설의 규모가 크거나 이전에 고도의 정밀성을 요구하는 등 당해 영업의 고유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내에 다른 장소로 이전하는 것이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제3항 내지 제5항 생략-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①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는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발표하는 가계조사통계의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2인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가구원수가 6인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적용하며,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인 경우에는 6인 이상 기준의 월평균 가계지출비에 6인을 초과하는 가구원수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1인당 평균비용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정 2005.2.5, 2007.4.12>

1인당 평균비용 = (6인 이상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2인 기준의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가계지출비) ÷ 4

### 별지 3

#### 관련 법령(경찰특공대 투입과 비례의 원칙)

경찰법[일부개정 2008.6.13 법률 제9114호]

제4조 (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7.19>

제13조 (하부조직)

③ 경찰청의 하부조직의 명칭 및 분장사무와 공무원의 정원은 「정부조직법」 제2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2.28, 2006.7.19,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8.7 대통령령 제20960호]

제42조 (직할대)

①지방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차장(지방경찰청에 차장을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밑에 직할대를 둘 수 있다.<개정 2008.2.29>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8.8.8 제29호]

제22조 (지방경찰청에 두는 담당관 및 직할대)

②서울지방경찰청 차장밑에 101경비단·기동단·22경찰경호대·국회경비대·정부중앙청사경비대·김포공항경찰대·경찰특공대 및 202경비대를 둔다.<개정 1998.12.31, 1999.12.28, 2001.3.31, 2001.12.27>

제25조 (직할대)

②직할대의 하부조직 및 분장사무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과 경찰서의 조직 및 사무분장규칙(1991. 7. 31. 훈령 제1호 제정)

제25조(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는 각종 테러 등 특수범죄 진압 및 인명구조와 요인경호, 중요범죄 발생시 긴급배치 및 집중 단속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및 1, 2, 3, 5, 경호지원제대와 교육대, 폭발물처리제대를 두고 대장은 경정으로 제대장, 교육대장, 폭발물처리대장은 경감으로 보하며,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007. 6. 4 개정>

1. 본부

- 가. 경무, 인사, 상훈, 교육에 관한 사항.
- 나. 일반장비, 통신·차량·무기수급 및 관리유지
- 다. 경리 및 시설관리
- 라. 연금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 마. 작전계획 및 훈련계획 수립
- 바. 전·의경 관리
- 사. 기타 다른 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제대

- 가. 대테러 범죄진압 및 피해방지 조치
-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무장경호 및 안전검측활동)업무

3. 교육대

- 가. 대테러 특수전술 편성, 교육 및 운영
- 나. 수탁훈련등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다. 대테러 전술 및 교리 연구개발
- 라. 교육훈련장 관리 및 정비

4. 폭발물처리대

- 가. 폭발물처리 및 탐지건 운영에 관한 사항
- 나. 기타 대테러 및 경호관련 지원업무

별지 4

관련 법령(진압 경찰에 대한 형사책임)

경찰관직무집행법

[(타)일부개정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1조 (목적)

①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및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관(국가경찰공무원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2.21>

②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보호조치등)

①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병자·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1988.12.31>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제12조 (벌칙)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8.12.31]

별지 5

관련 법령(용역업체 직원들의 범죄행위 부분)

경비업법

[(타)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72호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5.5.31>

1. "경비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경비업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시설경비업무 :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협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나목에서 마목 생략-

3. "경비원"이라 함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경비업자"라 한다)이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일반경비원 :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

-나목 이하 생략-

제4조 (경비업의 허가)

①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인력·자본금·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5조의2 (경비원 등의 의무)

①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5.8.4]

제16조 (복장·장비 등)

경비원의 복장·장비 및 출동차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08.2.29>

제28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5.8.4>

6. 제15조의2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원에게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한 자  
⑤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경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설 2005.8.4>

### 경비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06.9.7 행정자치부령 제345호 ]

#### 제20조 (장구 등)

경비원이 휴대하는 장구의 종류는 경적·경봉 및 분사기 등으로 하되, 근무중에 한하여 이를 휴대할 수 있다.

제21조 (분사기의 휴대)

경비업자가 경비원으로 하여금 분사기를 휴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단속법에 의하여 미리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64조 (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

①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3.24 법률 제7891호 ]

제2조 (폭행등)

①상습적으로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2006.3.24>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2호 이하 생략-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1962.7.14, 1990.12.31, 2006.3.24>

②삭제<2006.3.24>

-제3항 이하 생략-

#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



2009. 2. 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본부

# 목 차

I. 개요 .....	1
II. 수사 경과 .....	2
III. 사건진행 경위 .....	6
IV. 화재 원인 및 사망자의 사인 .....	11
V. 수사결과 .....	18
VI.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 .....	26
VII. 향후 계획 .....	31
《별첨 : 기소대상자 명단 .....	32》

## I. 개요

- 서울중앙지검은 2009. 1. 20. 서울 용산구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건물점거농성을 경찰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로 6명이 사망하고, 농성자와 경찰관 22명이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즉시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여 수사에 착수하였음
- 특별수사본부는 **① 신속하고 정확한 진상 규명 ② 철저한 중립적 입장 견지 ③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한 사실확정 및 법리판단이라는 3대 원칙** 하에 가능한 모든 수사방법을 동원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 검찰은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사망자들의 사인과 화재원인, 농성자들과 경찰의 책임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
  - 어두운 망루 안에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사람 중 상당수가 사망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에 있던 농성자 전원이 복면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많았음
  - 그러나, 특별수사본부는 검거된 농성자 전원과 작전에 관여한 거의 모든 경찰관을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사체부검과 감정·감식, 경찰 및 소방 무전내용 분석, 서울지방경찰청 및 용산 철거대책위원회 사무실 등 압수수색, 통화내역 조회, 관련 동영상과 채증사진 정밀분석, 시너 발화실험 등 각종 과학적 실험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였음

## II. 수사 경과

### 1. 사건 발생

- 2009. 1. 19.(월) 05:30경부터 용산 4구역 상공철거대책위원회 회원 등 32명이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에 있는 남일당 빌딩에 불법으로 침입, 망루를 설치한 후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점거농성을 전개하였음
- 1. 20.(화) 06:30경 경찰특공대가 진압작전을 개시하자 농성자들은 화염병 등을 투척하며 저항하였고, 그 과정에서 07:20경 망루에 화재가 발생,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이 사망하고, 농성자 6명과 경찰관 1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음

### 2. 특별수사본부 구성

- 검찰은 사건 발생 즉시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을 감안하여 수사인력과 수사경험이 풍부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 현장에서 검거된 다수의 농성자와 진압경찰관들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함께 정밀한 감정·감식 등 방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강력사건과 방·실화 사건을 전담해온 형사3부를 중심으로 대규모 수사팀을 구성하였음

### 특별수사본부 구성

- 본부장 :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 정병두
- 수사총괄 :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조은석
- 구성원 : 서울중앙지검 검사 16명, 서울서부지검 검사 1명, 검찰 수사관 24명

### 3. 주요 수사방법

○ 검찰은 화재사망 사건의 경우 현장보존 및 현장에서의 증거수집과 기민한 초동수사가 진상규명에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 사건 발생 직후 검사를 현장에 파견하여 현장보존 조치를 취하는 한편, 수사본부장을 비롯한 수사검사들이 화재현장을 직접 검증하고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식반에 의뢰해 정밀한 화재현장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화학분석팀을 통해 망루내 각종 유류물에 대한 정밀성분분석 등 가능한 모든 이화학적 검사를 진행하였으며

- 사건 초기 단계에서 검사 22명이 현장에서 체포된 농성자 22명을 1대1로 심도 있게 조사하였음

○ 수사본부를 농성준비행위 조사팀, 농성자 조사팀, 경찰지휘부 조사팀, 현장경찰 조사팀, 현장검증팀 등 5개팀으로 나누어 수사를 진행하면서

- 농성자 27명에 대해 총 94회, 현장에 투입된 경찰관 75명에 대해 총 107회 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경찰지휘부 7명을 조사하였고

- 조사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자 농성자 조사시 변호인을 26회 참여하게 하고, 영상녹화를 32회 실시하였으며, 구속된 피의자 4명에 대하여는 거짓말받지기 조사까지 하려 하였으나 본인들의 거부로 실시하지 못한 바 있음

○ 한편 사망자의 신속한 신원확인과 사망원인, 그리고 화재발생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들을 동원하여 사체 부검을 최대한 정밀하게 실시하고

- 화재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개연성까지 염두에 두고 가능한 모든 사인을 빠짐없이 확인하였으며

-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물과 시너 등 혼합물의 배합비율에 따른 연소상태에 대한 실험을 의뢰하는 등 당시 현장상황 및 화재진행경과를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을 진행하였음

○ 특히 이번 사건에서는 사건현장과 화재당시의 장면이 촬영된 동영상물에 대한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 경찰에서 촬영한 동영상은 물론 '사자후 TV' 및 '컬러 TV' 등 인터넷 방송의 동영상 원본까지 임의제출받거나 압수하여 총 21종의 영상물을 분석하였고

-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에서 화재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정밀분석하여 사건당시의 현장상황을 상당 부분 규명하고, 영상확대기법(magnifying)을 활용하여 화재발생 직전인 1. 20. 07:19 경 망루 4층에서 농성자 중 일부가 통을 들고 망루의 벌어진 합석틈으로 인화물질을 투기하는 장

면을 확보하였으며

- 이와 같은 동영상에 대한 정밀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 전문가인 서울시립대 교수, 한국사이버대 소방방재학부 교수, 공업연구사 등으로부터 화재원인에 대한 감정분석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객관적 검증을 진행하였음
- 또한 경찰의 책임과 철거용역직원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자필 진술서를 제출받고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을 2회 소환조사한 것을 비롯하여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 특공대장, 용산경찰서장 등 지휘계통에 있었던 경찰간부들을 빠짐없이 소환조사하고
  - 경찰 무선교신 녹취록과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등 경찰지휘부 7명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분석함과 동시에 서울지방경찰청과 용산경찰서를 압수수색하여 필요한 자료를 모두 확보한 후 경찰이 임의제출한 자료 중에서 누락된 부분이나 편집된 부분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하였으며
  - 철거용역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용역업체와 경찰간의 의사연락 내용 및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는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였음
- 아울러 이번 농성의 준비와 자금조성과정, 그리고 배후세력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 망루 제작 예행연습을 실시한 인천도화철대위 사무소 등 관련 장소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 용산철대위와 전철연 간부들 간의 금전거래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음
- 그 밖에
  - 농성자들이 화염병, 골프공 등을 발사하는데 사용한 ‘새총 모양 발사대’가 공중에 미치는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해 발사대의 위력을 테스트하는 실험을 실시하였고
  - 망루 미니어처 제작 등 화재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작업도 진행하였음

### Ⅲ. 사건진행 경위

#### 1. 사건의 배경

- 2006. 4. 20.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63의 70 일대가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되어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상가세입자 439세대 중 86세대가 보상에 반발
- 2007. 11.경 보상에 반발하는 상가세입자 등이 용산세입자대책위를 구성한 후, 이주보상비 증액보다는 “재건축 기간 중 임시상가와 재건축 후 상가분양권을 쟁취하자”는 전국철거민연합회(이하 ‘전철연’이라 표시) 의장 남경남의 주장에 동조하여 2008. 2.경 전철연 가입
- 2008. 4.경 연대투쟁 및 망루농성 투쟁방식에 반대하는 대부분 세입자들이 전철연을 탈퇴하고 26세대가 남아 용산4구역 상공 철거대책위원회(이하 ‘용산철대위’라 표시) 조직
  - ※ 이번 농성에 참여한 인원은 26세대 중 10세대 10명

#### 2. 점거농성 계획 및 실행

- 2008. 8.경 용산철대위 위원장 이충연 주도로 망루 제작 점거농성을 모의하고, 회원 6명이 각출한 6,000만원을 홍보부장 김진홍 계좌로 관리하면서 2009. 1. 초순경부터 망루제작에 필요한 자재와 시너,

화염병, 새총 모양 발사대 등 시위용품 준비

※ 남일당 건물 건너편 레아호프집을 운영하는 이충연과 망 이상림은 한강로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5층 건물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옥상에 보호벽이 있는 남일당 건물을 점거농성 대상으로 선정

- 쇠파이프 250여개, 시너(20리터) 70여통, 염산(20리터) 2통, 자전거 핸들을 개조하여 만든 새총 모양 발사대 20개, 골프공 1만여개, 유리구슬 3,000여개, 길이 1.5미터의 삼지창 4개, 복면 및 마스크 각 40여개 구입

○ 2009. 1. 16.경 인천 도화상공철대위 사무실 부근 공터에서 남경남 주도 하에 도화상공철대위 소속 손관현이 이충연 등 용산철대위 회원들에게 망루제작방법을 교육하고, 화염병 400여개, 염산병 40여개 제조

○ 1. 18. 03:00경 트럭 3대, 봉고차량 1대, 버스 등을 동원, 이충연 등 40여명이 남일당 건물에 진입을 시도하였으나, 크레인 고장으로 망루제작 자재 등 시위용품을 옮기지 못해 실패

○ 1. 19. 03:00경 이충연 등 32명(남자 29명, 여자 3명/세입자 10명, 외부인 22명)이 복면을 쓰고 트럭 2대, 봉고차 1대 등에 망루설치용 자재, 시위용품 등을 싣고 남일당 빌딩 앞에 집결한 후 절단기로 자물쇠를 부수고 건물 침입, 점거

○ 건물 점거 후 시너통(20리터) 60여통, 화염병 400여개, 3개월분 쌀과 반찬 등을 건물로 운반하고, 230만원을 주고 임대한 크레인을 이용하여 쇠파이프 250여개, 가로 1m, 세로 8m 가량의 합석 36개 등 자재를 옥상으로 옮긴 후 같은 날 18:00경까지

- 가로·세로 6m, 높이 8m 가량의 4층짜리 망루를 설치하는 한편, 건물 4층, 옥상 및 망루에 골프공, 화염병 등을 발사하기 위한 새총 모양 발사대 18개를 설치

- 옥상의 벽돌을 해머로 깨뜨려 투석용 벽돌을 만들고, 벽돌조각과 화염병, 염산병, 골프공을 건물 곳곳에 분산 배치

- 건물 3층 계단과 4층 계단 사이에 쇠파이프를 용접하여 사람이 드나들 수 없게 차단장치 설치

### 3.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 상황

○ 1. 19. 05:30경부터 농성자들이 복면, 마스크 등을 착용한 채 경찰 및 철거용역회사 직원 등을 향해 염산병, 화염병, 벽돌 등을 투척하고 비거리가 최대 169m인 새총 모양 발사대로 유리구슬, 골프공 등 발사

- 화염병으로 인해 남일당 부근에 있는 동막골, 숯불강통집 등 식당에 화재가 발생하고, 벽돌을 던져 도로를 운행하는 승합차의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피해 야기

○ 1. 19. 05:30 ~ 1. 20. 06:30 사이 농성자들이 화염병 200여개, 염산병 40여개, 골프공과 벽돌 수백개를 투척하여 시간 당 4,500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한강로 8차선 도로를 전면통제 1회, 일부 통제 4회 하게 하여 용산 일대는 물론 서울 도심지역에 극심한 교통장애 야기

#### [ 주요 피해사례 ]

- ▶ 1. 19. 09:20경 벽돌 투척으로 도로상의 승합차 유리창 파손
- ▶ 1. 19. 11:00경 화염병 투척으로 남일당 건물 인근 숯불강통집 식당 등 화재 발생
- ▶ 1. 19. 10:50~11:23 한강로 서울역 방향 하위 2개 차로 통제
- ▶ 1. 19. 11:23~12:18 한강로 서울역 방향 모든 차로 통제
- ▶ 1. 19. 12:18~13:19 한강로 서울역 방향 하위 2개 차로 통제

- ▶ 1. 20. 새벽 화염병을 투척하여 인근 장안약국 건물 일부 소훼
- ▶ 1. 20. 05:30경 간선도로에 골프공, 빈병, 화염병 등을 수회 투척하여 시내버스와 택시 등 통행방해
- ▶ 1. 20. 05:40~05:50 한강로 서울역 방향 모든 차로 통제
- ▶ 1. 20. 05:50~08:15 한강로 8개 차로 전면 통제
- ▶ 1. 20. 06:12경 화염병을 투척하여 남일당 건물 앞 도로의 버스정류장 연소

#### 4. 경찰특공대 투입 경과

##### 【경찰 투입결정 및 지휘체계】

- 1. 19. 07:00경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 용산경찰서장으로부터 유선으로 상황을 보고 받고, 08:10경 현장 도착하여 상황 직접 파악
- 09:40경 특공대 1차 출동, 용산역 부근 버스안 대기 (17분후 철수)
- 12:30경 한강로지구대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주재, ‘현장 대책회의’ 개최
- 용산경찰서장이 컨테이너를 이용한 경찰특공대 투입작전을 건의하여 특공대 투입을 잠정 결정
- 13:30경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현장 도착하여 상황 직접 파악
- 13:30경 특공대 2차 출동, 용산역 부근 버스안 대기 (3시간 후 철수)
- 14:50~15:10경 특공대장과 1제대장이 헬기로 현장답사 및 촬영
- 19:00경 서울지방경찰청장실, 청장 주재 ‘기능별 대책회의’ 개최
- 시민들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신속한 진압이 필요하다고 판단,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컨테이너를 사용한 경찰특공대 투입 작전을 승인
- 현장 총지휘책임자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 지명, 기동본부장과 정보관리부장, 경찰특공대장, 용산경찰서장에게 차장 보좌 지시
- 교통량 및 시민불편을 감안하여 1. 20. 06:30 작전을 개시하기로 결정
- 방염복 착용 등 경찰에 대한 안전조치와 교육실시, 안전사고에 대비한 소방장비와 구급차 준비 등 지시
  - 경찰특공대원 5개 제대 98명을 투입하기로 결정
- ※ 남일당 외곽 경비를 위해 경찰 4개 기동대 300여명, 전·의경 11개 중대 800여명, 용산 방법순찰대 70여명 배치

##### 【경찰특공대 투입 및 농성자 검거】

- 1. 19. 17:00~21:40경 특공대원 상대 현장상황 및 각 제대 역할분담 등 교육
- 1. 20. 03:30~05:30경 현장에 특공대 인원배치 및 크레인 설치, 소방차, 구급차 준비 등 작전 준비
- 06:30경 특공대 진압작전 개시(효과적인 진압을 위해 옥상조가 컨테이너 이용 진입, 지상조가 계단 진입 시작)
- 06:44경 지상조가 건물 3층 장악, 옥상조를 태운 1차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하여 특공대 12명이 옥상에 내림
- 06:54경 옥상조를 태운 2차 컨테이너가 옥상에 도착, 7명이 내리고, 나머지 4명이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로 접근할 때 농성자가 컨테이너를 향해 화염병을 던져 특공대원들의 옷에 불이 붙자 휴대용소화

기로 소화

- 06:47 ~ 07:10경 건물 4층 및 옥상에서 농성자 9명 검거하고, 망루 안에서도 농성자 9명 검거, 망루 안에 있는 나머지 농성자들은 망루 3~4층에서 쇠파이프와 삼지창을 휘두르고 화염병과 시너를 집어던지며 격렬히 저항하여 특공대원들은 휴대용소화기로 진화하면서 농성자 쪽으로 계속 접근
- 07:10경 망루에 진입해 있던 특공대원들은 검거 농성자 인계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지고 농성자들이 화염병 투척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자 일단 망루 밖으로 후퇴

## 5. 화재 진행 경과

- 07:15경 농성자들이 망루 창문을 통해 망루 밖으로 통제로 시너 투기
- 07:18경 특공대 16명이 망루 2차 진입
- 07:19경 농성자중 일부가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망루 외벽을 해체하는 경찰을 향해 약 30초 이상 다량의 시너를 끼얹듯이 투기
- 07:20경 망루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된 불이 시너가 뿌려져 있던 망루내 계단과 1층 바닥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대규모 화재 발생
- 07:28경 화재로 인해 망루 붕괴
- 07:52경 옥상 등에서 농성자 9명 검거(그중 2명은 체포하지 않고 병원 후송)
- 09:38 ~ 12:50경 사이 농성자 5명과 경찰관 1명 사체 발견

# IV. 화재 원인 및 사망자의 사인

## 1. 화재 원인

### Ⅰ 감식결과 및 관련자 진술

#### 〈국과수 감식결과〉

- 망루 내부 연소를 급속히 확산시킨 연소매개체는 ‘시너(thinner)’로 감정

#### 〈경찰 특공대 진술〉

- 망루 1차 진입 당시 농성자들이 망루 위쪽에서 망루 밖으로 뿐만 아니라 망루 내에 진입한 특공대를 향해서도 다수의 화염병을 투척하였음
- 망루 2차 진입당시 망루 내에 시너 냄새가 많이 났음
- 망루 4층에서 아래로 화염병이 떨어지면서 불이 확 붙었고, 망루 계단을 통해 불뚱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망루 전체로 불길이 번졌음

#### 〈소방관 진술〉

- 경찰특공대가 망루에 2차 진입하기 전 망루에서 창문을 통하여 시너를 옥상바닥에 통제로 쏟아 부었음

#### 〈피의자 김00 진술〉

- 경찰이 망루에 2차로 진입하였을 때 망루 4층에 있었는데 3층 계단 부근에서 발화되어 불이 난 것을 보았다고 진술
- 발화지점을 특정하여 직접 그림을 그려 제출하였음

※ 위와 같이 진술할 당시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었음

## ㉑ 관련 동영상

### 《농성자의 시너 다량 투기》

- 특공대 1차 진입시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으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특공대원들이 개인소화기로 모두 소화하였고, 망루 내에서 농성자 총 9명을 검거한 후 1. 20. 07:10 일단 철수
- 1. 20. 07:15경(화재발생 약 5분전) 농성자중 일부가 망루 전면기준 좌측 4층 창문으로 붉은색 통에 든 액체를 3-4초가량 밖으로 뿌린 다음 통을 옥상바닥에 버리는 장면 촬영



《동영상화면 1 (1. 20. 7시 15분경 사자후 TV 촬영)》

- 1. 20. 07:18경 특공대원들이 2차 진입을 시도하였고, 07:19경(화재발생 약 1분전) 망루 외벽 합석을 해체하려는 특공대원들을 향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 있던 농성자중 일부가 불상의 액체를 아래로 30초 이상 뿌리는 장면 촬영



《동영상화면 2 (7시19분경 사자후 TV 촬영)》

- 문제의 액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살수차에서 발사한 물로 볼 수 없음
  - 만약 살수차 물이 흘러내린 것이라면 망루 합석이 본체로부터 벌어지는 순간부터 흘러내려야 하는데, 합석이 본체로부터 벌어진 뒤 약 30초 후에 갑자기 문제의 액체가 뿌러지기 시작함
  - 망루의 구조상 망루내 물은 계단이 설치된 4각형의 구멍난 공간을 통해 흘러내리도록 되어 있음
- ※ “망루 미니어처” 참조
- 문제의 액체가 떨어지는 모양으로 볼때 ① 액체가 뿌러지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낙하 각도가 꺾이는 점 ② 간헐적이고 공중에 흩뿌리는 모양으로 떨어지는 점에서 물이 건물의 구조를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과 현저히 다름
- ※ 위 “동영상화면 1”에서 액체가 떨어지는 모양과 동일
- 위 액체는 아래의 이유로 인화성이 강한 인화물질(시너)로 판단됨

- “사자후TV 동영상”에 1. 20. 07:20경 망루 좌측 모서리 벌어진 함석 틈을 통해 3, 4층의 화염에서 생긴 불뿔 여러 개가 아래로 똑똑 떨어졌고, 곧바로 거센 불길이 아래쪽에서 치솟는 장면이 확인됨



《동영상 화면 3(왼쪽 7시20분경 사자후TV 촬영 / 오른쪽 6시 54분경 경찰 촬영)》

- 화재전문가는 “위 불뿔이 떨어지는 모양은 1. 20. 06:54경 특공대를 태운 컨테이너에 맞은 화염병의 불뿔이 아래로 떨어지는 모양(사자후TV 동영상에 촬영)과 동일한 점에 비추어 망루 4층에서 뿌려진 액체는 화염병에 들어있는 인화물질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

- 특히 경찰 촬영 동영상에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통을 들고 액체를 뿌리는 장면이 포착된 점을 감안하면 외벽해체를 저지하기 위해 특공대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것으로 판단됨



《동영상화면 4 (7시19분경 경찰 촬영)》

《**농성자의 화염병 투척**》

○ 경찰이 망루의 전면기준 좌측을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위와 같이 시너가 뿌려진 지 약 1분후인 07:20경 좌측 4층 창문을 통해 화염병 불꽃으로 보이는 불빛이 포착



《동영상화면 5 (경찰 촬영)》

○ 그로부터 약 3초 후 망루 좌측면 3층 창문을 통해 조금 큰 불꽃이 보이고, 곧바로 화염이 일어나는 장면 포착



《동영상화면 6 (경찰 촬영)》

- 그 후 곧바로 화염이 3, 4층에서 크게 번진 다음, 불꽃이 망루 전체로 확산되는 장면 포착



《동영상화면 7(경찰 촬영)》

- 사자후TV 동영상중 같은 시간대 부분을 분석해 보면 위 경찰 동영상과 상황이 일치됨
- 사자후TV 동영상에 망루 전면 좌측 3,4층 계단 부근에서 화염이 발생하는 장면이 확인됨(경찰 촬영 동영상에 망루 좌측면 3층 창문을 통해 불빛이 보이는 시점과 같은 시점의 화면)



《동영상화면 8 (7시 20분경 사자후 TV 촬영)》

- 그로부터 2-3초후 좌측 3,4층 계단 부근에서 화염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불뿔이 아래로 똑똑 떨어지는 장면이 확인됨



《동영상화면 9 (7시20분경 사자후 TV 촬영)》

- 그로부터 2-3초후 불뿔이 떨어진 아래쪽에서 불길의 거세게 위를 향해 치솟아 오르는 장면이 확인됨



《동영상화면 10 (7시20분경 사자후 TV 촬영)》

### ③ 결론

- 농성자들이 망루 4층 계단 부근에서 망루를 해체하는 경찰을 향해 시너를 대량 쏟아부은 후 망루 4층에 있던 농성자가 망루에 진입한 특공대를 막기 위해 화염병을 아래로 투척, 망루 내부 3층 계단 부근에 화염병이 떨어져 발화됨
- 화염병이 터져 발화한 불꽃이 계단과 벽면에 묻어 있던 다량의 시너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뚱이 1층으로 흘러내려 바닥 등에 있던 시너에 번지면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 결국 본건 화재는 농성자의 시너 투기와 화염병 투척이 결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명되고 그로 인해 망루가 전소된 것임

### 2. 사망자의 사인

- 사체 발견 당시 망 이상림, 한대성, 양희성, 윤용헌은 무너진 망루 윗부분에서 나란히 불에 탄 채 발견되었고, 망 이성수는 무너진 망루 아랫 부분의 구겨진 패널 사이에 끼인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사망한 특공대원은 망루 아랫부분에서 철골조에 끼여 있는 채로 발견되었음
- 사체를 정밀하게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의는 모든 사망자들의 기도와 폐점막 등에 그을음이 발견되는 등 화재사의 전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이 사건 화재가 진화된 이후 사체가 발견되는 과정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 그에 나타나는 사체 상태 및 사체가 발견된 장소의 주변 상황과 부검소견을 종합하여 보면 망자들의 사인은 화재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됨

## V. 수사 결과

### 1. 농성자에 대한 수사결과

#### 농성자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 농성자들은 사전에 점거농성의 전 과정과 농성 방법, 경찰에 대한 저항 방법 등을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행동하였고
- 특히 농성자 전원이 점거농성 현장에서 복면,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화염병투척 등을 사전에 모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만큼 구체적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범법

행위에 대해 전원 공범의 책임을 져야 함

- 공동으로 남일당 빌딩에 침입하고 주변 건물과 도로, 경찰관 등을 향해 돌과 골프공, 유리공 등을 투척한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고
- 주변 건물과 도로, 경찰관 등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한 행위는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고, 그로 인해 주변 건물을 소훼한 행위는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의율하였으며
- 경찰관들을 향해 시너와 화염병을 투척하고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며 저항하다가 화재를 야기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로 의율하되, 사람이 현존하는 망루에 대한 방화의 고의는 인정하기 어려워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죄는 적용하지 아니함

## 점거농성자 5명의 사망에 대한 행위자 특정 문제

- 농성자 5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과 관련하여 시너를 뿌리고 화염병을 투척한 사람을 특정하고자 수사기간 마지막까지 이 부분을 집중조사하였으나
  - 화재 당시 망루내부가 매우 어두운데다 농성자들이 모두 복면을 하고 있어 정확한 식별이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농성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 모두 묵비하면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도 거부하여 결국 화염병 투척자를 특정하지는 못하였음

## 정상참작 및 행위에 상응한 책임 부과

- 화재현장에서 검거된 농성자 27명을 가담정도 및 정상에 따라 분류하여
  - 점거농성을 주도하거나 가담정도가 중한 6명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하였고, 가담정도나 죄질이 가벼운 사람은 불구속상태로 수사하였음
- ※ 중상으로 병원에 입원중인 농성자들은 일단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였음
- 화재발생 이전과 이후에 검거된 농성자들의 책임을 달리하여,
  - 망루 1차 진입 당시 검거된 농성자들은 검거 이후에 발생한 화재로 인한 사망 또는 상해의 결과에는 책임이 없다고 보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 망루 2차 진입 이후 화재시까지 망루에 남아 있던 농성자들은 공동하여 시너 투기 및 화염병 투척 등으로 격렬히 저항하다가 화재를 야기한 것이므로 화재로 인한 경찰관들의 사망과 상해의 결과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죄를 적용함

## 농성자들의 유형별 사건처리

- 검거된 27명 중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기소, 1명 기소유예하였으며, 나머지 6명은 계속수사
  - 구속기소(5명) : 화재발생시까지 끝까지 저항하거나 가담정도와 죄질이 중함
  - 불구속 기소(15명) : 화재 발생에 관련이 없거나 폭력행위 가담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함
  - 기소유예(1명) : 형사처벌된 전력이 없고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장애 자녀를 부양하고 있음
  - 계속수사(6명) : 구속 피의자 이충연과 입원치료 중인 자 등

## 2. 경찰에 대한 수사결과

### 남일당빌딩 농성 현장의 주변상황



### 경찰특공대 조기투입 결정의 위법성 여부

- 경찰특공대 투입이 다른 점거농성사태 때와는 달리 농성 시작 하루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농성자와 경찰관이 사망하는 대규모 화재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경찰특공대의 조기투입 결정에 기한 진압작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 이에 대하여 경찰은
  - 종래에는 철거민들이 시민이나 차량통행이 없는 곳에 망루를 설치하고 농성함으로써 화염병 투척이나 새총 발사로 인한 시민 안전의 위협이 크지 않았던 반면
  -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왕복 8차로인 주요 간선도로에 접한 제3자의 건물을 불법 점거하여 망루를 지어놓고 ▲사람과 차량들이 통행하는 인도와 차도에까지 화염병을 투척하는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켰으며 ▲ 인근 건물과 버스정류장에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나게 하고 간선도로도 마비시키는 등 위험성이 현실화되었고
  - 또한 ▲농성자들은 화염병 400여개, 염산병 40여개와 골프공 1만개, 유리구슬, 새총 모양의 발사대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화염병을 새로이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빈병 7포대와 1톤이 넘는 시너 등 인화물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 전철련 간부를 통하여 농성자와 협상을 시도해 보았으나 농성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있다고 하면서 경찰의 철수만 주장할 뿐 협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위험이 가중되고 장기화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 과거 망루농성투쟁을 진압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투입하여 신속히 해산을 시킬 수 밖에 없었다 함
- 수사한 결과

- 경찰 주장과 같은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농성자들이 협상에는 응하지 아니하면서 화염병, 염산병, 시너 등 다량의 위험물질을 보유, 투척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새총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비거리 실험 등을 통해서도 그 위험성이 입증되었음

※ 피해상황은 8쪽 참조

※ 새총모양의 발사대에 대한 사거리 실험 결과, 화염병의 비거리는 27~32m(옥상에서 발사할 경우 35~44m), 골프공은 145~169m, 벽돌은 32~37m인데 주변 건물은 10미터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한강로(8차로) 건너편 현대자동차 빌딩까지의 거리도 약 40m에 불과

- 범죄의 진압작전을 수행하는 경찰관이 그 인적·물적 능력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판단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그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고

- 급박한 불법상황을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가 있는 경찰이 그 작전수행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경찰의 합목적적 판단에 맡겨져 있는 사항이라 할 것임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5다23438 판결도 같은 취지임

- 따라서 경찰이 화염병 등의 투척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화염병 등이 소진되기를 기다릴 경우 더 큰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건과 같은 위험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해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찰특공대를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최소한의 진압장비만 갖춘 상태로 조기 투입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위법한 조치라 보기 어려움

※ 만일 이같은 상황에서 경찰특공대 투입시기를 놓쳐 시민의 피해가 확산되었다면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의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됨

##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의 인과관계 성립 여부

○ 본건은 「특공대 투입 → 망루 내 시너투기 및 화염병 투척 → 화재발생 → 농성자 사상」의 순으로 진행된 만큼 특공대의 진압작전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됨

○ 수사한 결과

- 특공대 투입과 농성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본건 ‘화재 및 사상의 결과’가 경찰이 객관적으로 지배가능한 영역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됨

※ 미국 Waco 사건 (1993년 Andrade v. U.S. 116 F.Supp.2d 778), 독일 연방대법원 판례(BGHSt 17, 359) 참조

- 이번 화재발생 및 사망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이라는 제3자의 독립적 행위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경찰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특공대의 진압작전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

※ 특공대의 망루 2차진입과 관련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2차 진입을 강행함으로써 화재를 야기한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나, 이 경우도 제3자의 독립된 행위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고 그 불이 순식간에 번져 화재진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던 점을 감안할 때 인과관

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기 타

- 경찰이 사전에 화학소방차, 에어매트를 준비하지 않는 등 안전대책을 소홀히 함으로써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하지 못하고 인명피해가 확산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됨
- 이에 대해 경찰은
  - 당초 계획과 달리 화학소방차가 준비되지 않았으나 그 대신 수성막포가 장착된 펌프차 2대를 준비하여 진압작전을 전개하였고, 특공대원들이 1차 진입시까지 개인소화기를 이용해 불을 꺼가면서 큰 무리없이 작전을 진행하였으며
  - 소방용 화학분말은 사람들이 있는 밀폐된 공간에 살포할 경우 질식위험이 있어 다수의 농성자들이 밀집한 본건 망루에는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분말도포 화학소방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 당시 에어매트와 안전매트는 준비하였으나, 건물 주변에 화염병 잔해물 등 유리조각이 많았고, 화염병 투척도 계속되고 있어서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망루 화재가 발생하기 직전 안전매트를 설치하였다 함
- 수사한 결과
  - 경찰의 작전을 위한 준비가 최초 작전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일부 있으나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이러한 점들이 화재 및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킨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본건 화재의 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 화염병 투척행위”인 만큼 위와 같은 점들이 결과 발생과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경찰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움

## 결 론

- 결론적으로 이번 진압작전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움
- 그러나 경찰이 작전을 수행하면서 취한 일련의 조치들이 과연 모두 적당하고 합당하였는지 그리고 그 판단에 따라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위법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고, 다만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사전준비나 작전진행상 아쉬운 점이 없지 아니함

### 3. 철거용역 관련 수사결과

#### ㉠ 철거용역회사 직원의 살수행위

- 1. 19. 10:00 ~ 12:00 경찰·소방대원 아무도 소방호스를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암건설사업 본부장이 소방호스를 사용하여 망루설치를 저지하도록 지시하여 동회사 과장과 직원이 남일당 망루쪽으로 살수, 남일당 옥상에서 망루 설치하던 김○○ 등에게 맞게 하여 폭력행사
- 위 현암건설산업 본부장, 과장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입건, 불구속 구공판, 직원은 불입건

#### ㉡ 철거용역회사 직원들이 건물 내에서 불피운 행위

- 1. 20. 01:00 ~ 02:00 남일당 건물 3층에서 농성자들과 대치하던 철거용역업체 호람건설 직원 5명이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폐목재, 소파 등을 쌓아놓고 불을 피워 연기가 농성자들에게 가도록 하여

폭력행사

- 호람건설 직원 5명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으로 불구속 구공판  
- 농성자들의 점거농성행위를 제지할 목적으로 불을 피운 것이고 건물을 소훼하려는 고의는 없으므로 방화죄는 적용하지 아니함

### ③ 철거용역회사 직원의 경찰 진압작전 참여 여부

- 1. 20. 06:30 경찰이 진압작전을 개시한 이후에 용역회사 직원이 참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촬영된 동영상 등에 의하면, 건물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농성자들이 설치한 쇠파이프 장애물을 제거한 것은 특공대원이며 용역업체 직원은 일체 등장하지 아니함  
※ 피디수첩 보도에 나오는 폴리아 방패를 들고 진압 경찰과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 촬영된 3명은 철거용역업체 직원이 아닌 세입자들로 밝혀짐

## VI. 주요쟁점에 대한 설명

### 1. 화재원인 관련 쟁점사항

- ① 경찰이 옥상출입문을 용접기 등으로 절단할 때 불꽃이 튀어 시너 등 가연물질에 인화되어 불이 났다는 주장
  - 경찰은 용접기를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화재현장 동영상 및 경찰무전 등에 의하면, 경찰이 옥상 출입문을 열고 25분 정도 지나서 화재가 발생하였고, 옥상 출입문은 발화지점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위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됨
- ② 건물 3, 4층에서 철거회사인 호람건설 직원들이 폐타이어 등으로 불을 지른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는 주장
  - 용역업체 직원 및 소방관의 진술, 소방 무전내용에 의하면, 용역업체 직원들이 1. 20. 01:00~02:00경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 나무와 폐건축자재를 이용하여 불을 낸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 본건 화재는 1. 20. 07:20경 망루에서 발화되어 일어난 것이고, 건물 내부와 망루는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본건 화재원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
- ③ 경찰이 망루 출입문을 절단기로 절단하면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났다는 주장
  - 출입문이 간단한 끈으로 묶여 있어서 절단기를 사용하지 않고 열었으며, 경찰이 이미 망루 안으로 진입한 이후에 화재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주장도 성립하지 아니함
- ④ 컨테이너가 망루와 충돌할 때 생긴 불꽃 때문에 불이 났다는 주장
  - 컬러TV 동영상에 컨테이너와 망루 4층이 접촉되거나 경찰이 쇠로 만들어진 도구로 망루지붕을 때리는 장면이 있으나, 동영상 화면들을 분석한 결과 화재 발생시점과 5분 이상의 간격이 있고 발화지점이 상이하여 화재원인으로 볼 수 없음
- ⑤ 망루 중앙 기둥을 특공대가 뽑아내는 바람에 망루 바닥이 기울면서 시너 등 인화물질이 옆질러졌고, 그 위에 누군가 화염병을 던져 불이 났다는 주장
  - 특공대와 농성자 10여명이 망루 3층에 있을 때 그 하중으로 인하여 망루 3층 바닥 중앙부분으로 합판이 다소 기울어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 본건 화재는 망루 3층 계단 부분에서 발화되었고, 망루 4층에서 투척한 화염병이 직접적인 원인이므로 망루 3층 바닥 중앙부분이 다소 기울어진 것은 화재원인이 아님

⑥ 농성자가 밖으로 던진 화염병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옥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불이 났다는 주장

○ 다각도에서 촬영한 동영상 어디에도 화염병이 물대포를 맞고 옥상으로 떨어지는 장면은 없으며,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여 앞에서 본바와 같이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던진 화염병에 의해 발화한 것이 확인됨

⑦ 망루 안에 다량의 시너가 있음을 아는 농성자들이 화염병 투척이라는 자살행위를 할 리 없다는 주장

○ 경찰관은 물론 농성자 중에도 화염병을 투척하였다고 진술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고, 각종 증거자료에 의하여 망루 내부에서 농성자들이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투척하여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됨

⑧ 망루 4층에서 화염병을 던져도 각 층이 막혀있어서 망루 아래층까지 내려갈 수 없다는 주장

○ 망루 4층에서 던진 화염병이 3층 계단 부근에 떨어져 발화되었고, 이것이 망루 내부 계단, 벽면 등에 뿌려진 시너에 옮겨 붙고 계속하여 불꽃이 망루 아래쪽으로 흘러내려 그 불꽃이 망루 1층 바닥과 옥상에 뿌려져 있던 시너에 옮겨 붙어 불길이 망루 전체로 번진 사실이 확인됨

## 2. 경찰 관련 쟁점

① 경찰이 과잉진압을 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특공대 투입은 현장을 효율적으로 제압하고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 경찰보다 고도의 전문훈련을 받은 특공대를 투입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임

○ 농성자들이 화염병을 투척하고 삼지창, 쇠파이프 등을 휘두르는 상황임에도 특공대는 방염복, 방패, 진압봉, 휴대용 소화기 등 농성자들을 검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비만 갖추고 투입된 점에 비추어 과잉진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② 경찰 진압과정에서 농성자들에 대한 폭행이 있었다는 일부 유족의 주장

○ 국과수 부검결과 사망자들 모두 특별한 출혈이나 외력에 의한 골절상 등이 없었고(화재로 인한 골절은 발견됨), 체포된 농성자 22명이 유치장에 입감될 당시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아무도 폭행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변호인들도 농성자들을 접견한 이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음

○ 병원에 입원중인 농성자들도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폭행사실을 인정키 어려움

③ 용산경찰서에서 점거농성을 사전에 저지하지 못한 이유

○ 용산철거대책위의 남일당 건물 점거는 심야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경찰이 쉽게 발견하기 어려웠고,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는 이미 농성자들이 건물에 진입하여 시위용품을 옥상에 옮긴 이후였으므로 사전 저지가 곤란하였다 함

④ 농성자들이 망루를 설치하기 전에 신속히 제압하지 못한 이유

○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농성사태에 대해 준비 없이 선불리 진압작전을 펼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따르며, 진압작전을 개시하기 전에 현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사태의 추이를 관찰하며 진압필요성을 판단,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함

○ 농성자들이 남일당 건물 점거 당일 망루를 완성한 점을 감안하면 그 이전에 진압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⑤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이유

○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에 대해 사실관계확인서와 서면조사를 통해 필요한 사항은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소화조사 필요성이 없었음

㉔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용한 무전기의 로그자료를 확인하였는지

○ 서울지방경찰청장실에 비치된 고정식 무전기 2대의 로그자료를 확인한 결과, 무전기 자체에는 로그자료가 남지 아니하고, 무전망 시스템에 로그자료가 남지만 24시간 동안만 보존되고 있어 진압작전 당시의 로그자료는 확인할 수 없음

### 3. 기타

㉕ 유족의 동의 없이 부검을 실시한 이유

○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체가 훼손되어 부검전 그 유족을 확인할 수 없었고, 신원확인 및 사망원인 규명을 위하여 신속히 부검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며, 범죄수사와 관련한 부검은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님

㉖ 시신을 유족에게 뒤늦게 확인해 준 이유

○ 유족으로 확인된 사람이 요구할 경우 시신을 보여주지 아니한 경우는 없으며, 유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사람들이 시신확인을 요구한 경우에만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있을 뿐임

## VII. 향후 계획

○ 검찰은 이번에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등을 상대로 구체적 가담행위 등을 특정하기 위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임

○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철연 의장 남경남에 대해서는 조속히 검거하여 의법조치할 예정임

○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전철연의 조직적 개입 및 용산철대위와의 금전거래 상황에 대하여는 계속 수사하여 그 진상을 밝힐 계획임

○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로 특별 공판팀을 구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 앞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의혹이 제기되거나 추가적인 단서가 포착되어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철저히 수사하여 밝히겠음

별첨

## 기소대상자 명단

순번	피고인	신분	검찰처분	죄명
1	김OO (44세)	신계동 철거민연합회 위원장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2	김OO (52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조직부장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3	조OO (42세)	성남 단대동 상가공장 철거 대책위원장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4	김OO (51세)	정금마을 상가세입자 대책 위원장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5	김OO (38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등
6	김OO (53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홍보부장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7	박OO (여, 40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8	이OO (39세)	용산4구역 상가공사 세입자대책위원회 소속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9	강OO (49세)	용인시 신갈오거리 상가세입자 철거 대책위 위원장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0	김OO (48세)	안양 관양동 철거 대책위 위원장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순번	피고인	신분	검찰처분	죄명
11	박OO (45세)	구로 천왕2지구 철거 대책위 위원장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2	유OO (38세)	정금마을 철거 대책위 총무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3	배OO (51세)	상도4동 철거 대책위 부위원 장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4	이OO (42세)	인천 도하지구 상공 전철연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5	손OO (50세)	인천 도하지구 상공 전철연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6	박OO (43세)	인천 도하지구 상공 전철연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7	이OO (44세)	성남 단대구역 상가 세입자 철거 대책위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8	장OO (44세)	성남 단대구역 상가 세입자 철거 대책위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19	정OO (50세)	수원 영통 신동 철거 대책위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20	이OO (43세)	김포 신북6지구 전철연 회원	불구속 기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순번	피고인	신분	검찰처분	죄명
21	하OO (43세)	호람건설 주식회사 공사과장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2	박OO (38세)	호람건설 주식회사 직원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3	김OO (41세)	호람건설 주식회사 직원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4	한 O (23세)	호람건설 주식회사 직원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5	김OO (26세)	호람건설 주식회사 직원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6	허OO (45세)	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개발 사업부 본부장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27	정OO (34세)	현암건설산업 주식회사 개발 사업부 과장	불구속 기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 반(공동폭행)

지석준, 이성수 등 주차장 쪽 탈출자 상황



김주환, 김대원	DSC_6711	7:23:08
----------	----------	---------



김대원, 김주환, 지석준	DSC_6712	7:23:12
김대원, 김주환은 왼쪽으로 이동		



DSC_6713	7:23:18
----------	---------

옥상 벽 위: 김재호

베란다 : 김대원, 김주환, 지석준, 이성수, 김성환

김대원, 김주환은 왼쪽으로 이동하고, 지석준 옆으로 이성수가 빠져나옴. 김성환은 곧 베란다 바닥으로 자세를 낮추어 화면에서 사라짐



지석준은 창문과 난간 사이에 걸쳐진 판 위에 엎드려 있음

DSC_6715	7:23:26
----------	---------



이성수의 얼굴 윤곽이 드러남. 손에는 운동화로 추정되는 신발을 들고 있음

DSC\_6723

7:23:59



이성수가 지석준 옆 난간에 걸터 앉아 있음

DSC\_6753

7:25:57



지 석 준 이  
난 간 에 매  
달 림  
이 성 수 는  
다 시 배 란  
다 로 내 려  
서 서 망 루  
를 살 펴 보  
고 있 음

DSC\_6758

7: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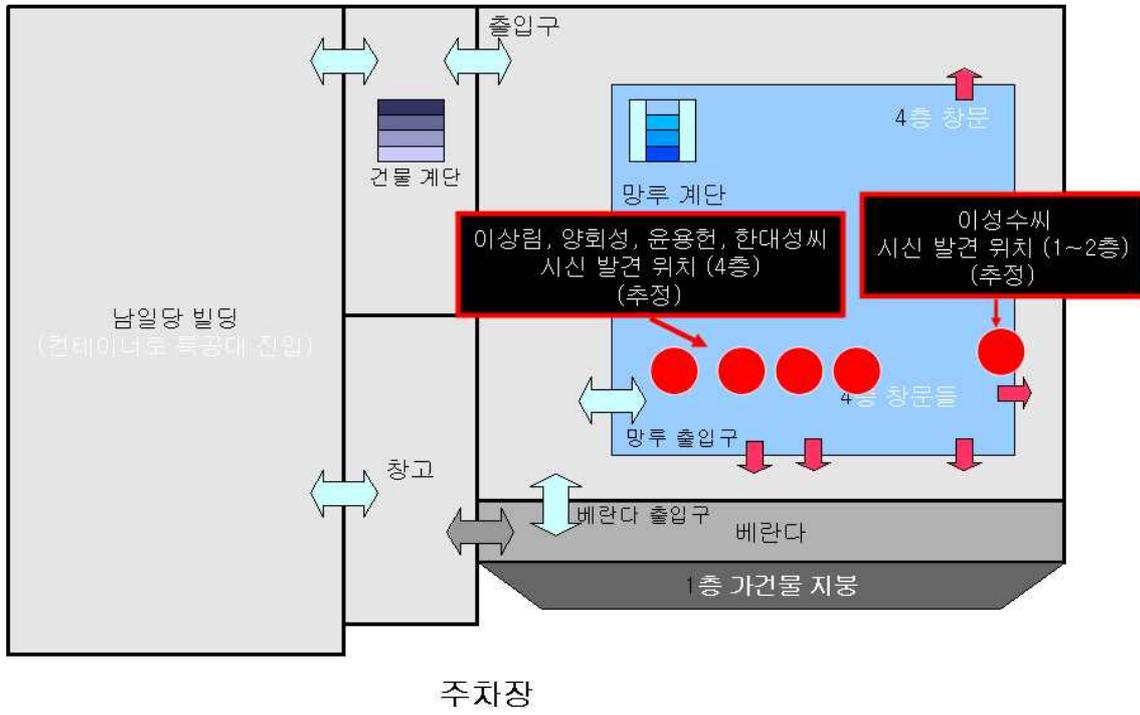


지석준 추  
락  
이성수 사  
라짐

7:26:59



이성수씨 시신이 발견된 위치



## 용산4구역 용역업체 직원의 위협 및 폭행 기록

※ 이 기록의 원본은 기록자의 친필로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하여 작성된 것인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여기에는 그 내용만 옮긴다.

<증언1> 2008년 6월 28일 새벽 2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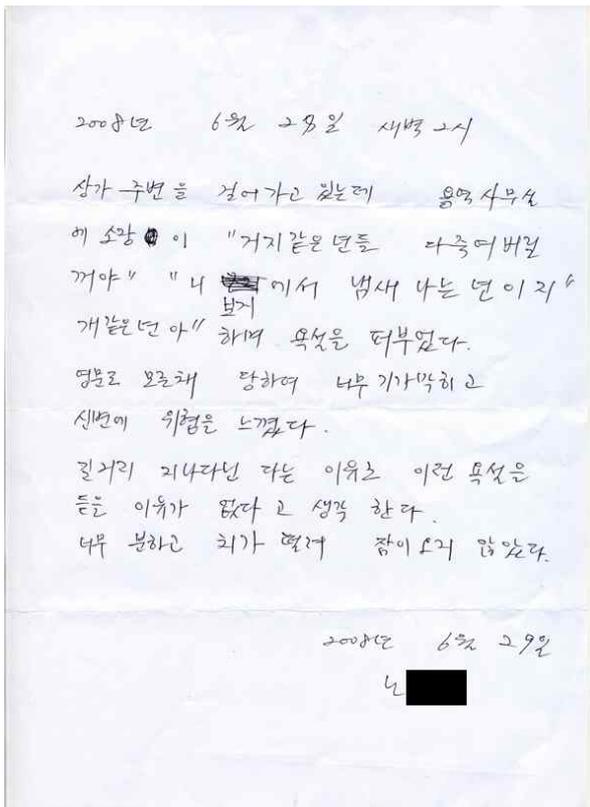
상가 주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용역사무실의 소장이 "거지같은 년들 다 죽여버릴거야", "니 보지에서 냄새나는 년이지", "개 같은 년아" 하며 욕설을 퍼부었다. 영문도 모른 채 당하여 너무 기가 막히고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

길거리 지나다니는 이유로 이런 욕설을 들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분하고 치가 떨려 잠이 오지 않았다.

2008년 6월 29일

노OO

(원본 예시)



<증언2>

지나는 길에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건장한 남자 6명이 정도가 심한 욕설과 협박을 하는 걸 보고 말리려고 했다.

덩치가 큰 20대 초반의 청년이 "너 뭐야, 죽고싶지 않으면 저리 가"라며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며 밀치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그로 인해 눈 주위를 맞아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다. 세상에 말리는 사람을 이토록 상하게 욕과 폭력까지 일삼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생각하니 잠도 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남자들은 동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시비를 붙이고 있다. 하지만 무서워서 그냥 피해다닐 수 밖에 없다. 하루 빨리 그들이 이 동네를 떠났으면 좋겠다.

전OO

<증언3>2008년7월1일 오후4시30분경

2008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조합사무실 앞에서 용역 4명에게 골목으로 끌려가서 "씹새끼 목아지를 따분다", "쫓대가리를 찢라분다", "칼로 배따지를 따분다" 등 심한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목젓을 누르면서 주먹으로 머리를 구타하였습니다.

2008년 7월 1일  
조OO

<폭행당한사진>찢어진옷과깨진안경=>

<증언4>2008년7월1일

조합사무실 앞에서 (지나가는 중) 우리 동네의 아는 분이 맞고 있는 걸 보고 저지하려는 순간 보기에 너무 무서운 용역 5명 이상의 무리들이 심한 욕설(차마 글로 쓰기도 부끄러운 성적인 욕설)을 내뱉으면서 지역주민에게 주먹질과 똥냄새가 난다면서 동네 지역주민들을 다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며 협박과 성적인 욕설을 너무 많이 해서 세상에 저런 놈도 있나 의아했다.

특히 나에게는 키가 185 정도 몸무게는 100Kg 정도로 보이는 험상궂게 생긴 어린 놈이 내 뺨을 때리면서 밀쳤다.

너무 무서워서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1일  
박OO



<증언5>2008년7월1일오후3시30분경

전봇대 위에 현수막을 달려고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끈을 묶고 있는데 용역강패 두목 1놈이 "야 저거 달지못하게 해!", "찢어버려", "개새끼들 달지마." "뒤흠하는거야" (라고 했다.) 저는 사다리 위에 높이 올라가 있는데 사다리 밑을 잡고 흔들며 겁을 주며 "안내려오면 다친다, 내려와 이 새끼야!"하며 내려오라고 했다.

현수막은 사정없이 찢어졌고 주민 1명이 "왜 이거 찢어, 가져가지마!" (하며) 안주려고 하니깐 연세도 많으신 어르신에게 무자비한 욕설로 "이 새끼 죽여버려" 하며 어르신의 중요한 성기를 잡고 힘껏 잡아당기니 세상에 화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용역강패 5~6명이 한꺼번에 밀고 옷을 잡고 찢으며 안넘어질 수가 없었다. 골목으로 쿵하고 넘어졌다. 온몸이 멍이 들어 많이 아플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데가 없는 무법천지 세상이 참 저주스럽습니다. 누구 하나 죽어 넘어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세상이 정말 더럽습니다.

그래도 하나의 생명이 개인개인에게는 소중한데, 무서워 어디 혼자 골목이라도 다니겠습니까. 혼자서 무서워서 다닐 수 없는 세상, 민중의 지팡이는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히 주민의 편에 서서 엄중한 처벌을 바랍니다.

2008년 7월 1일 오후 3시 30분  
김OO

<증언6>2008년7월1일오후4시30분경

2008년 7월 1일 용산조합사무실 앞에서 오후 4시 30분경

주민들이 용역에게 맞고 있는 걸 본 후 가지고 있던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려 했는데 용역 2명이 카메라를 막으며 "찢어죽일 년 사진 찍으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한 후 카메라를 빼앗아 부수려고 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2008년 7월 1일  
이OO

<증언7>2008년7월1일오후4시30분경

우리 동네 사람들이 PC(현수막) 달고 있는 중에 용역강패들이 와서 우리 동네 노인네를 급소(성기) 잡아당겼다.

그걸 보며 말렸다. 말리고 있는데도 용역강패들이 "너는 누구야" 상소리를 하면서 발로 차고 먹살 잡고 마구 구타를 당했다. 또한 용역강패 소장도 쌍소리 하면서 발과 주먹으로 나를 마구 때렸다.

정말로 너무 억울하고 분했다.

계속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쌍소리하고 마구 때리고 나도 맞고 있는 중에 용역강패들에게 그만 때리

고 부녀자들에게도 심한 욕설 하지 말라 외쳐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요즘 용역깡패들이 동네사람들에게 심한 쌍소리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협박까지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한 생활하고 있고, 분통이 터질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해봤자 그 용역들은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이 억울한 일을 누구와도 상의하고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동네 주민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2008년 7월 1일 오후 4시 30분경

김OO

#### <증언8>2008년7월21일저녁7시30분경

7월 21일 저녁 7시 30분경 집냉장고에 넣을 음식이 있어 넣기 위해 집으로 가서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이르러 집열쇠를 가져오지 않는 바람에 다시 가게로 가려던 차, 1층 계단 앞에 용역 5명 정도가 계단에 앉아 제가 나가려는데 앞을 가로막고 밀치며 몇 대 때려, 피하고 계단 밖으로 나왔다. 거기엔 5명이 에워싸며 도망을 못하게 하고 1명이 목 밑을 치며 밀칠 때 벽에 뒤통수를 박아, '아, 내가 이러다 맞아죽겠구나, 보는 사람이 없어 마구 치는구나' 하여 옷을 잡길래 당겨서 찢어졌다. 할 수 없이 옷을 벗어 도망치고 빠져나와 112에 신고를 하고 경찰이 왔다. 용역들이 경찰에게도 개새끼 소개끼하며 마구 퍼부었다.

세상에 이렇게 신변에 위협을 느끼며 한시라도 살 수가 없어 이 상황에 신변보호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 안경도 알이 빠져 쓸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2008년 7월 21일

김OO

#### <증언9>2008년9월30일오후6시30분경

(3명이) 오후 6:30경부터 오후 8:00시까지 종업원을 구타하며 문을 차고 테이블을 다 밀고 냅킨통을 집어던짐.

#### <증언10>2008년10월1일저녁9시50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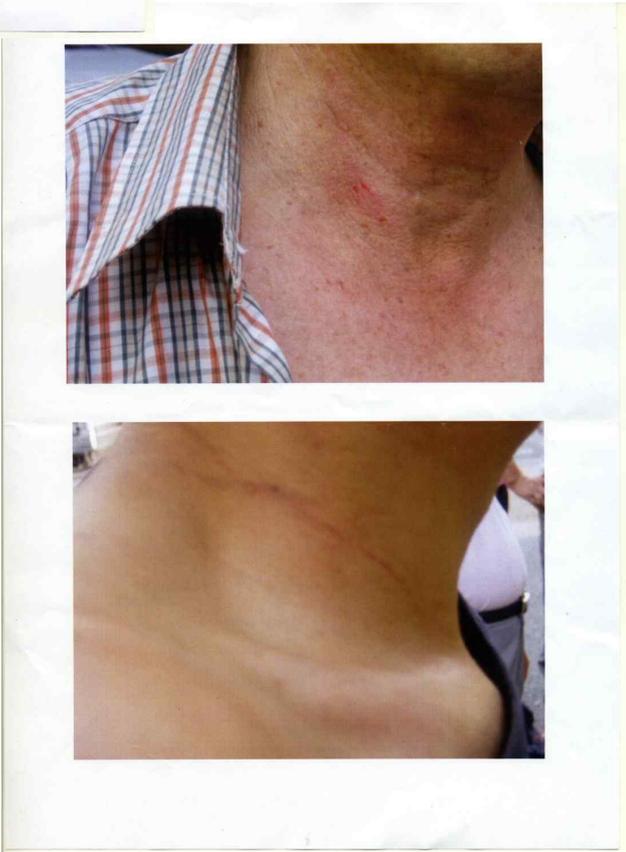
9시 50분경 찾아와 술달라고 종업원들한테 강요

#### <증언11>2008년10월1일저녁12시

내일 3시까지 안오면 이 집 내일서부터 장사 못하게 다 부수겠다. 왜 신고했느냐고 협박.

<폭행당한사진>거리에서폭행당해찢어진옷과상처들(故이상림님)





<폭행당한사진>거리에서폭행당해찢어진옷과상처들



<협박사진>장사를 방해하기 위해 비둘기 시체, 계란 등을 투척



용역들이 가게 유리창에 계란을 투척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심지어 죽은 비둘기의 시체까지 버린 것이 확인된다. 간판과 2층 유리에까지 오물을 뿌린 것이 보인다.

<협박사진>길을가로막고통행을못하게하는모습



용역들이 골목을 가로막고 주민들과 손님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위협하는 사진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다.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경찰이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용역들을 제지하지는 않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저 사람들과 충돌하지 마시고, 멀리 돌아가는 골목길이 없진 않으니 돌아서 다니라"고 말하는 사진이다.

<폭행사건>용역들이주민들을폭행하는장면



용역들이 상가 골목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의 사진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용역이 주민을 밀어부치면서 폭행하는 장면이 보인다.



용역들이 상가 골목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의 사진이다. 화살표가 가리키는 곳에서 용역이 주민을 밀어부치면서 폭행하는 장면이 보인다.



용역들이 상가 골목에서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폭행하는 상황에서의 사진이다. 용역들이 주민의 옷을 잡고 가려는 것을 다른 주민들이 나서서 말리고 있다.

<위협사진>용역들이그려놓은섬뜩한그림들



용역들이 비어있는 가게 벽에 그린 그림들이다. "니미 뽀빠 시벌", 괴물그림, "위험하다" 등의 글씨가 보인다.







## 진상조사단 활동 일지

### 1. 20. (화)

- 07:20 화재 발생

사망자 : 윤용현, 이상림, 이성수, 한대성, 양희성, 김남훈(경찰)

- 13:45 연행자

동작서(10명) : 이은민, 장건진, 손관현, 김진홍, 조인환, 이진석, 김재호, 박영우, 정옥자, 박선영 - 차혜령 접견

용산서(3명) : 정대영, 김주환, 김창수 - 윤지영 접견

마포서(9명) : 김성천, 김익수, 유석진, 김대원, 강대선, 배영상, 이동우, 이성선, 박의영 - 장서연 접견

- 15:00 용산 사건 인권, 시민단체 긴급대책회의

- 17:00 입원자

순천향병원 : 김영근, 천주석, 김성환, 지석준 입원 : 차혜령, 이재영 방문(병실 확인 후 면담 시도하였으나 본인 거부 또는 수술 대기 중으로 면담하지 못함)

용산중대병원 : 이충연 입원

- 서울중앙지검 조사 입회

- 21:30 경

5구의 시신이 순천향병원에 안치된 상황에서 강제 부검을 실시하려는 시도가 있고, 시신의 신원확인을 안해주고 있어 인의협과 함께 항의 등 조치하기 위해 황필규 변호사가 병원으로 감.

- 유족과 철거민 추천 의사 불참 상태로 국과수 부검 이루어짐

- [보도자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진상조사단 구성 발표 및 우리의 요구

### 1. 21. (수)

[진상조사단]

- 10:00 진상조사단 구성

진상조사단 1차(구성) 회의 : 진상조사단과 변호인단 별도 구성기로 함.

- 16:00~21:00 유족 및 부상자 진술(김성환, 지석준) 청취 - 장주영, 권영국, 박진 등

[변호인단]

- 11:00 검찰조사 참여

김창수 - 장서연, 김재호 - 차혜령, 김대원 - 김인숙 변호사

- 접견

김창수 • 박선영 - 김종웅

- 1. 20. 집회

연행자 : 최석현, 권현수 : 행진 도중 명동에서 자정 경에 연행됨. 남대문서. 이소영 변호사 접견.

### 1. 22. (목)

[진상조사단]

- 09:00 진상조사단 2차 회의

- 철거민 대리하여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 접수 (서울중앙지방법원) : 형사31단독 이재신 판사

- 14:00 기자회견(사고 현장 옆 골목)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1차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1차 진상조사 결과 발표, 강제진압의 인권적, 법적 문제점, 사망자 검안결과

[변호인단]

- 15:00 조인환, 김재호, 박영우, 김주환, 김성천, 김대원 구속전피의자심문 (한택근, 김인숙, 차혜령, 장서연, 강영구 참석) : 최철환 판사

- 19:00 조인환, 김재호, 김주환, 김성천, 김대원 구속영장 발부(박영우 기각)

1. 23. (금)

[진상조사단]

- 접견 : 구속자 전원(권영국, 이재호)

- 검찰 수사본부장인 정병두 차장검사실 면담신청 :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거부.

- 11:30~14:00 면담

연행 후 석방자 12명에 대한 면담 조사 진행, 민변사무실

- 16:00 진상조사단 3차 회의

[변호인단]

- 15:50 조사 참여 : 김재호 - 차혜령(진술서 작성)

- 피의자 대리하여 망루 등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서 접수 (서울서부지방법원)

1. 24. (토)

[진상조사단]

- 21:00 이충연 용산4가 철대위 위원장 면담 - 김종웅

[변호인단]

- 검찰 소환 통보 : 이은민, 박선영, 김진홍, 손관현. 지금철대위 홍보부장 황정환 (?)

- 조사 참여 : 김주환 - 장서연, 김재호(김형욱, 조호경 검사) - 차혜령

1. 25. (일)

[변호인단]

- 접견 : 조인환, 김대원, 김성천 - 김종웅, 김재호 - 장서연

- 조사참여 : 김주환 - 강영구

김재호 : 강종현 검사

김주환 : 박기종 검사

조인환 : 516호

김대원 : 박진원 검사

김성천 : 조호경 검사

- 유가족 면담 : 김종웅 변호사

1. 26. (월)

- 국회의원(권영길, 이정희, 강기갑, 안희정)·유족 간담회 참석 - 김종웅
- 범대위 기자회견 참석 : 김종웅, 장서연, 강영구
- 면담
- 이충연, 천주석 : 김종웅, 장서연, 강영구

1. 27. (화)

- 14:00 진상조사단·변호인단 연석회의
- 면담
- 유족 : 김종웅
- 지석준, 김영근, 천주석, 김성환 : 권영국, 이재호, 박진, 유성
- 조사참여
- 김창수(조호경 검사) - 장서연, 김재호 - 차혜령, 손관현(김성욱 검사) - 김인숙, 김주환 - 강영구

1. 28. (수)

[진상조사단]

- 10:00 진상조사단 5차 회의
- 15:00 기자회견(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앞)
- \* <진상조사단 2차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용산참사 경찰과잉진압 고발 기자회견>
- : 고발장 제출경위에 대한 보고, 연행과정 등의 경찰폭력 의혹과 부상자 방치 의혹에 대한 보고, 고발장 내용 요지 발표
- \* 기자회견 후 고발장 접수

[변호인단]

- 용산4가철대위원장 이충연 체포 : 김종웅 접견

1. 29. (목)

[진상조사단]

- 13:30 진상조사단 6차 회의
- 조선일보 상대 정정보도 청구 : 시너 보는 동영상 관련

[변호인단]

- 구속자 5명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 조선일보 등 신너 동영상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신청

1. 30. (금)

[진상조사단]

- 검찰 시너 동영상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발표

[변호인단]

- 10:00 구속자 5명 구속적부심 진행. 전원 기각.
- 15:00 이충연 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 발부

2. 1. (일)

- 15:00 '폭력살인진압 규탄 및 MB악법저지를 위한 국민대회' 장주영 조사단장 참여 및 진상조사 내용 발언

2. 2. (월)

[진상조사단]

- 09:30 국가인권위 김철준 사무총장 등 면담
- MBC 측에 [2009. 1. 20. 용산 참사 촬영 동영상 제공 요청] 공문 발송

2. 3. (화)

[진상조사단]

- 18:00 진상조사단 8차 회의

2. 4. (수)

[진상조사단]

- 부검결과 입수

- 14:00 기자회견(민변 사무실)

<용산 참사 희생자 사망경위와 사인의혹에 관련된 진상조사단 보고 기자회견>

: 사망경위 설명, 동영상 상영, 유가족 증언 (권명숙 / 고 이성수씨 부인), 국과수 부검감정서 분석결과 발표

2. 5. (목)

[진상조사단]

- 18:00 진상조사단 9차 회의

[변호인단]

- 망루 답사, 대리인단 10여명 참석.

2. 6. (금)

[진상조사단]

- 14:00 기자회견(민변사무실)

<두 가지 진실, 그리고 경찰의 위법성>

: 1. 19. '철거민들의 폭력행위'? 진실은 무엇인가?, 경찰·용역 합동작전에 대한 위법성 설명, 망루 탈출자 고 이성수 씨에 대한 검찰의 왜곡에 대한 반박

2. 8. (일)

- 검찰, 구속자 김대원, 김성천, 김재호, 김주환, 조인환에 대해 공소 제기

2. 9. (월)

- 10:30 검찰

<용산 철거현장 화재사건 수사결과> 발표

[진상조사단]

- 14:00 기자회견(민변사무실)

<검찰은 용산참사의 진실을 왜곡했다 - 용산 철거민 사망사건 검찰 수사 발표에 대한 진상조사단의 입장>

: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박, 화재원인과 관련된 진실, 입장 정리 및 요구사항 발표

2. 12. (목)

- 15:00 진상조사단 10차 회의

2. 17. (화)

- 09:30 진상조사단 11차 회의

2. 20. (금)

- 09:30 진상조사단 12차 회의

2. 23. (월)

- 10:00 특검법안 국회청원 기자 브리핑

- 14:00 진상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